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 산
검 토 보 고 서

일 반 회 계
지 역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 술 보 증 기 금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기 금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유 인 규

목 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개관

Ⅰ. 결산 총괄

1. 세 입 ····· 1
2. 세 출 ····· 2
3. 기 금 ····· 4
4. 예비비 ····· 5
5. 재무제표 ····· 6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Ⅰ. 일반회계·지특회계·소특회계 결산 개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19
2. 세출결산 ····· 21
3. 재무제표 ····· 2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 36
2. 세출결산 ····· 38
3. 재무제표 ····· 4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 세입결산 ····· 46
2. 세출결산 ····· 48
3. 재무제표 ····· 50

Ⅱ. 검토의견

[공통]

1.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 54
(1) R&D 종료과제 정산 및 정산금 반납 지연 ····· 55
(2) 제재처분 지연 및 제재환수금·제재부가금 미수납 과다 ····· 64

[일반회계]

1. 공통: 창업진흥원 기관운영 ····· 71
(1)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필요 ····· 73
2.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지능정보화 사업 ····· 77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지능정보화 사업 관리 부적정 ····· 78
3.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정계획 ····· 84
(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정계획 지연 및 누락 등 개선 필요 ····· 85
4. 과징금(56-565) ····· 93
(1) 미수납액 징수 및 세입예산 증액 계상 필요 ····· 95
5.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98
(1) 세입 과소계상 재발방지 및 미수납액 징수노력 필요 ····· 98
6.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 102
(1)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 실적 부진에도 추가예산편성 부적정 ····· 103
7.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1232-301) ····· 107
(1) 정부출연금 예산 과다편성 재발방지 필요 ····· 107

8.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114
(1) 제재조치 및 제재 환수금 징수 지연 문제 ····· 115
(2) 부정행위 환수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 필요 ····· 121
9. 기술혁신기반조성(2131-302) ····· 127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출연 법적 근거 및 사업 신설 타당성 부족 ····· 128
(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보조·출연사업 이월 등 관리·감독 필요 ····· 134
(3)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중복 및 예산 통합집행 부적절 ····· 139
10.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2134-430) ····· 145
(1) 신규 사업 편성시 사업추진 정당성 및 타당성 확보 필요 ····· 145
11.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 150
(1) 사업계획 철저 ····· 150
12. 국제중소기업협력(ODA)(3133-305) ····· 154
(1) 지속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사후관리와 후속지원 검토필요 ····· 154
1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4231-301) ····· 158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빈번한 보조비목 간 전용 등 ····· 159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비를 기관운영비로 집행 ····· 169
(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미반영 ····· 172
(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요재산 보고 장기 미이행 ····· 177
14. 여성기업육성(4234-302) ····· 182
(1) 미래여성인재육성: 사업계획 철저 및 서비스 제공체계 점검 ····· 183
(2) 조사연구: 근거법률에 부합한 사업추진방식으로의 변경 필요 ····· 186
15.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 ····· 190
(1) 내(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방식 및 비목 변경 검토 필요 ····· 191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예산 집행 ····· 194

16. 마케팅지원사업(4835-305) ····· 198
(1)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 회계연도말 수익금 집행계획 변경 ····· 199
(2) 유통망진출지원: 수익금 수입 및 집행 관련 공시의무 이행 ····· 204
17.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 208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목표치 달성 미흡 ····· 209
18.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4837-301) ····· 215
(1)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체수입 적정성 점검 필요 ····· 216
(2)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자체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활용 활성화 필요 ····· 222
19.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4838-301) ····· 226
(1) 중소기업 협·단체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 227
20.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 ····· 230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적시 인력충원 필요 ····· 231
21. 창업저변확대(5132-301) ····· 234
(1) 연례적인 보조금 이월을 지양할 필요 ····· 235
22.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239
(1)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운영사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실적에 대한 점검 필요 ····· 240
23. K-바이오 랩허브 구축(5132-314) ····· 245
(1)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비 편성 지양 필요 ····· 246
(2) 사업 순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필요 ····· 249
24. 창업생태계기반구축(5134-301) ····· 252
(1) 스타트업파크: 추가적인 건립 지연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253
(2) 스타트업파크: 예산집행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필요 ····· 254
25.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충북)(5134-307) ····· 258
(1) 예산집행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관리 필요 ····· 258

26.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7232-503) ····· 264
(1) 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수행체계 개선 필요 ····· 265
(2)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추진 지연 재발 방지 ····· 268
27. 청사시설관리(7241-306) ····· 271
(1) 세종청사 관리: 연말 전용 지양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27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특화산업육성(3336-302) ····· 277
(1)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 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 278
2. 지식산업센터(자율) 등(5153-303 등) ····· 285
(1)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28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 295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298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300
4. 재무제표 ····· 303

Ⅱ. 검토의견

1.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 310
(1) 수입 과소계상 재발방지 필요 ····· 311
2.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314
(1) 여유자금 운용수입 추계방식 개선필요 ····· 315
3. 신성장기반자금(융자)(1261-301),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 ···· 318
(1) 이차보전 집행실적 부진 ····· 319
(2) 스케일업금융: 부실관리 철저 ····· 322

4. 글로벌화지원플랫폼(3152-301) ····· 325
(1)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 326
5.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 329
(1) 모태펀드 회수재원 재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 ····· 330
6. 전북연수원 건립(5451-309), 전남연수원 건립(5451-311) ····· 335
(1) 사업목적 적기달성과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 336

기술보증기금

Ⅰ. 기금보증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 341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344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347
4. 재무제표 ····· 350

Ⅱ. 검토의견

1.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358
(1) 보증사고 이연부실과 연착륙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 ····· 359
2.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441-301) ····· 363
(1) 유동화증권 특수성에 기반한 사고율 예측 필요 ····· 364
3.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2441-303) ····· 370
(1) 민간투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371
4. 구상권관리(2441-304) ····· 375
(1)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한 구상권관리 계획 수립 필요 ····· 376
5. 팩토링금융(2441-311) ····· 379
(1)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 ····· 38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 387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 389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 390

4. 재무제표 ····· 393

Ⅱ. 검토의견

1. 소상공인창업지원(4131-316) ····· 400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실 ····· 401

2.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406

(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407

(2)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보조사업비로 공공기관 임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412

3. 소공인특화지원(4131-318) ····· 417

(1)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집행관리 미흡 ····· 418

4. 소상공인지원인프라(4131-321) ····· 424

(1)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민간위탁으로 사업추진방식 및 비목 변경 필요 ····· 425

(2) 공통(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정책자금운영지원): 주요사업비로 기금 운영비성 지출 주의 필요 ····· 430

(3)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과도한 사업기간 연장 지양 필요 ····· 434

5.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442

(1) 산학연계 경영혁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및 사업성과 후속연계 미흡 ····· 443

(2)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수행방식 개선 필요 ····· 449
(3) 전통시장 홍보: '시장종합정보지' 제작 내실화 필요 ····· 451
6. 상권활성화(4154-305) ····· 455
(1) 동네상권발전소: 상권전략 수립과 상권활성화 사업연계 미흡 ····· 456
7. 소진기금 기본경비(7277-200) ····· 462
(1) 소진기금 기본경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역대가 지급 ····· 462

참고자료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 469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 470
3. 중소기업 현황 ····· 472
4. 창업기업 현황 ····· 475
5. 벤처기업 현황 ····· 476
6.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현황 ····· 477
7. 소상공인 현황 ····· 478
8. 전통시장 현황 ····· 480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 481
10.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 ····· 485
11. 신보, 기보, 지신보의 보증대상 및 한도, 총 보증금액 비교 ····· 487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개관

Ⅰ. 결산 총괄

1.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감 (C-A)
일반회계	192,210	266,846	262,457	-	4,389	70,24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8,000	27,035	26,065	-	970	8,06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3,384	3,384	-	-	-
합 계	**210,210**	**297,265**	**291,906**	**-**	**5,359**	**78,312**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3개 회계의 세입예산현액 총액은 2,102억 1,000만원이며, 2,972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919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53억 5,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변동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	불용액
		전년 이월	추경	전용	예비비				
일반회계	4,962,237	3,270	-	2,188 △2,188	-	4,965,506	4,955,839	-	9,66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86,338	-	-	-	-	586,338	585,807	-	53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18,298	-	-	-	-	218,298	218,298	-	-
합 계	**5,766,873**	**3,270**	**-**	**2,188 △2,188**	**-**	**5,770,142**	**5,759,943**	**-**	**10,199**

주: 총계기준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3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5조 7,701억 4,200만원이었고, 이 중 5조 7,599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1억 9,9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총지출 기준[1] 결산액은 13조 9,204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2,216억 5,1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5,863억 3,800만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182억 9,800만원임.

1) 총지출 기준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 예산과 기금(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뿐 아니라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채발행이나 차입 등 보전거래를 제외하여 산출함.

총지출 기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A)	2023 예산	2023 결산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5,898,387	3,231,318	3,221,651	△2,676,736	△4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5,750	586,338	585,807	80,057	15.8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특별회계	353,833	218,298	218,298	△135,535	△38.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703,668	5,864,624	5,849,952	△853,716	△12.7
기술보증기금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7,908,027	4,099,024	4,044,738	△43,863,289	△91.6
합 계	**61,369,665**	**13,999,602**	**13,920,445**	**△47,449,220**	**△77.3**

3. 기　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지출액	2023년			증감	
		당초 (A)	수정 (B)	지출액 (C)	(C-B)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75,700	10,239,834	10,715,104	10,710,770	△4,334	△0.0
기술보증기금	3,222,220	3,174,319	3,174,319	3,864,584	690,265	21.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9,669,579	6,422,505	6,437,841	6,894,899	457,058	7.1
합　계	**62,967,499**	**19,836,658**	**20,327,264**	**21,470,253**	**1,142,989**	**5.6**

주: 총계기준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며, 각 기금별 지출액 규모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조 7,107억 7,000만원, 기술보증기금 3조 8,645억 8,4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6조 8,948억 9,900만원 등 총 21조 4,702억 5,300만원임.

총지출 기준 기금 결산액은 9조 8,946억 8,9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5조 8,499억 5,2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4조 447억 3,800만원임.

총지출 기준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결산 (A)	2023 예산	2023 결산 (B)	증 감	
				B-A	(B-A)/A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703,668	5,864,624	5,849,952	△853,716	△12.7
기술보증기금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7,908,027	4,099,024	4,044,738	△43,863,289	△91.6
합 계	**54,611,695**	**9,963,648**	**9,894,689**	**△44,717,006**	**△81.9**

4. 예비비: 해당없음

5.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3		2022	
자산				
Ⅰ.유동자산		**130,720**		**99,700**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08		13,077
2. 단기금융상품		33,260		16,225
3. 단기투자증권		25,723		16,731
4. 미수채권	1,794		1,002	
미수채권대손충당금	179	1,615	107	895
5. 단기대여금	68,985		52,799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265	67,720	922	51,877
6. 기타유동자산		994		895
Ⅱ.투자자산		**348,436**		**372,840**
1. 장기금융상품		1,893		9,360
2. 장기대여금	311,973		323,185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33,803	278,170	24,844	298,341
3. 장기투자증권		67,860		64,658
4. 기타투자자산		513		481
Ⅲ.일반유형자산		**14,277**		**14,140**
1. 토지		7,705		7,694
2. 건물	4,085		3,978	
건물감가상각누계액	436	3,649	225	3,753
3. 구축물	229		223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69	160	45	178
4. 기계장치	655		675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538	117	562	113
5. 집기 · 비품 · 차량운반구	1,015		987	
집기 · 비품 ·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867	148	841	146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3		2022	
6. 기타일반유형자산	200		216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44	56	145	71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442		2,185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205**		**211**
1. 소프트웨어		195		197
2. 기타무형자산		10		14
Ⅵ.기타비유동자산		**3,718**		**3,272**
1. 장기미수채권	83		162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82	1	81	81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3,717		3,191
자산계		**497,356**		**490,163**
부채				
Ⅰ.유동부채		**70,517**		**70,658**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6,637		67,162
2. 기타유동부채		3,880		3,496
Ⅱ.장기차입부채		**379,116**		**362,755**
1. 공채		191,374		178,274
2. 장기차입금		187,742		184,481
Ⅲ.장기충당부채		**12,403**		**11,140**
1. 퇴직급여충당부채		688		680
2. 기타장기충당부채		11,715		10,460
Ⅳ.기타비유동부채		**4,262**		**4,512**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4,262		4,512
부채계		**466,298**		**449,065**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26,210**		**126,210**
Ⅱ.적립금 및 잉여금		**(101,516)**		**(90,169)**
Ⅲ.순자산조정		**6,364**		**5,057**
순자산계		**31,058**		**41,098**
부채와순자산계		**497,356**		**490,163**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총자산은 49조 7,356억원으로, 전기 49조 163억원 대비 7,193억원(1.5%) 증가하였음.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재무제표(요약)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명	자 산	부 채	비 고
□ 총 계(A)	49,735,568	46,629,826	
① 일반회계	654,861	283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669	-	
③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10,000	-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4,703,269	20,705,594	
⑤ 기술보증기금	4,944,111	1,410,038	
⑥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9,205,658	24,513,911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87,563**	**(16,831)**	**70,735**	**514,251**	**(14,487)**	**499,764**
1.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2,638	(20)	2,618	2,444	(25)	2,419
2. 중소기업행정지원	16	(1)	16	16	-	16
3. 기술금융지원	12,130	(3,906)	8,225	6,785	(4,199)	2,586
4. 창업환경조성	22,239	(3,518)	18,721	15,789	(3,265)	12,524
5. 벤처기업활성화지원	282	(32)	249	571	(9)	562
6.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9,663	(3,373)	6,290	14,769	(3,797)	10,972
7.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7,645	(69)	17,576	19,118	(14)	19,104
8. 지역중소기업육성	3,005	(167)	2,838	3,617	(108)	3,509
9.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14,238	(5,702)	8,536	430,799	(3,017)	427,782
10. 동반성장지원	394	-	394	14,430	-	14,430
11. 중소기업육성지원	1,423	(3)	1,421	1,489	(2)	1,487
12. 중소기업인력지원	3,890	(40)	3,851	4,424	(51)	4,373
Ⅱ.관리운영비			**3,118**			**3,197**
1.인건비			1,937			1,929
2.경비			1,181			1,268
(1)복리후생비			289			324
(2)소모품비			33			43
(3)인쇄비			12			10
(4)광고선전비			13			20
(5)지급수수료			69			63
(6)세금과공과			47			44
(7)수도광열비			19			17
(8)지급보험료			2			1
(9)피복비와급량비			-			-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10)교육훈련비			23			21
(11)지급임차료			71			76
(12)유류비			1			1
(13)수선유지비			11			7
(14)여비교통비			41			34
(15)업무추진비			34			34
(16)외주용역비			186			198
(17)출연비			55			76
(18)기타이전비용			3			-
(19)감가상각비			200			235
(20)평가손실			3			-
(21)국립학교운영비			53			48
(22)연구개발비			10			14
(23)기타비용			6			2
Ⅲ.비배분비용			**4,948**			**4,435**
1.재화및용역제공원가			-			-
2.대손상각비			26			30
3.이자비용			4,820			4,197
4.평가손실			1			1
5.자산처분손실			98			204
6.기타비용			3			3
Ⅳ.비배분수익			**4,839**			**2,847**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317			271
2.이자수익			1,552			902
3.평가이익			1			1
4.자산처분이익			287			8
5.기타수익			2,682			1,665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73,962**			**504,549**
Ⅵ.비교환수익 등			**8,544**			**7,540**
1.부담금수익			6,723			6,079
2.제재금수익			28			32
3.기타재원조달및이전			1,793			1,429
Ⅶ.재정운영결과(Ⅴ-Ⅵ)			**65,418**			**497,009**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재정운영에 9조 5,631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3조 213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6조 5,418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126,210**	**(73,209)**	**5,513**	**58,514**
1. 보고금액	126,210	(73,209)	5,513	58,514
Ⅱ.재정운영결과		**497,009**		**497,009**
Ⅲ.재원의조달및이전		**480,048**		**480,048**
1. 재원의조달		491,438		491,438
(1) 국고수입		490,996		490,996
(2) 제재금수익		9		9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266		266
(5) 기타재원조달		166		166
2. 재원의이전		11,389		11,389
(1) 국고이전지출		1,739		1,739
(2) 무상이전지출		9,650		9,650
Ⅳ.조정항목		**-**	**(455)**	**(455)**
1. 투자증권평가손익		-	(510)	(510)
2. 파생상품평가손익		-	(6)	(6)
3. 기타순자산의증감		-	61	61
Ⅴ.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26,210**	**(90,170)**	**5,058**	**41,098**
Ⅵ.당기 기초순자산	**126,210**	**(90,170)**	**5,058**	**41,098**
1. 보고금액	126,210	(90,170)	5,058	41,098
Ⅶ.재정운영결과		**65,418**		**65,418**
Ⅷ.재원의조달및이전		**54,072**		**54,071**
1. 재원의조달		57,829		57,828
(1) 국고수입		57,601		57,599
(2) 제재금수익		10		10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58		58
(5) 기타재원조달		160		160

중소벤처기업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2. 재원의이전		3,757		3,757
(1) 국고이전지출		2,919		2,919
(2) 무상이전지출		838		838
Ⅸ.조정항목		**-**	**1,307**	**1,307**
1. 투자증권평가손익		-	1,360	1,360
2. 파생상품평가손익		-	(5)	(5)
3. 기타순자산의증감		-	(49)	(49)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126,210**	**(101,516)**	**6,364**	**31,057**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기말순자산은 3조 1,057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4조 1,098억원 대비 1조 41억원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국고수입·제재금수입·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5조 7,829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결과 6조 5,418억원,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757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16,516,397**	**-**
1. 국가채권현재액	15,555,120	-
2. 국유재산현재액	940,960	-
3. 물품현재액	20,317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49,735,568**	**46,629,827**
Ⅲ. 차이내역 (Ⅱ-Ⅰ=A+B+C+D+E)	**33,219,171**	**46,629,827**
1. 보고대상기관차이(A)	34,149,770	25,923,950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20,618,073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1,161,246)	87,800
4. 대상차이(D)	230,647	4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① 보고대상기관차이
- 자산 : 34,149,769,740,383원
  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9,205,658,297,141원
  2) 기술보증기금 : 4,944,111,443,242원
- 부채 : 25,923,949,649,299원
  1)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24,513,911,387,774원
  2) 기술보증기금 : 1,410,038,261,525원

② 국가기관상호간채권·채무차이
- 부채 : 20,618,073,000,000원
  1) 정부내장기예수금 : 20,618,073,000,000원

③ 결산조정항목차이
- 자산 : (-) 1,161,245,818,551원
  1) 미수채권 : 25,246,376,860원
  2) 선급비용 : 31,653,692원

3) 선급금 : 8,015,680원
4) 대손충당금 : (1,186,531,864,783)원
- 부채 : 87,799,774,364원
1) 선수수익 : 76,285,026원
2) 미지급비용 : 86,754,489,338원
3) 미지급금 : 6,000,000원
4) 보증충당부채 : 875,000,000원
5) 선수금 : 88,000,000원

④ 대상차이
- 자산 : 230,647,346,405원
1) 국고예금 : 412원
2) 한국은행국가예금 : 1,217,765,304원
3) 건설중인자산 : 228,458,116,139원
4) 임차개량자산(순액) : 527,958,085원
5) 기타의일반유형자산: 443,506,465원
- 부채 : 4,305,040원
1) 예수금 : 4,305,040원

⑤ 기타차이
- 해당없음

일반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Ⅰ. 일반회계·지특회계·소특회계 결산 개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192,210	266,846	74,636	
재산수입	58,370	61,274	2,904	
- 토지대여료	-	0.1	0.1	지방청 행정재산(토지) 대여에 따른 수입
- 건물대여료	270	363	93	지방청 행정재산(건물) 대여에 따른 수입
- 기타관유물대여료	-	0.8	0.8	관사 대여에 따른 일시적 수입
- 기타재산이자수입	58,100	60,910	2,810	출연·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경상이전수입	133,760	205,494	71,734	
- 과태료	-	101.2	101.2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징계부과금	-	0.6	0.6	징계위원회에 따른 일시적 수입
- 과징금	760	1,722	962	출연·보조금 용도외 사용에 따른 과징금
- 위약금	-	5	5	지체상금에 따른 일시적 수입
- 가산금	-	6.7	6.7	과징금·과태료 등의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133,000	203,658	70,658	출연·보조금 사업의 정산·환수금
재화및용역판매수입	40	67	27	
- 기타잡수입	40	67	27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관유물매각대	40	11	△29	
- 기타고정자산매각대	40	11	△29	노후자산 및 불용물품 매각 수요 감소

주: 합계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922억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68억 4,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746억 3,600만원(38.8%) 증액하여 징수결정하였으며,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2,036억 5,8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609억 1,000만원) 등이 있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미수납 사유
합 계	192,210	266,846	262,457	-	4,389	
기타경상이전수입[2]	133,000	203,658	201,041	-	2,617	출연·보조사업 미환수금 등 1,933 소송비용액 미회수금 684
기타재산이자수입[3]	58,100	60,910	60,901	-	9	
과징금	760	1,722	-	-	1,722	
과태료	-	101.2	76	-	25	R&D 제재부가금 등 580 수출사업 제재부가금 등 1,142
위약금	-	5	5	-	-	
가산금	-	6.7	0.3	-	6.4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등 25 과징금 미납 가산금 6.4
징계부과금	-	0.6	0.6	-	-	
토지대여료	-	0.1	0.1	-	-	
건물대여료	270	363	354	-	9	건물대여료 미납 9
기타관유물대여료	-	0.8	0.8	-	-	
기타잡수입	40	67	67	-	-	
고정자산매각대	40	11	11	-	-	

주: 합계의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표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22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46억 3,600만원이 증가한 2,668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8.2%에 해당하는 2,624억 5,700만원을 수납하고, 징수결정액의 1.8%에 해당하는 43억 8,9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주요 미수납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26억 1,700만원), 과징금(17억 2,200만원), 과태료(2,500만원) 등이 있으며 주로 납기미도래, 납부자의 경영상황 악화 및 징수유예에 따른 분할 납부 등으로 발생하였음.

2)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 반환, 정산잔액 등으로 구성

3)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3년도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액은 4조 9,622억 3,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32억 7,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조 9,655억 600만원 중 4조 9,558억 3,900만원이 지출되고 96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4,962,237	3,270	-	2,188 △2,188	-	4,965,506	4,955,839	-	9,668
<무역및투자유치(113)>	216,842	-	-	-	-	216,842	216,831	-	11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3100)	216,842	-	-	-	-	216,842	216,831	-	11
수출지원기반활용 (3131-301)	119,710	-	-	-	-	119,710	119,707	-	3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3133-301)	91,584	-	-	-	-	91,584	91,576	-	8
국제 중소기업 협력ODA(ODA) (3133-305)	5,548	-	-	-	-	5,548	5,548	-	-
<산업·중소기업일반(116)>	1,888,423	543	-	2,074 △2,074	-	1,888,966	1,884,376	-	4,589
□중소기업행정지원(7200)	154,235	543	-	2,074 △2,074	-	154,778	150,188	-	4,589
인건비(2개 사업) (7201-110, 7209-130)	110,027	-	-	△390	-	109,637	105,900	-	3,737
기본경비(89개 사업) (7211 27개, 7224 59개, 7225 3개)	26,780	-	-	1,510 △841	-	27,449	26,960	-	489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 (7232-503)	7,807	-	-	564 △564	-	7,807	7,763	-	44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7233-301)	2,494	-	-	-	-	2,494	2,366	-	128
관사구입및임차(7241-304)	264	-	-		-	264	248	-	16
청사시설관리(7241-306)	6,863	543	-	△279	-	7,127	6,952		174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8400)	1,734,188	-	-	-	-	1,734,188	1,734,188	-	-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전출(8420-881)	1,164,214	-	-	-	-	1,164,214	1,164,214	-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전출(8420-882)	569,974	-	-	-	-	569,974	569,974	-	-
<창업및벤처(118)>	**733,419**	**-**	**-**	**-**	**-**	**733,419**	**733,175**	**-**	**244**
□창업환경조성(5100)	**707,120**	**-**	**-**	**-**	**-**	**707,120**	**706,876**	**-**	**244**
창업저변확대(5132-301)	24,059	-	-	-	-	24,059	24,059	-	-
창업사업화지원(5132-302)	388,910	-	-	-	-	388,910	388,909	-	1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186,469	-	-	-	-	186,469	186,469	-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R&D)(5132-314)	1,513	-	-	-	-	1,513	1,513	-	-
중소기업재기지원(5133-301)	16,846	-	-	-	-	16,846	16,846	-	-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R&D(R&D)(5133-302)	3,800	-	-	-	-	3,800	3,800	-	-
창업생태계기반구축(5134-301)	84,523	-	-	-	-	84,523	84,523	-	-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5134-307)	1,000	-	-	-	-	1,000	757	-	243
□벤처기업활성화지원(5200)	**26,299**	**-**	**-**	**-**	**-**	**26,299**	**26,299**	**-**	**-**
벤처기업경쟁력강화(5231-301)	6,796	-	-	-	-	6,796	6,796	-	-
벤처캐피탈선진화(5231-302)	2,955	-	-	-	-	2,955	2,955	-	-
비대면서비스플랫폼구축(5231-306)	15,248	-	-	-	-	15,248	15,248	-	-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5231-307)	1,300	-	-	-	-	1,300	1,300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119)>	**2,123,553**	**2,727**	**-**	**114 △114**		**2,126,280**	**2,121,459**	**-**	**4,824**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1200)	**118,700**	**-**			**-**	**118,700**	**118,700**	**-**	**-**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83,700	-			-	83,700	83,700	-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1232-301)	35,000	-	-	-	-	35,000	35,000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2100)	1,481,056			84 △84		1,481,056	1,481,055		1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	167,091	-		-	-	167,091	167,091	-	-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2111-304)	10,888	-	-	-	-	10,888	10,888	-	-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2111-305)	8,500	-	-	-	-	8,500	8,500	-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사업(2111-308)	1,000	-	-	-	-	1,000	1,000	-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2111-312)	2,000	-	-	-	-	2,000	2,000	-	-
기술혁신기반조성(2131-302)	16,288	-	-	84 △84	-	16,288	16,287	-	1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2131-304)	3,135	-	-	-	-	3,135	3,135	-	-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364,113	-		-	-	364,113	364,113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2134-303)	252,870	-		-	-	252,870	252,870	-	-
공정·품질기술개발(R&D)(2134-305)	42,042	-	-	-	-	42,042	42,042	-	-
창업성장기술개발(R&D)(2134-309)	442,332	-		-	-	442,332	442,332	-	-
중소기업R&D역량제고(R&D)(2134-310)	14,283	-	-	-	-	14,283	14,283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R&D)(2134-344)	2,557	-	-	-	-	2,557	2,557	-	-
스마트센서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R&D)(2134-354)	1,875	-	-	-	-	1,875	1,875	-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R&D)(2134-355)	1,350	-	-	-	-	1,350	1,350	-	-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R&D)(2134-371)	8,733	-	-	-	-	8,733	8,733	-	-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R&D)(2134-377)	32,176	-	-	-	-	32,176	32,176	-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R&D)(2134-378)	7,122	-	-	-	-	7,122	7,122	-	-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R&D)(2134-382)	696	-	-	-	-	696	696	-	-
제조중소기업 글로벌역량강화(R&D)(2134-384)	4,164	-	-	-	-	4,164	4,164	-	-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R&D)(2134-388)	12,125	-	-	-	-	12,125	12,125	-	-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지원(R&D)(2134-398)	6,000	-	-	-	-	6,000	6,000	-	-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지원사업(R&D)(2134-405)	1,666	-	-	-	-	1,666	1,666	-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R&D)(2134-408)	10,000	-	-	-	-	10,000	10,000	-	-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R&D)(2134-416)	5,733	-	-	-	-	5,733	5,733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2134-422)	39,872	-	-	-	-	39,872	39,872	-	-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사업(R&D)(2134-429)	1,995					1,995	1,995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2134-430)	9,000					9,000	9,000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정보화)(2135-503)	4,828	-	-	-	-	4,828	4,828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2136-501)	6,622	-	-	-	-	6,622	6,622	-	-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지역중소기업육성(3300)	18,187	-	-	-	-	18,187	18,153	-	34
지역특구운영(3335-302)	1,382	-	-	-	-	1,382	1,359	-	23
규제자유특구제도운영(3335-304)	4,779	-	-	-	-	4,779	4,768	-	11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조성(3337-306)	4,000	-	-	-	-	4,000	4,000	-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3337-307)	5,310	-	-	-	-	5,310	5,310	-	-
지역혁신기반조성(3337-308)	2,716	-	-	-	-	2,716	2,716	-	-
□동반성장지원(4200)	39,426	-	-	-	-	39,426	39,418	-	8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4231-301)	16,406	-	-		-	16,406	16,398	-	8
여성기업육성(4234-302)	10,105	-	-	-	-	10,105	10,105	-	-
장애인기업육성(4234-303)	10,347	-	-	-	-	10,347	10,347	-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4234-304)	2,568	-	-	-	-	2,568	2,568	-	-
□중소기업육성지원(4800)	138,899	-	-	30 △30		138,899	138,716	-	183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4834-305)	9,798	-		-	-	9,798	9,747	-	51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사업(4835-301)	55,805	-	-	-	-	55,805	55,805	-	-
마케팅지원사업(4835-305)	26,248	-	-	-	-	26,248	26,241	-	7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7,728	-	-	-	-	7,728	7,711	-	17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4837-301)	17,031	-	-	-	-	17,031	17,031	-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4838-301)	4,188	-	-	30 △30	-	4,188	4,084	-	104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	13,896	-	-	-	-	13,896	13,894	-	2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4839-472)	4,205	-	-	-	-	4,205	4,205	-	-
□중소기업인력지원(5400)	327,285	2,727				330,012	325,414		4,598
산학협력인력양성(5431-301)	51,260	-		-	-	51,260	51,170	-	90
인력유입인프라조성(5431-302)	211,174	-		-	-	211,174	207,823	-	3,351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5431-305)	1,000	-		-	-	1,000	1,000	-	-
마이스터고육성(5441-301)	27,986	2,727	-	-	-	30,713	29,557		1,156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R&D)(5461-301)	35,865	-	-	-	-	35,865	35,865	-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액	4,182,643	5,547,684	7,090,786	8,689,816	4,962,237
전 용 액	4,906 △4,906	3,265 △3,265	2,430 △2,430	101,015 △101,015	2,188 △2,188
이 용 액	-	-	-	-	-
예 비 비	43,252	211,568	4,046,857	1,378,500	-
전 년 도 이 월 액	3,978	4,596	8,121	258	3,270
추 경	395,016	8,029,210	10,513,041	38,180,528	-
예산현액	4,624,889	13,793,058	21,658,805	48,249,102	4,965,506
지 출 액	4,612,755	13,779,432	21,646,677	48,240,022	4,955,839
다음연도 이 월 액	4,596	8,121	258	3,269	-
불 용 액	7,538	5,505	11,870	5,810	9,668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마이스터고육성	2,727	- 전북기계공고 증축공사 착공 지연
청사시설관리	543	- 광주전남청 내진보강공사 공법 변경에 따라 공사 완료일정 연기 (공사비 531, 감리 용역 12)
합 계	**3,270**	

2023년도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은 총 32억 7,000만원임. 주요 이월내역은 전북기계공고 증축공사 지연에 따른 27억 2,700만원, 광주전남청 내진보강공사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 완료일정 연기 공사비 5억 3,100만원, 감리 용역비 1,200만원임.

② 이 용: 해당없음

③ 이 체: 해당없음

④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본경비 등	±1,510	- 기본경비(+1,510, △841) - 인건비(△390) - 청사시설관리(△279)
사업비	±678	- 중소벤처행정정보화(±564) - 기술혁신기반조성(±84)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30)
합 계	±2,188	

2023년도 일반회계 전용액은 21억 8,800만원으로,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부족액 마련을 위해 15억 1,000만원,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행정정보화 예산 비목 변경 등을 위해 6억 7,800만원을 전용하였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해당없음

(5)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본부·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226	- 본부인건비(1,589) - 국립마이스터고인건비(2,148) - 기본경비(489)
사업비 집행잔액	5,442	- 수출지원기반활용(3) -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11) - 중소벤처행정정보화(44) -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128) - 관사구입 및 임차(16), 청사시설관리(174) - 창업사업화지원(1) -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243) - 기술혁신기반조성(1) - 지역특구운영(23), 규제자유특구제도운영(11) - 대중소기업동반성장생태계구축(8)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51) - 마케팅지원사업(7), 공공구매제도운영(17) -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및옴부즈만운영(104) -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2) - 산학협력인력양성(90) - 인력유입인프라조성(3,351) - 마이스터고육성(1,156)
합 계	**9,668**	

202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96억 6,800만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본부·소속기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42억 2,6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54억 4,200만원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3		2022	
자산				
Ⅰ.유동자산		**41**		**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2. 미수채권	44		17	
미수채권대손충당금	18	26	14	3
3. 기타유동자산		15		42
Ⅱ.투자자산		**12**		**9**
1. 기타투자자산		12		9
Ⅲ.일반유형자산		**6,395**		**6,414**
1. 토지		4,778		4,778
2. 건물	1,293		1,217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78	1,115	104	1,113
3. 구축물	131		127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41	90	23	104
4. 기계장치	288		287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05	83	221	66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275		270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12	63	213	57
6. 기타일반유형자산	200		216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44	56	145	71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09		225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52**		**70**
1. 소프트웨어		42		56
2. 기타무형자산		10		14

(단위: 억원)

	2023	2022
Ⅵ.기타비유동자산	**48**	**19**
1.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48	19
자산계	**6,549**	**6,557**
부채		
Ⅰ.유동부채	**3**	**3**
1. 기타유동부채	3	3
Ⅱ.장기차입부채	**-**	**-**
Ⅲ.장기충당부채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3**	**3**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2,030**	**2,030**
Ⅱ.적립금 및 잉여금	**1,913**	**1,903**
Ⅲ.순자산조정	**2,603**	**2,621**
순자산계	**6,546**	**6,554**
부채와순자산계	**6,549**	**6,557**

일반회계의 2023년도 총자산은 6,549억원으로 전기 6,557억원 대비 8억원(0.1%)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19억원, 무형자산이 18억원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임. 2023년도 총부채는 2억 8,338만원으로 전기 2억 9,175만원 대비 837만원(2.9%)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타유동부채가 837만원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8억 3,122만원(0.1%) 감소한 6,546억원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29,840	-	29,840	47,321	-	47,320
1.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2,167	-	2,167	1,989	-	1,989
2.창업환경조성	7,069	-	7,069	7,267	-	7,267
3.벤처기업활성화지원	266	-	266	550	-	550
4.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350	-	350	1,550	-	1,550
5.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4,811	-	14,811	15,991	-	15,991
6.지역중소기업육성	187	-	187	193	-	193
7.동반성장지원	394	-	394	14,430	-	14,429
8.중소기업육성지원	1,393	-	1,393	1,452	-	1,452
9.중소기업인력지원	3,202	-	3,202	3,899	-	3,899
Ⅱ.관리운영비			1,775			1,808
1.인건비			1,112			1,098
2.경비			662			710
(1)복리후생비			189			201
(2)소모품비			18			24
(3)인쇄비			9			6
(4)광고선전비			2			8
(5)지급수수료			16			9
(6)세금과공과			10			8
(7)수도광열비			11			10
(8)지급보험료			-			1
(9)피복비와급량비			-			-
(10)교육훈련비			1			1
(11)지급임차료			35			35
(12)유류비			1			1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13)수선유지비			8			6
(14)여비교통비			29			23
(15)업무추진비			12			11
(16)외주용역비			68			76
(17)출연비			55			76
(18)감가상각비			131			160
(19)국립학교운영비			53			48
(20)연구개발비			9			5
(21)기타비용			5			1
Ⅲ.비배분비용			**4**			**2**
1.대손상각비			4			2
2.자산처분손실			-			
3.기타비용			-			-
Ⅳ.비배분수익			**2,646**			**1,603**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4			3
2.이자수익			3			5
3.자산처분이익			2			-
4.기타수익			2,637			1,595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28,973**			**47,527**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8,973**			**47,527**

일반회계는 2023년도 재정운영에 3조 1,619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2,646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2조 8,973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2,030	1,784	2,578	6,392
1. 보고금액	2,030	1,784	2,578	6,392
Ⅱ.재정운영결과		47,527		47,527
Ⅲ.재원의조달및이전		47,646		47,646
1. 재원의조달		482,841		482,841
(1) 국고수입		482,400		482,400
(2) 제재금수익		9		9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266		266
(5) 기타재원조달		166		166
2. 재원의이전		435,195		435,195
(1) 국고이전지출		1,609		1,609
(2) 무상이전지출		433,586		433,586
Ⅳ.조정항목	-	-	43	43
1. 자산재평가이익	-	-	43	43
Ⅴ.전기기말순자산(Ⅰ-Ⅱ+Ⅲ+Ⅳ)	2,030	1,903	2,621	6,554
Ⅵ.당기 기초순자산	2,030	1,903	2,621	6,554
1. 보고금액	2,030	1,903	2,621	6,554
Ⅶ.재정운영결과		28,973		28,973
Ⅷ.재원의조달및이전		28,982		28,982
1. 재원의조달		49,786		49,786
(1) 국고수입		49,558		49,558
(2) 제재금수익		10		10
(3) 기타비교환수익		-		-
(4) 무상이전수입		58		58
(5) 기타재원조달		160		160
2. 재원의이전		20,804		20,804
(1) 국고이전지출		2,625		2,625
(2) 무상이전지출		18,179		18,179
Ⅸ.조정항목	-	-	(18)	(18)
1. 자산재평가이익	-	-	(18)	(18)
Ⅹ.당기 기말순자산(Ⅵ-Ⅶ+Ⅷ+Ⅸ)	2,030	1,913	2,603	6,546

일반회계의 2023년도 기말순자산은 6,546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6,554억원 대비 8억원(0.1%)이 감소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감소는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4조 9,786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나, 재정운영결과 2조 8,973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조 804억원, 조정항목 18억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630,312**	**-**
1. 국가채권현재액	2,641	-
2. 국유재산현재액	607,356	-
3. 물품현재액	20,315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654,861**	**283**
Ⅲ. 차이내역(Ⅱ-Ⅰ=A+B+C+D+E)	**24,549**	**283**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2,671	279
4. 대상차이(D)	21,878	4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1. 결산조정차이
 - 선급금 8,015,680원, 선급비용 31,653,692원, 미수채권 4,388,376,860원, 대손충당금 (-)1,359백만원
 - 선수수익 76,285,026원, 미지급비용 196,886,100원, 미지급금 6,000,000원

2. 대상차이
 - 국고예금 407원, 임차개량자산 527,958,085원, 건설중인자산 20,906,116,139원, 기타일반유형자산 443,506,465원
 - 예수금 4,212,640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18,000	27,034	9,034	
기타재산이자수입	1,000	3,003	2,003	출연·보조금 사업 발생이자 증가
기타경상이전수입	17,000	24,031	7,031	출연·보조금 사업 반환금 증가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180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0억 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해 90억 3,400만원(50.2%)을 증액하여 징수결정하였으며,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240억 3,1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30억 300만원)이 있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미수납 사유
합 계	**18,000**	**27,034**	**26,065**	**-**	**969**	
기타경상이전수입[4]	17,000	24,031	23,171	-	860	-출연·보조금 사업 정산 잔액 85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정산 잔액 10
기타재산이자수입[5]	1,000	3,003	2,894	-	109	-출연·보조금 사업 정산 이자 9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정산 이자 2 -지식산업센터 정산 이자 10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0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90억 3,400만원이 증가한 270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96.4%에 해당하는 260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음.

4)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 반환, 정산잔액 등으로 구성

5)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 5,863억 3,800만원 중 5,858억 700만원이 지출되고 5억 3,1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586,338**	**-**	**-**	**4,446 △4,446**	**-**	**586,338**	**585,807**	**-**	**531**
□지역자율계정	**189,580**	**-**	**-**	**4,446 △4,446**	**-**	**189,580**	**189,049**	**-**	**531**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4154-301)	66,172	-	-	4,446 △4,446	-	66,172	65,641	-	531
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	123,408	-	-	-	-	123,408	123,408	-	-
□지역지원계정	**355,507**	**-**	**-**	**-**	**-**	**355,507**	**355,507**	**-**	**-**
산학연CollaboR&D(R&D)(2151-302)	48,744	-	-	-	-	48,744	48,744	-	-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R&D)(2151-306)	8,800	-	-	-	-	8,800	8,800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지원사업(R&D)(2151-308)	2,400	-	-	-	-	2,400	2,400	-	-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R&D)(2151-309)	15,523	-	-	-	-	15,523	15,523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균특)(R&D)(2151-310)	7,955	-	-	-	-	7,955	7,955	-	-
지역특화산업육성(3336-302)	80,181	-	-	-	-	80,181	80,181	-	-
지역특화산업육성+(R&D)(3336-304)	106,886	-	-	-	-	106,886	106,886	-	-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3336-334)	1,750	-	-	-	-	1,750	1,750	-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3339-305)	45,829	-	-	-	-	45,829	45,829	-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3339-306)	15,607	-	-	-	-	15,607	15,607	-	-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3339-310)	9,039	-	-	-	-	9,039	9,039	-	-
창업인프라지원(5153-301)	12,793					12,793	12,793	-	-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제주특별자치도계정	**26,637**	**-**	**-**	**-**	**-**	**26,637**	**26,637**	**-**	**-**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3336-302)	5,013	-	-	-	-	5,013	5,013	-	-
지역특화산업육성+(제주)(R&D)(3336-304)	9,002	-	-	-	-	9,002	9,002	-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제주)(4154-301)	840	-	-	-	-	840	840	-	-
창업인프라지원(제주)(5151-301)	137	-	-	-	-	137	137	-	-
지식산업센터(제주)(5151-302)	10,001	-	-	-	-	10,001	10,001	-	-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7251-301)	1,644	-	-	-	-	1,644	1,644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4,614**	**-**	**-**	**-**	**-**	**14,614**	**14,614**	**-**	**-**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3336-302)	2,796	-	-	-	-	2,796	2,796	-	-
세종산업기술단지(TP)조성(3336-303)	2,728	-	-	-	-	2,728	2,728	-	-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R&D)(3336-320)	3,026	-	-	-	-	3,026	3,026	-	-
창업인프라지원(세종)(5154-301)	69	-	-	-	-	69	69	-	-
지식산업센터(세종)(5154-302)	5,995	-	-	-	-	5,995	5,995	-	-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해당없음

② 이　용: 해당없음

③ 이　체: 해당없음

④ 전　용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비	±4,446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4,446)
합 계	±4,446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용액은 44억 4,600만원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 비목 변경 44억 4,600만원을 전용하였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해당없음

(5)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업비	531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자율)(531)
합 계	531	

2023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불용액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집행잔액 5억 3,100만원임.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3		2022	
자산				
Ⅰ.유동자산		**10**		**1**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2. 미수채권	10		1	
미수채권대손충당금	-	10	-	1
Ⅱ.투자자산				**-**
Ⅲ.일반유형자산		**167**		**-**
1.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67		-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계		**177**		**1**
부채				
Ⅰ.유동부채		**-**		**-**
1. 기타유동부채		-		-
Ⅱ.장기차입부채		**-**		**-**
Ⅲ.장기충당부채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177**		**1**
Ⅲ.순자산조정		**-**		**-**
순자산계		**177**		**1**
부채와순자산계		**177**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3년도 총자산은 177억원으로 전기 6,777만원 대비 176억원(25,971%)이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5,691	(265)	5,426	5,057	(121)	4,936
1.중소기업행정지원	16	(1)	16	16	-	16
2.창업환경조성	1,524	(62)	1,462	744	(6)	738
3.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834	(35)	799	874	(7)	867
4.지역중소기업육성	2,819	(167)	2,651	3,423	(108)	3,315
5.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498	-	498	-	-	-
Ⅱ.관리운영비			-			-
Ⅲ.비배분비용			-			-
1.대손상각비			-			-
Ⅳ.비배분수익			5			2
1.기타수익			5			2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5,421			4,934
Ⅶ.재정운영결과(Ⅴ-Ⅵ)			5,421			4,93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3년도 재정운영에 5,691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27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5,421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	-	-
1. 보고금액	-	-	-	-
Ⅱ.재정운영결과		4,934		4,934
Ⅲ.재원의조달및이전		4,934		4,934
1. 재원의조달		5,057		5,057
(1) 국고수입		5,057		5,057
2. 재원의이전		123		123
(1) 국고이전지출		123		123
Ⅳ.조정항목	-	-	-	-
Ⅴ.전기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	-	-	-
Ⅵ.당기 기초순자산	-	-	-	-
1. 보고금액	-	-	-	-
Ⅶ.재정운영결과		5,421		5,421
Ⅷ.재원의조달및이전		5,597		5,597
1. 재원의조달		5,858		5,858
(1) 국고수입		5,858		5,858
2. 재원의이전		261		261
(1) 국고이전지출		261		261
Ⅸ.조정항목	-	-	-	-
Ⅹ.당기 기말순자산 (Ⅵ-Ⅶ+Ⅷ+Ⅸ)	-	177	-	1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3년도 기말순자산은 177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6,768만원 대비 176억원(26,006%)이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은 재정운영결과 5,421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261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858억원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970**	**-**
1. 국가채권현재액	970	-
2. 국유재산현재액	-	-
3. 물품현재액	-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17,669**	**-**
Ⅲ. 차이내역(Ⅱ-Ⅰ=A+B+C+D+E)	**16,699**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12)	-
4. 대상차이(D)	16,711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1. 결산조정차이
 - 대손충당금 (-)11,616,422원

2. 대상차이
 - 국고예금 5원, 건설중인토지 16,711,000,000원
 - 예수금 92,400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징수 결정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증 감 (B-A)	증 감 사 유
합 계	-	3,384	3,384	
기타재산이자수입	-	1,545	1,545	출연·보조금 사업 발생이자 수입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	-	1,839	1,839	출연·보조금 사업 반환금 수입 순증

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 총괄로 해당 부처에서 예산 편성 처리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3억 8,400만원으로, 주요 과목으로는 기타경상이전수입(18억 3,900만원), 기타재산이자수입(15억 4,500만원)이 있음.

(2) 세입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C)	미수납액 (A-B-C)	미수납 사유
합 계	-	3,384	3,384	-	-	
기타경상이전수입[6]	-	1,545	1,545	-	-	
기타재산이자수입[7]	-	1,839	1,839	-	-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입으로 33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음.

6)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 반환, 정산잔액 등으로 구성

7)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중소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및 정부출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2. 세출결산

(1) 사업별 세출결산내역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2,182억 9,800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 분	당초	전년이월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추경	전용	예비비				
합 계	218,298	-	-	-	-	218,298	218,298	-	-
<창업및벤처(118)>	30,000	-	-	-	-	30,000	30,000	-	-
□벤처기업활성화지원(5200)	30,000	-	-	-	-	30,000	30,000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30,000	-	-	-	-	30,000	30,000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119)>	188,298	-	-	-	-	188,298	188,298	-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2100)	188,298	-	-	-	-	188,298	188,298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2134-302)	104,619	-	-	-	-	104,619	104,619	-	-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2134-303)	27,396	-	-	-	-	27,396	27,396	-	-
창업성장기술개발(R&D)(2134-309)	13,869	-	-	-	-	13,869	13,869	-	-
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R&D)(2134-352)	29,364	-	-	-	-	29,364	29,364	-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 개발(R&D)(2134-353)	8,709	-	-	-	-	8,709	8,709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2134-354)	4,341	-	-	-	-	4,341	4,341	-	-

(2) 예산변경 내역

① 전년도 이월: 해당없음

② 이 용: 해당없음

③ 이　체: 해당없음

④ 전　용: 해당없음

(3) 예비비 지출내역: 해당없음

(4) 다음연도 이월내역: 해당없음

(5) 불용내역: 해당없음

3.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3	2022
자산		
Ⅰ.유동자산	-	-
Ⅱ.투자자산	2,100	1,800
1. 장기투자증권	2,100	1,800
Ⅲ.일반유형자산	-	-
Ⅳ.사회기반시설	-	-
Ⅴ.무형자산	-	-
Ⅵ.기타비유동자산	-	-
자산계	2,100	1,800
부채		
Ⅰ.유동부채	-	-
Ⅱ.장기차입부채	-	-
Ⅲ.장기충당부채	-	-
Ⅳ.기타비유동부채	-	-
부채계	-	-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	-
Ⅱ.적립금 및 잉여금	2,100	1,800
Ⅲ.순자산조정	-	-
순자산계	2,100	1,800
부채와순자산계	2,100	1,8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3년도 총자산은 2,100억원으로 전기 1,800억원 대비 300억원(16.7%)이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883	(33)	1,850	2,138	(6)	2,132
1.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883	(33)	1,850	2,138	(6)	2,132
Ⅱ.관리운영비			-			-
Ⅲ.비배분비용			-			-
Ⅳ.비배분수익			1			-
1.기타수익			1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1,849			2,132
Ⅶ.재정운영결과(Ⅴ-Ⅵ)			1,849			2,132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023년도 재정운영에 1,883억원의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34억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재정운영결과 1,849억원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전기 기초순자산	-	1,200	-	1,200
1. 보고금액	-	1,200	-	1,200
Ⅱ.재정운영결과		2,132		2,132
Ⅲ.재원의조달및이전		2,732		2,732
1. 재원의조달		3,538		3,538
(1) 국고수입		3,538		3,538
2. 재원의이전		806		806
(1) 국고이전지출		6		6
(2) 무상이전지출		800		800
Ⅳ.조정항목	-	-	-	-
Ⅴ.전기기말순자산(Ⅰ-Ⅱ+Ⅲ+Ⅳ)	-	1,800	-	1,800
Ⅵ.당기 기초순자산	-	1,800	-	1,800
1. 보고금액	-	1,800	-	1,800
Ⅶ.재정운영결과		1,849		1,849
Ⅷ.재원의조달및이전		2,149		2,149
1. 재원의조달		2,183		2,183
(1) 국고수입		2,183		2,183
2. 재원의이전		34		34
(1) 국고이전지출		34		34
Ⅸ.조정항목	-	-	-	-
Ⅹ.당기기말순자산(Ⅵ-Ⅶ+Ⅷ+Ⅸ)	-	2,100	-	2,1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2023년도 기말순자산은 2,100억원으로, 전기 기말순자산 1,800억원 대비 300억원(16.7%)이 증가하였음.

기초순자산 대비 기말순자산 증가는 재정운영결과 1,849억원 및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4억원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나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2,183억원으로 인하여 순자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함.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Ⅰ.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210,000**	**-**
1. 국가채권현재액	-	-
2. 국유재산현재액	210,000	-
3. 물품현재액	-	-
4. 국가채무합계	-	-
Ⅱ.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210,000**	**-**
Ⅲ. 차이내역(Ⅱ-Ⅰ=A+B+C+D+E)	**-**	**-**
1. 보고대상기관차이(A)	-	-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 차이(B)	-	-
3. 결산조정항목 차이(C)	-	-
4. 대상차이(D)	-	-
5. 기타차이(E)	-	-

< 주요내역 >

차이 없음

Ⅱ. 검토의견

[공통]

1.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 사업은 일반회계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나뉘어 총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회계는 25개 사업 1조 3,085억 400만원, 소부장특별회계는 6개 사업 1,882억 9,800만원, 지특회계는 11개 사업 2,589억 5,400만원, 소진기금은 3개 사업 101억 5,500만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2개 사업 41억 4,500만원으로, 전체 R&D 사업예산 총 1조 7,700억 5,600만원 중 1조 7,700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중기부 R&D 사업 총괄 결산현황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 수	2023년도								2024년도 본예산(계획액)
		예산액(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계획현액)(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당초)	추경(수정)(A)							
일반회계	25	1,308,504	1,308,504	-	-	1,308,504	1,308,504	-	-	1,204,316
소부장 특별회계	6	188,298	188,298	-	-	188,298	188,298	-	-	69,077
지특회계	11	258,954	258,954	-	-	258,954	258,954	-	-	118,628
소진기금	3	10,155	10,155	-	-	10,155	10,129	-	26	-
중진기금	2	4,145	4,145	-	-	4,145	4,145	-	-	1,199
계	47	1,770,056	1,770,056	-	-	1,770,056	1,770,030	-	26	1,393,220

□ 검토의견

(1) R&D 종료과제 정산 및 정산금 반납 지연

R&D 사업의 예산집행은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라 함) 선정 이후 전문기관[8]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9] 간 협약

---

8)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9)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을 체결하고,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전문기관이 해당 사용실적의 사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최종 정산이 확정되면 그 집행잔액을 국고로 회수함으로써 정산 절차가 완료됨[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차 정산 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할 때 최종 정산이 완료되기까지는 대략 6~9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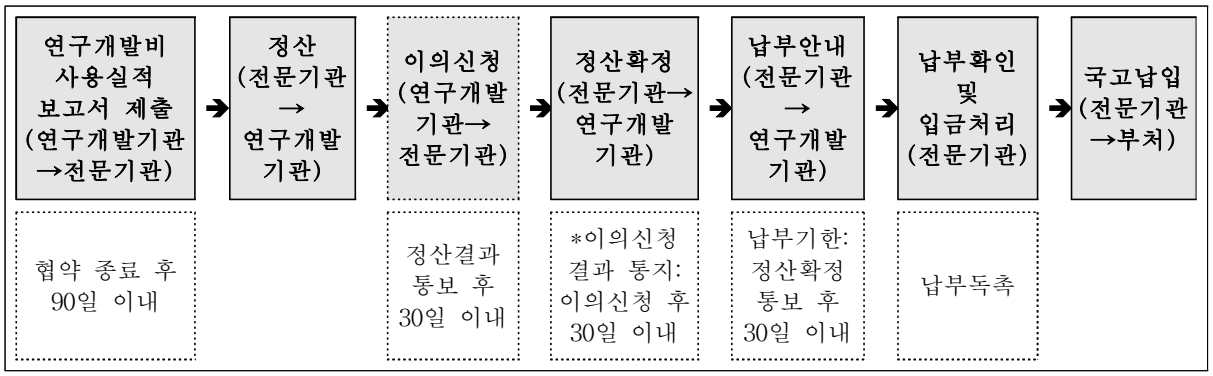
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체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정산기한(6개월)을 최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을 개정(2024.7.29.)하여 반영하였음.

제25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전문기관(전문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해야만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하거나,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과제 정산 절차



주: 단계별 기한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1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1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관리지침)에 규정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러나 R&D 과제의 실제 정산내역을 살펴 보면, 단계별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국고 납입 등 최종 정산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등 지나치게 정산이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1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1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2) 연구개발비의 정산
차)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잔액 등 해당 회수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제재처분평가단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제재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민간추가납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 납부가 어렵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기관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일부 세부사업에서 수행된 2023년 종료 연구과제의 경우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경우가 있었으며, 과제의 절반 이상이 기한 내 제출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됨.

2023년 종료과제 중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사례

(단위: 개,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코드)	과제수	보고서 제출			
		기한 내 제출	지연	미제출	지연, 미제출 비율
중소기업R&D역량제고(2134-310)	968	771	186	11	20.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2134-344)	10	6	4	-	40.0%
예비가젤형기술개발(2134-346)	10	7	3	-	30.0%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2151-308)	10	-	10	-	100.0%
지역특화산업육성+(R&D)(3336-304)	488	177	275	36	63.7%
산업단지대개조지역산업 R&D(3336-327)	48	11	37	-	77.1%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5461-301)	19	1	18	-	94.7%
합 계	1,553	973	533	47	59.6%

주: 제출기한(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준 지연 및 미제출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에는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정산이 진행되는데, 정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 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14].

1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8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는 1개월

2023년 상반기 종료 과제[15] 중 2023년 말까지 정산이 미완료된 560건을 살펴보면, 보고서 지연제출 및 검토 단계에 해당하여 정산 중인 경우가 246건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하고 있음. 정산검토가 완료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 정산 이의 등 후속절차가 순차적으로 밀리게 되면 정산확정까지의 전체 처리기간도 늘어나게 되므로, 지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및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3년 상반기 종료된 R&D 과제 중 정산 미확정된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연구비 총액	국비 총액	미정산 과제 수	정산 미확정현황			
			정산 중		정산 이의	기타
			보고서 지연제출	정산검토		
118,710	95,708	560	98	148	292	22
			246			

주1: 2023.12.31. 기준
주2: 문제과제에 해당하여 특별평가 등 별도 절차 중인 경우 등을 기타로 구분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또한, 정산 확정 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하 “정산금”이라 함)이 있는 경우 이를 국고로 회수하여야 하나, 정산금 반납 실적도 매우 저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결과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5) 2023년 종료된 R&D 과제 전체 건수는 5,573건이며, 상반기 종료과제 건수는 2,890건임.

조한 상황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종료된 과제의 미반납현황 중 2023년까지 연도별로 정산금이 미반납된 과제 건수는 총 563건으로, 미반납액이 154억 2,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그 중에는 2020년 및 2021년 정산이 종료된 과제도 146건(38억 7,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정산금 반납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2023년 R&D 종료과제의 연도별 정산금 미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산학연협력기술개발(2151-301)	320	7	-	-	-	-	-	-	320	7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2134-303)	248	5	905	17	1,009	27	322	22	2,484	71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134-302)	220	2	110	7	1,940	30	481	24	2,751	63
창업성장기술개발(2134-309)	266	11	1,026	41	1,778	59	1,682	78	4,752	189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2134-305)	139	13	278	14	246	20	105	19	768	66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2134-321)	20	4	15	1	-	-	-	-	35	5
산학연 Collabo R&D(2151-302)	53	8	35	8	186	19	98	18	372	53
중소기업R&D역량제고 (2134-310)	-	-	20	2	18	3	8	3	46	8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2134-342)	-	-	190	2	35	2	-	-	225	4
창업성장기술개발 (소특)(2134-309)	-	-	-	-	1,105	15	84	10	1,189	25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기술개발 (R&D)(2134-345)	-	-	21	2	-	-	-	-	21	2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2134-350)	-	-	-	-	12	2	-	-	12	2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2134-340)	-	-	-	-	20	2	11	1	31	3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2134-352)	-	-	-	-	46	2	17	2	63	4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	-	2	1	222	2	-	-	224	3

세부사업명(사업코드)	종료연도별 정산금 미반납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2134-341)										
예비가젤형기술개발(2134-346)	-	-	-	-	567	4	101	2	668	6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R&D)(2151-307)	-	-	-	-	10	1	-	-	10	1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2134-318)	-	-	-	-	4	2	-	-	4	2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소특)(2134-303)	-	-	11	1	491	2	48	7	550	10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생활혁신형기술개발(4131-320)	-	-	-	-	174	3	-	-	174	3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2151-306)	-	-	-	-	2	2	20	2	22	4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2134-354)	-	-	-	-	-	-	25	3	25	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소특)(2134-302)	-	-	-	-	-	-	162	5	162	5
제조중소기업글로벌역량강화 (2134-384)	-	-	-	-	-	-	130	3	130	3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2134-388)	-	-	-	-	-	-	3	2	3	2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2134-382)	-	-	-	-	-	-	264	1	264	1
현장수요맞춤형방역물품기술개발(2134-371)	-	-	-	-	-	-	82	3	82	3
지역특화산업육성 +(R&D)(3336-304)	-	-	-	-	-	-	8	7	8	7
산업단지대개조지역산업 R&D(3336-327)	-	-	-	-	-	-	15	5	15	5
지역특화산업육성 +(R&D)(3336-320)	-	-	-	-	-	-	7	2	7	2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R&D)(2134-416)	-	-	-	-	-	-	5	1	5	1
합 계	1,266	50	2,613	96	7,865	197	3,678	220	**15,422**	**563**

주: 2023.12.31.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전수조사[16]를 통해 장기간 미정산으로 남아있던 과제를 모두 정산(정산 확정)하였다고 설명함. 2024년 5월 기

16)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2023년 종합감사 실시 과정에서 최근 10년간(2012년~2023년 5월) 수행된 R&D 과제를 전수조사하였음.

준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산내역을 살펴본 결과, 미정산 상태로 남아있던 과제(2023년 종료과제 제외)는 모두 정산 확정되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정산금 200억 5,200만원(반납 대상액의 31.5%)의 국고 반납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임[17]. 특히 과제 종료 후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이 되지 않아 장기 미수납 상태인 과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해 보임.

2018~2023년 R&D 사업 종료과제 정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과제 종료연도	종료 과제 수	미정산 과제 수		정산확정 과제		
		2023.5. 기준	2024.5. 기준	국고 반납 대상액	국고 반납액	국고 미반납액
2018년	5,408	-	-	13,416	12,034	**1,382**
2019년	5,091	23	-	8,955	7,986	**969**
2020년	4,077	99	-	6,138	4,903	1,235
2021년	3,685	62	-	9,370	6,973	2,397
2022년	5,154	1,567	-	14,854	7,362	7,492
2023년	5,573	-	1,365	10,922	4,345	6,577
합계	28,988	1,751	1,365	63,655	43,603	**20,052**

주: 2024.5.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종합하여 정리하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검토 및 확정, 정산금 반납 등 R&D 과제정산의 단계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며, 이로 인해 최종 정산까지 장시간이 소요

17)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대상 기업에게 1개월 내 납부하도록 정산금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납부 대상 기업의 휴·폐업, 회생·파산 등 현저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정산금 미반납액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반납액을 분할납부 등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독촉, 강제징수(압류·추심 등)를 통해 회수 중이라고 설명함.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각 단계별 지연사유를 검토하여 과제 정산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18].

정산금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제정산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과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지침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기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한, 정산금 납부기한 등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과제 정산검토 및 정산확정 기한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전문기관이 사용실적 정산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검토 결과 통보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6개월 이내 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정산확정에 대한 기한이나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납부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기한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19]. 전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정산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

18)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경우 다년간 수행되는 R&D 과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제 수행 초기부터 연구개발비의 연차별 집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연구기관은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초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 법정기한인 1개월 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2023년 933개 기관(17.0%)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점에서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시스템(RCMS,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등록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연차종료 연구기관 수		법정기한 내 시스템 등록 기관 수	법정기한 경과 후 시스템 등록 기관 수
2022년 12월말 기준	5,154	4,556(88.4%)	598(11.6%)
2023년 12월말 기준	5,495	4,562(83.0%)	933(17.0%)

19)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는 정산업무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음.

제34조의2(연구개발비 정산 사후조치) ⑥ 장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분에 해당하는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 납입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정산업무 처리기한은 연구개발기관의 회수금 납부 지연 등 정당

최소화할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20].

과제 정산 및 정산금 반납 지연의 장기화는 연도별 R&D 예산 투입 및 산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어렵게 하고, 국고 손실로 인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국고로 지원된 R&D 과제 연구개발비에 대한 정산 및 정산금 반납이 지연되지 않도록 과제 정산방식 및 절차를 점검하여 그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재처분 지연 및 제재환수금·제재부가금 미수납 과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①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가 불량한 경우, ②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에 대하여 사업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이나 연구개발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1].

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국고납입 기준으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0) 중소벤처기업부의 특정감사 보고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 사후관리 감사, 2024. 4)에 따르면, 전문기관이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최종 점검, 최종 평가, 특별 점검 등에 대한 제출 기한이 없어 과업 지연의 원인이 되었으며, 연구기관이 최종·사업비 정산보고서 등 제출을 지연한 경우에도 사후관리 조치 안내 및 납부 독촉 등만을 반복하여 문제과제 처리에 대한 장기 지연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과제 정산절차 등의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임.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협약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발생한 제재조치 건수는 총 773건임. 2023년의 경우 제재조치 건수가 22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10년간 기술개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2023년 전수조사[22]를 실시한 데 기인한 것임.

2019~2023년까지 연도별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 현황

(단위: 건)

연 도	제재처분	제재 사유				
		연구결과 불량	협약위배	연구부정 행위	연구비부 정사용	연구수행 포기
2019년	207	128	24	32	18	5
2020년	152	78	42	12	19	1
2021년	134	57	29	13	35	0
2022년	52	8	10	13	21	0
2023년	**228**	66	88	22	33	19
합계	**773**	337	193	92	126	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그런데 2023년 적발된 제재처분 대상 과제의 종료연도 현황을 살펴

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2023년 종합감사 실시 과정에서 최근 10년간(2012년~2023년 5월) 수행된 R&D 과제를 전수조사하였음.

보면, 과제 종료 9년 후 적발된 경우를 비롯하여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종료된 과제가 148건(64.9%)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제재처분 대상 과제의 종료연도 현황

(단위: 건)

과제 종료연도	제재처분	제재유형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2014	2	1	2	0
2015	5	5	3	0
2016	9	9	4	1
2017	9	8	4	0
2018	18	18	8	2
2019	52	48	18	20
2020	53	52	21	22
2021	48	48	6	27
2022	32	32	3	23
합 계	228	221	69	9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재처분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기간에 다른 부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어려워지는 등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며,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23]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처분사유 발생 후 수년이 지난 후의 제재

처분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제재처분에 대한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발생액은 각각 401억 7,100만원 및 135억 9,900만원에 이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은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을 처분의 통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규정[24]하고 있으므로, 각 연도별로 발생한 제재부가금 및 연구개발비 환수금은 처분이 결정된 연도나 그 다음연도까지는 수납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그런데 앞의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발생액에 대하여 2023년까지 수납된 금액은 각각 199억 5,100만원(49.7%) 및 8억 3,200

---

2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및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만원(6.1%)에 불과하여 징수 및 수납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미수납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9~2023년 제재처분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연도별 환수결정액	주관·참여기관→전담기관 수납			누적 미수납액
		당해연도 발생 환수금 납부액(A)	이전연도 발생 환수금 납부액(B)	합계 (C=A+B)	
2019	12,069	2,778	-	2,778	9,291
2020	9,848	3,126	916	4,042	15,097
2021	9,652	3,991	2,886	6,877	17,872
2022	4,493	1,999	2,044	4,043	18,322
2023	4,109	1,124	1,087	2,211	20,220
합계	**40,171**	**13,018**	**6,933**	**19,951**	**20,220**

주1: 2023.12.31. 기준
주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2019~2023년 제재처분에 따라 부과한 제재부가금 미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연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	주관·참여기관→중기부 및 전담기관 수납			누적 미수납액	적용법률
		당해연도 발생 제재부가금 납부액(A)	이전연도 발생 제재부가금 납부액(B)	합계 (C=A+B)		
2019	236	104	-	104	1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2020	132	66	30	96	168	
2021	65	17	7	24	209	
2022	196	-	55	55	349	
2022	967	-	-	0	967	「국가연구 개발혁신법」
2023	12,003	391	162	553	12,417	
합계	**13,599**			**832**	**12,767**	

주1: 2023.12.31. 기준
주2: 행정소송 진행 등에 의한 미확정 금액은 환수결정액에서 제외
주3: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적용 과제에 부과된 2019~2022년 제재부가금의 경우 직접 수납·징수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5] 후 적용 과제에 대한 2022년 제재부가금부터는 주관·참여기관이 전담기관에 납부하면, 해당 납부액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납·징수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총 누적 미수납액은 제도 변경 전 누적 미수납액(349백만원)과 변경 후 누적 미수납액(12,417백만원)의 합계액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출자료를 재정리

25) 법률 제17343호, 2020.6.9, 제정, 2021.1.1. 시행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전연도 발생 환수금 납부 총액이 69억 3,300만원으로, 2019년 미수납액(92억 9,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함. 장기 미수납액이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음에도 2021년 이후 연도별 수납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3년 환수결정액에 대한 2023년 수납실적 역시 11억 2,400만원(27.4%)에 불과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환수금 수납률 제고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제재부가금의 경우에도 2022년 징수실적은 총 5,5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부과된 제재부가금 11억 6,300만원에 대한 징수 실적은 전무함. 특히 R&D 과제 전수조사에 따라 2023년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120억 3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2023년 수납실적은 5억 5,300만원에 불과한 상황임. 연례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하여 제재부가금 장기 미수납 문제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보임.

이러한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장기 미수납 문제는 국고 손실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 지연 문제와 더불어 개선이 필요함[26].

---

26)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해 독촉·추심·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폐업, 파산 등 경영 악화,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해당 기업에 대한 행정절차 강화, 재산·신용상태 조사 등을 통한 추가 압류 실시 등 징수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함.

<징수실적 개선 노력>

- 행정절차 강화: (독촉) 60일 → 25일, (압류·추심 범위) 예금 → 예금,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등 포함
- 정기 재산조사: 자금흐름 등 기업정보 변동사항 확인(한국평가데이터 등 기업신용정보DB 활용) 및 재산조사 주기 연2회로 확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처분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누적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1. 공통: 창업진흥원 기관운영

□ 사업 및 결산 개요

창업진흥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27]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의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에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임.

창업진흥원의 2023년 수입 및 지출 규모를 보면, 2023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사업 등의 수행에 따른 수탁사업수입 7,914억 800만

---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창업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는 제외한다),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7.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8.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9. 재창업기업의 교육 및 지원
10.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1.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2.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3.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5.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운영 및 지원
16.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 업무
1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⑤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원, 대전팁스타운 및 판교창업존 임대관리수입 등의 사업수입 23억 4,700만원, 기본재산 매각대금 및 사업운영 관련 부수입 등 고유목적사업 수입 41억 1,800만원, 세종사옥 구축 관련 차입금 33억 7,000만원 등이며, 지출 규모는 인건비 216억 900만원, 경상운영비 91억원, 사업비 7,664억 6,600만원 등을 합한 8,012억 9,300만원 규모임.

2023년 창업진흥원 수입 및 지출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구성비
수 입	1. 수탁사업수입	791,408	98.8
	2. 사업수입	2,347	0.3
	3. 기부금수입	50	0.0
	4. 고유목적수입	4,118	0.5
	5. 차입금	3,370	0.4
	합계	801,293	100.0
지 출	1. 사업비	766,466	95.7
	2. 인건비	21,609	2.7
	3. 경상경비	9,100	1.1
	4. 고유목적비	2	0.0
	5. 예비비	4,116	0.5
	합계	801,293	100.0

자료: 창업진흥원

□ 검토의견

(1)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필요

2023년도에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총 7,508억 9,230만원을 사업비로 받았고, 이 중 창업저변확대 등 9개 사업에서 307억 900만원을 전출금 명목으로 떼어 창업진흥원 기관계좌에 이체하였으며 216억 900만원을 인건비로 91억원을 경상경비로 각각 사용하였음.

2023년도 창업진흥원 전출금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3년 예산		2023년 전출금	경상경비	인건비
창업저변확대	보조	21,461,000	961,000	274,000	687,000
창업사업화지원	보조	182,075,000	8,150,000	2,416,000	5,734,000
	출연	200,768,000	9,055,000	2,682,000	6,373,000
민관협력창업자육성	보조	61,751,000	2,741,000	826,000	1,915,000
	출연	124,718,000	5,587,000	1,668,000	3,919,000
중소기업재기지원	보조	16,846,000	755,000	225,000	530,000
창업생태계기반구축	보조	74,757,300	2,110,000	627,000	1,483,000
	출연	9,736,000	0	0	0
그린창업생태계 기반구축	보조	20,963,000	353,000	105,000	248,000
지역기반로컬 크리에이터활성화	보조	5,444,000	245,000	73,000	172,000
비대면서비스 플랫폼구축	보조	15,248,000	685,000	204,000	481,000
벤처캐피탈선진화	위탁	102,000	67,000	0	67,000
혁신기술제조창업 공유공장구축	보조	1,000,000	0	0	0
창업인프라지원	보조	3,230,000	0	0	0
글로벌화지원플랫폼	위탁	9,720,000	0	0	0
창업성공패키지	위탁	3,073,000	0	0	0
합 계		750,892,300	30,709,000	9,100,000	21,609,000

자료: 창업진흥원

예를 들어 창업기업의 업력에 따라 성장 단계별로 시제품 제작, 시장화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예산액 3,828억 4,300만원에서 4.5%인 172억 500만원을 따로 떼어 창원진흥원 기관계좌로 송금함.

창업진흥원은 2021년도 및 2022년도에도 각각 318억 2,000만원과 330억 2,400만원의 전출금을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의 예산에 별도의 기관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전출금 책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최근 3년간 창업진흥원 전출금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인건비	18,244	22,454	21,609
경상경비	13,576	10,570	9,100
전출금 합계	31,820	33,024	30,709

자료: 창업진흥원

그러나 창업진흥원이 제출한 2023년도 전출금 지출부를 보면 창업진흥원이 사옥을 분양받으면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납부, 복리후생비, 기타운영비 등이 발견되는데, 이와 같은 지출을 창업진흥원이 수탁받은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3년 창업진흥원 전출금 주요 사용내역

(단위: 원)

지출일	지출내역	지출액
2월 21일	세종사옥 분양대금 이자 납부	13,813,139
3월 14일	기타운영비	1,300,000
3월 21일	세종사옥 분양대금 이자 납부	12,356,474
4월 20일	세종사옥 분양대금 이자 납부	18,066,320
5월 22일	세종사옥 분양대금 이자 납부	17,483,535
6월 13일	복리후생비	410,250
6월 20일	세종사옥 분양대금 이자 납부	18,066,320
7월 13일	기타운영비	460,000
7월 20일	세종사옥 분양대금 이자 납부	17,483,535
8월 8일	복리후생비	1,620,000
9월 14일	복리후생비	660,000
10월 19일	세종사옥 분양대금 이자 납부	17,483,535
11월 16일	복리후생비	1,600,000
12월 14일	복리후생비	2,683,130
12월 19일	복리후생비	787,000
12월 19일	차입금 원금 상환	28,000,000

자료: 창업진흥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28]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29] 벌칙규정에서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창업진흥원이 보조사업 예산 일부를 기관 자체 계정인 '전출금'으로 편성한 후 기관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진흥원 기관운영경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으므로, 2025년도 예산에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창업진흥원의 전출금 사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결산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결과

구 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2022회계연도 결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이 기관운영경비 편성·집행과정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수탁보조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	○ '25년 창업진흥원 기관운영경비 신설을 포함한 중기재정사업 계획 제출('24.1.31)

자료: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지능정보화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능정보화 사업(세부사업 기준[30])은 일반회계(5개 세부사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2개 세부사업), 기술보증기금(1개 세부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2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총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1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 사업의 2023년도 예산현액 600억 9,400만원 중 599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능정보화 사업(세부사업 기준) 결산내역

(단위: 개, 백만원)

회계/기금	세부사업수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	26,640	26,640	-	-	26,640	26,596	-	44	23,207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2	10,252	10,252	-	-	10,252	10,180	-	72	9,089
기술보증기금	1	7,893	7,893	-	-	7,893	7,858	-	35	10,519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2	15,309	15,309	-	-	15,309	15,309	-	-	9,822
합계	10	60,094	60,094	-	-	60,094	59,943	-	151	52,637

30) 세부사업 전체가 정보화 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함.

□ 검토의견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및 지능정보화 사업 관리 부적정

지능정보화 사업은 정보를 생산, 유통, 활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사업임. 지능정보화 사업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사업,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실행계획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포함됨[31].

정부는 중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요구, 정보시스템 운용비용의 지속 증가가 발생함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하위법령, 그 밖에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집행지침 등을 근거로 지능정보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과 관련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즉, 정부는 각 부처의 지능정보화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정보시스템의 중복성, 민간 클라우드 우선도입 검토 등 사전점검 결과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BPR[32] 및 ISP[33] 수립 완료 이후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사

---

31)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서는 “정보화 관련 예산”을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즉,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하기 위한 사업 예산,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예산,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고 함.

32)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재설계

33)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업간 중복성,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등을 정보화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통해 점검하고, 낙찰차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고에 반납(불용)하도록 하고 있음.

각 부처는 세부사업 전반의 내용이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부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전체가 지능정보화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이나 R&D 사업인 경우에도 일부 내역사업에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계약, 용역 등 포함) 예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역사업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세부사업 전체가 지능정보화 사업인 경우와 동일한 관리를 하여야 함.

중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불필요한 정보시스템 운용으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 지출과 같은 낭비적 예산집행을 줄이고자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용 취지가 원활하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 빠짐없이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어 중복성 점검 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수의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지출을 한 것으로 파악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회계의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누락된 지능정보화 지출 예시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또는 정보시스템명)	사업내용			비고 (실행계획 포함여부)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유지 보수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일반회계, 4834-305)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O	X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일반회계, 4838-301)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규지스 유지관리 사업			O	X
중소기업조사 연구평가 (일반회계, 4838-471)	중소기업조사통계 시스템	O	O	O	X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O	O	O	X
기술혁신기반조성 (일반회계, 2131-302)	혁신형기업 확인 종합정보망 운영 및 기능개선		O	O	O
	기술분쟁 조정중재 온라인 시스템 구축	O			X
	기술보호울타리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O	O	X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일반회계, 4231-301)	상생누리 플랫폼 기능개선 및 고도화	O	O	O	X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일반회계, 4835-30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O	O	X
정책자금지원성과 향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253-301)	기업진단평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O	X
	AI진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O	X
	탄소중립수준진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O	X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또는 정보시스템명)	사업내용			비고 (실행계획 포함여부)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유지 보수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운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261-304)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시스템 구축	O			X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시스템 고도화	O			X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272-301)	매출채권팩토링시스템 유지보수			O	X
중진기금 기본경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7276-200)	매출채권팩토링시스템 유지보수			O	X
연수사업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451-307)	중진공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O	X
	중진공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	X
	전산장비 및 SW 통합유지보수			O	X
중소기업정보제공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851-301)	규제혁신 시스템 및 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O	O	X
	정보자료실 자료관리시스템		O	O	X
창업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152-302)	청년창업사관학교 전산장비 및 SW 통합유지보수			O	X
	창업성공패키지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O	O	X
	창업사관학교 제품개발용 PLM소프트웨어 유지관리			O	X
재도약촉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161-302)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시스템 고도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버관리, 유지보수	O	O	O	X
	사업전환, 무역조정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O	X
	구조혁신지원사업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O	X
	자산거래중개장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O	X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452-301)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플랫폼 기능개선			O	X
	기업인력애로센터 일자리매칭 플랫폼 및 인프라(클라우드) 통합운영 유지보수			O	X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서 다수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관련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기금 사업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예산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관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중진기금 기본경비’ 예산을 혼용하여 ‘매출채권팩토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용을 지출한 사례, 기금 사업비에 해당하는 ‘연수사업’ 예산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기관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중진기금 기본경비’ 예산을 혼용하여 ‘중진공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러한 집행사례는 기관운영경비를 기금 사업비와 별도로 계상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기금관리주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금 사업비 일부가 사업 목적과 다르게 기관운영경비 성격의 지출로 활용되는 등의 비효율적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와 관련된 지출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해당 지출사업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관리하는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관리주체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 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를 혼용하여 지출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3.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정계획

□ 사업 및 결산 개요

법정계획 중 기본계획(기본계획, 종합계획 등 법령에 따라 명칭이 상이하여 이하 “기본계획”으로 통칭함)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중장기적 종합계획에 해당하여 3~5년 단위로 수립됨. 하위계획인 시행계획(시행계획, 실시계획 등을 이하 “시행계획”으로 통칭함)의 경우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기계획에 해당하여 통상 매년 수립되고 있음.

법정계획 수립과 관련된 2023년 예산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창업저변확대, 연수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 예산현액 4억 9,2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2023년 법정계획 수립 관련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ICT융합스마트 공장보급확산	280	280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창업생태계 기반구축	70	70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창업저변확대	45	45	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연수사업	97	97	2024년도 중소기업 연수사업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합 계	492	492	

주: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외 별도 경비집행은 없다고 설명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검토의견

(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정계획 지연 및 누락 등 개선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정계획은 총 33개임. 대부분의 계획은 법률에서 수립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 주기에 따라 소관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정계획

연번	분야(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1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 제20조	3년
2	중소기업 육성시책		매년
3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	3년
4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5	여성기업활동촉진시행계획		매년
6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	매년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5조, 제13조	5년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매년
9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3년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조	5년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매년
1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기본계획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5년
1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2년
14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6조	-
15	연수계획		-
16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3년
17	창업지원 종합계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8조	3년
18	창업지원 시행계획		매년
19	재창업지원계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2조	필요시

연번	분야(계획명)	근거 법률	수립 주기
20	벤처기업 육성계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2	3년
21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 제8조	3년
22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매년
23	도시형소공인지원 종합계획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법개정('23.6.20.)으로 수립주기 단축(5→3년)	3년
24	도시형소공인지원 시행계획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매년
2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3년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3년
27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5조	매년
28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		매년
2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3년
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매년
31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8	5년
32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시행계획		매년
33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필요시

주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시·도지사에게 전달하는 지침) 및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시·도지사가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주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경우 직전 3개연도 평균 연구개발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기관인 경우 수립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정계획 중 수립이 누락되거나 법정주기보다 지연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장기 계속사업을 법정계획 없이 관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법정주기에 따른 계획수립이 누락되었거나 법률 제정에 따른 새로운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의 경우 제8차 계획이 2022년 종료되어 제9차 2개년 계획(2023~2024년)이 수립되었어야 했으나 현재까지 미수립 상태임.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기계획 수립일정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할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되므로, 2023~2024년 시행·적용되는 2개년 계획은 누락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기본계획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제정[34]된 후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법정계획 미수립 사례

분야(계획명)	수립 주기	이전 계획		미수립된 계획연도	추진현황
		수립 시점	적용기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	2년	2021.5	제8차 ('21~'22)	**제9차 ('23~'24)**	'24.하반기 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매년	2021.9	2021	**2022**	-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기본계획	5년	**최초 계획 미수립**			'24.하반기 예정

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경우 2022년 적용 계획은 누락되어 2021년 및 2023년 시행계획만 수립되어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둘째, 법정계획은 법정주기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계획의 수립을 준비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시행하여야 함.

34) 법률 제19181호, 2023. 1. 3. 제정, 2023. 7. 4. 시행

그런데 기본계획 중 적용시기 도래 전 또는 초반에 계획 수립을 완료한 경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등 3개[35]뿐인 것으로 확인됨.

수립주기가 3~5년인 장기계획(주로 기본계획에 해당)의 경우 1차년도 하반기에 시행된 경우가 8건이었으며, 그 중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일부는 적용 1차년도가 끝나는 12월에야 계획이 수립되었음. 2023년 및 2024년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차기계획도 대부분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정주기 3~5년인 장기계획의 수립지연 현황

분야(계획명)	수립주기	최근 수립계획			차기계획	
		적용기간	수립시점	수립지연 개월수	수립지연 개월수	추진현황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3년	제2차('23~'25)	2023.7	7	-	진행중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5년	제1차('20~'24)	2020.12	12	-	진행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계획	2년	제8차('21~'22)	2021.5	5	19	'24.하반기 예정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3년	4차('21~'23)	2021.8	8	7	연구용역 종료 후 계획 수립 중
창업지원 종합계획	3년	'21~'23	2021.8	8	7	연구용역 종료 후 계획 수립 중
벤처기업 육성계획	3년	제2차('23~'25)	2023.10	10	-	'26.상반기 착수예정
도시형소공인지원 종합계획	3년	'22~'26	2022.12	12	-	차기계획 수립예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3년	'23~'25	2023.12	12	-	차기계획 수립예정

35) 제5차 기술혁신 5개년 계획(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2024~2028년, 2023.11.수립), 제3차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관한 지원계획(2022~2024년, 2021.12.수립), 제4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2021~2025년, 2021.1.수립)

분야(계획명)	수립 주기	최근 수립계획			차기계획	
		적용기간	수립 시점	수립지연 개월수	수립지연 개월수	추진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3년	'21～'23	2021.5	5	7	3개년 계획 수립예정('2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	3년	제5차('21～'23)	2021.9	9	7	제6차 기본계획 수립 중('24.하반기)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5년	제2차('22～'26)	2022.5	5	-	'27. 기본계획 수립예정

주1: 적용 1차년도 1분기 내 수립한 경우는 제외함.
주2: 차기계획 수립지연 개월수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에 수립이 필요한 계획에만 적용함(2024. 7.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특히 매년 수립되는 단기계획(주로 시행계획에 해당)의 경우 적용 시기 도래 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정주기를 준수하여 사전에 수립된 계획은 없는 상황임. 계획 수립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차기계획의 수립 역시 순차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예를 들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적용연도 하반기에 수립되고 있는데, 2023년의 경우 연도 말인 12월에 수립되었고 2024년의 경우 현재까지 수립되지 않고 있어 연례적 지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36].

36) 2019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2019.6.14.), 2020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계획(2020.6.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제5차 기본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2021.9.9.), 202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2023.12.11.)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2022년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법정주기 1년인 단기계획의 수립지연 현황

분야(계획명)	수립 주기	최근 수립계획			차기계획	
		적용 기간	수립 시점	수립지연 개월수	수립지연 개월수	추진현황
중소기업 육성시책	매년	2024	2024.3	3	-	진행중
여성기업활동촉진 시행계획	매년	2024	2024.3	3	-	진행중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 (2024년도 중소기업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통합 기본계획)	매년	2024	2024.2	2	-	'25. 1분기 수립예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매년	2024	2024.5	5	-	2025년 중 수립예정
창업지원 시행계획	매년	2024	2023.8	8	7	3개년 계획 수립 후 수립예정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매년	2024	2024.3	3	-	차기계획 수립예정
도시형소공인지원 시행계획	매년	2024	2024.3	3	-	차기계획 수립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	매년	2023	2023.12	12	7	'24.하반기 수립예정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시행계획	매년	2023	2023.4	4	-	'24.하반기 수립예정

주: 차기계획 수립지연 개월수의 경우 2024년 수립이 필요한 계획에만 적용함(2024. 7.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단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여야 하는 시행계획 역시 수립이 지연될 수밖에 없음. 특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체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 및 총괄하는 계획에 해당하므로, 다른 세부 분야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보다 신속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음[37].

37) 예를 들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 및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근거로 하여 작성됨.

창업지원계획의 경우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매년 수립되는 창업지원 시행계획 역시 수립이 지연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023년 12월에 종료되어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설명이나, 연구용역을 비롯한 계획 수립 준비는 법정주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수행을 완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셋째, 법정계획임에도 오랜기간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아 계획 수립 및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법정계획 장기 미수립 사례

분야(계획명)	수립주기	최근 계획	최근 계획 수립 시점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필요시	최근 5년 내 수립 사례 없음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38]은 재난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수립하는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정책[39] 등을 운영 중임에도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장기간

3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9)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의 경우 경영위기, 재난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임.

수립하지 않은 상황임. 최근 재난 상황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동 계획을 수립 및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제반의 사항들을 종합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법정계획의 수립시기가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계획수립이 누락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정계획 수립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를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음.

4. 과징금(56-565)

□ 사업 및 결산 개요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인 과징금을 수납하는 세입과목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 과징금 세입은 주로 R&D 연구개발비 지원자금의 연구용도 외 사용(부정사용)[40][41]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42][43]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에 기인함.

---

40)「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41)「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3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4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

2023년도 예산액은 7억 6,0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17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수납하였음.

2023년도 과징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과징금	760	760	-	760	1,722	-	1,722	-	761

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검토의견

(1) 미수납액 징수 및 세입예산 증액 계상 필요

다음의 표는 2020년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과징금' 징수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징수결정액은 2021년도 5억 4,200만원, 2022년도 8억 8,600만원, 2023년도 17억 2,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2021년도 1억 200만원, 2022년도 5,600만원, 2023년도 0원(전액 미수납)으로 감소하였음.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과징금의 미수납액은 2021년도 4억 4,000만원, 2022년도 8억 3,000만원, 2023년도 17억 2,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2020~2024년도 일반회계 과징금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0	327	327	△202	△601	△184.1	-	399	-
2021	302	302	542	102	33.8	18.8	440	-
2022	759	759	886	56	7.4	6.3	830	-
2023	760	760	1,722	-	-	-	1,722	-
2024	761	761	1,994	7	1.0	0.4	1,987	-

주: 2024년도 징수실적은 2024년 6월말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수납실적 부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폐업, 소송(제재부가금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면서 수납실적이 저조하다는 입장이나,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부정사용) 또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한 제재부가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 결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과징금 미수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44]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제3항,[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46]에 따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등, 수

---

4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납되지 않은 징수결정액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매년 예상되는 징수결정액보다 보수적으로 낮게 편성하고 있는 과징금 세입예산[47]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징금 미수납액 징수 노력 강화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7)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7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7억 2,2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음. 또한, 이러한 세입예산액은 전년도(2022년도) 미수납액 8억 3,000만원보다도 적은 수치라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미수납액을 수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있음.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수적인 세입예산편성은 2024년도 세입예산에도 발견되는데, 전년도(2023년도) 미수납액 17억 2,200만원의 절반이하인 7억 6,100만원의 세입예산액만 편성하였음.

5.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의 정산 반납금(연구개발환수금 등), 급여환급금, 과오지급금 회수액 및 전세 보증금 반환금 등을 수납하는 세입 과목임.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액은 1,330억원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36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010억 4,100만원을 수납하고 26억 1,7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3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 이전수입	133,000	133,000	-	133,000	203,658	201,041	2,617	-	135,000

□ 검토의견

(1) 세입 과소계상 재발방지 및 미수납액 징수노력 필요

다음의 표는 2018년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연도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2018년도 385.0%에서 2019년도 276.2%, 2020년도 126.1%,

2021년도 102.3%, 2022년도 92.0%로 꾸준히 낮아졌으나 2023년도의 경우 151.2%로 크게 증가하였음.

2018~2024년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8	49,363	49,363	190,818	190,040	385.0	99.6	778	-
2019	56,021	56,021	155,477	154,749	276.2	99.5	728	-
2020	92,000	92,000	116,759	115,989	126.1	99.3	770	-
2021	123,000	123,000	126,608	125,818	102.3	99.4	790	-
2022	129,573	129,573	120,010	119,173	92.0	99.3	837	-
2023	133,000	133,000	203,658	201,041	151.2	98.7	2,617	-
2024	135,000	135,000	99,033	97,487	72.2	98.4	1,546	-

주: 2024년도 징수실적은 2024년 6월말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초과수납이 크게 발생한 것은 당해연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원을 면밀하게 고려하기보다 최근 3개년도 수납액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의 경우 세입예산액은 최근 3개년도(2019~2021년도) 수납액 평균치가 약 1,330억원임을 반영한 것이나, 실제 수납액은 2,010억 4,1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과 큰 차이를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3년간 수납액을 감안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집행주체가 다양하고 사업기간 연장이나 다음연도 이월 등으로 인하여 사업종료 및 정산반납 시점의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세입예산

액 대비 50% 이상 초과수납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노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추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48] 관련 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2023년도 410억 2,000만원 수납),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해 2022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 등 1조 4,020억원[49]의 재정을 단년도에 지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산(2023년도 259억 1,200만원 수납)이 이루어지는 등 예년보다 더 많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수납될 요소들이 있었음.

이러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정산반납금 수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급격하게 늘어난 재정지원에 따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안임.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입원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최근 3개년도 수납액을 반영한 보수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결과 2023년도 초과수납이 크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

48)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하는 것이며,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에듀테크(직무교육 및 초중고 학생교육),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도입 컨설팅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함.

49)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발생한 사업체의 피해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함. 2022년도 예비비 1조 3,000억원, 제1차 추가경정예산 600억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 420억원 등 총 1조 4,0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와 같이 예년보다 더 많은 세입이 수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원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을 더 정확히 추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한편,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 규모는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8년도 7억 7,800만원, 2019년도 7억 2,800만원, 2020년도 7억 7,000만원, 2021년도 7억 9,000만원, 2022년도 8억 3,700만원으로 2018년 이후 매년 말 기준 약 8억원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2023년도의 경우에는 26억 1,700만원으로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수납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수납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납되지 않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18~2024년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8	49,363	49,363	190,818	190,040	385.0	99.6	778	-
2019	56,021	56,021	155,477	154,749	276.2	99.5	728	-
2020	92,000	92,000	116,759	115,989	126.1	99.3	770	-
2021	123,000	123,000	126,608	125,818	102.3	99.4	790	-
2022	129,573	129,573	120,010	119,173	92.0	99.3	837	-
2023	133,000	133,000	203,658	201,041	151.2	98.7	2,617	-
2024	135,000	135,000	99,033	97,487	72.2	98.4	1,546	-

주: 2024년도 징수실적은 2024년 6월말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신용보증기금출연(1231-881)

□ 사업 및 결산 개요

‘신용보증기금출연’(1976~, 출연)은 담보력이 취약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50]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지원[51]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인 837억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음.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출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신용보증기금출연	83,700	83,700	-	-	-	83,700	83,700	-	-	80,000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	80,000	80,000	-	-	-	80,000	80,000	-	-	-
포항 재해피해 중견기업 특례보증	3,700	3,700	-	-	-	3,700	3,700	-	-	-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	-	-	-	-	-	-	-	-	80,000

50)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51)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보증지원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고, 부실에 따른 대위변제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됨.

□ 검토의견

(1)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 실적 부진에도 추가예산편성 부적정

내역사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낮은 금리 대출로의 대환을 보증하는 사업[52]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800억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음.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대상기업	▪개인기업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 영위
대상채무	▪사업자 대출(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대출금 中 - ①상용차 및 할부금융 관련 신용·담보대출 - ②사업 영위 목적의 신용대출	▪금리 7% 이상 + ’23.5.31. 이전 차입 (‘②대출’은 ’20.1.1. 이후 ’23.5.31. 이전 차입)
대환한도	▪개인기업 1억원, 법인 소기업 2억원	‘②대출’은 2천만원
보증비율	▪90%	-
대출기한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 + 가산금리 2.0%p 이내	▪최고 상한 범위 내 신용도에 따라 결정
보증료율	▪(1년차)0%, (2~3년차)0.7%, (4~10년차)1.0%	▪일시납 15% 할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 예산 6,8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의 경우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확대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출연된 예산 7,600억원에 보증배수 12.5배를 적용한 9조 5,000억원의 대환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함.

52)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7% 이상 기존 대출금을 5.5% 이하 저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임.

그런데 2022년말 기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누적 대출(보증) 실적은 2,579억원으로 당초 공급목표 8조 5,000억원 대비 3.0%에 불과하였음.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출연하고 사업기간도 연장한 2023년도의 경우에도 연도말 기준 누적 대출(보증) 실적은 1조 2,949억원으로 추가 출연으로 늘어난 공급목표 9조 5,000억원[53] 대비 13.6%로 저조하였음. 2024년 5월말 기준으로도 누적 대출(보증) 실적은 1조 5,724억원으로 공급목표 9조 5,000억원 대비 16.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 누적실적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 5월말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대출건수	대출금액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	7,170	2,579 (3.0%)	24,448	12,949 (13.6%)	29,701	15,724 (16.6%)

주: 괄호안의 수치는 공급목표 대비 대출(보증)금액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2022년말의 경우 당초 공급목표 8조 5,000억원을, 2023년말 및 2024년 5월말의 경우 추가 출연에 따른 공급목표 9조 5,00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지원범위가 다소 제한적[54]이었으며, 대출 부실위험이 높은 반면 대환대출 금리를 낮도록 제도를 설계하려다 보니 수탁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영업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신청 및 접수가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53) 2023년도 8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출연되었고 보증배수 12.5배 적용시 1조원의 공급목표가 추가되어 당초 8조 5,000억원에서 9조 5,000억원으로 공급목표가 상향되었음.

54) 까다로운 지원자격(신청자격, 대상채무 등), 낮은 대환한도, 짧은 만기, 보증료 부담 등에 대한 현장의 애로가 제기됨.

또한, 2022년 9월 사업 시행 이후 3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대환대상을 확대하고 대환 한도도 두배로 늘렸으며 상환구조 개선 및 보증료 인하 등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1차 개편 ('23.3월)	대상기업	· 코로나19 피해 확인 소상공인 → 모든 소상공인
	대환한도	· (개인) 5천만원 → 1억원, (법인) 1억원 → 2억원
	상환구조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10년)
	보 증 료	· 최초 3년간 0.3% 인하 (1~3년 0.7%, 4~10년 1.0%) · 일시납 시, 납부보증료 총액의 15% 할인
2차 개편 ('23.8월)	대환대상	·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 가계신용대출을 대상에 포함 - (시기요건) '20.1.1.~'22.5.31. 중 신규 취급 - (대환한도) 최대 2천만원(개인기업 1억 한도 내)
3차 개편 ('24.3월)	대환대상	· '22.5.31. 이전 취급 대출 → '23.5.31. 이전 취급 대출
	금리상한	· 1~2년차 최대금리 5.5% → 1년차 최대 5.0%, 2년차 최대 5.5%
	보 증 료	· 개편 시행 후 1년간 보증료 0.7%p 차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그러나, 부진한 실적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 배정된 예산을 전액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고, 그 결과 2023년말 기준 실제 보증배수가 1.7배[55]에 불과한 실정임. 즉, 당초 보증배수 12.5배를 기준으로 기획된 보증사업이 충분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어 추가 출연이 없더라도 사업 운용에 지장이 없음에도 국가재정을 추가 지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55) 총 출연금 7,600억원 대비 2023년말 기준 대출(보증) 실적이 1조 2,949억원으로 실제 보증배수가 1.7배에 불과함.

따라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배정된 출연금 지급을 유보하는 등 불요불급한 국가재정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지출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7.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1232-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1997~, 출연)은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인 350억원 전액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였음.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	35,000	35,000	-	-	-	35,000	35,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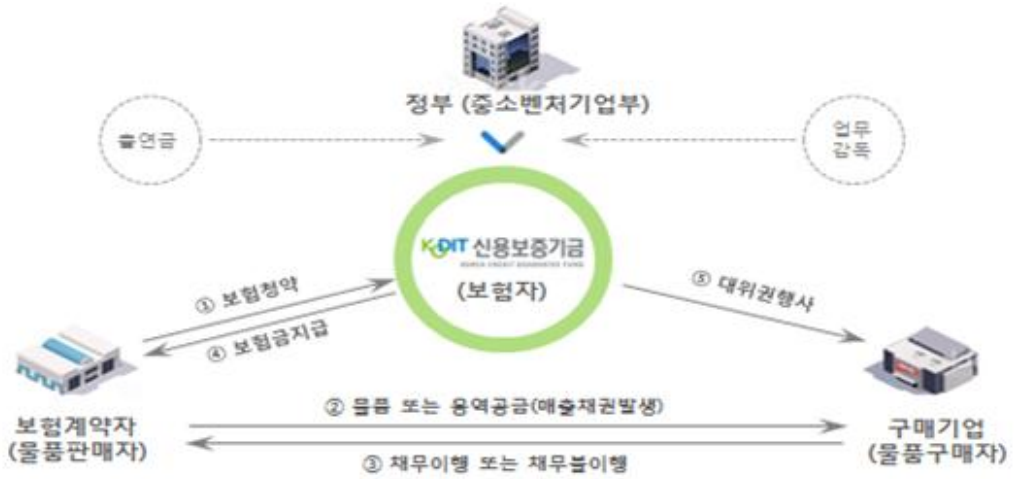
□ 검토의견

(1) 정부출연금 예산 과다편성 재발방지 필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 등에 따라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용하는 공적 보험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이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불능, 채

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56][57][58]임.

매출채권보험 사업 추진체계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은 이러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 정부재정을 출연함으로써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재정건전성을 증진하고 적극적인 매출채권보험 운용을 독려하려는 사업임.

---

5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보험료 등의 수입·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관리되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자가 그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5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인수총액은 21조 5,318억원이고, 연도말 기준 인수잔액은 5조 7,015억원임. 구매기업의 폐업 등으로 인한 사고금액은 790억원(사고율 1.4%)으로 계획보다 285억원 낮은 수치를 나타냄.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수입액은 1,326억원, 지출액은 1,176억원으로, 150억원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하였고 기본재산으로 적립[59]되었음. 2023년말 기준 기본재산은 당초 계획보다 772억원 많은 4,795억원이고, 운용배수(인수잔액 대비 기본재산)는 11.9배로 나타남.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계정 결산

(단위: 억원, %, 배)

구 분	2023년 계획	2023년 결산	계획 대비 증감
인수총액	210,000	215,318	5,318
인수잔액	53,738	57,015	3,277
보험사고	1,075	790	△285
사 고 율	2.0	1.4	△0.6
수 입(A)	1,097	1,326	229
정부출연금	**350**	**350**	-
보험료	588	572	△16
운용수익	86	267	181
대위권회수	62	88	26
기타수입	12	49	37
지 출(B)	1,253	1,176	△77
보험금지급	822	622	△200
관리업무비	310	289	△21
비상위험준비금, 지급준비금등	121	265	144
증 감(A-B)	△156	150	306
기 본 재 산	4,023	4,795	772
운 용 배 수	13.4	11.9	△1.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5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6(손익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국회는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에 대한 2022년도 결산심사시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보험인수 등 사업의 운영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요구(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를 한 바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의 2022년도 결산시정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하였는지, 즉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및 기본재산 대비 보험인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음.

첫째, 2023년도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수입액을 낮게, 지출액을 높게, 기본재산 기초금액을 낮게 예측함으로써 실제보다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수지를 부정적으로 보아 정부출연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

2023년도 자금운용수익 산출근거

(단위: 억원, %)

구분	평균잔액	평균 수익률	운용수익
예치금(단기예금)	3,916	1.42	86
국공채	2,729	1.1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운용수입을 86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267억원에 달함.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금운용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설정함에 기인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치금(만

기 1년 이하 정기예금 운용)과 국공채(잔여만기 3년 이내 국공채 운용)의 수익률을 각각 1.42%, 1.11%로 설정하여 자금운용수입을 산출하였으나, 이러한 수치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치[60]임.

한편, 지출액은 계획액 1,253억원 대비 77억원 적은 1,176억원인데, 이는 인수잔액 초과(당초 계획대비 3,277억원 초과)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61](장기충당부채 적립, 2023년말 기준 누적액 1,882억원[62]) 108억원(3,277억원 × 3.3%)의 추가 발생에도 계획액보다 적은 것임.

매출채권보험계정 보험사고금액 및 사고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사고금액	784	652	414	621	815	607	752	852	695	492	486	790
(사고율)	(5.6)	(2.7)	(1.2)	(1.7)	(2.0)	(1.4)	(1.6)	(1.7)	(1.4)	(1.0)	(0.9)	(1.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지출액이 계획보다 적은 것은 주로 보험사고액 및 보험금 지급액이 계획보다 각각 285억원 및 200억원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계획 당시 보험사고율을 2.0%로 설정하고 보험사고율에 연동된 보험사고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과다하게 평가함에 기인함. 보험사고율 2.0%는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2016년도 2.0%)에 해당함.

60) 자금운용기간인 2023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로 고정되어 있었음. 예산안 제출당시인 2022년 8월말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였으며, 주요 자금운용수단인 1년 만기 정기예금과 3년 만기 국공채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단기금융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낮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

6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② 신용보증기금은 법 제61조의5제1항에 따라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천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62) 1,881.5억원 = 5조 7,015억원 × 3.3%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매출채권보험계정 기본재산 기초금액을 4,179억원으로 예상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기본재산 기초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상보다 466억원 더 많은 4,645억원이었음. 이와 같은 466억원의 오차는 정부가 편성한 출연금 예산 350억원보다도 더 큰 수치에 해당함. 정부출연금이 매출채권보험계정 기본재산 충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측오차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정부재정 350억원이 2023년도에 출연되었다고 할 수 있음.

요약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자금운용수익률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낮게 설정하여 운용수익 등 수입액을 낮게 예상하였고, 보험사고율을 최근 10년 중 최고수치에 해당하는 2.0%로 설정하는 등 지출액을 최대한 높게 설정하였으며, 기본재산 기초금액을 466억원 과소설정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수지를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본재산 충당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63].

둘째, 2023년 인수총액은 당초 계획액 21조원을 5,318억원 초과한 21조 5,318억원, 연말 인수잔액은 당초 계획액 5조 3,738억원을 3,277억원 초과한 5조 7,015억원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말 기준 신용보증

63)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본재산 기초금액이 정부출연금 예산 350억원을 초과하여 과다한 예측오차가 발생(466억원)하였음을 2022년말~2023년초 인지하였고, 계획변경 및 정부출연금 미출연(불용처리)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정부출연금 예산 350억원을 전액 출연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이루어지게 한 잘못이 있음.

기금 매출채권보험계정의 기본재산 대비 보험인수잔액인 운용배수의 경우 11.9배로 당초 계획인 13.4배를 미달하였음. 당초 계획한 운용배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라는 시정요구[64]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020~2023년도 매출채권보험 실적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인수총액	202,000	203,511	200,000	201,921	210,000	213,715	210,000	215,318
인수잔액(A)	51,585	51,112	52,775	51,913	53,474	53,819	53,738	57,015
보험사고(B)	1,032	695	1,055	492	1,069	486	1,075	790
(사고율)(B/A)	2.0	1.4	2.0	1.0	2.0	0.9	2.0	1.4
수입(C)	1,031	1,020	1,308	1,333	1,318	1,373	1,097	1,326
지출(D)	1,351	1,068	1,250	969	1,312	939	1,253	1,176
C-D	△320	△48	58	364	6	434	△156	150
기본재산(E)	3,576	3,847	3,744	4,211	3,937	4,645	4,023	4,795
운용배수(A/E)	**14.4**	**13.3**	**14.1**	**12.3**	**13.6**	**11.6**	**13.4**	**11.9**

주: 운용배수 = 인수잔액/기본재산, 2020년 계획은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계정 출연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보험인수 등 사업의 운영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국회의 2022년도 결산시정요구(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정부출연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64) 시정요구 지적사항: 최근 3년간 매년 매출채권보험계정의 운용배수가 예산편성 시의 예측치보다 낮게 나타나 실소요액에 비해 출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음.

8.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111-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2015~, 보조 및 출연) 사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A/S 지원,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지원,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1,670억 9,1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167,091	167,091	-	-	-	167,091	167,091	-	-	219,054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117,200	117,200	-	-	-	117,200	117,200	-	-	156,000
디지털 클러스터	6,546	6,546	-	-	-	6,546	6,546	-	-	16,111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18,100	18,100	-	-	-	18,100	18,100	-	-	25,000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3,300	3,300	-	-	-	3,300	3,300	-	-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3,780	3,780	-	-	-	3,780	3,780	-	-	3,780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1,850	1,850	-	-	-	1,850	1,850	-	-	2,070
스마트공장 AS지원	7,000	7,000	-	-	-	7,000	7,000	-	-	7,000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 종합솔루션	830	830	-	-	-	830	830	-	-	830
AI문제해결 컨설팅·실증	8,485	8,485	-	-	-	8,485	8,485	-	-	-

□ 검토의견

(1) 제재조치 및 제재 환수금 징수 지연 문제

내역사업인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은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주로 고도화에 해당[65])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기업의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솔루션 구축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을 지원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재원을 통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원 및 민간의 자발적 구축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518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누적 합계 32,662개의 스마트공장이 보급된 것으로 나타남.

65) 2023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정부는 선도모형(모델), 고도화 공장 육성에 집중하여 '27년까지 5,000개를 지원하고, 기초단계 공장 등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거나 민간이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2만개를 구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지역·민간이 함께 '27년까지 디지털 제조혁신 기업 2.5만개를 육성할 계획임.

스마트공장 수준별 구축현황

(단위: 개사, %)

구 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
구축수(A)		277	963	1,560	2,203	2,900	4,757	7,139	5,240	5,105	2,518	32,662
기초		226	791	1,122	1,844	2,385	3,546	5,600	3,698	3,613	1,565	24,390
고도화	중간1 (B)	44	141	416	354	474	1,124	1,466	1,467	1,426	891	7,803
	중간2 (C)	7	31	22	5	41	87	73	75	66	62	469
고도화비율 (B+C)/A		18.4	17.9	28.1	16.3	17.8	25.5	21.6	29.4	29.2	37.8	25.3

주: (고도화)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분석 또는 제어 /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66]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부터 부정수급, 유지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여 제재조치를 결정한 과제는 2020년 5건, 2021년 247건, 2022년 93

66) 기존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 1. 3. 제정, 2023. 7. 4. 시행)이 제정되어 적용 중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제32조(사업비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이하 생략)

건, 2023년 188건으로 총 533건임.

2020~2023년 제재조치 관련 부정행위 및 사업포기·폐업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부정행위	부정수급	3	81	20	100	204
	부실구축	-	37	17	6	60
	부적정 인력 참여	-	63	1	0	64
	유지의무 위반	-	6	2	1	9
	기타(허위 서류제출 등)	-	38	5	31	74
	소계(A)	**3**	**225**	**45**	**138**	**411**
사업포기		2	10	40	40	92
폐업		-	12	8	10	30
소계(B)		**2**	**22**	**48**	**50**	**122**
합 계(A+B)		**5**	**247**	**93**	**188**	**533**

주: 위 연도별 구분은 제재조치위원회의 제재가 결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협약 해약사유에 해당하거나 문제과제로 확인된 경우 등 2019년 이후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2023년 8차례의 제재심의(제재조치위원회)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사업포기, 폐업뿐 아니라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45→138건)한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2023년 부정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138건 중 137건[67]이 2019년 및 2020년 지원사업에 해당함.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종료[68]

67)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37건 중 127건의 경우 2019~2020년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부실 구축사례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관 정기감사, 2022. 8. 결과통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68) 2019년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수행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연장신청을 통해

된 후 3~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된 것이어서 제재심의 및 제재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제재조치 대상 과제의 사업참여연도 현황

(단위: 건)

구분 / 제재연도	제재연도	사업참여연도				
	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① 부정수급	100	46	53	0	1	0
② 부실구축	6	2	4	0	0	0
③ 부적정 인력 참여	0	0	0	0	0	0
④ 유지의무 위반	1	1	0	0	0	0
⑤ 기타(허위서류 제출 등)	31	12	19	0	0	0
소 계	138	61	76	0	1	0

주: 2023.7.17.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및 2020년 지원사업은 2021~2022년에 실시된 제재심의에서도 각각 173건(부정행위 제재조치 225건 중 76.9%) 및 35건(부정행위 제재조치 45건 중 77.8%)의 제재조치가 결정된 바 있으나 최근까지도 해당 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임.

제재조치가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에 다른 부정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어려워지는 등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정행위 적발 및 제재조치가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재조치로 적발된 기업에 대하여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함.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2019. 2)

음. 2020년 이후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수조치 필요액은 총 301억 2,957만원임.

2020~2023년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환수 발생내역

(단위: 건,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지급액		388,803	12,632,430	8,535,575	15,418,583	36,975,391
건수	참여제한·환수	5	134	80	152	371
	참여제한(단독)	-	50	10	31	91
	환수(단독)	-	63	3	5	71
	소계	5	247	93	188	533
환수 발생액		388,803	9,094,851	7,366,185	13,279,732	30,129,571

주: 지급액은 제재조치 대상 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91억 1,882만원으로, 환수 대상금액의 30.3%에 불과하여 징수 및 수납처리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임[69].

2020년 이후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수액의 징수내역

(단위: 천원, %)

연도	연도별 환수 발생액(A)	환수발생 연도별 징수결의액	수납액(B)	미수납액	환수율 (B/A)
2020	388,803	98,023	98,023	-	25.2
2021	9,094,851	190,780	190,780	-	2.0
2022	7,366,185	-	-	-	0
2023	13,279,732	8,830,015	8,830,015	-	66.5
합계	**30,129,571**	**9,118,818**	**9,118,818**	**-**	**30.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9) 2024년 7월 말까지 징수·수납된 23억 1,429만원을 포함할 경우 총 누적 수납액은 114억 3,311만원으로, 환수율은 37.9%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환수결정 통보 이후 환수금 납부 불응 등 기업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고, 소송절차 진행 등으로 절차[70]가 장기간 지연되었다고 설명함[71].

그러나 제재조치 결정에 따른 환수조치 필요액이 2020년부터 발생하였음에도 2023년까지 환수액 수납실적이 저조한 것은 소관 부처로서 환수금의 징수 및 국고 수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진하였음을 나타냄.

또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제재조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를 32차례 누락하였고, 2020년부터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발생한 환수액을 계좌에 장기 보관하다가 2023년 6월에야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59억 3,700만원)함으로써[72], 환수액 징수의 장기 지연 문제를 초래하였음.

이는 환수 제재조치가 결정된 시점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징수내역을 반영(징수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용계좌에 입금된 환수액만을 주기적으로 징수결의하여 국고납입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냄. 때문에 환수조치 필요액 대비 징수액이 저

70) (환수금 납부 불응 시 프로세스) 제재결정 통보 및 독촉 → 보증보험 청구 → 지급명령 등 소송진행 → 강제집행 이후 국고수납 진행

71)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세부관리기준 및 제재처분 매뉴얼을 정비하고, 환수금 발생 관련 정기적인 보고와 환수금 실시간 확인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절차 지연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함.

7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상 특정감사 결과보고서(2024. 4.)

조함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국가결산보고서상 세입내역[73]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장기간 환수액 미수납문제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제재조치 및 환수액 징수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하고, 제재조치에 따른 환수액 규모 및 미수납액 현황이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결산보고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2) 부정행위 환수에 대한 제재부가금 징수 필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74]」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부정이익 및 이자를 환수하고, 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75].

---

73)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2024. 5. 31), p305

74) 법률 제16323호, 2019.4.16. 제정, 2020.1.1. 시행

75)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인해 환수 조치한 과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재부가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76]됨.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후 지급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제재가산금을 부과 및 징수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77][78].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청구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부정청구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77) 정당한 사유 없는 사업 포기, 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제재심의의 대상이 되어 참여제한 또는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제재부가금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8) 다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운영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부정사례의 경우 공급기업이 맺은 협약을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아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본 판례(서울행정법원, 2022아10497, 2022.4.5.)가 있음. 때문에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아닌 공급기업에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0～2023년 사업연도별 부정행위 및 제재 환수액 발생내역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합계
부정행위	부정수급	138	0	1	204
	부실구축	26	0	0	60
	부적정인력 참여	1	0	0	64
	유지의무 위반	8	0	0	9
	기타(허위 서류제출 등)	21	3	0	74
	소 계	194	3	1	411
환수 발생액		13,627	4,902	1,661	30,130

주: 2023년 12월 기준 2023년의 경우 적발사례 없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외에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조세, 부담금, 벌금·과태료, 계약관계 해당사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범위에 적용되며, 공공재정지급금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의미하므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된 출연금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79].

79)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2023.12, p10, p14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3조(중앙행정기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지침을 따르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예산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의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말한다.
13. 350-02 사업출연금

동 법률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영역이 아닌 의무 시행사항에 해당하며,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를 제재부가금 부과로 간주[80]하고 있으므로, 금전 부과처분이 아닌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는 제재부가금을 대신할 수 있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81].

또한, 부정이익(환수금액 중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적용배제)[82],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

8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8조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상 제8조의 환수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징수, 회수, 반납명령, 반환명령, 반환요구 등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 제재부가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환수에 추가하여 환수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본다.

8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경우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82)「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인한 경우(부과요건 미해당),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면제·감경 요건)[83] 등에 해당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환수조치를 결정한 과제 중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제재부가금 부과 요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2023.12)」, p2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부정청구등으로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 2019년 제정되었음. 최근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을 신설[84]하여 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제재부가금 제도의 취지는 부정수익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부정청구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도입 초기부터 부정행위 발생에 따른 여러 지적[85]이 있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수단으로서도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활용해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발생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겠음[86].

---

84) 법률 제20426호, 2024. 3. 26, 개정, 2024. 9. 27. 시행

85) <부정행위 발생 지적>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 관련 부정행위 적발 사례 지적(2017년~2019년 지원기업 대상 부실 구축이 의심되는 271곳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공장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담합하여 비용을 일부 돌려받고, 부실구축을 진행하는 등 부정수령 의심행위가 136건 적발됨-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실태조사(2021.6.1.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2022년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공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 요구
- 2022년 감사원 정기감사(2022.8.)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비 산정 및 집행 부적정,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

86)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9. 기술혁신기반조성(2131-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술혁신기반조성’(2001～, 직접수행, 보조 및 출연)은 혁신형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 ASEM 역내 중소기업간 다양한 국제협력 촉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현액은 162억 8,8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중 162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기술혁신기반조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술혁신기반조성	16,288	16,288	-	-	-	16,288	16,287	-	1	12,959
혁신형기업 경쟁력강화	1,707	1,707	-	-	-	1,707	1,707	-	-	1,407
기술지원사업 운영	1,367	1,367	-	-	-	1,367	1,366	-	1	순감
중소기업 기술 탈취근절	4,389	4,389	-	-	-	4,389	4,389	-	-	3,94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2,500	2,500	-	-	-	2,500	2,500	-	-	2,500
ASEIC운영[87]	1,575	1,575				1,575	1,575			1,575
뿌리기업혁신 역량강화[88]	3,500	3,500	-	-	-	3,500	3,500	-	-	-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	1,250	1,250	-	-	-	1,250	1,250	-	-	순감

□ 검토 의견

(1)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출연 법적 근거 및 사업 신설 타당성 부족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내역사업, 출연)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내역사업, 보조) 내에서 추진되다가 2023년부터 신규 내역사업으로 분리·편성되었음. 내내역사업으로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89]’과 2023년 신설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이 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90]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연사업으로 추진 중임.

---

87) ASEIC(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아시아와 유럽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친환경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

88) 2024년부터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 사업에 편성

89)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2024년 예산 160백만원):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 등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부담을 낮추고 법적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정책보험 도입비용, 가입 보험료를 지원

9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23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내역사업) 추진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사업내용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지원	1,800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율적인 보안노력을 유도하고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육성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160	중소기업이 기술분쟁 대응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보험 가입 및 보험료(70%) 지원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신규 추진)	540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민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지원
합 계	2,5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동 사업은 출연사업의 법적 근거 부재, 사업출연금 비목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집행, 내역사업 간 분리기준 모호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12조[91]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사업은 보조사업과는 달리 반드시 법률상 지원 근거를 필요로 함. 이는 출연사업이 예산집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량의 범위가 넓고 반대급부가 없는 점으로 인해 출연금 지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92].

9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과 보조금 비교

구분	출연금	보조금
개념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적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으로 교부하는 금액(법적 개념 정의 없음)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반법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상 근거	반드시 법률상 지원 근거 필요 (「국가재정법」 제12조)	필수 요소 아님
용도 지정	-기관출연금: 사용 용도 비지정 -목적출연금: 사용 용도 지정	사용 용도 지정 필수
집행잔액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 따라 처리 -각 공공기관 개별 지침에 따라 처리	사후 정산, 국고 반환 처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p8(표 내용 중 일부)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연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93]는 전담기관 지정 및 업무수행 경비 지원의 일반 근거조항에 해당할 뿐으로, 특정 기관 또는 업무에 대한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음[94].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은 채 출연사업을 수행 중임.

---

92)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2022.5, p10

9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4) 「국가재정법」 제12조가 요구하는 법적 근거의 유형: ① 출연의 법적 근거(설립법 또는 설치법)를 갖춘 기관의 설립법 등에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 ② 출연의 법적 근거를 갖춘 기관은 아니나 동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개별법에 출연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경우 -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p10

더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연사업 법적근거 부족으로 인해 2022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의 사업방식을 출연에서 보조로 변경한 바 있으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다음연도인 2023년에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다시 출연사업으로 신설하였음. 이러한 우회적이고 빈번한 사업방식 변경은 매우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보조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량 확대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집행기관의 편의는 증대될 수 있으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집행잔액 반납 등에 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실집행 현황 파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95]. 또한, 동일한 사업 수행자가 단일 세부사업 내 유사한 취지의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수행방식을 보조 및 출연으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96].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에 대한 출연방식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방식의 빈번한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내역사업은 전액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

---

95) 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요약편 p13

9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데, 해당 내역사업 안에서 출연금 비목에 맞지 않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 포함)를 함께 집행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2023년 보수 등 집행사례

(단위: 원)

지출결의일자	지출명	편성목	지출결의총액
2023-01-25	'23년 1월 급여 지급	보수	11,879,327
2023-02-10	'23년 1월분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 지급	복리후생비	1,083,584
2023-04-24	2023년 예산별 복지포인트 지급	복리후생비	1,315,000

주: 인건비 보수 항목으로만 12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총 3억 6,695만원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지출내역 중 일부)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따른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용되는 비용이어서,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은 사업출연금 집행과 구별하여야 함.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도 사업출연금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350-01목)으로의 비목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97].

셋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기존 내역사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신규 내역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타당성이 부족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98]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97)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2

98) 국정과제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기술탈취 근절)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5년간, 300개), 기술

집중 지원을 위하여 2022년 기존 내역사업 중 국정과제 세부이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2023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신규 내역사업의 차별성이나 사업 간 구분 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두 내역사업은 모두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사후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에 해당될 뿐 아니라, 기존 내역사업이 기술탈취 관련 여러 분야 지원을 위해 장기간 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내역사업 추진사항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2022년 및 2023년 내역사업 분리 추진내용 비교

2022년 사업내용		2023년 사업내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기술분쟁·침해 피해 구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민관 합동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정책보험 ▸디지털포렌식 지원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기술보호지원사업운영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시범) -기술보호인증제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컨설팅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 인프라 조성> ▸기술보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기술보호 인식개선 ▸전문인력 양성 ▸전담기관 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기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민관 합동 기술보호지원반 ▸디지털포렌식 지원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컨설팅 ▸통합상담·신고센터 ▸기술보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기술보호 인식개선 ▸전담기관 운영 등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 (신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손해액 산정 지원(신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보호 정책보험 보장범위 확대 등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규 내역사업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은 출연의 법적 근거가 없고, 기존과 방식을 다르게 하여 사업을 신설·추진해야 할 필요성 및 타당성도 부족해 보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을 기존 내역사업에 포함시켜 당초와 같이 보조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 및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99].

(2)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보조·출연사업 이월 등 관리·감독 필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은 예산액 전액을 교부받아 각각 36억 5,900만원 및 20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000만원 및 4억 3,300만원을 이월하였음.

두 내역사업의 2023년 실집행내역(2023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피보조·피출연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액	교부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보조사업)	4,389	4,389	4,389	4,389	3,659	**730**	83.4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출연사업)	2,500	2,500	2,500	2,500	2,067	**433**	8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99)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편 및 통합에 관해 旣 검토한 바 있으며, 두 내역사업의 통합에 동의하는 입장임.

피보조·피출연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내역 변경을 통해 2024년 4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거나 또는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임.

두 내역사업의 2023년 사업비 정산내역(2024년 4월, 사업종료 기준)

(단위: 천원)

내역사업명	방식	교부액 (A)	집행액 (B)	잔액 (C=A-B)	발생이자 (D)	반납 또는 이월액 (C+D)	구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보조	4,389,000	4,373,000	16,000	55,424	71,424	반납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출연	2,500,000	2,393,579	106,421	41,303	147,724	이월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3년도 사업비 정산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2월에 두 내역사업의 사업별 집행현황, 사업기간 연장 및 이월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부액 중 7억 3,000만원 및 4억 3,300만원 각각을 이월 처리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두 내역사업의 예산 및 사업기간 변경·승인내역을 살펴 보면, 이월과 관련된 보고·검토나 이월 승인에 관한 내역이 없어 사업비 이월 승인이 타당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

두 내역사업의 2023년 예산 및 사업기간 변경·승인내역

중기부 승인날짜	승인내용	내역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차 (23.6.22)	예산변경	기술탈취근절	비목 간 변경 (95,000천원)	조정·중재시스템 기능개선에서 유지·보수로 사업내용 변경(연구용역비→관리용역비)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운영비 내 세세목 간 변경(412천원)	'손해액 산정'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운영비 내 세세목간 변경)
2차 (23.11.13)	예산변경	기술탈취근절	비목 신설(국외여비, 4,000천원) 및 비목 간 변경(25,300천원)	해외 진출기업 기술보호 간담회 추진 등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 간·비목 간 변경(65,000천원)	기술임치 및 대·공기업 연계형 정책보험 지원 확대('손해액 산정'사업 운영비→'기술보호 정책보험'사업 민간이전)
3차 (23.12.20)	사업기간 변경	기술탈취근절,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기간 연장(2개월, 24.2.29까지)	
	예산변경	기술탈취근절	비목 간 변경 (97,701천원)	법원 협약체결 및 조정제도홍보 (민간이전→운영비)
4차 (24.2.29)	사업기간 변경	기술탈취근절,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기간 추가 연장(2개월, 24.4.30까지)	
	예산변경	기술탈취근절	내내역사업 및 비목간 변경(52,237천원)	기술보호울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법무지원단'사업 운영비→'인프라관리'사업 연구개발비 등)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비목간 변경 (1,101천원)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참여기업 선정 평가 운영 등(운영비→업추비 등)
5차 (24.4.12)	예산변경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내내역사업 및 비목간 변경 (278,395천원), 운영비 내 세세목 간 변경(47,668천원)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정책보험'사업 43,281천원 및 '손해액산정지원사업' 234,613천원 등→'선도기업 육성' 운영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공문)를 토대로 작성

특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같은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가능함[100].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 이월 승인은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것뿐으로, 이는 실무상 절차에 해당하여 공식적인 이월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관 부처가 보조사업 이월에 대하여 적시에 충분한 검토 및 절차를 거쳐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있음.

한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의 경우 출연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출연금의 이월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기반으로 검토가 필요함[101]. 그런데 동 협약서는 사업비 잔액을 기관장(재단) 승인 하에 차기년도 해당 사업비로 이월 및 사용[102]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소

---

10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01) 출연사업비의 정산은 ① 법령, ② 소관부처의 규정 및 지침, ③ 위탁계약 협약, ④ 정관 또는 회계규정에 따라 정산하거나, ⑤ 국고보조금 정산 절차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됨(국회예산정책처, "출연금 현황과 개선과제", p66).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사업의 경우 출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정산에 관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없고, 별도의 정산 처리지침(「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등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102)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 협약서
○ 사 업 명 :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
○ 협약금액 : 금 2,500,000,000원(금이십오억원정)
○ 협약기간 : 2024. 1. 1. ~ 2024. 12. 31.(12개월)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재단은 중기부가 지급한 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급받은 사업별 정부출연금과 전년도 이월금, 수수료 등 자체수입금과 은행예치 이자 발생금(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해당 사업의 수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전년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 승인하에 차기년도 해

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비 이월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10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업기간 종료 후 제출한 사업비 정산보고 자료에는 이월금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이월금(1억 4,700만원)은 동 사업의 2023년 예산(출연금) 이월액(4억 3,300만원)과 맞지 않아 내용 및 시기 측면에서도 이월 보고 및 승인이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월금 활용계획

○ '24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참여기업 확대 개편으로 인한 사전컨설팅 및 수준진단·확인 등 사업 운영비용(147백만원)으로 활용

예산과목	필요예산	旣 편성예산	신규 편성예산
운영비-일반수용비 (전문가활용비)	297백만원 (198개사×1,500천원)	150백만원 (100개사×1,500천원)	147백만원

주: 이월금 1억 4,700만원은 사업비 잔액 1억 642만원과 발생이자 4,130만원을 합한 금액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23년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사업 사업비(출연금) 정산보고(2024. 6. 24)

「국가재정법」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등으로

당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이월금 사용 및 예산변경시 목간 변경은 재단 기관장의 승인하에 처리한다. 단 사업비를 인건비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⑥ 재단은 중기부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별 사업비의 지출실적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중기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기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3) 또한, 협약서상 별다른 사정 없이 사업비 잔액 이월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이월액 사용 후 잔액에 대한 반납 등 최종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수행자의 자의적인 집행 및 정산의 우려가 있어 보임.

충당하도록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면서 예산의 전용, 이용 및 이월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104].

따라서 보조 및 출연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관 사업의 보조금 및 출연금을 이월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승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월 승인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월 보고·검토 및 승인에 관한 기존 업무방식이나 협약서 내용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 중복 및 예산 통합집행 부적절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및 피해회복 지원’(신규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지원’(이하 “선도기업 육성”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기본부터 고도화까지 수준별로 맞춤지원함으로써 기술보호 분야의 선도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임.

---

10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선도기업 육성 사업 추진사항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범위
수준확인	사전컨설팅	• 기술보호 수준진단 사전안내	• 최대 2일
	수준진단	• 기술보호 수준 진단(전문가 2인)	• 최대 2일
기본역량 강화	현장자문	• 전문가 1:1 맞춤 자문제공 (전략, 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 해외, 교육 등)	• 전문가 자문 (10일 이내)
	법무지원단	• 기술유출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지원	• 법률전문가 자문 (60시간 이내)
	기술임치	• 기업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 예방	• 임치수수료 (최대 3건, 90만원 한도)
	정책보험	• 법률분쟁 비용경감을 위한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용 지원	• 보험료의 73% (기존70% ⊕ 3%)
고도화 지원	지킴서비스	• 보안 모니터링(관제)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제공	• 보안관제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 랜섬웨어 라이센스(최대30개)
	유출방지 시스템	•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50% (일반: 4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후속지원(2년간)		• 대외 홍보, 수준유지 지원 등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사업공고(2023.2.28.)

그런데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지원사항 중 ‘중소기업 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다른 세부사업인 중소기업정보화 역량강화(정보화)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105](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함)과 사업 내용이 중복 수행되고 있음.

두 사업의 신청접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106]”에서 함께 공고되고 있으며, 일반, 해외연계, 고도화로 구분되는 과제유형이나 지원한도, 지원자격 및 사업기간 등 지원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105) 중소기업정보화역량강화(정보화)(2135-503) 중 기술보호역량강화(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

106) https://www.ultari.go.kr/portal/ptm/main.do

2023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접수 공고(지원내용)

구 분	지원한도	지원자격	지원규모	사업기간
일반	최대 4천만원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50%	최대 4개월
해외연계				
고도화	최대 2천만원	기 수혜기업중 고도화 수요기업		

자료: 2023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접수 공고(2023.2.8.) 및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 공고(2023.9.14.) 중 시스템 구축 관련 지원내용

실제로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집행내역에는 “선도 연계 기술유출방지사업”이라는 항목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총액은 15억 7,000만원으로 동 사업 교부현액 20억 7,800만원[107] 중 75.6%를 차지함.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2023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관련 지출

(단위: 원)

지출결의일자	지출명	비목(출연)	지출금액
2023-10-29	2023년 선도육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원가계산 비용 지급	운영비	2,800,000
2023-11-21	2023-1차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협약과제 사업비 지급(8건)	운영비	222,710,875
2023-11-28	2023년 제2차 선도육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원가계산 용역 계약 비용 지급	운영비	1,750,000
2023-12-11	2023년 제3차 선도연계 기술유출방지사업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비	10,717,000
2023-12-14	2023-2차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협약과제 사업비 지급(5건)	운영비	160,906,989
2023-12-18	2023년 제3차 선도육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원가계산 용역 비용 지급	운영비	10,150,000
2023-12-23	23년 선도 1차 기술유출방지사업 지원과제 회계감사 용역 비용 지급	운영비	3,600,000
2023-12-29	2023년도 3차 선도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일반용역비 지급(1차)	운영비	828,532,136
2023-12-29	'23년 선도 2차 기술유출방지사업 지원과제 회계정산 용역 비용 지급	운영비	2,250,000

107) 선도기업 육성 사업 교부액은 18억원으로, 예산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증액됨.

지출결의일자	지출명	비목(출연)	지출금액
2024-02-29	2023년 제3차 선도연계 기술유출방지사업 종합평가 회의비 지출(1)	업무추진비	161,000
2024-03-26	2023년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SW 라이선스) 일반용역비 지급	운영비	111,279,590
2024-03-31	2023년 제3차 선도연계 기술유출방지사업 종합평가 회의비 지출(2)	업무추진비	344,400
2024-04-03	2023년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연계 기술유출방지 시스템(유지보수) 일반용역비 지급	운영비	25,599,760
2024-04-26	2023년도 3차 선도 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일반용역비 지급(2차)	운영비	189,183,707
	합 계		1,569,985,45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를 재정리

또한, 두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실무상 두 사업을 별도사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예산을 통합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종합평가 관련 비용의 지출내역을 보면, 1, 2차 회의 관련 비용은 정보화사업 예산에서 2023년 11월까지 집행되었으나, 3차의 경우 선도기업 육성 예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집행되었음.

선도기업 육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종합평가 관련 지출내역

(단위: 원)

지출결의일자	지출명	비목	지출금액
2023-12-11	2023년 제3차 선도연계 기술유출방지사업 종합평가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운영비	10,717,000
2024-02-29	2023년 제3차 선도연계 기술유출방지사업 종합평가 회의비 지출(1)	업무추진비	161,000
2024-03-31	2023년 제3차 선도연계 기술유출방지사업 종합평가 회의비 지출(2)	업무추진비	344,400

주: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지출내역 중 제1차 및 제2차 종합평가 관련 비용 지출은 없음.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3년 지출내역 자료)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결과보고 자료에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관련 1, 2차 모집이 종료된 이후 “선도연계”로 구분되는 모집이 진행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선도연계”가 사실상 3차 모집에 해당함[108]. 결과보고에 기재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건수는 총 63건[109]으로 정보화사업과 선도기업 육성의 실적 합계이며, 전년 대비 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취합·보고되어 있음.

정보화사업의 2023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사)

구 분	모집시기	신청기업	선정기업	경쟁률	정부지원금 평균
1차 모집	2월	23	15	1.5:1	31백만원/개사
2차 모집	6월	23	19	1.15:1	
선도연계	-	-	29	-	30백만원/개사

주: 1차 및 2차는 정보화 사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실적이며, 선도연계(9월 모집)의 경우 선도기업 육성의 추진 실적에 해당함.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2023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실적 결과 보고)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선도기업 육성은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여 시스템 구축 등 다른 사업의 개별 지원내용과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기업이 동일 건으로 이중 수혜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108)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지원 추진실적> -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세부추진실적

- (선도연계)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의 수시 연계를 통해 정규지원 기준과 다르게 기술보호수준 적용의 차별화로 중소기업 29개사 지원
  * 정규모집 2회 이외에 선도기업 연계 및 수시로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29개사

109)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 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 결과보고 별첨자료

◇ ‘23년도 지원건수 63건(정규 34건, 선도 29건)달성으로 전년 대비 지원 확대
  * 지원실적 : (’20년) 56건 → (‘21년) 59건 → (‘22년) 51건 → (‘23년) 63건

그러나 이러한 예산 집행방식은 동일한 사업수행자가 유사 사업을 각각 다른 세부사업에서 수행함으로 인해 사업 내용의 유사성·중복성을 점검하기 어렵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전체 지원 예산이 드러나지 않아 투입 대비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사업 실적은 중복 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므로, 필요한 경우 단일 사업 내 적정규모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같은 사업을 서로 다른 세부사업 예산으로 통합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집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업구조 개편과 적정규모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 세부사업 간 사업이 중복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2134-430)

□ 사업 및 결산 개요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2023～2025, 출연)은 대학 및 연구기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와 전문인력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제품의 고도화 및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3년 신규 편성된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90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도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9,000	9,000	-	-	-	9,000	9,000	-	-	-

□ 검토의견

(1) 신규 사업 편성시 사업추진 정당성 및 타당성 확보 필요

동 사업은 공공자금으로 구축된 R&D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문제를 해소하

고 연구장비의 활용률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로 신설되었음. 중소기업에 장비활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바우처 지원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대학 ·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 장비 및 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임.

동 사업의 완료보고서에 따르면, 170개 연구장비 지원기관[110]이 보유한 10,958대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총 747개 기업이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험설계·분석 및 사업화를 위한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111].

2023년 사업추진 실적

(단위: 개, 건, 백만원)

구 분	시험설계·분석	사업화	합계
주관연구개발기관	362	385	747
연구시설장비이용	5,863	5,437	11,300
지원금액	6,000	3,000	9,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기간 3년(2023~2025년) 동안 연간 90억원씩 총 270억원을 지원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2024년 예산을 미편성함으로써 1년만에 사업을 조기 종료하였음. 정부의 2024년

110) 기타 79개(46.5%, 일반기업, 기타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연구기관 49개(28.8%), 대학 42개(24.7%)

111)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구분	사업내용	지원비율
시험설계·분석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에 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	70% 이내 (정부지원금)
사업화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활용에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	

※ 최근 3년간 사업 참여가 없는 신규 중소기업을 우선선정하며, 신청기업이 바우처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R&D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사업개편 과정에서 동 사업의 경우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정리된 것으로 보임.

2023년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예산 편성내역

① 시험설계·분석: 6,000백만원, 순증 - 중소기업 보유 기술·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공동활용 지원 * 전체비용의 70% 바우처 지원, 연간 최대 25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240개 기업 × 25백만원 × 12/12 (단년도/상반기) = 6,000백만원 ② 사업화: 3,000백만원, 순증 -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전체 비용의 70% 바우처 지원, 연간 최대 10백만원 지원 - 산출내역: 300개 기업 × 10백만원 ×12/12 (단년도/상반기) = 3,00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조기종료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은 실제 연구활동보다는 시험·성능 테스트 등 단순히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비R&D 성격에 가깝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112]을 통해 시제품 제작, 제품 시험 및 인증 등 목적에 맞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국가연구시설장비, 민간기업 장비 등이 다양하게 등록되어 있는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서비스(ZEUS, 제우스)[113]의 이용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12)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일반회계, 4835-301, 1999～)의 경우에도 기술지원 분야에 시제품 제작, 제품 시험·인증 등의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13)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체계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중인 장비활용 시스템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중소기업의 연구장비 부족문제 해소 및 연구장비 활용률 극대화를 사업목표로 하면서도 R&D 방식으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므로, 비R&D 성격의 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을 종료한다는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 신설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도 매우 미흡하였음을 나타냄.

또한, 신규편성 당시에는 다른 사업(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ZEUS시스템 활용사업 등)이나 기존 종료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되었음에도 추진 1년만에 사업 효율화를 이유로 종료하게 된 점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음.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동 사업은 그 연혁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 사업으로 시작되었음. 이후 사업 일몰에 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구기반활용' 사업,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23년에는 다시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신설된 것임.

3개년 사업의 총 예산액은 270억원 규모로 계획되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114]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2019년부터

11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운영된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관련 사업들의 예산 규모(442억 1,600만원[115])만 고려하더라도, 동 사업과의 총 합계액이 500억원이 넘게 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유사한 사업을 사업명만 달리하여 2~3년 단기사업으로 반복 편성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사전검토 절차를 우회적으로 회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116].

이와 같은 제반사항들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 R&D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으로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이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책임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사업 추진시 관계 법령에 따른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15) - 연구기반활용 사업(2019~2020년): 19년 본예산 136억 4,400만원, 20년 본예산 136억 8,200만원
-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2021~2022년): 21년 본예산 85억 9,000만원, 22년 본예산 83억원

116)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뿐 아니라 장비 임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기존 사업들(연구기반활용 및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는 입장임.

11. 수출지원기반활용(3131-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수출지원기반활용’(1996~, 직접 및 보조)은 국제운송비, 법률자문, 컨설팅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14개 분야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117]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인 1,197억 1,000만원 중 1,197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수출지원기반활용	119,710	119,710	-	-	-	119,710	119,707	-	3	111,860

□ 검토의견

(1) 사업계획 철저

동 사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함)에 바우처를 제공하면, 참여기업은 온라인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구매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118]됨.

117) 참여기업에 바우처(Voucher)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통해 수출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23년도 동 사업의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우처 지원을 받은 참여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3.5%, 고용증가율은 2.9%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치는 최근 5년(2019년~2023년)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함.

2019~2023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수출 증가율

(단위: 억불, %)

연도	직전연도 수출액 (A)	지원연도 수출액 (B)	수출액 증감분 (B-A)	수출 증가율 ((B-A)/A)
2019	33.5	36.9	3.4	10.3
2020	39.2	44.7	5.5	13.9
2021	71.8	89.4	17.6	24.5
2022	85.3	90.2	4.9	5.8
2023	141	146	5	3.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2023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고용 증가율

(단위: 명, %)

연도	직전연도 고용인원 (A)	지원연도 고용인원 (B)	고용 증감분 (B-A)	고용증가율 ((B-A)/A)
2019	71,657	74,586	2,929	4.1
2020	85,669	92,540	6,871	8.0
2021	94,637	101,445	6,808	7.2
2022	88,609	93,134	4,525	5.1
2023	129,472	133,200	3,728	2.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참여기업의 전년도 수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여섯가지 유형의 지원내역을 계획하였고 각 유형별 참여기업 수,

118) 중소기업 수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14개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제공(①디자인개발, ②홍보/광고, ③홍보동영상, ④조사/일반 컨설팅, ⑤브랜드 개발·관리, ⑥법무·세무·회계 컨설팅, ⑦서류대행/현지등록, ⑧통번역, ⑨역량강화 교육, ⑩해외규격인증, ⑪특허/지재권, ⑫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⑬국제운송, ⑭무역보험·보증)

예산액 등 지원계획을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국회의 예산안심사 결과 정부예산안 원안대로 동 사업의 예산액 및 사업내역이 확정되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실제 집행단계에 이르러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내역과 다른 집행계획을 별도로 마련(2023년 1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즉, 전년도(2022년도) 수출 1,000만불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강소+기업' 유형을 신설하여 지원하였고, 각 유형별 참여기업 수, 예산액 등을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내역과 다르게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3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유형별 지원내역

(단위: 개사, 백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국회 확정예산		집행계획	
		참여 기업수	예산액	참여 기업수	예산액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 0 (보조금한도: 30백만원)	950	26,000	1,100	33,00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보조금한도: 30백만원)	898	24,430	500	15,000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수출 10~100만불 미만 (보조금한도: 50백만원)	558	22,750	530	21,200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수출 100~500만불 미만 (보조금한도: 80백만원)	256	14,800	360	19,800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수출 500만불 이상 (보조금한도: 100백만원)	321	14,000	280	11,200
수출강소+기업	전년도 직수출 1,000만불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이력 보유 (보조금한도: 120백만원)	-	-	30	1,200
물류바우처	국제운송비 수요기업 (보조금한도: 14백만원)	1,300	18,000	2,500	18,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내역과 다른 집행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1,0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의 경우 기업당 평균 고용이 87명에 달하는 등 경제 기여도가 높아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새로운 지원유형을 신설하는 등 지원내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집행은 사업추진단계에 이르러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내역과 다른 임의적인 집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집행방식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안 편성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실제 집행단계에 이르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임의로 변경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2. 국제중소기업협력(ODA)(3133-305)

□ 사업 및 결산 개요

‘국제중소기업협력’(ODA)(2022~, 보조)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 및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 분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내역사업별 사업자에게 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인 55억 4,800만원을 전액 보조하였음.

2023년도 국제중소기업협력(ODA)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중소기업협력(ODA)	5,548	5,548	-	-	-	5,548	5,548	-	-	10,227

□ 검토의견

(1) 지속적 사업성과 창출을 위한 사후관리와 후속지원 검토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역사업별 보조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 예산으로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 ‘베트남 온라인 수출 플랫폼 모델

전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녹색전환 역량강화' 등 총 5개 내역사업 수행을 지원하였음.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 내역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해외 전파 및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교부받은 예산 20억원 중 19억 8,600만원을 실집행 하였음.

'라오스 테크노파크설립 및 IT인력양성' 내역사업은 라오스 내 디지털 사업을 위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IT 역량 강화를 원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는 교부받은 예산 18억원 중 17억 9,000만원을 실집행 하였음.

'인도네시아 스마트 팩토리화 도입' 내역사업은 인도네시아 산업의 스마트 팩토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한 공정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이노비즈협회는 교부받은 예산 7억 5,000만원을 전액 실집행 하였음.

'베트남 온라인 수출 플랫폼 모델 전수'는 한국 B2B 수출플랫폼을 베트남에 전수하여 베트남 기업의 온라인수출과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교부받은 예산 5억 9,800만원 중 5억 3,300만원을 실집행 하였음.

끝으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녹색전환 역량강화’ 내역사업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기술지도 및 한국초청연수 실시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인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는 교부받은 예산 4억원 중 3억 8,400만원을 실집행 하였음.

2023년도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수행기관 (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 우간다 청년창업 사관학교 설립·운영 (사업기간: 2022년~2024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2,000	2,000 [1,986]	100.0% [99.3%]
· 라오스 테크노파크설립 및 IT인력양성 (사업기간: 2022년~2025년)	한국테크노파크 진흥회	1,800	1,800 [1,790]	100.0% [99.4%]
· 인도네시아 스마트팩토리화 도입 (사업기간: 2023년~2026년)	이노비즈협회	750	750 [750]	100.0% [100.0%]
· 베트남 온라인 수출 플랫폼 모델 전수(사업기간: 2023년~2025년)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598	598 [533]	100.0% [89.1%]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녹색전환 역량강화(사업기간: 2023년)	아셈중소기업 친환경혁신센터	400	400 [384]	100.0% [96.0%]
합 계		5,548	5,548 [5,443]	100.0% [98.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내역사업 중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녹색전환 역량강화’는 2023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어 2024년 6월말 기준 지원이 이미 종료되었고, ‘우간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운영’ 내역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말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음. ‘라오스 테크노파크설립 및 IT인력양성’ 등 나머지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기간이 3년 또는 4년의 단기간 지원이 계획되어 순차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예정임.

이처럼 ODA 사업이 단기간 지원으로 종료되는 경우 사후관리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후속 지원이 부족하다면 ODA 사업으로 구축한 성과가 ODA 지원종료 후 단절될 우려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들은 대체로 대상국에 장비, 기자재 또는 정보시스템을 보급하거나 프로그램 또는 노하우(knowhow)를 전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어, ODA 지원종료 후 사후관리 또는 연계사업을 통한 사업성과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등)으로 보임[119].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ODA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후속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수원국(受援國)이 자금유치를 통해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고, 내역사업별로 기존에 지원한 물자의 교체 및 부품·소모품의 제공, 기술협력을 지속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하게 하여야 할 것임.

119) 일례로, '우간다 청년창업 사관학교 설립·운영' 내역사업의 경우 양국 청년창업 사관학교 참여 기업간 상담회 및 기술교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진출 파트너를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지 스타트업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3.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4231-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2004～, 보조)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등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성장 실태조사, 상생협력 문화 확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 164억 600만원 중 16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16,406	16,406	-	-	-	16,406	16,398	-	8	14,670
상생거래 환경조성	4,238	4,238	-	-	-	4,238	4,238	-	-	5,703
동반성장 문화조성	4,993	4,993	-	-	-	4,993	4,993	-	-	5,573
대·중소기업 혁신성장기반구축	3,183	3,183	-	-	-	3,183	3,183	-	-	-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	3,992	3,992	-	-	-	3,992	3,984	-	8	3,394

□ 검토 의견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빈번한 보조비목 간 전용 등

동 세부사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생산성본부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이 중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5개 내역사업 중 13개 내역사업을 수행 중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사업추진기관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수행기관	방식	지원비율
상생거래 환경조성	기업간거래공정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보조	100%
	상생결제제도운영			
동반성장 문화조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동반성장기반구축			
	상생누리플랫폼운영			
	상생협력기금운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대중소기업 혁신기반구축	협력이익공유제운영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발적상생협력기업발굴			
	대중소기업혁신파트너십			
	성과공유제확산			
	소부장상생모델발굴			
	중소기업 CSR 경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중소기업사업 영역보호	적합업종보호 및 육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모성자재납품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20]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예산변경(보조비목 간 전용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년부터 연도별로 각각 15건, 10건, 14건으로, 3년간 총 39건의 예산변경이 있었음.

2021~2023년 보조사업 예산변경 승인내역 요약

연도	내역사업명	변경사유	중기부 승인일자	비고
2021 (15건)	기업간거래공정화	분쟁조정협의회 추진 등	**2021.11.09**	계속사업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추진 등	**2021.12.23**	계속사업
	동반성장개방형플랫폼(상생결제 운영)	서버안정화 등	**2021.11.04**	정보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	여비 절감 및 운영비 증액 등	**2021.12.24**	
	동반성장실태조사(실태조사)	우수사례 공유회 추진 등	2021.08.09	계속사업
		최우수기업 포상 및 홍보 등	**2021.12.06**	홍보
	동반성장실태조사 (공공기관평가)	우수사례 공유회 추진 등	2021.08.09	계속사업
		제도 홍보 등	**2021.12.06**	홍보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활용지원[121]	중소기업 지원금 확대 등	2021.10.28	
	성과공유제확산(성과공유제확산)	우수사례집 제작 등	**2021.12.06**	홍보
	성과공유제확산(협력이익공유제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등	2021.10.06	정보화
		협력이익공유제 제도 인식개선 홍보 등	**2021.12.02**	홍보
	적합업종 보호 및 육성	성과홍보 추진 등	2021.05.13	홍보
		여비 등 감액 및 사업운영비 증액 등	**2021.12.01**	
	대중소기업동반진출	코로나 상황 악화로 과제기간 연장 및 필요예산 조정 등	**2021.12.14**	
2022 (10건)	기업간거래공정화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추진 등	2022.09.08	
		사업운영비 증액 및 실태조사 추진 등	**2022.11.11**	계속사업
		사업운영비 증액 및 시스템 구축 등	**2022.12.14**	정보화

1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도	내역사업명	변경사유	중기부 승인일자	비고
	동반성장기반구축(평가)	우수사례집 제작 등	2022.10.13	홍보
	동반성장기반구축(문화조성)	행사계획 변경 등	2022.10.27	
	상생누리운영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등	2022.07.05	정보화
	성과공유제확산(성과공유제확산)	연구용역 추진 등	**2022.11.28**	연구용역
	성과공유제확산(협력이익공유제운영)	국내출장비 및 행사비 등의 절감 예산을 시스템 고도화에 활용	**2022.11.28**	정보화
	소부장상생모델발굴	사업추진 여비 증액 등	**2022.12.08**	
	대중소기업동반진출	과제 추가지원 등	**2022.12.15**	
2023 (14건)	기업간거래공정화	홍보 및 행사추진 등	2023.05.23	홍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2023.09.04	계속사업
		약정체결 지원 연구회 운영예산 삭감 및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추진 등	**2023.11.16**	홍보
		실태조사 추진 등	**2023.12.05**	계속사업
		우수기업 홍보 및 실태조사 추진 등	**2024.02.13**	홍보
	동반성장기반구축(문화조성)	온라인 홍보 추진 등	**2023.12.11**	홍보
	상생누리운영	상생누리 플랫폼 기능 개선(서버 확대 등) 등	2023.08.08	정보화
		상생누리 기능개선 완료평가 등	**2023.11.03**	정보화
	성과공유제확산	우수사례집 제작 활용 등	**2023.12.05**	홍보
	자발적상생협력기업발굴	제도 홍보 등	2023.05.10	홍보
		사업방식 개편 등(상생볼→윈윈아너스)	**2023.11.06**	
	소부장상생모델발굴	상생모델 지원 등	2023.10.17	계속사업
		여비 부족분 반영	**2023.11.28**	
	적합업종 보호 및 육성	실태조사 추진 등	**2023.11.30**	계속사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이러한 보조금 예산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먼저, 동 세부사업이 추진하는 우수사례집 제작 및 행사, 각종 실태조사[122] 중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매년 수행되는 과업이 있음에도, 대·

121) 4차 산업혁명 경영환경 변화에 기술력과 전문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의 퇴직(예정) 인력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추진됨.

122)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적합업종 보호 및 육성 사업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예외적 확장 승인신청'(2023.11.23.)에 따라 신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유사한 사유로 매년 예산변경 신청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례적으로 이를 승인하고 있음.

또한, 상생누리운영, 성과공유제확산 등 여러 내역사업에서 변경집행 사유로 제시한 시스템 관련 기능개선 및 고도화의 경우 정보화 사업으로서 예산 편성 및 집행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되어야 하는 사업[123]임에도 매년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하고 있음.

이처럼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반복적·연례적 예산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가 부실하였음을 나타내므로 개선이 필요함.

둘째, 보조사업 예산변경 내역 중에는 연도 말인 11월 이후 예산변경을 통해 우수사례집 제작, 연구용역, 성과 및 제도 홍보 등의 내역으로 변경 집행한 경우(9건)도 있는데, 홍보비 등 경상경비나 연구용역의 연말 집행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지양해야 할 사항임[124].

셋째, 다음의 2023년 예산변경 상세내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사업비 집행 시점에 이르러 다수의 보조비

123) 동 사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보화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검토의견 (3)에서 후술).

124)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거나 연말에 사업예산의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연구용역의 신규발주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음(p9).

목 및 세목에서 다른 보조비목 및 세목으로 보조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의 예산 집행을 매년 반복[125]하고 있어, 보조금이 편의적·임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보조사업 예산변경 상세내역

(단위: 원)

<table>
<tr><th>내내역사업명</th><th colspan="2">변경내용 및 승인일자</th></tr>
<tr><td>기업간
거래공정화</td><td>2023.05.23. 승인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2">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243,100,000</td><td>271,600,000</td></tr><tr><td>공공요금및제세</td><td>2,800,000</td><td>4,300,000</td></tr><tr><td>민간이전</td><td>민간경상보조</td><td>150,000,000</td><td>120,000,000</td></tr></table>
2023.11.16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4">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251,782,468</td><td>269,215,837</td></tr><tr><td>공공요금및제세</td><td>4,300,000</td><td>2,512,801</td></tr><tr><td>임차료</td><td>45,400,000</td><td>49,637,000</td></tr><tr><td>일반용역비</td><td>236,800,000</td><td>249,300,000</td></tr><tr><td>민간이전</td><td>민간경상보조</td><td>60,000,000</td><td>17,000,000</td></tr><tr><td>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16,699,350</td><td>20,316,180</td></tr><tr><td>유형자산</td><td>자산취득비</td><td>0</td><td>7,000,000</td></tr></table>
2024.02.13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3">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322,215,837</td><td>294,065,337</td></tr><tr><td>임차료</td><td>49,637,000</td><td>52,954,000</td></tr><tr><td>일반용역비</td><td>197,300,000</td><td>215,308,000</td></tr><tr><td>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20,316,180</td><td>19,921,680</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146,818,182</td><td>154,038,182</td></tr></table></td><td>2023.09.04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3">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271,600,000</td><td>251,782,468</td></tr><tr><td>임차료</td><td>48,400,000</td><td>45,400,000</td></tr><tr><td>일반용역비</td><td>162,500,000</td><td>236,800,000</td></tr><tr><td>민간이전</td><td>민간경상보조</td><td>120,000,000</td><td>60,000,000</td></tr><tr><td>여비</td><td>국내여비</td><td>8,000,000</td><td>16,000,000</td></tr><tr><td>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11,000,000</td><td>16,699,350</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80,000,000</td><td>74,818,182</td></tr></table>
2023.12.05.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인건비</td><td>보수</td><td>995,000,000</td><td>928,000,000</td></tr><tr><td rowspan="3">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269,215,837</td><td>322,215,837</td></tr><tr><td>일반용역비</td><td>249,300,000</td><td>197,300,000</td></tr><tr><td>복리후생비</td><td>98,000,000</td><td>92,000,000</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74,818,182</td><td>146,818,182</td></tr></table></td></tr>
<tr><td>동반성장기
반구축
(문화조성)</td><td>2023.12.11.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3">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47,000,000</td><td>58,540,809</td></tr><tr><td>임차료</td><td>61,000,000</td><td>64,589,000</td></tr><tr><td>일반용역비</td><td>148,900,000</td><td>138,500,000</td></tr><tr><td>여비</td><td>국내여비</td><td>1,800,000</td><td>1,161,100</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45,000,000</td><td>40,909,091</td></tr></table></td><td></td></tr>
</table>

125) 동 재단 및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및 2022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방식의 예산변경을 신청 및 승인하였음.

<table>
<tr><th>내내역사업명</th><th colspan="2">변경내용 및 승인일자</th></tr>
<tr><td>상생누리
플랫폼운영</td><td>2023.08.08.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5">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8,750,000</td><td>7,699,465</td></tr><tr><td>공공요금및제세</td><td>1,450,000</td><td>690,320</td></tr><tr><td>특근매식비</td><td>600,000</td><td>1,100,000</td></tr><tr><td>임차료</td><td>30,550,000</td><td>29,160,215</td></tr><tr><td>일반용역비</td><td>7,200,000</td><td>9,900,000</td></tr><tr><td rowspan="2">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500,000</td><td>800,000</td></tr><tr><td>기관업무비</td><td>300,000</td><td>-</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54,300,000</td><td>44,300,000</td></tr><tr><td>유형자산</td><td>자산취득비</td><td>-</td><td>10,000,000</td></tr></table></td><td>2023.11.03.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3">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7,699,465</td><td>8,378,600</td></tr><tr><td>특근매식비</td><td>1,100,000</td><td>900,000</td></tr><tr><td>복리후생비</td><td>16,000,000</td><td>13,710,000</td></tr><tr><td>여비</td><td>국내여비</td><td>1,350,000</td><td>697,453</td></tr><tr><td rowspan="2">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800,000</td><td>973,412</td></tr><tr><td>기관업무비</td><td>-</td><td>-</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44,300,000</td><td>46,590,000</td></tr></table></td></tr>
<tr><td>성과공유제
확산</td><td>2023.12.05.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5">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39,258,000</td><td>39,375,350</td></tr><tr><td>공공요금및제세</td><td>6,524,000</td><td>6,439,351</td></tr><tr><td>특근매식비</td><td>3,000,000</td><td>2,024,000</td></tr><tr><td>임차료</td><td>24,680,000</td><td>25,102,800</td></tr><tr><td>기타운영비</td><td>2,400,000</td><td>2,399,960</td></tr><tr><td>여비</td><td>국내여비</td><td>5,000,000</td><td>4,288,243</td></tr><tr><td>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3,950,000</td><td>5,377,900</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93,000,000</td><td>92,804,396</td></tr></table></td><td></td></tr>
<tr><td>자발적
상생협력
기업발굴</td><td>2023.05.10.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인건비</td><td>보수</td><td>356,750,000</td><td>284,925,000</td></tr><tr><td rowspan="7">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49,375,000</td><td>306,300,000</td></tr><tr><td>공공요금및제세</td><td>3,000,000</td><td>3,000,000</td></tr><tr><td>특근매식비</td><td>1,500,000</td><td>1,200,000</td></tr><tr><td>임차료</td><td>54,500,000</td><td>37,000,000</td></tr><tr><td>복리후생비</td><td>35,675,000</td><td>28,500,000</td></tr><tr><td>일반용역비</td><td>190,000,000</td><td>30,000,000</td></tr><tr><td>업무추진비</td><td>기관업무비</td><td>3,780,000</td><td>3,655,000</td></tr></table></td><td>2023.11.06.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2">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306,300,000</td><td>302,300,000</td></tr><tr><td>임차료</td><td>37,000,000</td><td>36,000,000</td></tr><tr><td>여비</td><td>국내여비</td><td>2,000,000</td><td>6,000,000</td></tr><tr><td rowspan="2">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2,220,000</td><td>2,720,000</td></tr><tr><td>기관업무비</td><td>3,655,000</td><td>4,155,000</td></tr></table></td></tr>
<tr><td>소부장
상생모델
발굴</td><td>2023.10.17.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 rowspan="3">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42,924,000</td><td>25,614,000</td></tr><tr><td>임차료</td><td>15,120,000</td><td>16,530,000</td></tr><tr><td>일반용역비</td><td>16,000,000</td><td>33,900,000</td></tr><tr><td>여비</td><td>국내여비</td><td>3,000,000</td><td>4,000,000</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80,000,000</td><td>77,000,000</td></tr></table></td><td>2023.11.28.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여비</td><td>국내여비</td><td>4,000,000</td><td>4,500,000</td></tr><tr><td>업무추진비</td><td>사업추진비</td><td>2,400,000</td><td>1,900,000</td></tr></table></td></tr>
<tr><td>적합업종
보호 및 육성</td><td>2023.11.30. 예산전용
<table><tr><th>보조비목</th><th>보조세목</th><th>변경전</th><th>변경후</th></tr><tr><td>운영비</td><td>일반수용비</td><td>394,350,000</td><td>377,350,000</td></tr><tr><td rowspan="2">여비</td><td>국내여비</td><td>30,000,000</td><td>26,000,000</td></tr><tr><td>국외여비</td><td>12,000,000</td><td>6,204,000</td></tr><tr><td>연구용역비</td><td>연구용역비</td><td>1,400,000,000</td><td>1,426,796,000</td></tr></table></td><td></td></tr>
</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기업간거래공정화 사업 등의 2023년 보조비목별 예산변경 증감현황 사례를 살펴보면, 이전 차수에서 감액했던 보조비목을 다음 차수에서 다시 증액하거나 증액했던 비목을 다음 차수에서 다시 감액하는 등 같은 비목을 대상으로 증액 및 감액을 반복한 경우가 있음. 특정사업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보조비목 예산을 변경·취합하여 끌어모으기식 집행을 한 것으로 보임.

2023년 보조비목 예산변경 증감현황 사례

(단위: 천원)

내내역사업명	비목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4차 변경	5차 변경
기업간거래 공정화	운영비	30,000	51,482	32,383	△5,000	△6,825
	업무추진비	5,699	3,617	△395	-	-
	연구용역비	△5,182	72,000	7,220	-	-
	유형자산	7,000	-	-	-	-
	민간이전	△30,000	△60,000	△43,000	-	-
상생누리운영	연구용역비	△10,000	2,290	-	-	-
자발적 상생 협력기업발굴	운영비	71,950	△5,000	-	-	-
	업무추진비	△125	1,000	-	-	-

주: 승인날짜와 별개로 변경 차수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또한, 다른 비목에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을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126]하고 있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의 취지는 업무추진비 임의 증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위함인데, 동 재단의 빈번한 예산변경 내역 중에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증액

126)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별첨>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p236)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편의적·임의적 집행은 동 재단이 당초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시점의 사정에 따라 빈번한 예산변경을 추진함에 기인한 것으로, 부적절한 집행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상황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이를 연례적으로 단순 승인함으로써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실제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산변경 신청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공문상으로는 예산변경 당시 비목별 실제 집행잔액 현황, 변경될 비목의 향후 집행계획 금액 등에 대한 보고 및 검토 내용이 없어[127] 보조금 예산변경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128].

앞서 언급된 반복적·연례적이거나 빈번한 예산변경 등은 보조금이

구 분	목 (25개)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기획재정부 협의)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230목, 240목, 250-03목(특정업무경비), 210-12목(복리후생비)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주요사업비 내 210-08목(유류비)에서 타 비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20	(여비)		
	230	(특수활동비)		
	240	(업무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260	(연구용역비)		

127) 보조비목·보조세목이나 사업별로 변경 전(당초) 예산 및 변경 후 예산의 비교내역만 표기되어 있음.

128) 동 재단이 사업기간 종료 후 제출한 정산보고서(2024. 4)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대다수의 내역사업별 집행률이 100%로 보고되었는데, 빈번한 예산변경 및 잔액 끌어모으기식 집행을 통해 집행률은 제고된 측면이 있어 보이나, 그 집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는 의문이 있음.

<2023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예산집행내역(총괄)>

(단위: 원)

예산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통제를 어렵게 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함.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129]으로 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구 분	예산(A)	집행액(B)	잔액	집행률 (C=B/A)
1. 상생거래 환경 조성	4,238,000,000	3,892,254,013	345,745,987	91.8
① 기업간 거래공정화	1,808,000,000	1,807,017,940	982,060	99.9
② 상생결제제도 운영	2,430,000,000	2,085,236,073	344,763,927	85.8
2. 동반성장 문화조성	4,993,000,000	4,991,994,143	1,005,857	100
① 동반성장기반구축(문화조성)	445,000,000	445,000,000	-	100
② 동반성장기반구축(평가)	1,537,000,000	1,535,994,143	1,005,857	99.9
③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335,000,000	335,000,000	-	100
④ 상생협력기금 운영	283,000,000	283,000,000	-	100
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	1,193,000,000	1,193,000,000	-	100
⑥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1,200,000,000	1,200,000,000	-	100
3. 대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구축	2,787,000,000	2,749,000,138	37,999,862	98.6
① 성과공유제 확산	696,000,000	696,000,000	-	100
② 협력이익공유제	540,000,000	513,228,820	26,771,180	95.0
③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확산	700,000,000	700,000,000	0	100
④ 소·부·장 상생모델 발굴	350,000,000	339,816,318	10,183,682	97.1
⑤ 혁신파트너십 지원	501,000,000	499,955,000	1,045,000	99.8
4.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3,333,850,000	3,333,833,132	16,868	100
① 적합업종 보호·육성	3,333,850,000	3,333,833,132	16,868	100
합 계	15,351,850,000	14,967,081,426	384,768,574	97.5

12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법령의 취지는 보조사업자가 교부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의 예산변경은 제한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 부득이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비의 예상 소요액과 변경하려는 보조비목의 집행잔액 및 이후 집행예정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보조금 예산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초 보조사업 계획과 변경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필요가 있고, 연말 불요불급한 예산변경이나 다수의 보조비목 예산 취합·변경을 통한 편의적·임의적 집행을 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조금 예산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비를 기관운영비로 집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130]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이나 동반성장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음. 각 운영비는 내역사업인 '동반성장문화조성'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2023년에는 각각 11억 9,300만원, 12억원이 집행되었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동반성장위 운영 사업의 2023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편성내용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운영	1,193	1,193	인건비 : 16명×62.5백만원=1,000백만원 운영비 : 193백만원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1,200	1,200	인건비 : 1,001백만원 운영비 : 199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자에게 사업비와 별도로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중복·낭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업비와 운영비를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부적절함.

13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런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보조금 지출내역 중 각 내역사업별 보조사업비(특정사업 수행 목적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서, 이하 “사업비”라 함)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 및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예산(두 내역사업 예산을 이하 “운영예산”이라 함)을 혼용하여 지출하는 등 사업비를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됨.

다음의 표를 보면, 기관 근조기 사용비용, 관리비 등이 기업간거래공정화, 상생누리플랫폼운영 등의 여러 사업비에서 월별로 혼용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 외에도 정수기·세정기 임대, 사무실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경비가 각 내역사업별 사업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장기간[131] 집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사업비와 운영비 간 혼용 지출 사례

(단위: 원)

내역사업명	지출일자	보조비목	지출내용	금액
기업간거래공정화	2023.02.09	운영비	23년 2월 관리비 지급(7층)	5,000,000
재단 운영	2023.02.09	운영비	23년 2월 관리비 지급(20층)	15,546,440
재단 운영	2023.02.09	운영비	23년 2월 관리비 지급(7층)	27,107,587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2023.02.09	운영비	23년 2월 관리비 지급(20층)	7,897,941
재단 운영	2023.02.15	운영비	23년 2월 관리비 지급(7층 추가)	2,784,316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2023.03.08	운영비	23년 3월 관리비 지급(20층)	23,428,601
상생누리플랫폼운영	2023.05.02	운영비	23년 5월 관리비 지급(7층)	2,437,700
상생누리플랫폼운영	2023.06.01	운영비	2023년 5월 청소관리 분리수거비용	660,000

131) 2020년 보조금 지출내역에서도 관리비, 청소관리비 등 경비가 기업간거래공정화, 성과공유제 확산 등 내역사업에서 집행된 사례가 다수 발견됨.

내역사업명	지출일자	보조비목	지출내용	금액
성과공유제 확산	2023.06.07	운영비	기관 근조기 사용비용 지급	104,639
협력이익공유제	2023.06.07	운영비	기관 근조기 사용비용 지급	50,000
동반성장위 운영	2023.07.03	운영비	23년 7월 관리비 지급(20층)	5,691,243
성과공유제 확산	2023.08.01	운영비	23년 8월 관리비 지급(7층)	6,284,095
적합업종보호육성	2023.08.01	운영비	23년 8월 관리비 지급(20층)	23,455,461
적합업종보호육성	2023.09.01	운영비	23년 9월 관리비 지급(20층)	23,457,981
소부장 상생모델 발굴	2023.09.04	운영비	23년 8월 청소관리 분리수거비용	660,000
성과공유제 확산	2023.10.04	운영비	23년 9월 청소관리 분리수거비용	660,000
동반성장기반구축(평가)	2023.10.05	운영비	23년 10월 관리비 지급(20층)	1,577,800
기업간거래공정화	2023.11.03	운영비	23년10월 청소관리 분리수거비용	660,000
적합업종보호 육성	2023.12.06	운영비	23년11월 청소관리 분리수거비용	330,000
동반성장기반구축	2023.12.06	운영비	23년 12월 관리비 지급(20층)	9,676,100
적합업종보호 육성	2023.12.20	운영비	23년 12월 청소관리 분리수거비용	330,000

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관운영비성 경비를 집행하면서, 기관 자체수입, 사업비 및 운영예산에서 재원별로 혼용하여 지출하였으며, 월별 지출비용 중 누락된 달은 기관 자체수입에서 지출된 경우에 해당함.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재단은 일반 사업수행 목적의 보조금과 별도로 운영비 목적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사업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중복·낭비 지출로 인한 비효율을 유발할 뿐 아니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132]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13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사업비와 운영예산을 구분하여 사업비에서 기관운영비 성격의 지출이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편성 절차 미준수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미반영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임[133].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 정보화 관련 법령[134]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이 정보화 사업으로 적용됨.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135]. 중앙행정

13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4. (생략)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3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13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관의 장이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은 이를 점검·분석한 후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함[136].

정보화사업의 예산안 편성절차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정보화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향후 5년까지의 연차별·항목별 투자소요(총사업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137].

이러한 정보화 관련 법령 및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는 정보화 사업이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과도한 유지·보수비가 소요될 우려가 있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초기 계획단계부터 총 소요비용 등을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36) 정부는 2016년 12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0년 12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시행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부터 시행, 환류에 이르기까지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음.

137)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3

그런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축·유지 중인 대부분의 시스템 및 플랫폼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ISP 수립 완료[138]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시스템 등의 구축에 대한 ISP를 추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 소요예산에 대한 점검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 편성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139].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플랫폼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구분	시스템명	구축 연도	2023년 집행액	집행내용
상생거래 환경조성	기업간거래 공정화	상생결제제도 운영	상생결제 종합포털 (www.winwinpay.or.kr)	2020	113	시스템 유지보수
		기업간거래공정화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 (smes.go.kr/pis)	2023	44	시스템 고도화

138)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3-44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BPR 및 ISP 또는 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BPR : 업무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ISP :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MP: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139)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기술혁신기반조성(2131-302) 사업에서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www.ultrai.go.kr)를 구축·운영 중이나, 마찬가지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구분	시스템명	구축 연도	2023년 집행액	집행내용
동반성장 문화조성	동반성장 기반구축	상생누리플랫폼 운영	상생누리 (www.winwinnuri.or.kr)	2016	109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동반성장기반구축 (평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스템 (http://index.win-win.or.kr)	2017	45	대기업 평가 온라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동반성장기반구축 (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관리시스템 (https://www.winwinnuri.or.kr/ev/publicIntroduce.do)	2020	29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관리 온라인 체계 유지보수 및 고도화
	동반성장 기반구축 (문화조성)	동반성장주간운영 시스템	동반성장주간 운영시스템 (https://award.win-win.or.kr)	2018	5	시스템 유지보수
대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구축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 확산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	2012	85	시스템 유지보수 및 효율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이후 구축된 상생결제 종합포털,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관리시스템 및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스템 유지관리비의 경우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여 예산안 편성시 별도 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140]에도 구축

140)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51

(3) 시스템 유지관리비
○ HW 및 상용SW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대상품목 현황」을 작성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 HW 유지관리비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 상용 SW 유지관리비
-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토록 하되,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참고하여 적정 예산 반영 가능
○ 공개 SW 유지관리비
- 공개SW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필요한 서비스 수준 및 항목을 고려, 견적 등을 통해 정액제로 예산을 편성하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를 참고
○ 개발 SW 유지관리비
- 응용 SW 개발완료 후 1년간은 결함에 의한 무상 하자보수기간으로 하고, 대폭적인 기능변경 및 사용방법 개선 등 통상적인 하자보수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 유지관리를 지양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부터 곧바로 유지·보수비용이 편성 및 지출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시스템 등은 정보화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 편성·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예산안 편성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수년간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2020년 이후 구축된 시스템 등 관련 예산 소요내역

(단위: 원)

시스템명	2020	2021	2022	2023	합계
상생결제 종합포털	(구축) 550,675,230	(구축) 77,500,000 (유지보수) 71,908,292	(유지보수) 86,500,000	(유지보수) 112,558,800	898,142,23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28,000,000	(유지보수) 10,000,000	(유지보수) 10,000,000	(고도화/유지보수) 28,600,000	76,600,000
납품대금연동제 누리집	-	-	(구축) 19,900,000	(고도화/유지보수) 42,900,000	62,80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 등을 조사 및 검토하여 부적절한 집행이나 예산 낭비 요소가 없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시스템 등이 정보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실행계획에 포함시켜 정보화사업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및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141].

141)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특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내에

(4)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요재산 보고 장기 미이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04년부터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동반성장문화조성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총괄지원본부로 지정되었음. 동 재단은 동반성장생태계 구축 내 대부분의 사업과 소상공인성장지원,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지원, 기술혁신기반조성 사업 등에 대한 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수행자로서, 2023년의 경우 총 382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3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수행 보조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내내역사업명	시작연도	예산액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상생거래환경조성	기업간거래공정화	2006	1,808
		상생결제제도운영	2015	2,430
	동반성장문화조성	동반성장기반구축(평가)	2009	1,537
		동반성장기반구축(문화조성)	2011	44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	2004	1,193
		동반성장위원회운영	2021	1,200
		상생누리운영	2015	335
		상생기금운영	2011	283
	대중소기업혁신기반 구축	성과공유제확산	2011	696
		협력이익공유제운영	2018	540
		자발적상생협력기업발굴확산	2021	700
		소부장상생모델발굴지원	2021	350
		혁신파트너십지원	2011	501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및육성	2004	3,334
소상공인성장지원	업종별경쟁력강화	업종별경쟁력강화	2015	1,620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진출지원	대중소기업동반성장진출지원	2014	16,879
기술혁신기반조성	기술탈취근절	기술탈취근절	2019	4,389
합 계				38,2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미반영되었으나, 향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그런데 동 재단은 보조사업 수행 이후 현재까지 중요재산 취득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142],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요재산의 관리, 공시 및 재산처분 승인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14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144]에 따르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요재산 취

142) 동 재단은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변동 등 보고 현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bojo.do)에도 중요재산으로 등록 및 공시된 내역이 전무하였음(2024. 5. 기준).

143)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98, 99

<민간보조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정·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 소유권 귀속 주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1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

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현황을 보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중요재산은 부동산, 선박 등부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만원 이하의 내구성재산까지 포함될 수 있는데, 동 재단의 보조금 지출내역 중에는 중요재산 등록 및 관리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있음[145].

2023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설비 등 사례

(단위: 원)

내내역사업명	일자	건명	금액
상생누리운영	2023/12/18	상생누리 웹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위한 스토리지 도입 계약 비용 지급	10,000,000
기업간거래공정화	2023/12/20	재단 회의용 음향시스템 교체	7,000,000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더구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15년 이후 재물조사[146] 미

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 내구성재산은 포함하여야 한다.

145) 보조금통합포털의 중요재산공시목록에는 회의실 음향시설, 영상장치, 스토리지 등 다양한 재산이 등록되어 있음.

146) 「고정자산 관리요령」(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자체지침)

실시, 자산관리대장 미작성 등 자산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자체 종합감사 결과(2023. 11)에서 '기관주의'를 받은 바 있음[147]. 장기적인 자산관리 부실은 사무실 이전[148] 등의 상황에서 중요재산의 분실, 파손 등이 있어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요재산 현황 등의 관리·점검을 조속히 수행하여 국고 손실 및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및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 관계법령이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변동보고, 중앙관서장의 중요재산 공시의무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예산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149],

---

제18조(재물조사) ① 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 재물조사는 자산관리책임자에 의하여 회계년도말의 자산대장에 의한 <별표 제3호>의 재물조사서를 작성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인식표<별표 제4호>를 부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취급책임자는 재물조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시 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취급책임자의 교체시 재물조사가 필요하다고 관리책임자가 판단하였을 때
2. 도난, 분실이 있을 때
3. 천재지변이 있을 때
4. 기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4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2023년 11~12월 실시한 비품자산 재물조사 결과, 총 2,435개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재단은 파손된 재물(의자, 서랍장)의 경우 내용연수를 감안하여 향후 불용처리하거나 수리하겠다는 설명임. 그러나 이는 자체 재물조사에 해당할 뿐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동 재단은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별도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음.

148)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2년 2월 서울 구로에서 충무로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14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중요재산가액의 변동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요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내역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할 필요가 있음[150]. 아울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 재단이 중요재산 취득보고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소관 부처로서 중요재산의 관리, 공시 및 재산처분 승인 등의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3. 담보의 제공

150)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상반기 보조사업 집행점검(4.25~4.26)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근 중요재산 등록 및 공시를 완료(총 11건, 96백만원, 8.16)하였다고 설명함.

14. 여성기업육성(4234-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여성기업육성’(1999~, 보조)은 여성 창업자 등 여성 경제인에게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여성 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판로·수출·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151]으로,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민간보조 예산지원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101억 500만원 전액을 집행(보조)하였음.

2023년도 여성기업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여성기업육성	10,105	10,105	-	-	-	10,105	10,105	-	-	10,485
여성창업지원	3,956	3,956	-	-	-	3,956	3,956	-	-	3,956
여성기업판로지원	2,892	2,892	-	-	-	2,892	2,892	-	-	2,572
여성기업인력지원	2,513	2,513	-	-	-	2,513	2,513	-	-	3,213
미래여성인재육성	887	887	-	-	-	887	887	-	-	1,657
조사연구 등	744	744	-	-	-	744	744	-	-	744

15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 검토의견

(1) 미래여성인재육성: 사업계획 철저 및 서비스 제공체계 점검

‘여성기업인력지원’ 내역사업 중 ‘미래여성인재육성’ 내내역사업은 여성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에 대하여 경영 현장실습, 여성CEO 멘토링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며 여성 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려는 2023년도 신규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인 8억 8,700만원을 보조사업자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교부받은 예산을 전액 실집행하였음.

2023년도 미래여성인재육성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미래여성 인재육성	887	887	887	-	887	887	-	-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여성인재육성 사업수행체계

참여학교 모집공고 및 모집	➡	참여학교 선정	➡	프로그램 시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152]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당시와는 달리 실제 사업추진단계(2023년 1월)에 이르러 지원 대상을 여성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여자대학교 재학생까지로 확대하고, 사업 목적(지원 목적)을 미래여성인재 육성에서 미래여성경제인 육성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다른 내역사업과의 예산 조정을 통해 '미래여성인재육성' 예산을 당초 8억 8,700만원에서 9억 1,730만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내용을 당초 계획한 학교·기업 공동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에서 여성CEO 특강 등으로 축소·변경하였음.

미래여성인재육성 사업내용 변경 비교표

구분	예산편성당시	사업추진
지원 대상	·여성 특성화고 재학생	·여성 특성화고 재학생 ·여자대학교 재학생
지원 목적	·미래여성인재 육성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사업 내용	·학교/기업 공동교육커리큘럼 개발 ·경영현장실습 등 맞춤형교육실시 ·여성CEO 멘토링 운영	·경제인 특강 ·경영현장실습 등 맞춤형교육실시 ·여성CEO 멘토링 운영
예산액	8억 8,700만원	9억 1,730만원
예산산출내역 (집행내역)	·총 30개 여성 특성화고 지원 -학교당 운영비 월350만원(6개월) -멘토링 운영비 150만원 -현장실습 운영비 200만원 ·보조사업자 운영비 1억 5,200만원	·2개 여대, 14개 여성 특성화고 지원 -학교당 운영비: 300만원(고교), 2,500만원(대학) 등 총 9,400만원 ·보조사업자 운영비 8억 2,33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출자료를 재정리

15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처럼 실제 사업추진단계(2023년 1월)에 이르러 지원 대상 및 지원 목적, 예산액,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변경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단계에 이르러 국회에서 심사한 사업 내역과 다른 집행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사업추진은 집행의 투명성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함. 특히, 지원 대상, 사업 목적 및 예산액의 경우 사업의 중추적인 요소로서 사업 추진 단계에 이르러 이를 변경한 것은 부적절함[153].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이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사업추진단계에 이르러 보조사업의 중추적인 사항이 변경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한편, ‘미래여성인재육성’ 내내역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제 사업추진단계(2023년 1월)에 이르러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는바, 국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변경된 사업내용이 기존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비효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지 혹은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153)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지원 대상, 지원 목적 및 예산액 변경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여성 특성화고 재학생, 여자대학교 대학생만 포함하고 일반 여자고등학교 재학생, 남녀공학 고등학교나 일반대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원하는 '청소년비즈쿨'[15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교육이 필요한 대학·공공·민간 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창업기본·창업준비 등 창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에듀 지원사업'[155] 등 경제인 육성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경제인협회에 사업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미래여성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 수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지원사업과 통합하거나 하나의 지원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 조사연구: 근거법률에 부합한 사업추진방식으로의 변경 필요

'조사연구' 내역사업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여성기업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통계조사(여성기업 실태조사)

---

154) ○ 청소년 비즈쿨 지원내용
- (비즈쿨 학교 운영) 청소년과 밀접한 공간인 학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등을 지원
- (체험활동 운영) 초·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체험형 프로그램 및 캠프, 비즈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 실무지식 습득
- (기업가정신 교육지원) 담당교사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지원, 기업가정신 관련 교재·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비즈쿨 운영학교에 보급

155) ○ 창업에듀 지원사업 내용
- (온라인 강좌)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창업 관련 이론 및 실무,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핵심 위주로 구성하여 15분 내외의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강좌'를 제공
- (패키지 과정) 창업교육이 필요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설해주고, 학습자의 교육 이수조건 충족 시 수료증 발급 등을 지원
- (맞춤형 서비스) 창업역량 자가진단 기능, 맞춤 강좌 추천 기능 등을 지원

와 정책연구의 수행 및 여성기업 관련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망 운영 등을 지원[156]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보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인 7억 7,400만원 전액을 보조하였음. 보조사업자인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교부받은 예산을 전액 실집행하였음.

2023년도 조사연구 내역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조사연구	774	774	774	-	774	774	-	-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동 내역사업에서 지원하는 여성기업 실태조사, 여성기업 정책분석,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 근거 법률에서는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의 주체를 모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명시하고 있음.

---

15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관계 자료를 참고하여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 사무를 국가에서 보조하는 민간보조사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157]에 보조하고 있어 사업수행체계 내지는 지원형식이 적절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음.

조사연구 내역사업 사업수행체계

□ 여성기업 실태조사 내내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	조사 진행 및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	➡	통계 공표
센터		센터		센터→중기부		센터

* 국가승인통계로 KOSIS 등 통계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적재 및 공표

□ 여성기업 정책분석 내내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	연구 수행	➡	결과보고	➡	보고서 발간
센터		센터		센터→중기부		센터

□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내내역사업

세부계획 수립	➡	유지보수 용역계약	➡	사업수행
센터		센터		센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158]임.

---

15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서도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등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 →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159].

이러한 민간보조사업의 개념 및 특징을 고려할 때 국가사무의 경우 관련 예산을 민간에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다만, 효율적·전문적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전문기관(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기관에 “민간위탁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동 내역사업을 현재와 같이 민간경상보조(320-01목) 방식이 아닌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는 등 그 지원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9)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2, 2023. 5.

15. 장애인기업 육성(4234-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장애인기업 육성’(2007～, 보조)은 장애인 창업지원과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전환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은 103억 4,7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00억 8,100만원임. 동 사업은 ‘센터운영’,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장애인 창업육성’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장애인기업 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장애인기업 육성	10,347	10,347	-	-	-	10,347	10,347 [10,081]	-	-	10,517
센터운영	4,083	4,083	-	-	-	4,083	4,083 [3,820]	-	-	4,253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3,095	3,095	-	-	-	3,095	3,095 [3,092]	-	-	3,095
장애인 창업육성	3,169	3,169	-	-	-	3,169	3,169 [3,169]	-	-	3,169

□ 검토의견

(1) 내(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방식 및 비목 변경 검토 필요

‘장애인기업 육성’ 세부사업 예산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어 있으며, 피보조기관(사업시행주체)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임.

장애인기업 육성 사업 현황(2023회계연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 장애인기업 육성	10,347	10,082	97.4
① 장애인 창업육성	3,169	3,169	100.0
- 장애인 맞춤형창업교육	674	674	100.0
- 창업사업화지원	1,240	1,240	100.0
-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55	55	100.0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1,200	1,200	100.0
②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3,095	3,092	99.9
- 수출역량강화	552	552	100.0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132	132	100.0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420	420	100.0
- 기술사업화	1,109	1,109	100.0
· 시제품 제작지원	709	702	99.0
·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400	407	101.8
- 공공구매촉진 및 인식개선	1,014	1,011	99.7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50	150	100.0
· 판로지원시스템	104	104	100.0
· MAS컨설팅 및 등록	130	130	100.0
· 전국장애경제인대회	120	120	100.0
· 공공구매 제도운영(장애인기업 확인)	414	411	99.3
·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96	96	100.0
- 장애인기업정책조사연구	420	420	100.0
③ 센터 운영	4,083	3,820	93.6
- 지역센터 운영	798	798	100.0
- 센터 인건비, 관서운영비	2,800	2,544	90.9
- 센터 관서운영비	190	183	96.3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295	295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60]은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운영 업무, 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및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업무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161].

---

16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6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162].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설치·운영',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현재 민간보조의 형식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는 국가의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수행함이 적절하다고 보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민간보조 사업을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인 경우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여 요구하도록 적시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방식 및 비목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6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 예산 집행

‘장애인기업 성장기반 구축’ 내역사업 중 ‘공공구매제도 운영’ 내내역사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6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장애인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1,400만원임.

그런데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수행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장실사비[164] 내역에서 2022년 12월 실시한 현장조사에 대한 현장실사비를 2023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

---

16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164)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
제26조(설치)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위한 전문평가위원단을 확인기관의 16개 지역센터에 둔다.
제31조(수당지급 등) 위원의 수당지급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확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및 실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은 실사 당 70,000원(위원 여비 20,000원, 실사비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일 명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번이 동일한 건물 내에 2개 이상 소재할 경우 실사 수당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2. 지번이 동일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대표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실사할 경우는 여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실사비는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3. 제15조(조사의 불응) 제1항의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에게 실사비를 제외한 여비만 최대 2회 지급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장애인기업 확인 현장실사비 집행사례

(단위: 원)

연번	구분	보조비목	지출일자	지출건명	지출액
1	공공구매 촉진	일반수용비 (210-01)	2023.02.02.	공공구매(강원)22년 12월 실사비	840,000
2			2023.02.02.	지출-공공구매제도 ('22년12월분장애인기업현장실사비용, 5건)	350,000
3			2023.02.02.	지출-공공구매(충북)- 22년 12월 현장실사비(6건)	420,000
4			2023.02.02.	지출-공공구매제도 ('22년12월분 장애인기업확인실사비)	1,190,000
5			2023.02.02.	지출결의서:공공(경남)-12월 실사비	1,120,000
6			2023.02.08.	서울-12월 실사비(박영숙 외 8인)	3,150,000
7			2023.02.08.	인천-12월 현장실사비(김현구 외 1인)	910,000
8			2023.02.13.	공공 12월 현장실사비(경기)	4,900,000
9			2023.02.13.	지출-공공구매(경북)_ 12월 현장실사비 지급(19건)	1,260,000
10			2023.02.13.	전남-2022년 12월 현장실사비 12/31	1,400,000
11			2023.02.13.	광주-장애인기업 확인 현장실사비(12월)	420,000
12			2023.03.03.	지출_공공구매(대전)_ 12월 현장실사비(20건)	1,400,000
13			2023.03.03.	지출_공공구매(충남)_ 12월 현장실사비(18건)	1,260,000
14			2023.03.08.	지출_공공구매(전북)_12월 현장실사비(6건)	420,000
합계					19,04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말에 발생한 장애인기업 확인 현장실사비 집행 소요를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관계로 2023년 초에 2023년 보조금 예산으로 지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집행 방식은 「국가재정법」[165]에서 명시하고 있는 ‘회계연

165)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국가재정법」[166]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167]은 예산 및 보조사업비의 이월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2년 말에 발생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지 않고 2023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바, 이러한 집행방식은 국회가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 추진을 우회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166)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6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참고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2024년 보조금 예산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3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되었어야 하는 장애인기업 확인 현장실사비를 2024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는바, 이와 같은 보조금 예산 집행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168].

따라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금 예산 집행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168)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한 결과, 2023년부터 2024년 5월말까지 중 회계연도가 불일치하는 보조금 예산 집행내역이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음.

(단위: 원)

원인행위 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구분	항목	금액
2022년	2023년	공공구매촉진	현장실사비	20,510,000
2023년	2024년	공공구매촉진	현장실사비	9,73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6. 마케팅지원사업(4835-305)

□ 사업 및 결산 개요

‘마케팅지원사업’(1996~, 보조)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다양한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공동 A/S 시스템을 제공하며,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판촉행사를 추진하는 것임. 동 사업은 ‘유통망진출지원’, ‘공동A/S지원’, ‘대한민국 동행세일’ 및 ‘판로혁신지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예산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보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인 262억 4,800만원 중 26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마케팅지원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마케팅지원사업	26,248	26,248	-	-	-	26,248	26,241	-	7	26,677
유통망진출지원	12,568	12,568	-	-	-	12,568	12,561	-	7	16,570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2,658	2,658	-	-	-	2,658	2,658	-	-	3,894
공동A/S지원	6,230	6,230	-	-	-	6,230	6,230	-	-	5,607
대한민국 동행세일	4,500	4,500	-	-	-	4,500	4,500	-	-	4,500
판로혁신지원	2,950	2,950	-	-	-	2,950	2,950	-	-	2,950

□ 검토의견

(1)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 회계연도말 수익금 집행계획 변경

‘유통망진출지원’ 내역사업 중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 내내역사업은 중소기업 유통경로 확대를 위해 상권이 우수한 공공·상업시설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169]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 예산을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보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말 기준 인천공항 면세점 등 7개 전용판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2023년말 기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현황

구 분	위 치	개점일	규모	우수상품
면세점 (인천공항 출국장)	T1 동편 동측 P5-37, 38	’21.11.	351㎡ (108평)	목베개, 간편식, 마스크팩
	T1 서편 서측 P5-76		75㎡ (23평)	
	T2 동편 동측 25-203		84㎡ (25평)	
면세점 (인천공항 입국장)	경복궁 면세점	’22.4.	20㎡ (6평)	
현대백화점	판교점	’16.11.	43㎡ (13평)	욕실용품, 가방, 의류
KTX 부산역	부산역 2층 맞이방	’13.2.	42㎡ (13평)	악세사리, 가방, 모자
행복한백화점	서울 목동	’11.3.	990㎡ (300평)	식품, 패션잡화, 디지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26억 5,800만원 전액을 중소

169)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판판샵, 판판면세점)을 통해 창업 및 혁신기업이 생산한 혁신제품의 시장검증과 유통망 연계지원

기업유통센터에 보조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교부받은 예산을 전액 실집행 하였음.

2023년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 내내역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중소기업유통센터)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운영	2,658	2,658	2,658	-	2,658	2,658	-	-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 운영 과정에서는 수익금[170]이 발생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러한 보조사업 수익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함. 2023년도 보조사업 수익금 재투자액은 동 사업 예산액을 초과한 29억 1,700만원에 달하는 등 예산외로 운영되는 지출 규모가 적지 않음.

최근 6년간 보조사업 수익금 발생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조사업 수익금	23	46	13	34	1,369	1,907
재투자액(집행액)	**23**	**-**	**13**	**-**	**339**	**2,917**
이월액	-	-	-	34	1,064	-
집행잔액(국고반환)	-	46	-	-	-	5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70) 중소기업제품전용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은 입점비 등 별도의 비용 없이 매출액에 대한 정률 수수료(23%)를 부담함. 그런데 면세점 및 현대백화점 판교 매장의 경우, 해당 유통사(인천공항공사, 현대백화점)가 정책적으로 영업수수료를 정책매장의 정률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함에 따라 수수료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회계연도 말인 2023년 12월 28일 국고에 반납되어야 할 수익금 집행잔액을 보조사업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금 집행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변경승인을 근거로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쇼핑백 구매·제작”(2024년 1월 대금지급[171])과 같은 불요불급한 소모품 지출 등에 수익금 집행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됨.

2023회계연도를 도과한 보조사업 수익금 지출내역

(단위: 천원)

지출일자	건명	금액
’24/01/10	23년 12월 파견용역비	9,331
’24/01/10	23년 12월 파견용역비 5명	15,853
’24/01/10	23년 12월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종이 쇼핑봉투 제작	199,760
’24/01/10	23년 12월 정책매장운영팀 근무자 통행료 지원비	22
’24/01/10	23년 12월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T2임시매장 인테리어 집기 제작	49,985
’24/01/10	23년 12월 인천공항 면세점 T2임시매장 CCTV 구축 및 철거대금	14,036
’24/01/17	23년 12월 9차 정책매장 상품선정위원회 수당	300
’24/01/17	23년 12월 9차 정책매장 상품선정위원회 수당	300
’24/01/17	23년 12월 9차 정책매장 상품선정위원회 수당	300
’24/01/17	23년 12월 9차 정책매장 상품선정위원회 수당	300
’24/01/23	23년 12월 면세점운영팀 업무용 차량 하이패스 충전비용	100
’24/01/23	23년 건강기능식품 기존영업자 법정 교육 이수	20
’24/01/23	23년 12월 정책매장운영팀 업무용 차량 전기차 충전비(11월분)	15
’24/01/25	23년 12월 면세점 환경 미화 용역비	830
’24/01/25	23년 12월 인천공항 전기 시설물 관리 점검 용역비	800
’24/01/25	23년 12월 인천공항 면세점 POS 임차료	2,850
’24/01/25	23년 12월 면세점 물류창고 냉온풍기 임차용역비	695
’24/01/25	23년 12월 정책매장운영팀 업무용 차량 장기대여료	680
’24/01/25	23년 12월 인천공항 면세점 클라우드 서비스료	13,084
’24/01/25	23년 12월 인천공항 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비	28,200

자료: 중소기업유통센터

171) 2023년 12월 28일 수의계약 체결(계약기간: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2월 15일, 계약금액 219,736천원), 2024년 1월 10일 199,760천원 집행

2023년도 중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쇼핑백 구매·제작”을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발주·체결한 계약내역을 살펴보면, 국고에 반납되어야 할 수익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한 2023년 12월 28일 체결계약은 그 규모가 이전 계약의 규모를 두 배 이상 넘어서는 등 이례적임.

2023년도 중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쇼핑백 제작 수의계약 체결 내역

(단위: 천원)

계약명	계약개요			계약상대자 (업체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쇼핑백 제작	20230502	20230502~20230620	69,520	한걸음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쇼핑백 제작	20230831	20230831~20231031	99,165	행복한나무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쇼핑백 제작	**20231228**	**20231228~20240215**	**219,736**	**한걸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이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관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국회는 2022년도 결산심사시 동 사업(‘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운영’) 관련 보조사업 수익금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익금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받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시정요구(시정요구유형: 주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에도 보조사업 수익금 집행잔액 전액을 국고로 반환받지 않은 채 회계연도말에 이르러 수익금 집행잔액의 추가적인 집행을 허용하였고, 실제 다음연도(2024년 1월 등)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등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것과 유사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임.

둘째, 「국가재정법」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면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규정[172]하고 있는바, 2023년도 사업비로 2024년도분 소모품 비용을 지출[173]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집행방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셋째,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보조금 예산보다 더 큰 규모의 수익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 사업에서 회계연도를 초과한 비용 집행을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및 재정당국의 통제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낭비적 지출 발생을 방지하기 어렵게 함. 이에 발생되는 수익금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사전에 국회에 보고된 범위 내에서만 수익금 집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 시정논의가 필요함.

요약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계연도 말에 이르러 보조사업 수익금 집행잔액 관련 추가지출을 승인하는 등 국고금 반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국가재정법」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지출을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172)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73)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납품받은 쇼핑백의 경우 2024년도분으로 제작주문을 했다는 입장임.

이와 함께 국회, 재정당국의 통제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허용되고 있는 보조사업 수익금 사용계획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수익금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등 낭비적 지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유통망진출지원: 수익금 수입 및 집행 관련 공시의무 이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보조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174]하고 있음. 이는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175]임.

보조사업자는 이러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를 감안하여 법률상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거짓 사실을 공

---

1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하지 않아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보조금 삭감(제26조의10제2항[176]), 명단공표(제36조의2제1항[177]) 등 이행강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런데, '유통망진출지원'의 보조사업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8년도 2,300만원, 2019년도 4,600만원, 2020년도 1,300만원, 2021년도 3,400만원, 2022년도 13억 6,900만원, 2023년도 19억 700만원의 보조사업 수익금 수입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2018년도 2,300만원, 2020년도 1,300만원, 2022년도 3억 3,900만원, 2023년도 29억 1,700만원의 보조사업 수익금을 집행하였다는 사실 등을 2024년 6월말 현재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공시한 것으로 파악됨.

유통망진출지원 관련 보조사업 수익금 발생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조사업 수익금	23	46	13	34	1,369	1,907
재투자액(집행액)	**23**	**-**	**13**	**-**	**339**	**2,917**
이월액	-	-	-	34	1,064	-
집행잔액(국고반환)	-	46	-	-	-	5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7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일례로, ‘2023년도 유통망진출지원’ 내역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시(보조금통합관리망)에서는 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의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 및 국고보조금 지출만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보조사업 수익금 수입 및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하였으며,

2023년도 유통망진출지원 내역사업 수입내역표(공시자료)

(단위: 원)

번호	재원	수입금액
1	국고보조금	12,428,665,000
합계		12,428,665,000

자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자료정보가 연동되어 있는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서 공시정보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

2023년도 유통망진출지원 내역사업 지출내역표(공시자료)

(단위: 원)

번호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금액
1	인건비	보수	2,370,000,000
2	운영비	일반수용비	496,018,285
3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484,410
4	운영비	특근매식비	1,641,840
5	운영비	임차료	227,181,162
6	운영비	차량비 등	1,928,283
7	운영비	일반용역비	4,297,834,944
8	운영비	관리용역비	1,039,292,560
9	여비	국내여비	30,600,260
10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51,992,510
11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66,000,000
12	민간이전	기타부담금	3,778,703,454
합계		-	12,364,677,708

자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자료정보가 연동되어 있는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서 공시정보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

정산보고서의 경우 보조사업 수익금 발생액 6,700만원, 국고 반환액 6,700만원, 수익금 미반환액 0원으로 공시(보조금통합관리망)하여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기재한 것으로 파악됨.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023년도 실제 수익금 수입 발생액은 19억 700만원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합하여 29억 1,700만원을 미반환(집행)하였음.

2023년도 유통망진출지원 내역사업 수익발생액 및 처리내역 공시정보

(단위: 원)

수익 발생액(A)	수익 반환액(B)	수익 미반환액(B-A)
66,558,786	66,558,786	0

자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자료정보가 연동되어 있는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서 공시정보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

이처럼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공시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시는 보조금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수익금 수입 및 집행에 관한 정보공시를 누락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도록 공시함으로써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가 법률에 부합한 정보공시를 하도록 시정명령·보조금 삭감(제26조의10제2항), 명단공표(제36조의2제1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7. 공공구매제도운영(4835-307)

□ 사업 및 결산 개요

‘공공구매제도운영’(2006~, 직접 및 보조)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각종 법적 제도운영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공공구매이행력제고’,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예산을 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위탁 또는 보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인 77억 2,800만원 중 7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공공구매제도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공구매제도운영	7,728	7,728	-	-	-	7,728	7,711	-	17	5,722
공공구매이행력제고	2,823	2,823	-	-	-	2,823	2,806	-	17	2,897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1,725	1,725	-	-	-	1,725	1,725	-	-	1,825
동반성장상생판로지원	2,180	2,180	-	-	-	2,180	2,180	-	-	-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지원	1,000	1,000	-	-	-	1,000	1,000	-	-	1,000

□ 검토의견

(1)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 목표치 달성 미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고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을 제시하고,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178][179].

공공기관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달성 이외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하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180][18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

17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률」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18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183]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184]를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여야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18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82)「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8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8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공공구매제도운영을 담당하면서 각 공공기관등의 구매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관련사항을 공고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 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공공기관등에 포함[185]됨. 이에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구매 목표치 달성 여부를 점검하였음.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도 구매금액은 목표금액(269억 3,200만원)보다 적은 239억 5,800만원이나, 구매비율은 구매목표비율 74.8%를 초과한 79.0%로 나타남.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총구매액 (A)	중소기업제품 구매액(B)	비율 (B/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26,932	74.8
	실적치	30,319	23,958	79.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금액은 목표금액(44억 4,500만원)에 미달한 11억 9,80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도 구매목표비율 33.4%에 미달한 17.0%임.

18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총구매액 (A)	중소기업물품 구매액(C)	기술개발제품 구매액(D)	비율 (D/C)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13,310	4,445	33.4
	실적치	30,319	7,030	1,198	1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금액은 목표금액 53억 6,700만원보다 적은 41억 7,600만원이고, 구매비율도 구매목표비율 14.9%에 미달한 13.8%임.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총구매액 (A)	여성기업제품 구매액(E)	비율 (E/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5,367	14.9
	실적치	30,319	4,176	13.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금액은 목표금액 3억 9,400만원보다 적은 3억 800만원이고, 구매비율도 구매목표비율 1.1%에 미달한 1.0%임.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총구매액 (A)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F)	비율(F/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394	1.1
	실적치	30,319	308	1.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끝으로, 창업기업제품 구매의 경우 구매금액은 목표금액(36억원)을 초과한 38억 9,300만원이며, 총구매액 대비 비율도 목표비율 10.0%를 초과한 12.8%임.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백만원, %)

기관명	구분	총구매액 (A)	창업기업제품 구매액(G)	비율 (G/A)
중소벤처기업부	목표치	35,999	3,600	10.0
	실적치	30,319	3,893	12.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요약하면,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에 따라 설정한 공공구매 목표비율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였으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및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법률에서 각 공공기관등에게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에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제공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이러한 법률 규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구매제도운영을 총괄 담당하면서 타 공공기관등의 구매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여 관련사항

을 공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조차 공공구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타 공공기관등의 공공구매 목표치 달성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구매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자체 공공구매 목표치에 미달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임.

18.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4837-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1963~, 보조)은 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 조사·연구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국가재정으로 보조[186]하는 사업임. 내역사업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협동조합활성화’ 및 ‘가업승계지원’의 3개 사업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170억 3,100만원 전액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하였음.

2023년도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17,031	17,031	-	-	-	17,031	17,031	-	-	16,480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11,380	11,380	-	-	-	11,380	11,380	-	-	11,876
협동조합활성화	4,851	4,851	-	-	-	4,851	4,851	-	-	3,900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3,506	3,506	-	-	-	3,506	3,506	-	-	2,672
가업승계지원	800	800	-	-	-	800	800	-	-	704

18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5조(보조금) ① 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1)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체수입 적정성 점검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예산 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 보전기관임[187]. 즉, 중소기업중앙회 일반회계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동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 예산으로 지원받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반회계의 경우 중소기업정책 및 협동조합지원 사업, 그 밖에 중소기업중앙회 기관운영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고, 특별회계의 경우 각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특별회계는 중소기업자의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관련 공제사업기금특별회계,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 관련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특별회계와 같이 법률이나 법령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한 특별회계가 있는 반면,

187)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는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란 예산절감을 위해 기관의 지출예산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이라고 규정
* (예시) 검사료, 교육수수료, 기술컨설팅수입, 연구개발수입 등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임대료, 자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사업외수입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나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와 같이 협동조합네트워킹 지원, 중소기업DMC타워 운영 등 중소기업중앙회 자체목적에 따라 내규를 근거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도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구분 회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비고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34,115 (17,031)	중소기업정책 및 협동조합지원, 조직운영 관련 일반사항
특별회계	일반	교육연수사업특별회계	9,376	교육연수사업 운영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	6,109	협동조합 네트워킹 지원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	12,596	중소기업DMC타워 운영
	위탁	위탁사업특별회계	54,184	정부 및 지자체 위탁 사업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사업특별회계	868	대구시 위탁 전판매장 관리
		인력지원특별회계	39,586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대행 및 취업교육
	공제	공제사업기금특별회계	721,051	중소기업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사업기금 관리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특별회계	6,434,654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관리
		중소기업보증공제특별회계	5,326	PL보험, 손해공제, 보증공제 관리
합 계			7,317,86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그런데 정부는 수지차보전을 위한 동 사업 예산 편성시 이러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회계 중 일반회계의 수입·지출만을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수지차 계산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는 자체수입이 있는지 점검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지출예산 총액에서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자체수입을 누락하면서 지출만 늘리려는 경향을 보일 우려[188]가 있기 때문임.

이러한 관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보조금 산출시 추가로 수지차 계산과정에 포함할 여지가 있는 사항을 점검하였음. 첫째,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 상암동에 소재한 자체 소유 건물인 중소기업DMC타워로 인해 발생한 수입(사무실 임대수익 등)과 지출(건물 관리비용 등)을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에 별도로 계리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수지차 계산과정에서 누락하고 있음[189].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관련 건물소유 현황(회계구분 포함)

(단위: 천원)

건물명	위치	2023년도 수입	회계구분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12,587,780	일반회계
중소기업DMC타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	11,939,722	DMC회계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 14번길 41	891,005	교육회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회관)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47	1,126,85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회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회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1,250,16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회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

18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출연금 및 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세입에 반영하도록 하면서,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 효율적인 자산운영 등 특별한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함을 규정함(p.22). 이는 수지차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을 누락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 의무사항 및 인센티브를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보임.

189) □ 중소기업DMC타워 개요

건물명	중소기업DMC타워
주소지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연면적	61,894.86㎡(18,723.11평)
규모	지상 20층, 지하 6층(주차장 포함)
재원	총사업비 1,153억원(토지 79억원, 건물 1,074억원): 금융기관(IBK) 차입금 650억원, 기부금 367억원(삼성 250, 현대차 100 등), 국고보조금 113억원, 임대보증금 23억원
임대 현황	85개사 입주(2023.6월말 기준): 지하철역(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연결 통로로 이동이 가능한 지하 1층 및 저층 공간은 IBK기업은행, 웨딩홀, 뷔페(식당), 한의원·치과 및 병원, 까페, 편의점, 중식 요리점 등에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종 회의 공간으로 임대하고 있음. 5층 이상의 고층부의 경우에는 각종 기업 및 단체((주)셀리버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위키트리, KS한국고용정보 등)에 임차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음.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는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비현금성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감가상각비까지 감안하면 연기준 30억원 이상의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수지차 계산과정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필요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수입과 지출이 중소기업DMC타워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익과 건물 관련 차입금 상환으로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구분 계리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으며[190][191][192],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에서 총회 비용, 해외사무소 운영비용과 같은 기관운영에 관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도 수지차 계산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190) 참고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제2항 등에 구분관리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특별회계 및 공제사업기금 특별회계와는 달리 DMC타워특별회계는 구분계리 관련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음.

19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7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②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92)「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구분관리 및 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110조에 따라 중앙회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관리할 때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23년도 중소기업중앙회 DMC타워특별회계 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집행 내역	지출계획액
사업비지출		392,724
- 기획운영	총회 등 제회의 등	29,385
- 해외진출지원(베트남)	베트남사무소 운영	308,319
- 해외진출지원(미국)	LA사무소 운영	18,686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정보시스템 제비용 배분	27,500
- 전산업무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중앙회 전산업무 제비용 배분	8,83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둘째, 중소기업중앙회는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재원을 보증기관에 출연(2023년도 15억원)[193]하고 있으나,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플랫폼 수수료 수입(2023년도 6억원)의 경우 또 다른 회계인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플랫폼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음.

193)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도에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내내역사업 예산 35억 600만원을 보조받아 ①원부자재 공동구매 운영 15억원, ②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 9억 4,000만원, ③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5억원, ④단체표준 제정 지원 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플랫폼 수수료 수입 및 플랫폼 운영지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입(A)	지 출(B)	잔 액(A-B)
2019년	473	478	△5
2020년	541	547	△6
2021년	726	440	286
2022년	554	358	196
2023년	518	282	2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즉,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출연재원은 중소기업중앙회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면서, 관련 사업수입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은 별도 회계인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사업수입과 지출을 수지차 계산과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194].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보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을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사업수입, 결산잉여금, 이자수입 등을 세부내역까지 빠짐없이 추계하여 자체수입에 반영, 수지차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자체건물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플랫폼 수수료 수입을 “중소기업DMC타워특별회계”,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에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지차 계산에 포함되는 자체수입을 축소하고 있음.

194)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집행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을 다른 기관(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원부자재 공동구매 보증사업 출연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향후 재정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수지차보전 예산 편성시 중소기업중앙회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DMC타워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에 계상된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플랫폼 수수료 수입 및 관련 지출에 관한 사항도 수지차 계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자체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활용 활성화 필요

‘협동조합활성화’ 내역사업 중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내내역사업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운영,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등을 통해 협동조합 구성원의 협업 수행을 촉진하려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35억 600만원 전액을 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교부받은 예산을 전액 실집행 하였음.

2023년도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내역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중소기업중앙회)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3,506	3,506	3,506	-	3,506	3,506	-	-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 출자금, 기업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또는 차입금 등으

로 공동사업지원자금[195]을 조성하여 회원의 기술개발, 시험연구, 해외시장개척 등 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법 규정은 2006년 신설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은 이러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196].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공동판매·공동R&D·공동마케팅·인력양성 지원, 원부자재 공동구매·공동물류 자금융자 등을 계획[197]하고 있음.

이러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활용범위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보조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내내역사업의 사업범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지차 보전기관으로서 정부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므로

---

195)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 기업,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민간자금임.

196)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조성 및 관리주체로서, 자금의 조성, 운용 및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197) <중소기업 공동사업으로 검토가 가능한 사업유형>
1. 공동구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D-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정부보조금 사업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이를 활용한 자체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회는 세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신설(2021.12.)하고, 공동사업지원자금에의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손금 처리가 인정(2022.12.)되도록 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법제화하였음.

그럼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한 공동사업지원자금 규모는 2024년 6월말 현재 1억 4,500만원(누계 기준)에 불과하며, 이렇게 조성된 자금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협동조합기능활성화특별회계”에 전액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조성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취지, 세법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을 통한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최근의 입법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198]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고지원에 의존한 채 공동사업지원자금

198)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협동조합 활성화계획’(2022년)에는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이 주요사업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2022년~2024년 동안 1,000억원의 자금을 자체 조성하는 것임.

조성 및 집행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 내내역사업의 국고보조금 예산안 편성시 공동사업지원자금 조성 및 활용 실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4838-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2009~, 직접 및 보조)은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내역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의 2개 사업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41억 8,800만원 중 40억 8,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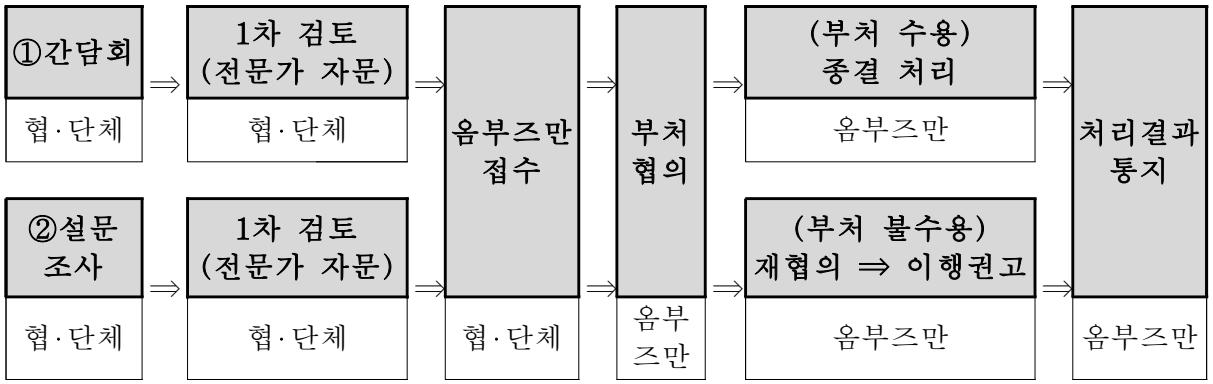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4,188	4,188	-	-	-	4,188	4,084	-	104	3,928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787	787	-	-	-	787	787	-	-	796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3,401	3,401	-	-	-	3,401	3,297	-	104	3,132
중소기업 협단체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	290	290	-	-	-	290	260	-	30	-

□ 검토의견

(1) 중소기업 협·단체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 보조사업 집행관리 철저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 내역사업 중 ‘중소기업 협·단체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은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주도로 기업 현장방문·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혁신이 필요한 규제·애로 및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예산 집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종 협회·단체를 선정하여 각 보조사업자에 예산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의 규제발굴 및 처리 프로세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9,000만원 중 2억 6,000만원을 여성벤처협회 등에 교부하고 3,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전체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여성벤처협회 등 보조사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억 6,000만원 중 2억 2,400만원만 실집행하고 3,600만원을 미집행하였음.

2023년도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지원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 협·단체 규제애로 발굴개선지원	290	290	-	-	290	260 (224)	-	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보조사업자별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여성벤처협회	35	35	35	-	35	34	-	1	97.7
메인비즈협회	70	70	70	-	70	53	-	17	75.1
한국도로시설 안전산업협회	15	15	15	-	15	14	-	1	90.3
이노비즈협회	70	70	70	-	70	70	-	-	99.8
한국표면처리 공업협동조합*	30	-	-	-	-	-	-	-	-
한국스마트 조명협동조합	15	15	15	-	15	12	-	3	81.1
대구경북 기계협동조합	15	15	15	-	15	14	-	1	93.3
벤처기업협회	40	40	40	-	40	28	-	12	70.3

주: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의 경우 당초 계획된 보조금 3,000만원 중 2,100만원이 교부(5월)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11월)에 따라 회계연도 중 보조금이 전액 반납(12월)되었음. 이러한 사항을 미교부로 표기한 것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자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이노비즈협회(실집행률 99.8%), 여성벤처협회(실집행률 97.7%) 등의 보조사업자는 교부액 실집행률이 95.0% 이상인 반면에,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실집행률 0.0%), 벤처기업협회(실집행률 70.3%), 메인비즈협회(실집행률 75.1%) 등은 교부액 실집행률이 80.0% 이하로 나타남.

특히, 보조사업자 중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은 2023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1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중도포기(2023년 11월)로 교부받은 보조금 2,100만원을 전액 반납(2023년 12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처럼 일부 보조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목적 달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또한, 보조사업자 중 벤처기업협회(실집행률 70.3%), 메인비즈협회(실집행률 75.1%)는 2023년 12월 22일에 이루어진 2차 교부액 대부분을 미집행한 것으로 파악됨[199].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사업 중도포기로 사업목적 달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여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면밀하게 하여야 할 것임.

199)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두 차례(1차: 70%, 2차: 나머지 30%) 나누어 지급하였음.

20.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4838-47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2008~, 직접 및 보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기반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통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임. 내역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통계기반구축’, ‘중소기업지원사업 분석’ 및 ‘국제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운영’의 4개 사업이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138억 9,600만원 중 138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 조사연구평가	13,896	13,896	-	-	-	13,896	13,894	-	2	14,241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운영	7,328	7,328	-	-	-	7,328	7,328	-	-	6,595
중소기업실태조사 및 통계기반구축	3,083	3,083	-	-	-	3,083	3,081	-	2	3,601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3,345	3,345	-	-	-	3,345	3,345	-	-	4,045
국제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운영	140	140	-	-	-	140	140	-	-	-

□ 검토의견

(1)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적시 인력충원 필요

내역사업 중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제4항[200]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73억 2,800만원 전액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교부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교부받은 예산(73억 2,800만원) 중 66억 2,900만원을 실집행하고 6억 6,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내역사업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중소벤처기업연구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운영	7,328	7,328	7,328	-	7,328	6,629	-	699	90.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0)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4의2. 규제의 신설·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연구
5.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분석
6.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이러한 실집행 부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퇴사인력 충원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2억 9,400만원) 및 인력 부족에 따른 연구운영비 미집행(3억 1,700만원), 그 밖에 낙찰차액 발생 및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세부 비목별 실집행 부진사유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실집행 잔액 발생 사유
인건비	4,004	3,710	294	‣세종 분원 이전에 따른 일부 인력(7명) 퇴사로 인건비 미집행(294백만원)
운영비	2,656	2,339	317	‣인력 퇴사에 따른 일시적 연구과제 수행 물량감소로 연구운영비 미집행(287백만원) ‣연구원 정보시스템 등 낙찰차액(30백만원)
여비	106	89	16	경상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105	60	45	경상경비 절감
연구개발비	457	430	27	외부 용역 낙찰차액
합 계	7,328	6,629	69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당초 계획대비 연구과제 수행 물량을 축소하였고 이로 인해 연구운영비 미집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기능 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연의 과업수행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이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조속한 인력충원을 통해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2024년도 1사분기 중 1차례

공개채용을 통해 3명의 직원(정규직)을 충원하는 데 그쳤고, 그 결과 정규직 직원의 결원율(2024년 1사분기말 기준)이 11.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24년 1사분기말 기준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별 결원율

(단위: 명, %)

기관명	임원(상임)		직원(정규직)			
	정원	현원	정원 (A)	현원	결원 (B)	결원율 (B/A)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1	1	**115**	**102**	**13**	**11.3**
공영홈쇼핑	4	3	372	361	11	3.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3	3	82	78	4	4.9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1	1	44	43	1	2.3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1	1	234	220	14	6.0
중소기업 유통센터	5	5	**287**	**254**	**33**	**11.5**
창업진흥원	1	1	**181**	**160**	**21**	**11.6**
한국벤처투자	3	1	144	135	9	6.3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자료를 재정리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직원충원(정규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 기능과 같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본연의 과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1. 창업저변확대(5132-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창업저변확대’(2002~, 보조)는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전세대에 대한 맞춤형 창업교육과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 마인드 확립 및 기업가정신 확산을 도모하고,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시제품제작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연계하여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임.

내역사업으로는 혁신창업가양성, 혁신창업스쿨, 도전!K-스타트업, 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 창업관리시스템, 지역혁신창업활성화, 북한이탈주민창업지원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은 240억 5,900만원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창업저변확대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창업저변확대	24,059	24,059	-	-	-	24,059	24,059	-	-	23,018
혁신창업가양성	7,275	7,275	-	-	-	7,275	7,275	-	-	6,645
혁신창업스쿨	2,947	2,947	-	-	-	2,947	2,947	-	-	-
도전!K-스타트업	2,115	2,115	-	-	-	2,115	2,115	-	-	2,115
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	4,118	4,118	-	-	-	4,118	4,118	-	-	4,518
창업관리시스템	5,904	5,904	-	-	-	5,904	5,904	-	-	5,240
지역혁신창업활성화	1,400	1,400	-	-	-	1,400	1,400	-	-	4,500
북한이탈주민창업지원	300	300	-	-	-	300	300	-	-	-

□ 검토의견

(1) 연례적인 보조금 이월을 지양할 필요

‘창업저변확대’ 사업은 창업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지방자치단체, 엔케이경제인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2023년도 사업비 240억 5,900만원 중 창업진흥원에 214억 6,100만원을 민간보조금으로 교부하여 그 비율은 89.2%에 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업비의 절대적인 규모를 창업진흥원에 지급하여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국가재정법」 제3조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201].

그런데 2023년도에 창업진흥원이 창업저변확대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내역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사업 5개 중 4개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회계연도를 초과한 예산집행을 한

---

20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것으로 확인됨.

2023년도 창업저변확대 내역사업별 사업기간 변경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기간		2023 교부액	실 집행액	이월액
	당초 계획	변경된 기간			
혁신창업가양성	2023.1.1.~2023.12.31.	2023.1.1.~2024.04.30.	6,395	5,657	738
혁신창업스쿨		2023.1.1.~2024.03.31.	2,947	2,880	67
도전 K-스타트업		변경없음	2,097	2,085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2023.1.1.~2024.03.31.	4,118	4,020	98
창업관리시스템		2023.1.1.~2024.04.30.	5,904	4,185	1,719
합 계			21,461	18,827	2,622

주: 도전 K-스타트업 잔액 12백만원은 불용 처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구체적으로 총 214억 6,100만원의 보조금 교부액 중 26억 2,200만원을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써 이월률은 12.2%임.

이와 같은 창업진흥원의 보조사업비 집행 행태는 연례적인 것으로, 2022년도의 경우 총 7개의 보조사업 중 6개의 사업을 이월한 바 있고, 2022년도에 종료한 2개 내역사업을 제외한 5개 내역사업만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 총 215억 9,100만원 중 15억 2,700만원을 이월하여 이월률은 7.1%이었음.

2022년도 창업저변확대 내역사업별 사업기간 변경 및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사업기간		2022 교부액	실 집행액	이월액
	당초 계획	변경된 기간			
혁신창업가양성	2022.1.1.~2022.12.31.	2022.1.1.~2023.4.30.	6,395	6,086	309
혁신창업스쿨		2022.1.1.~2023.4.30.	2,947	2,852	95
도전 K-스타트업		2022.1.1.~2023.3.31.	2,095	2,088	-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2022.1.1.~2023.4.30.	4,220	4,063	157
창업관리시스템		2022.1.1.~2023.4.30.	5,934	4,968	966
합 계			21,591	20,057	1,527

주: 1. 2022년에 종료된 멘토링 플랫폼 운영지원,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제외
2. 도전 K-스타트업 잔액 7백만원은 불용 처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저변확대 사업의 특성상 주관기관 모집, 기업 모집, 협약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후 정산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기간 연장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보조사업 중 상당수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4월 동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하였음.

또한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창업진흥원이 정부로부터 수탁받은 보조사업 전부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해 연례적으로 회

계연도를 초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계획 중이라고 2024년 4월 보고하였음.

결산 시정요구 사항 및 조치상황

구 분	시정요구사항	조치상황	시 점
2021회계연도 결산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시 실제 사업주기에 부합하도록 연도별 예산액을 조정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조치완료	’23.4.30
2022회계연도 결산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기간 연장을 통해 연례적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창업진흥원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	조치중	’24.4.30

자료: 2021·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이러한 국회의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있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처럼 창업진흥원은 반복적으로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이월을 통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액만을 계상하고, 사업기간 연장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민관협력창업자육성(5132-304)

□ 사업 및 결산 개요

‘민관협력창업자육성’(2014~, 보조 및 출연)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하고, 신산업 창출 및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3년도 예산현액 1,864억 6,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민관협력창업자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86,469	186,469	-	-	-	186,469	186,469	-	-	206,506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110,075	110,075	-	-	-	110,075	110,075	-	-	130,363
사내벤처 육성	5,000	5,000	-	-	-	5,000	5,000	-	-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9,643	9,643	-	-	-	9,643	9,643	-	-	11,143
아기유니콘 육성	21,251	21,251	-	-	-	21,251	21,251	-	-	22,000
글로벌 기업 협업프로그램	40,500	40,500	-	-	-	40,500	40,500	-	-	43,000

□ 검토의견

(1)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TIPS 운영사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실적에 대한 점검 필요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내역사업은 엔젤투자회사 등 민간부문에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R&D 및 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기술창업프로그램(TIPS)[202]을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 예산현액은 1,100억 7,500만원이고 전액 집행되었음.

2023년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내역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23년도 예산: 110,075백만원
-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75,655
- 프리팁스[203]: 4,300
- 포스트팁스[204]: 25,920
- 팁스타운 운영비: 4,2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말 누적 기준으로 창업기업 2,487개사 중 1,413개사가 총 13조 5,907억원의 후속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정부지원금 1조 2,728억원 대비 10.7배, 민간 운영사 선투자액 5,784억원 대비

202)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203) 프리팁스(Pre-TIPS):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예비 팁스 창업기업으로 육성, 엔젤투자를 촉진하여 지방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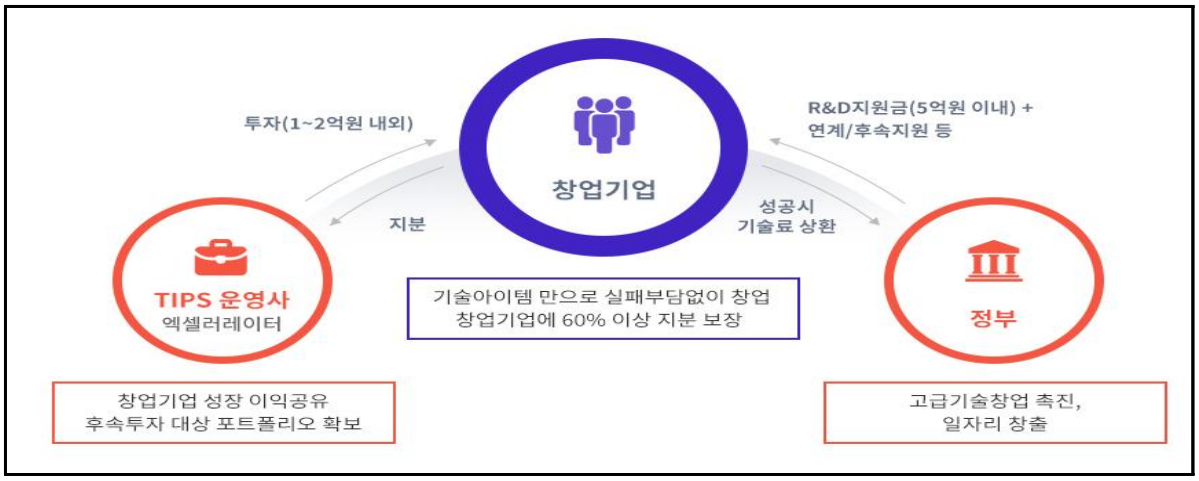
204) 포스트팁스(Post-TIPS): 팁스 성공기업에 대한 상용화·해외진출·마케팅 등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팁스 이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을 2년간 최대 5억원 지원

약 24배 수준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음.

또한 TIPS 지원 후 전체 신규 채용은 18,690명으로 기업당 10.5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TIPS 선정기업 중 18개사가 기업공개(IPO)에 성공하였으며 M&A 성공 창업기업은 73개사라고 제시하였음.

TIPS 프로그램의 기본 개념은 민간 투자사인 TIPS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선 투자 후 정부에 추천하면 정부가 민간 투자에 매칭하여 R&D, 사업화, 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임.

TIPS 프로그램 사업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는 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의 발굴 및 투자, 보육 등의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TIPS 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엔젤투자 및 추천, 보육·멘토링·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TIPS 프로그램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음.

TIPS 운영사의 역할

○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대상 선정(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 창업기업 추천(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5배수 이내, 추천권 범위 내)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엔젤투자(1~2억원 내외, 정부출연금 20% 이상) ○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에 보육·멘토링·기술개발 과제관리 지원 ○ 창업기업 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 관리(후속투자 유치, M&A, IPO, 글로벌진출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팁스(TIPS)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2024.3.19.

2023년 말 기준 105개의 TIPS 운영사가 활동 중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TIPS 운영사 신청기관의 창업지원실적에 따라 일반형, 특화형[205], 예비형[206]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창업기업 추천권 규모를 달리 부여하고 있으며, 유형별 TIPS 운영사는 일반형 93개, 특화형 4개, 예비형 8개임.

TIPS 운영사 유형별 현황

(단위: 개사)

구분	합계	일반형	특화형			예비형
			바이오·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게임·스포츠	청년창업	
개수	105	93	2	1	1	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5) 특화형은 운영사의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운영사임.

206) 예비형은 창업기업 지원실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지정 필수요건을 갖춘 투자사로서, 예비 운영사 선정 후에 일정 기간 활동과 실적점검을 통해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됨.

한편 2021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TIPS 운영사의 신청 자격을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207]에 한정하던 것이 폐지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TIPS 운영사 범위를 확대하였음.

TIPS 운영사 신청 자격 요건 변경 내용

기존		현행(2022년～)
①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① 창업기획자(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② 초기전문 벤처캐피털 ③ 기업형 벤처캐피털(중소·벤처기업 및 중견·대기업 등)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⑤ 기타(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TIPS 운영사의 신청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한해에 평균 5.8개 내외로 선정하던 신규 운영사는 2022년에 8개가 신규 선정되었고 2023년 한해에만 32개의 새로운 TIPS 운영사가 선정되었음[208].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후 2년간(2022년, 2023년) 새로이 선정된 TIPS 운영사의 실적이 법개정 전(2021년까지) TIPS 운영사의 실적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파악됨.

207) 액셀러레이터: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투자, 보육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창업기획자'로 정의하고 있음.

208) 특화형 및 예비형을 제외한 일반형 운영사만을 대상으로 함.

먼저 창업기업 추천권 연간 소진율[209]이 2013년~2021년에 선정된 운영사는 평균 87.9%인 반면, 2022년~2023년에 선정된 운영사는 평균 78.2%로 9.7%p 낮았음.

또한 창업기업 당 평균 투자액은 2013~2021년에 선정된 운영사가 2억 1,170만원이었지만, 2022~2023년에 선정된 운영사는 1억 6,200만원으로 4,970만원 적었음.

팁스 운영사 창업기업 추천 및 투자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천권 소진율	평균 투자액
'13~'21년 선정 운영사	87.9	211.7
'22~'23년 선정 운영사	78.2	162.0

주: 전체 운영사 중 일반형이면서 계속 운영 중인 운영사를 대상으로 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물론 2022년 이후 신규로 선정된 TIPS 운영사의 활동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상의 결과를 놓고 단순히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실적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역량 있는 TIPS 운영사의 참여를 확대하여 창업기업 발굴과 투자 성과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새로 참여한 TIPS 운영사의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209) 창업기업 추천권 연간 소진율 = 연간 창업기업 추천 건수 / 연간 창업기업 추천권 배정 건수

23. K-바이오 랩허브 구축(5132-314)

□ 사업 및 결산 개요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2023~, 출연)은 의약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K-바이오 랩허브를 구축하여 연구장비·시설 등 인프라 구축,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신규로 편성된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15억 1,300만원으로 전액 집행(출연)되었음.

2023년도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	1,513	1,513	-	-	-	1,513	1,513	-	-	971

□ 검토의견

(1)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비 편성 지양 필요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 송도 지역에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여 의약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① 핵심장비·시설 등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②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③ 전문가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은 네트워크 플랫폼[210] 구축비용 및 사업단 운영·관리 비용 등 총 15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 2023년도 예산 편성내역

□ 2023년 예산: 1,513백만원

①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 홈페이지 설계: 350백만원

② 사업단 운영 및 관리: 1,163백만원
- 인건비(13명): 688백만원
- 임대료 및 관리비: (임대료 2,500만원 + 관리비 460만원)*12개월 = 355백만원
- 기타운영비: 120백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중 사업단 운영비(인건비)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단장 1명, 팀장 3명, 팀원 9명 등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6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음.

210) 네트워크 플랫폼: K-바이오 랩허브 웹사이트, 입주기업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결합된 온라인 플랫폼(주요기능: 산·학·연·병 업무 협약기관과 입주기업간 온라인을 통한 정보공유, 경영 및 R&D 수행지원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사업단 운영비(인건비) 산출근거

구 분	예 산	비고
사업단장(1명)	10,000만원	<연봉 기준> 팀장 : 6,400만원 팀원 : 4,400만원
전략기획팀(4명)	팀장(1명×6,400)+팀원(3명×4,400) = 19,600만원	
프로그램 관리팀(4명)	팀장(1명×6,400)+팀원(3명×4,400) = 19,600만원	
경영지원팀(4명)	팀장(1명×6,400)+팀원(3명×4,400) = 19,600만원	
합계	총 13명 : 68,8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안 심의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단(단장, 팀장 3명, 팀원 9명)을 구성·운영하여, 사업 운영제도 및 규정 관리,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지원 R&D 프로그램 발굴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3분기부터 사업단 구성을 위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재공모 과정을 거쳐 2024년 1월에 사업단장을 채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바이오 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시스템인 플랫폼 구축 등 예산편성 당시 계획하였던 지원사업 추진일정도 순연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K-바이오 랩허브 사업단 설립이 당초 6월 예정이었으나 건축 지연 예상에 따른 건축기간 연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장비 도입 일정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 하반기 이후로 사업단 출범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예산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8월이 되어서야 동 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13명의 사업추진단 구성도 연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의 성과는 보여주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됨.

2023년 동 사업의 실제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K-바이오 랩허브 구축(R&D)'의 실집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사업비 15억 1,300만원 전액을 출연받았으나 그 중 2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출연예산의 80.6%인 12억 2,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함.

2023년도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피보조기관 실집행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세목	피보조기관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K-바이오 랩허브 구축 (R&D)	1,513	1,513	360-05	중소기업 기술정보 진흥원	1,513	-	1,513	293	1,22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순연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필요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 송도 지역에 'K-바이오 랩허브'를 조성하여 의약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투자 및 네트워킹 등의 경영지원 프로그램, 전문가 활용을 통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 9년으로 계획되어 있음.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일정 계획

구 분	주요 사업내용	일 정
사업단 구성 등	사업단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2023년
기반 및 시설 구축 (3년)	첨단 연구장비 도입 및 시설 구축공사 등	2023~2025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1차)	바이오 스타트업 맞춤 R&D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엑셀레이터 컨설팅 지원 등 (60개 기업, 입주-졸업 전주기 지원)	2026~2028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2차)	상 동	2029~2031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31년까지의 총사업비는 2,725.5억원(정부 1,094.4억원, 지방자치단체 1,550억원, 민간 81.2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부지 및 건축비용은 인천광역시에서 부담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단 운영비 및 의약바이오 창업기업의 R&D 지원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K-바이오 랩허브 조성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부	1,094.38	15.13	107.71	258.29	113.52	114.49	117.05	123.73	121.48	122.98
지자체	1,549.95	553.04	362.54	14.87	-	-	-	-	-	-
민간	81.20	0.00	0.00	0.00	12.77	12.77	13.27	13.90	14.16	14.33
합 계	2,725.5	568.17	470.25	273.16	126.29	127.26	130.32	137.63	135.64	137.31

주: 지자체예산(1,550억원)은 건축비(930.5억)와 부지비(619.5억원) 포함 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에서 연세대학교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는 입주기업을 위한 창업공간 및 네트워크 커뮤니티 시설 건축 등 기반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당초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일정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입지 조성 및 구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K-바이오 랩허브의 정상 운영을 시작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특화지원 프로그램과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약바이오 기업을 본격적으로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2024년 8월 현재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이고 건축공사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부지면적 변경 등 총사업비 조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협의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위한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K-바이오랩허브 건축공사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말 건축공사를 준공하여 2028년부터 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보다 약 2년의 사업 순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재정법」[211]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212]에 따라 동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1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12)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제10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외의 자의 예산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시 또는 예산 반영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구축 완료 후 5년간의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4. 창업생태계기반구축(5134-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창업생태계기반구축’(2014~, 보조 및 출연)은 혁신창업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제조창업 저변확대를 위한 메이커 활성화 지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및 창업존 운영, 1인 창조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성장기반 조성,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을 통하여 창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 예산현액은 845억 2,300만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음.

2023년도 창업생태계기반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창업생태계기반구축	84,523	84,523	-	-	-	84,523	84,523	-	-	77,424
창조경제혁신센터	36,368	36,368	-	-	-	36,368	36,368	-	-	36,368
메이커활성화지원	28,330	28,330	-	-	-	28,330	28,330	-	-	25,158
중장년기술창업센터	3,686	3,686	-	-	-	3,686	3,686	-	-	3,318
창업존운영	4,931	4,931	-	-	-	4,931	4,931	-	-	4,482
1인창조기업활성화	5,108	5,108	-	-	-	5,108	5,108	-	-	4,598
스타트업파크	6,100	6,100	-	-	-	6,100	6,100	-	-	3,500

□ 검토의견

(1) 스타트업파크: 추가적인 건립 지연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스타트업파크’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집적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계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4년 7월 현재 총 4개(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남 천안시, 경북 경산시)의 스타트업파크가 선정되어 있으며, 이 중 2022년에 선정된 경산 스타트업파크는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임당역을 중심으로 ICT 창업벤처 및 기업지원 특화지역으로서 스타트업파크, 지식산업센터, 행복주택 등이 집적된 임당 유니콘 파크를 구축하려는 것임.

경산 스타트업파크 조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으로 경산 스타트업파크의 총 공사비 121억원의 50%인 61억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하였음.

그런데 동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당초 2022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시설계는 2023년 9월이 되어서야 완료되었고 2023년 12월에 공사업체와의 계약이 체결됨.

중소벤처기업부는 건설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의 지연으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산 스타트업파크의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2026년 1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산 스타트업파크 건립일정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건립 사업을 추진할 때 보다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스타트업파크: 예산집행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필요

경산 스타트업파크 건립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서 2022년~2026년에 국비 126억원과 지방비 278억원을 합쳐 총 사업비 404억원이 투입될 예정임[213].

213) 당초 사업비는 340억원(국비 126, 지방비 214)이었으나, 공사단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방비 64억원('26년) 증액

2023년도의 경우에는 국비 61억원에 지방비 80억원을 매칭시켜 당해연도 필요 예산액 141억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설명하고 있음.

경산 스타트업파크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2022년	800	500	300
2023년	14,100	6,100	8,000
2024년	16,100	3,000	13,100
2025년(안)	3,000	3,000	-
2026년(안)	6,400	-	6,400
합 계	40,400	12,600	27,800

그런데 2023년도 경산 스타트업파크 공사비의 실제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 12월에 1차 공사[214] 계약에 대한 선금 61억원을 국비로 지급하고, 잔금 78억원은 2025년 4월에 지방비로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경산 스타트업파크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집행시기	집행내역	국비	지방비	비고
2022년 12월	설계비 선금	500	-	
2023년 3월	설계비 잔금	-	341	
2023년 12월	1차 공사비 선금	6,100	89	잔금 7,800백만원은 2025년 4월 지방비로 지급

214) 1차 공사 : (건축) 터파기, 기초공사, 철근공사, (전기·통신·소방) 설계검토, (건축) 기초공사, 철근공사, (전기) 배관공사, 배선공사, (통신) 설비별 전선관 케이블 포설, (소방) 소방배관 설치, (CM) 건설사업관리 및 감독권한 대행 등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인 동 사업의 집행에 있어 국비를 먼저 투입하여 설계비와 공사비의 선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추후에 지방비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215]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

물론 같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기부담분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경산 스타트업파크의 경우와 같이 자기부담분을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움.

---

215)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경산 스타트업파크 건립 사업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예산집행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25.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충북)(5134-307)

□ 사업 및 결산 개요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충북)’(2023~, 보조)은 제조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단계 이후 장벽 해소를 위해 제품양산·실증장비, 처리공정 등을 지원하는 공유형 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임.

2023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10억원으로 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원은 불용하였음.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충북)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충북)	1,000	1,000	-	-	-	1,000	757	-	243	1,000

□ 검토의견

(1) 예산집행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관리 필요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충북)’은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충북테크노파크) 내에 제조 창업기업의 시제품 초도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유공장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임.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안)

- (위치)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과학산업단지(충북테크노파크) 내
- (사업기간) 2023 ~ 2026 (4년)
- (총사업비) 280억원 (국비 140, 지방비 130, 민간(현물) 10)
- (사업규모) 지상5층 / 사업연면적 5,610㎡ / 대지면적 5,115㎡
- (사업주관) 충북테크노파크
- (공간구성) 설계·시험검사, 제작공간 (20개사), 양산지원센터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28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130억원, 민간 10억원)을 투입하여 시제품 제작공간, 설계·시험검사 시설, 양산지원센터 등을 구축할 예정으로 2023년도에는 공간 및 장비구축에 대한 설계비 명목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음.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단계별 구축 계획(안)

구분	추진계획
1단계 ('23년도)	• 부지선정 완료 (주관기관 보유부지 활용) • 공유공장 구축을 위한 인·허가 획득, 사전·행정 절차 대응 • 설계 과업 마련 및 입찰 공고·선정 • 공유공장 설계추진
2단계 ('24년도)	• 공유공장 설계추진 (~'24.4월) • 건축 입찰공고·선정 ('24.4~6월) • 건축 시행 ('24.7월~)
3단계 ('25년도)	• 건축 시행 ('25.1월~12월) • 감리 업체 선정 및 시행
4단계 ('26년도)	• 건축 시행 (~'26.3월) • 사용 승인신청, 건축물등기, 준공·완공 등 공유공장 정상 가동 • 장비 구매 및 시운전, 입주기업 모집 등 추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연도별 예산 규모(안)

(단위 : 억원)

구 분	1차년도 ('23)	2차년도 ('24)	3차년도 ('25)	4차년도 ('26)	합 계
국고보조금	10	10	90	30	140
지방비	3	29	49	49	130
충청북도	1.5	14.5	24.5	24.5	65
청주시	1.5	14.5	24.5	24.5	65
민자(현물)	2.5	2.5	2.5	2.5	10
합 계	15.5	41.5	141.5	81.5	2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충북테크노파크를 각각 지정하였으며,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고 사업추진 현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2023년도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의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10억원 중 7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4,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불용액 2억 4,300만원을 낙찰차액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집행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예산집행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불용액의 발생 과정은 일반적인 낙찰차액 발생과 다르게 운용된 측면이 있음.

즉, 낙찰차액에 따른 불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관기관이자 간접보조사업자인 충북테크노파크가 먼저 예산액 10억원을 교부받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예정가격으로 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입찰에 부친 결과 7억 5,700만원에 낙찰되어 차액 2억 4,300만원이 발생한 경우라야 하는 것인 반면,

동 사업은 애초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조사업자인 창업진흥원에 7억 5,700만원을 교부하였고 창업진흥원은 이 중 7억원만을 간접보조사업자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재교부 하였으며 설계용역을 입찰에 부친 결과 최종 낙찰금액은 6억 5,10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2023년도 제조창업공유공장 집행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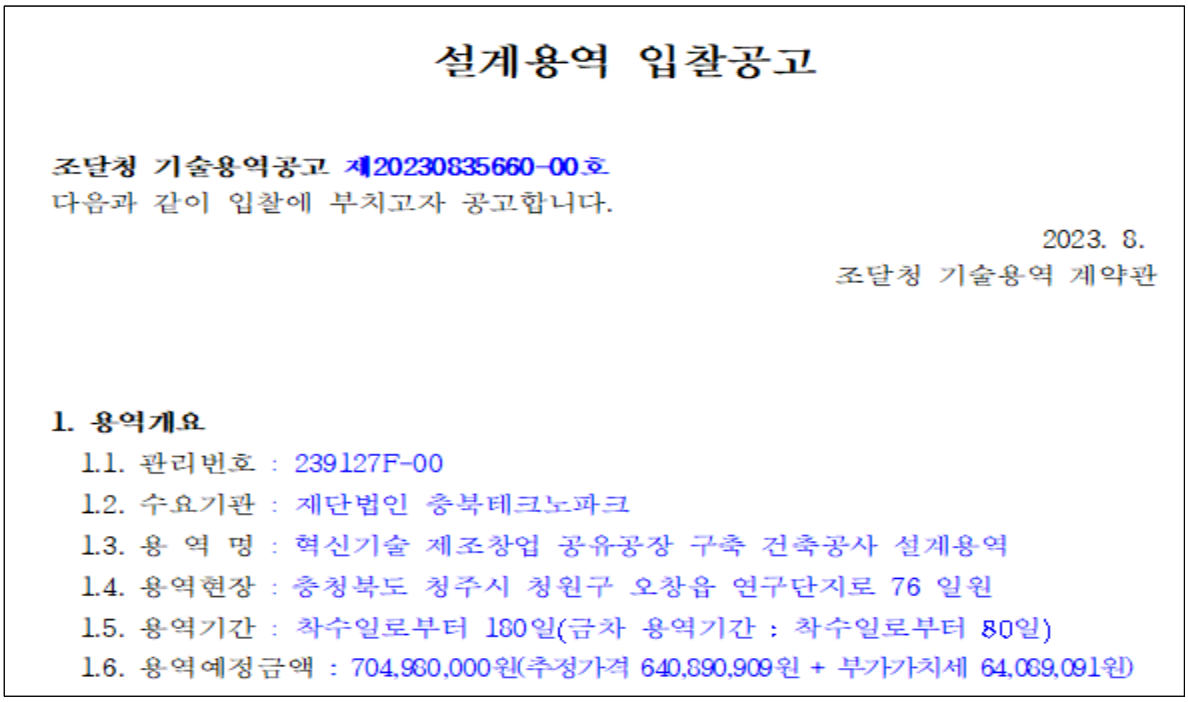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교 부 (중기부→ 창진원)	재교부 (창진원→ 충북TP)	입 찰 공 고	낙 찰 가 격	낙 찰 차 액
일반적인 낙찰차액	10	10	10	10	6.51	3.49
제조창업 공유공장	10	7.57	7.0	7.05	6.51	0.54[216]

한편 충북테크노파크가 2023년 8월 31일 공고한 동 사업 설계용역 입찰공고에 따르면, 부가세 포함 용역예정금액은 7억 498만원임.

216) 낙찰차액=예정가격-낙찰가격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건축공사 설계용역 입찰공고서



설계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20230835660-0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3. 8.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39127F-00
1.2. 수요기관 :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1.3. 용 역 명 :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건축공사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금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0일)
1.6. 용역예정금액 : 704,960,000원(추정가격 640,890,909원 + 부가가치세 64,069,091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국고금관리법」[217], 「감사원 공공계약실무가이드」 등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용역계약 등을 위한 발주 전에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북테크노파크가 7억원의 예산만을 확보한 상태로 7억 498만원의 용역계약을 발주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설계용역 명목으로 예산액 10억원을 계상하고도 7억 498만원을 용역예정금액으로 하여 입찰에 부친 것을 감안하면 애당초 과도한

217) 「국고금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예산액을 편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많은 제조창업기업들이 아이디어 → 시제품 제작 → 양산화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에서 공정설계와 제품 양산 관련 노하우가 부족하거나 양산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소위 데스밸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충북)’은 공유공간, 공유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제품부터 양산단계까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조창업자 초도양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6.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7232-503)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2008~, 직접 및 출연)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정보화 시스템을 유지·운영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78억 700만원 중 77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중소벤처행정정보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	7,807	7,807	-	-	-	7,807	7,763	-	44	6,928
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구축	3,645	3,645	-	-	-	3,645	3,645	-	-	3,26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849	1,849	-	-	-	1,849	1,849	-	-	1,837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313	2,313	-	-	-	2,269	2,269	-	44	1,828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564	564	-	-	-	564	563	-	1	-

□ 검토의견

(1) 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수행체계 개선 필요

내역사업 중 ‘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은 대민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예산현액 36억 4,500만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전액 출연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교부받은 예산 36억 4,500만원 중 35억 5,600만원을 실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실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3,645	3,645	3,645	-	3,645	3,556	-	89	97.6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420	420	420	-	420	392	-	28	93.1
- 사업출연금 (350-02)	3,225	3,225	3,225	-	3,225	3,164	-	61	98.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 예산의 출연 근거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 「전자정부법」 제20조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4항제3호 및 제5항[218]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일 뿐, 동 내역사업과 같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민정보시스템, 즉 전자정부 포털시스템 구축 및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

「전자정부법」 제20조 및 관련 규정[219]의 경우에도 사업의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시적인 법률 규정을 전제로 허용되는 출연금 지급의 근거로 보기 어려움[220].

---

2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④ 기술정보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반조성
1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2.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수요 발굴 및 조사·분석
3.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4.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
5.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조성 및 수준평가
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19) 「전자정부법」
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0)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전문기관에 관련 사업 예산을 출연하고 있음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사업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상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지위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1조를 근거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출연하는 것인데, 일개 중앙행정기관에 불과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자정부법」상 중앙사무관장기관과 동등한 지위와 권능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

「국가재정법」 제12조[221]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조항은 출연금의 목적과 조건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연금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정의,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출연금의 개념, 성질, 관리절차 등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따라 출연금 편성 및 집행, 정산 등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되지 못하여 출연금의 비효율·부적정 집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업이 아니라면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집행방식은 지양하여야 함.

동 내역사업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와 불일치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반복되었으며 출연금 정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실집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관공통지원 경비, 경영평가 성과급 등 정보화 이외의 용도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 그 밖에도

신 촉진법」 제20조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하는 모든 사업을 출연의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업이나 예산의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그 지원형식이 정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22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고도화 추진, 시스템구축 예산과 유지보수 예산의 혼용,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한 사례 등의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비효율·부적정 집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하여 출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부합한 예산집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대민정보시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수행체계를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조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임.

(2)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추진 지연 재발 방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역사업 중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내 내역사업은 중소기업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보관·분석·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구축하려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관련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기반 과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을 기획하였으며, 기업분석 및 사업추천 알고리즘 설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업을 추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계획되었음.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3년도 예산현액 5억 6,400만원 중 5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낙찰차액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3년도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564	564	-	-	-	564	563	-	1	-
- 일반연구비 (260-01)	564	564	-	-	-	564	563	-	1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해당 용역 수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 5월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2023년 6월 용역수행자를 선정하였으며, 6개월간의 용역 관리를 통해 2023년 12월에 이르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

정부의 “예산안편성지침”에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완료된 이후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222][223][224]하고 있는

222)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4, 2023. 5.

223) 즉, 사업추진 부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산출물을 근거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우선 요청하고, 기획재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최종산출물을

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인 2023년 12월에 이르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2024년도 정보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1년 지연되었음[225].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11.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226]과 연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한 국정과제가 적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함.

따라서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지연되어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이 1년 또는 그 이상 지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기반으로 해당 사업 추진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및 규모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안 편성시 활용하고 있음.

224) 정보시스템 구축 이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시스템 중복구축 등 예산낭비적 요인을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 구축 계획의 내실화를 통해 정보화 예산투자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25)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2025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함.

226) (국정과제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 (11-1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 민간의 혁신역량 적극 활용
○ (11-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27. 청사시설관리(7241-306)

□ 사업 및 결산 개요

‘청사시설관리’(1996~, 직접)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내진보강 공사 지원, 광주전남지방청 관리용역비 지원, 충남지방청 임차료 및 관리용역비 지원, 세종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내역사업으로는 ‘지방청 내진보강’, ‘광주청 관리’, ‘충남청 관리’ 및 ‘세종청사 관리’의 4개 사업이 있음.

2023년도 당초 예산액 68억 6,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억 4,300만원 및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액 2억 7,900만원을 감안한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71억 2,700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중 69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청사시설관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청사시설관리	6,863	6,863	543	△279	-	7,127	6,952	-	174	6,288
지방청 내진보강	-	-	543	-	-	543	464	-	78	-
광주청 관리	774	774	-	40	-	814	808	-	6	774
충남청 관리	332	332	-	-	-	332	331	-	1	332
세종청사 관리	5,757	5,757	-	△319	-	5,438	5,349	-	89	5,182

□ 검토의견

(1) 세종청사 관리: 연말 전용 지양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내역사업 중 ‘세종청사 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2021년)으로 임차건물에 입주함에 따른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예산액 57억 5,700만원 및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액 3억 1,900만원을 감안한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54억 3,800만원으로, 이 중 53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세종청사 관리 내역사업 결산내역(비목별)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 세종청사 관리	5,757	△319	5,438	5,349	-	89	5,182
-공공요금및제세(210-02)	353	52	405	401	-	3	353
-임차료(210-07)	2,680	△56	2,624	2,624	-	-	2,680
-복리후생비(210-12)	575	-	575	501	-	74	-
-관리용역비(210-15)	2,149	△315	1,834	1,823	-	12	2,14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선 ‘공공요금및제세’ 비목으로 전기료·연료비·수도료를 지출하였는데, 당초 예산액 3억 5,300만원에 ‘관리용역비’ 비목에서 5,200만원을 전용[227]한 예산현액 4억 500만원 중 4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227)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요금이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관리용역비에서 부족분을 조달하였다고 설명함.

‘임차료’ 비목의 경우 임차건물 임차료로 매월 동일한 금액(매월 2억 1,924만원)을 지출하였고, 당초 예산액 26억 8,000만원 중 초과계상액 5,600만원을 ‘기본경비’로 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26억 2,4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관리용역비’ 비목의 경우 ‘공공요금및제세’ 비목에서 지급한 전기료·연료비·수도료를 제외한 일반관리비를 지출하였고, 당초 예산액 21억 4,900만원 중 초과계상액 3억 1,500만원을 ‘기본경비’ 등으로 전용하고 남은 예산현액 18억 3,400만원 중 18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불용하였음[228].

‘청사시설관리’에 ‘세종청사 관리’ 내역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공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229], 별도 사업으로 관리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 임차계약 이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해당 소요에 지출하여야 하고, 초과계상 예산 및 집행 잔액의 경우 불용처리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청사 관리’의 지원 목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기본경비’로 그 예산을 전용하였고 국외출장 경비, 관서

228) 그 밖에 ‘복리후생비’ 비목의 경우 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를 소속 공무원 등에 지원(2023년 7월까지)함.

229)「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③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얻은 임차청사, 지방행정기관,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임차청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운영경비로 전용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러한 집행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230]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2월 전용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 기관홍보물품 제작, 도서 구입, 종이가방 제작, 뉴스저작권 구매 및 이용, 2024년 다이어리 및 달력 제작 등에 지출하였음. 이러한 지출은 불요·불급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낭비적 지출에 해당할 우려도 있음.

2023년도 세종청사 관리 내역사업에서 기본경비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사유
	세부사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3-09-01)	청사시설관리 (7241-306)	임차료 (210-07)	39	기관운영기본경비 (7211-253)	임차료 (210-07)	기본경비 부족재원 충당
		관리용역비 (210-15)	70	기관운영기본경비 (7211-253)	일반수용비 (210-01)	
		관리용역비 (210-15)	55	기관운영기본경비 (7211-253)	국외업무여비 (220-02)	
자체전용 ('23-09-08)	청사시설관리 (7241-306)	임차료 (210-07)	9	기본경비 (창업진흥정책관) (7211-257)	국외업무여비 (220-02)	국외여비 부족재원 충당
		관리용역비 (210-15)	7	기본경비 (창업진흥정책관) (7211-257)	국외업무여비 (220-02)	
자체전용 ('23-12-04)	청사시설관리 (7241-306)	임차료 (210-07)	8	기관운영기본경비 (7211-253)	일반수용비 (210-01)	기본경비 부족재원 충당
		관리용역비 (210-15)	91	기관운영기본경비 (7211-253)	일반수용비 (210-0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30)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 제46조는 예산의 전용 및 자체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사업간 유사성, 시급한 필요성, 필수적 경비의 충당인지 여부,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인지 여부 등을 전용 및 자체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231]하고 있음. “예산집행지침”[232]에서는 이에 더하여 연도 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을 자체전용 제한사유로 명시함.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용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 기관홍보물품 제작, 도서 구입, 종이가방 제작, 뉴스저작권 구매 및 이용, 2024년 다이어리 및 달력 제작 등에 지출한 것은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고 필수적 경비의 충당으로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46조에서 전용 및 자체전용의 제한사유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연도말(2023년 12월)에 자체전용을 통해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한 점은 “예산집행지침”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음.

---

231)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232)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35, 2023. 1.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재정법」 등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초과계상 및 낭비적 지출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특화산업육성(3336-302)

□ 사업 및 결산 개요

‘지역특화산업육성’(2013~, 출연 및 보조)은 지역주력산업, 인구감소지역 내 지역연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지역주력산업육성, 시군구연고산업육성), 데이터 플랫폼 운영, 장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역혁신기관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 기업 지원 등(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 대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

2023년도 예산현액은 801억 8,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역특화산업육성	80,181	80,181	-	-	-	80,181	80,181	-	-	80,181
지역주력산업 육성	58946	58946	-	-	-	58946	58946	-	-	45,444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13,748	13,748	-	-	-	13,748	13,748	-	-	20,750
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	5,487	5,487	-	-	-	5,487	5,487	-	-	13,987
대전테크노파크 기반조성	2,000	2,000	-	-	-	2,000	2,000	-	-	-

□ 검토 의견

(1)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 보조사업 관리 강화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은 기존에 조성된 대전테크노파크(바이오벤처타운)와 연계하여 바이오창업지원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임[233].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조사업자인 대전광역시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대전광역시가 간접보조사업자인 대전테크노파크(대전TP)에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식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총 사업비는 295억 6,000만원(국비 100억원(34%), 지방비 195억 6,000만원)이며, 국비로 설계 및 건축 비용을 지원함.

동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에서 2026년까지로 변경하고, 당초 2024년 건축비로 편성할 예정이었던 25억원을 2024년 예산에 미반영하는 등 사업계획을 조정하였음.

---

233)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위치 : 유성구 전민동 461-6 외 2필지(대전테크노파크 건물 옆 추가 조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30,794.4㎡, 연면적 6,000㎡(지하 1층~지상 5층)
○ 사 업 비 : 295.6억원(국 100억원, 시 195.6억원) ※ 부지매입비 포함
○ 기대효과 : 혁신창업 생태계 구축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 총사업비(안)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국비	소계	12.65	20.00	-	30	37.35	100
	설계비	12.65	-	-	-	-	12.65
	건축비	-	20.00	-	30	37.35	87.35
시비 (대전)	소계	38	28.7	-	111	17.9	195.6
	부지매입비	33.1	3.4	-	-	-	36.5
	건축비		20.00	-	93.00	6.60	119.6
	감리비	4.90	3.30	-	14	9.30	31.5
	운영비		2.00	-	4.00	2.00	8
합계		50.65	48.7	-	161	32.25	295.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상황은 2022년 대전테크노파크 조성부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부지 매입 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된 데서 비롯되었음[234]. 당초 2022년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 후 2023년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3년 7월 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2024년 1월에야 건축 설계에 착수한 상황임.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 추진일정

구분	최초 사업계획	실제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
부지매입	2022.4~6	2023.7
건축설계	2022.7~2023.6	2023.8.~2024.9
건축공사	2023.7~2025.12	2024.10~2026.12
준공	2025.12	2026.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34)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부지 확보(부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부지 소유자의 이의제기 등 발생), 교육부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건축비로 편성된 국비 2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2년간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액은 0원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023년 예산현액 32억 6,500만원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즉, 2022년(1차년도) 설계비 12억 6,500만원과 2023년(2차년도) 건축비 20억원이 간접보조사업자 단계에서 모두 미집행되어 2024년으로 이월된 것임. 2024년 5월까지의 실집행액은 1억 6,500만원(5.1%)에 불과함.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 보조금 교부 및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보조사업자)			대전TP-사업수행자(간접보조사업자)				
	예산액	집행액(교부액)	교부액	교부현액	집행액	교부액	교부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재이월액)	집행률(B/A)
2022	1,265	1,265	1,265	1,265	1,265	1,265	1,265	-	1,265	-
2023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3,265	-	3,265 (1,265)	-
2024.5	-	-	-	-	-	-	3,265	165	-	5.1

주1: 교부현액은 해당연도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의 합계임.
주2: 다음연도 이월액 중 재이월액이 포함된 경우 해당 재이월액을 괄호 안에 기입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말 착공하게 되면 이월액인 잔여 설계비 및 건축비(선금)를 전액 집행할 수 있고, 2026년 하반기 준공 계획에 맞춰 향후 정상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 향후 집행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2025 (안)	2026 (안)	계
		2024.5.	계획액			
국비	소계	**165**	**3,100**	3,000	3,735	10,000
	설계비	165	1,100	-	-	1,265
	건축비	-	2,000	3,000	3,735	8,735
시비	소계	3,193	3,477	11,100	1,790	19,560
	부지매입비	3,000	650	-	-	3,650
	건축비	-	2,000	9,300	660	11,960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	820	1,400	930	3,150
	운영비	193	7	400	200	800
합계		3,358	6,577	14,100	5,525	29,560

주: 중소벤처기업부는 설계용역('24.1~9월) 완료 이후 12월 중 착공 예정이며, '24.5월 기준 잔여 설계비(국비 11억) 및 건축비(국비 20억, 지방비 28.2억), 부지매입·운영비(지방비 6.57억)는 '24년 내 전액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 설계비(12억 6,500만원)는 이미 재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연도에 차질없이 설계를 마무리하여 집행을 완료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예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4년 예산을 미편성하는 등 연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한 것은 연례적 집행부진 방지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간접보조사업자(대전테크노파크) 집행단계에서 예산 이월이 발생하였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및 2023년 보조사업자인 대전광역시에 예산액 전체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대전테크노파크기반조성 2023년 보조금(사업비)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보조금 지급일자	차 수	금 액	수령인
2023-08-25	1차	1,000	대전광역시
2023-09-20	2차	600	대전광역시
2023-11-23	3차	400	대전광역시
합 계		2,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235]은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비 부담능력,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지연으로 인해 이미 보조사업자가 보유한 이월금의 집행 가능성도 낮은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2023년의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미교부하였어야 함[236].

---

23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착공 및 선금 지급을 통해 2024년으로 이월된 공사비 20억원을 전액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나, 연도 말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점에 선금을 지급할 경우 단순히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선금 지급은 그 한도까지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업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임[237].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238]은 사고이월이 불가

---

236) 중소벤처기업부 및 보조사업자(대전광역시)가 전액 교부한 보조금(자금)은 집행되지 않은 채 간접보조사업자인 대전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게 됨. 자금은 월별로 계획되어 실제로 집행 가능한 국고금이므로, 이와 같은 보조금 전액 교부로 인해 다른 사업이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사업 등은 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였음에도 정기자금이 원활하게 교부되지 않아 집행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 및 기금 집행보고서, 2023.10, 2023.11).

「국고금 관리법」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7)「국고금 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38)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피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금 지급한도와는 별개로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 즉 사업진도를 감안하여 계약 상대방의 공사 등 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선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 교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상황,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연말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2. 지식산업센터(자율) 등(5153-303 등)

□ 사업 및 결산 개요

‘지식산업센터’(2012~, 보조)[239]는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임.

2022년까지 ‘창업인프라지원’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3년 예산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되면서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음.

지식산업센터 관련 2023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제주 및 세종 지역지원계정을 포함한 3개 세부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394억 4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3년도 지식산업센터 관련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합 계	139,404	139,404	-	-	-	139,404	139,404	-	-	73,219
지식산업센터(자율)	123,408	123,408	-	-	-	123,408	123,408	-	-	63,770
지식산업센터(제주)	10,001	10,001	-	-	-	10,001	10,001	-	-	4,249
지식산업센터(세종)	5,995	5,995	-	-	-	5,995	5,995	-	-	5,200

239) 2009년 고위당정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舊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로 추진된 사업으로, 제주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21년부터 추진됨.

□ 검토 의견

(1) 적정 예산 편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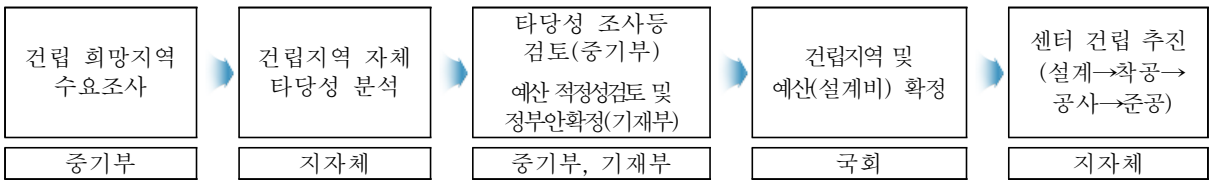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2012년 도입 이후 2024년 현재까지 18개 지역의 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41개 지역은 건립을 진행 중임.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하고, 국비로 설계비 및 건립 비용을 보조(70%, 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240].

지식산업센터건립 추진 현황

구 분	1차 ('12~'16)	2차 ('15~'18)	3차 ('16~'19)	4차 ('17~'20)	5차 ('18~'21)	6차 ('19~'22)
지 역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대구(수성)** **대전(동구)** **경남(진주)**	**대구(달서)** **충북(청주)** **전북(전주)**	**울산(남구)** **전북(전주)** **경북(포항)**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강원(춘천) **전북(남원)** 전남(나주) **전남(영광)** 경남(창원)
센터 수	3	3	3	3	4	5
진행사항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2, 공사 3
구 분	**7차 ('20~'23)**	**8차 ('21~'25)**	**9차 ('22~'26)**	**10차 ('23~'27)**	**11차 ('24~'28)**	
지 역	부산(강서) 대구(북구) 광주(북구) 충북(제천) 충남(홍성) 전북(전주) 전남(광양)	충북(충주) 충북(영동) 충남(아산) 충남(서천) 전남(화순) 경북(경산) 세 종 제 주	광주(남구) 강원(강릉) 충남(금산) 전북(김제) 전북(순창) 경북(영천) 경남(김해)	광주(북구) 울산(울주)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남(밀양)	광주(광산) 대전(중구) 대전(유성) 충북(청주) 충북(보은) 충북(증평) 충남(공주) 충남(보령)	전북(익산) 전남(목포) 경남(양산)
센터 수	7	8	7	5	11	
진행사항	공사 중	공사 5, 설계 3	설계 중	설계 중	설계 준비	

주: 건립완료된 지역은 굵은글씨 표기, 사업중단 1개 센터 제외(6차 울산 중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40) 진행절차



동 사업은 연례적인 예산 실집행 부진으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지적[241]을 받아왔음. 그러나 2023년 최종 사업수행자 단계의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242]도 48.3% 수준에 불과하며, 전년도 이월액 319억 5,600만원 중 90억 9,200만원(28.5%)이 2024년으로 재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 지연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3년 지식산업센터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시행주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다음연도 이월액 (재이월액)	불용액 (반납액)	실집행률 (D/C)
합계	139,404	139,404	139,404	45,731	185,135	89,363	95,772 (9,094)	-	48.3
지방자치단체	123,408	123,408	123,408	44,945	168,353	84,074	84,279 (9,092)	-	49.9
제주	10,001	10,001	10,001	757	10,758	5,260	5,498 (2)	-	48.9
세종	5,995	5,995	5,995	29	6,024	29	5,995 (-)	-	0.5

주: 재이월액은 2022년 예산액이 2023년으로 이월 후 2024년으로 재이월된 경우를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사업비가 교부된 7~10차 선정지역의 상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최종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전체 27개(7~10차) 건립사업 중 21개 지역(77.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이 중 14개 지

241)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제도개선),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제도개선),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주의)

242) 예산액 전액을 교부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교부현액(189,974백만원) 대비 실집행률은 30.2%에 해당

역의 경우 교부현액의 80% 이상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전남(화순), 강원(강릉), 충남(금산), 경남(김해) 지역은 100% 전액을 이월하였음.

2023년 지식산업센터 사업 중 실집행률 50% 미만 사업(21개 지역)

(단위: 백만원, %)

차수	센터명	본예산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E)	실 집행률 (D/C)	이월액 비율 (E/C)
7차	전남(광양)	6,121	6,121	2,826	8,947	3,942	5,005	44.1	55.9
('20)	전북(전주)	10,450	10,450	3,864	14,314	7,139	7,175	49.9	50.1
6곳	광주(북구)	9,450	9,450	4,234	13,684	215	13,469	1.6	**98.4**
	충북(제천)	6,822	6,822	4,478	11,300	4,226	7,074	37.4	62.6
	부산(강서)	6,000	6,000	2,155	8,155	1,154	7,001	14.2	**85.8**
	대구(북구)	6,131	6,131	4,550	10,681	5,287	5,394	49.5	50.5
8차	충남(서천)	3,787	3,787	20	3,807	1,881	1,926	49.4	50.6
('21)	충북(영동)	7,683	7,683	397	8,080	411	7,669	5.1	**94.9**
7곳	경북(경산)	1,600	1,600	1,591	3,191	1,210	1,981	37.9	62.1
	충남(아산)	3,788	3,788	1,000	4,788	525	4,263	11.0	**89.0**
	전남(화순)	3,000	3,000	981	3,981	-	3,981	0	**100**
	세종	5,995	5,995	29	6,024	29	5,995	0.5	**99.5**
	제주	10,001	10,001	757	10,758	5,260	5,498	48.9	51.1
9차	광주(남구)	1,250	1,250	500	1,750	246	1,504	14.1	**85.9**
('22)	강원(강릉)	1,250	1,250	500	1,750	-	1,750	0	**100**
5곳	충남(금산)	1,250	1,250	500	1,750	-	1,750	0	**100**
	경남(김해)	1,220	1,220	500	1,720	-	1,720	0	**100**
	전북(김제)	5,250	5,250	473	5,723	41	5,682	0.7	**99.3**
10차	전남(순천)	1,000	1,000	-	1,000	52	948	5.2	**94.8**
('23)	울산(울주)	1,000	1,000	-	1,000	39	961	3.9	**96.1**
3곳	충남(천안)	1,000	1,000	-	1,000	21	979	2.1	**97.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더구나 위 사업들(7~9차)은 대부분 2022년 예산이 삭감(추경)되거나 실집행률 부진으로 이월 우려가 있음에도 2023년 예산에 과도하게 증액 편성된 사업에 해당함.

2023년 실집행률 50% 미만 지역의 2023년 예산 증액현황

(단위: 백만원, %)

차수	센터명	2022년 예산 및 집행 내역					2023년 예산 편성
		2022년 예산액	예산삭감액 (본예산 -추경예산)	예산 삭감률	편성 당시 실집행률 (22.9)	2022년 최종 실집행률	전년 대비 예산증액률 (전년 추경예산 대비)
7차	전남(광양)	3,094	△1000	**32.3**	0.1	31.8	**192.3**
('20)	전북(전주)	4,050	△1000	**24.7**	17.8	19.5	**242.6**
6곳	광주(북구)	4,050	△1000	**24.7**	0.4	10.6	**209.8**
	충북(제천)	4,050	△1000	**24.7**	3.2	18.0	**123.7**
	부산(강서)	-	-	-	0.8	13.8	**순증(60억원)**
	대구(북구)	4,050	△1000	**24.7**	5.2	9.7	**101.0**
8차	충남(서천)	750	△750	**100.0**	32.6	60.3	**순증(38억원)**
('21)	충북(영동)	750	-	**-**	2.0	9.1	**924.4**
7곳	경북(경산)	750	△750	**100.0**	0	98.0	**순증(16억원)**
	충남(아산)	750	△750	**100.0**	0	0	**순증(38억원)**
	전남(화순)	750	△750	**100.0**	0	1.9	**순증(30억원)**
	세종	750	△750	**100.0**	6.2	97.1	**순증(60억원)**
	제주	750	-	-	30.6	47.0	**1233.5**
9차	광주(남구)	1,000	△500	**50.0**	0	0	**150.0**
('22)	강원(강릉)	1,000	△500	**50.0**	0	0	**150.0**
5곳	충남(금산)	1,000	△500	**50.0**	0	0	**150.0**
	경남(김해)	1,000	△500	**50.0**	0	0	**144.0**
	전북(김제)	1,000	△500	**50.0**	0	5.4	**950.0**

주: 부산(강서), 충남(서천), 경북(경산), 충남(아산), 전남(화순), 세종의 경우 2022년 본예산 미편성 또는 추경 전액 삭감되었으며, 2021년 예산 이월액으로 집행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또한, 광주(북구), 충남(서천), 충북(영동), 세종의 경우 2023년 공사 착수에 따라 전체 공사비 중 5% 수준으로 1차년도 공사비를 편성했어야 했으나[243] 18~39% 수준으로 과다하게 편성되었음. 사실상 2024년에 공사가 시작되는 부산(강서), 충남(아산)의 경우에도 2023년 예산에 설계비뿐 아니라 공사비를 각각 30%, 16%로 함께 편성하는 등 공사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음.

243)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사업 시작연도 설계 완료 후 연차별 공사비를 총 공사비의 5%, 20%, 50%, 25% 순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운영 중임.

2023년 주요 부진사업 공사비 편성비율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사업기간	공사비 총 소요액 (a)	2023년 본예산 (b)	공사비 편성비율 (b/a)	2023년 추진계획	2023년 실집행률
광주(북구)	2020~2025	34,762	9,450	27.2	2023년 하반기 공사착수	1.6
부산(강서)	2020~2026	20,335	6,000	29.5	2023년 설계	14.2
충남(서천)	2021~2025	20,551	3,787	18.4	2023.7. 공사착수	49.4
충북(영동)	2021~2024	19,764	7,683	38.9	2023.2. 공사착수	5.1
충남(아산)	2021~2026	24,246	3,788	15.6	2023.12. 공사착수	11.0
세종	2021~2026	29,226	5,995	20.5	2023.6. 공사착수	0.5

주1: 공사비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은 미포함됨.
주2: 7~9차 선정지역 사업들은 2022년까지 설계비가 旣 편성되어, 2023년에는 공사비만 편성되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4년→5년), 연차별 공사비 편성비율 변경, 신규 센터 후보지 요건 강화[244], 분기별 사업수행점검 등 제도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정한 예산 편성방침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 실집행 실적은 여전히 매우 저조함.

이러한 예산 실집행 부진은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에도 해당되어, 제주, 세종 등 전체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비의 실집행률은 54.3% 수준임. 때문에 향후 집행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각 지역별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연차별 예산규모의 재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244) 건립부지 확보 증빙자료, 타당성 조사결과보고서 등이 사전에 제출된 경우에만 신규 센터 후보지로 검토하도록 함(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계획)

2023년 사업별·재원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 (A)	실집 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지방자치단체	국비	123,408	44,945	168,353	84,074	84,279	-	48.6
	지방비	55,759	19,303	75,062	44,546	30,516	-	59.3
	계	179,167	64,248	243,415	128,620	114,795	-	52.8
제주	국비	10,001	757	10,758	5,260	5,498	-	48.9
	지방비	2,400	1,084	3,484	1,806	1,678	-	51.8
	계	12,401	1,841	14,242	7,066	7,176	-	49.6
세종	국비	5,995	29	6,024	29	5,995	-	0.5
	지방비	-	750	750	259	491	-	34.5
	계	5,995	779	6,774	288	6,486	-	4.3
합계	국비	139,404	45,731	185,135	89,363	95,772		48.3
	지방비	**71,755**	**20,089**	**91,844**	**49,835**	**42,009**		**54.3**
	계	211,159	65,820	276,979	139,198	137,781		50.3

주: 재이월액은 2023년으로 이월 후 2024년으로 재이월된 2022년 예산액에 해당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지역이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집행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적정 가이드라인 제시 등 부처 차원의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별 사업 추진상황에 맞는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245].

24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 예산편성 방식: 지자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요구예산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배정예산 조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재정부에 지자체 신청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	기획재정부	→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자체
○사전협의(수요조사) ○타당성 조사(지자체)		○예산편성지침 송부 ○예산확정		○가이드라인 제시 ○예산신청내용 검토		○예산 신청 ○사업 관리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2023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10조 2,398억원 규모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753억원을 증액해 계획현액은 4.6% 증가한 10조 7,151억원으로 운용됨.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3高 복합위기 심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선제적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5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00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300억원, 차입금이자상환 749억원, 중진기금 기본경비 4억원을 증액하였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7.21.	민간차입금	3,775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1,000	창업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및 자금 신청률 증가에 따른 계획변경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000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설투자 지원 확대에 따른 계획변경
	융자원금회수	225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500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한 수출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변경
			재도약지원자금(융자)	200	3高 복합위기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계획변경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300	금융권 위험관리 강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단기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한 계획변경
11.15.	융자원금회수	△6,384	차입금이자상환	749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조달 금리 증가, 연중 융자 예산 증액에 따른 차입금 이자지출 증가 소요 계획변경
	융자이자회수	749			
	민간차입금	6,384	중진기금기본경비	4	제1·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채권 발행 수수료 소요 계획변경
	여유자금회수	4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은 계획현액의 99.9%인 10조 7,108억원을 수납하고 지출은 계획현액의 99.9%인 10조 7,108억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3 이월 (f)	차액 (e+f-d)
		2023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46,026	△5,410	-	40,616	41,943	103.3	-	1,328
	▪ 융자원금회수	41,621	△6,159	-	35,462	35,858	101.1	-	396
	▪ 재산수입	4,085	749	-	4,834	5,724	118.4	-	890
	- 융자이자수입	4,036	749	-	4,785	5,608	117.2	-	823
	- 기타재산수입	49	-	-	49	116	236.3	-	6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102	-	-	102	75	73.4	-	△27
	- 기타잡수입	102	-	-	102	75	73.4	-	△27
	▪ 기타경상이전수입	217	-	-	217	286	131.4	-	69
	2. 정부내부수입	12,431	-	-	12,431	12,431	100.0	-	-
	▪ 일반회계전입금	11,642	-	-	11,642	11,642	100.0	-	-
	▪ 복권기금전입금	789	-	-	789	789	100.0	-	-
	3. 민간차입금	43,812	10,159	-	53,971	52,600	97.5	-	△1,371
	4. 여유자금회수[246]	130	4	-	133	133	100.0	-	-
	합계	102,398	4,753	-	107,151	107,108	100.0	-	△43
지출	1. 사업비	47,616	4,000	-	51,616	51,573	99.9	3	△40
	▪ 융자사업	42,271	4,000	-	46,271	46,257	100.0	-	△14
	▪ 경상사업	2,423	-	-	2,423	2,402	99.1	-	△20
	▪ 자본사업	2,923	-	-	2,923	2,914	99.7	3	△6
	2. 기금운영비	1,362	4	-	1,366	1,357	99.3	-	△9
	3. 정부내부지출[247]	10,305	-	-	10,305	10,289	99.8	-	△16
	▪ 공자기금예수원금	10,000	-	-	10,000	10,000	100.0	-	-
	▪ 공자기금예수이자	305	-	-	305	289	94.8	-	△16
	4. 차입원금상환	38,200	-	-	38,200	38,200	100.0	-	-
	5. 차입이자상환	4,915	749	-	5,664	5,569	98.3	-	△95
	6. 여유자금운용	-	-	-	-	119	-	-	119
	합계	102,398	4,753	-	107,151	107,108	100.0	3	△40
결산잔액(수입-지출)		-	-	-	-	-	-	-	-

246) 전기이월금

247)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분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 10조 2,398억원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4,753억원(4.6%) 증가한 10조 7,151억원이며, 실현된 수입액은 계획현액 대비 99.9%에 해당하는 10조 7,108억원임.

2023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과부족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46,026	-	△5,410	40,616	41,943	1,328
○ 융자원금회수	41,621	-	△6,159	35,462	35,858	396
○ 재산수입	4,085	-	749	4,834	5,724	890
- 융자이자수입	4,036	-	749	4,785	5,608	823
- 기타재산수입[248]	49	-	-	49	116	67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등	102	-	-	102	75	△27
- 기타잡수입[249]	102	-	-	102	75	△27
○ 기타경상이전수입	217	-	-	217	286	69
□ 정부내부수입	12,431	-	-	12,431	12,431	-
○ 일반회계전입금	11,642	-	-	11,642	11,642	-
○ 복권기금전입금	789	-	-	789	789	-
□ 민간차입금	43,812	-	10,159	53,971	52,600	△1,371
□ 여유자금회수 등	130	-	4	133	133	-
합계	102,398	-	4,753	107,151	107,108	△43

융자원금회수는 중소기업 융자금의 정기·조기회수에 따른 융자원금

248) 예치금이자 등

249) 연수사업 등 경상사업수입

수입으로 2023년에는 3조 5,858억원을 수납하였음.

재산수입은 융자이자수입과 사업대기성자금의 단기 금융기관 예치금 및 출자회사 배당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재산수입으로 2023년에는 5,724억원을 수납하였음.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연수수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임차료 등 경상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3년에는 75억원을 수납하였음.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36[250]에 따른 기술료 수입금 및 「경륜·경정법」제18조에 따른 수익금 법정 배분[251] 출연금으로 2023년에는 286억원을 수납하였음.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조 1,642억원 및 복권기금전입금[252] 789억원을 수납하였고, 융자사업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중진채를 발행하는 민간차입금은 5조 2,600억원을 수납하였음.

---

25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251) 경주사업자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기 위해 수익금의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100분의 17.5, 진흥공단인 경우 100분의 4로 수익금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음.

25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사업 수행에 따른 이차보전을 목적으로 복권위원회에서 복권수익금의 6.356%를 중진공에 배분함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당초계획 10조 2,398억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분 4,753억원을 포함한 10조 7,151억원임. 이 중 99.9%에 해당하는 10조 6,988억원을 집행하였음.

전용 및 증감액(4,753억원)은 3高 복합위기의 장기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설투자 촉진, 수출목표 달성 등을 위하여 선제적 유동성 공급을 위한 융자예산(4,000억원)과 차입금이자상환(749억원) 및 민간차입금 추가 조달을 위한 수수료 목적의 중진기금 기본경비(4억원) 증액에 따른 것임.

2023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불용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융자사업	42,271	-	4,000	46,271	46,257	-	14
○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2,300	-	1,000	23,300	23,300	-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1,039	-	1,500	2,539	2,536	-	3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4,030	-	200	4,230	4,230	-	-
○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1,931	-	1,000	12,931	12,920	-	11
○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2,589	-	-	2,589	2,589	-	-
○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382	-	300	682	682	-	-
□ 경상사업	2,423	-	-	2,423	2,402	-	20
○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79	-	-	179	176	-	3
○ 글로벌협력기반구축	18	-	-	18	18	-	-
○ 글로벌화지원플랫폼	455	-	-	455	451	-	3
○ 온라인수출플랫폼(정보화)	34	-	-	34	34	-	-
○ 재도약촉진	95		-	95	94	-	1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4	-	-	14	14	-	-
○ 연수사업	427	-	-	427	425	-	2
○ 중소기업정보제공	19	-	-	19	19	-	-
○ 창업성공패키지	981	-	-	981	971	-	10
○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취업지원	89	-	-	89	88	-	1
○ 중소기업전략기술연구조사	25	-	-	25	25	-	-
○ 융복합기술교류촉진	37	-	-	37	37	-	-
○ 중소기업기술사업화역량강화	39		-	39	39	-	-
○ 중소기업 정책달성형 이차보전	10	-	-	10	10	-	-
□ 자본사업	2,923	-	-	2,923	2,914	3	6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835	-	-	2,835	2,835	-	-
○ 중진기금 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68	-	-	68	67	-	1
○ 전북연수원건립	8	-	-	8	4	-	4
○ 전남연수원건립	12	-	-	12	8	3	1
<사업비 총계>	47,616	-	4,000	51,616	51,574	3	40
□ 차입금원금상환	38,200	-	-	38,200	38,200	-	-
□ 차입금이자상환	4,915	-	749	5,664	5,569	-	95
□ 기금운영비	1,362	-	4	1,366	1,357	-	9
□ 정부내부지출	10,305	-	-	10,305	10,289	-	16
□ 여유자금운용	-	-	-	-	119	-	△119
합계	102,398	-	4,753	107,151	107,108	3	40

불용액은 159억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 40억원, 경비 절감을 통한 기금운영비 9억원, 채권 일부 미발행에 따른 이자 절감분 95억원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전남연수원 건립사업의 당초 계획대비 일정 지연에 따라 3억원이 발생하였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지출) 이월액·불용액 사유

(단위: 억원)

구 분	이월액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3	40	
융자사업	-	14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3), 신성장기반자금(융자)(11) 이차보전금 잔액 불용
경상사업	-	20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3), 글로벌화지원플랫폼(3), 재도약촉진(1), 연수사업(2), 창업성공패키지(10),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취업지원(1) 등 낙찰차액, 집행잔액 불용
자본사업	3	6	중진기금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 전북연수원건립(4), 전남연수원건립(1) 낙찰차액 등 잔액 불용 전남연수원건립(3)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비 이월
【기금운영비】	-	9	중진기금기본경비(9) 공공기관 혁신방안 이행 절감, 낙찰차액 등 불용
【정부내부지출】	-	1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16) 절감
【차입금이자상환】	-	95	중진채 발행* 계획 대비 미발행에 따른 차입금이자(95) 경감 * (계획) 53,971억원 → (발행) 52,600억원
합 계	3	159*	

주: 여유자금운용(보전지출) 제외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3		2022	
자산				
Ⅰ. 유동자산		41,239		35,396
1. 현금및현금성자산		643		547
1) 현금및현금등가물	643		547	
2. 단기금융상품		198		407
1) 기타의단기금융상품	198		407	
3. 단기투자증권		2,134		782
1) 채무증권	2,134		782	
4. 미수채권	433		237	
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8		7	
2) 미수이자수익	183		141	
3) 기타의미수금	243		9	
미수채권대손충당금	56	377	15	222
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	7		7	
2) 미수이자수익대손충당금	1		1	
3)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48		7	
4. 단기대여금	38,341		33,908	
1) 정부외단기대여금	38,341		33,908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890	37,450	815	33,093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890		815	
5. 기타유동자산		436		345
1) 재고자산	20		20	
2) 파생상품자산	52		1	
3) 선급비용	4		18	
4) 선급법인세	8		4	
5) 지급보증금	352		302	
Ⅱ. 투자자산		247,163		251,932
1. 장기대여금	207,036		205,799	
1) 정부외장기대여금	207,036		205,799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22,501	184,535	14,334	191,465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22,501		14,334	
2. 장기투자증권		62,134		60,002
1) 채무증권	1,114		2,166	
2) 지분증권	61,019		57,836	
3. 기타투자자산		494		464
1) 투자회원권	14		15	

	2023			2022		
2) 파생상품자산		480			449	
Ⅲ. 일반유형자산			3,263			3,221
1. 토지			1,669			1,669
2. 건물		1,521			1,508	
건물감가상각누계액		174	1,347		71	1,437
3. 구축물		41			38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2	39		1	37
4. 기계장치		172			181	
1) 이동성기계장치	172			181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66	6		170	12
1) 이동성기계장치감가상각 누계액	166			170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324			314	
1) 사무용기기	320			310		
2) 운반건설기계및차량	4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279	45		261	53
1) 사무용기기감가상각 누계액	275			257		
2) 운반건설기계및차량감가상각누계액	4			4		
6. 기타일반유형자산			-			- -
1)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		-			-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 누계액		-	-		-	-
1) 기타의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			-		
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57			14
1) 건설중인토지		-			-	
2) 건설중인건물		157			14	
Ⅳ. 무형자산			109			89
1. 소프트웨어			109			89
1) 내부개발소프트웨어		78			55	
2) 외부구입소프트웨어		31			33	
Ⅴ. 기타비유동자산			283			326
1. 장기미수채권		82			81	
1) 장기미수이자수익		-		-		
2) 장기기타의미수금				81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82	-		81	-
1) 장기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82			81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83			326
1) 장기지급보증금		283		326		
자산계			292,057			290,964
부채						
Ⅰ.유동부채			48,906			49,020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47,899			48,199
1) 유동성장기공채	39,900			38,200		
유동성장기공채할인발행차금	1	39,899		1	38,199	
2) 유동성국내장기차입금		-			-	
3)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8,000			10,000	
2. 기타유동부채			1,007			821
1) 미지급금		12			13	

	2023			2022	
2) 예수금		46		52	
3) 예수보증금		5		10	
4) 미지급비용		943		745	
5) 선수수익		2		1	
6) 파생상품부채		-		-	
Ⅱ. 장기차입부채		191,674			186,574
1. 공채	191,423		178,330		
공채할인발행차금	49	191,374	56	178,274	
2. 장기차입금		300		8,300	
1) 국내장기차입금		-		-	
2) 정부내장기차입금		300		8,300	
Ⅲ. 장기충당부채		305			293
1. 퇴직급여충당부채		304			291
1) 퇴직급여충당부채	906		843		
퇴직보험예치금	1		1		
퇴직연금운용자산	601	304	551	291	
2. 기타장기충당부채		-			2
1) 소송충당부채		-		2	
Ⅳ. 기타비유동부채		4,254			4,503
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4,254			4,503
1) 파생상품부채		4,227		4,484	
2) 장기예수보증금		27		19	
부채계		245,139			240,390
순자산					
Ⅰ. 기본순자산		20,571			20,571
Ⅱ. 적립금 및 잉여금		23,560			27,382
Ⅲ. 순자산조정		2,786			2,621
순자산계		46,917			50,574
부채와 순자산계		292,057			290,964

2023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자산은 29조 2,057억원으로 전년대비 0.37%인 1,092억원이 증가함. 세부 계정과목별로 보면, 대여금 집행률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대여금이 5,672억원 증가하였으며, 모태조합 신규 출자 관련 투자자산이 3,484억원 증가하였음. 또한, 자산재평가등으로 유형자산이 62억원 증가하였으며, 후순위사채 추가 취득 등으로 기타자산이 117억원 증가하였음.

부채는 24조 5,139억원으로 전년대비 1.98%인 4,748억원이 증가함. 세부 계정과목별로 보면, 채권 규모의 증가로 장·단기차입금이 전년대비 4,544억원 증가하였으며, 채권발행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기타부채가 206억원 증가하였음.

순자산은 4조 6,917억원으로 전기 대비 3,657억원(7.23%)이 감소하였음. 이는 적립금 및 잉여금 감소 3,822억원(재정운영결과 6,745억원 손실, 출연금 전입 2,923억), 순자산조정 증가 165억원의 결과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22,871	△6,924	15,947	14,804	△7,142	7,662
1.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471	△20	451	456	△25	431
2.창업환경조성	13,645	△3,456	10,189	7,779	△3,260	4,519
3.벤처기업활성화지원	16	△32	△17	21	△9	12
4.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7,904	△3,373	4,531	5,871	△3,795	2,076
5.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16	-	116	115	-	115
6.중소기업육성지원	30	△3	27	36	△2	34
7.중소기업인력지원	689	△40	649	526	△51	474
Ⅱ.관리운영비			485			476
1.인건비			344			334
2.경비			141			142
(1)복리후생비			30			29
(2)소모품비			5			6
(3)인쇄비			1			1
(4)광고선전비			-			-
(5)지급수수료			38			40
(6)세금과공과			13			12
(7)수도광열비			1			1
(8)지급보험료			1			-
(9)교육훈련비			3			3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10)지급임차료			13			14
(11)유류비			-			-
(12)수선유지비			2			1
(13)여비교통비			4			4
(14)업무추진비			2			2
(15)기타이전비용			3			-
(16)감가상각비			24			27
Ⅲ.비배분비용			279			361
1.재화및용역제공원가			0			0
2.대손상각비			22			28
3.이자비용			256			332
4.평가손실			1			1
5.기타비용			-			-
Ⅳ.비배분수익			429			353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314			268
2.이자수익			78			46
3.평가이익			1			1
4.자산처분이익			-			-
5.기타수익			36			37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6,281			8,147
Ⅵ.비교환수익 등			9,536			7,915
1.제재금수익			28			32
2.기타재원조달및이전			9,508			7,883
Ⅶ.재정운영결과(Ⅴ-Ⅵ)			6,745			231

2023회계연도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순원가는 총 1조 5,947억원으로 전년대비 108%인 8,285억원이 증가함. 프로그램순원가가 증가한 주된 사유는 채권발행 차입금 이자비용 및 융자보조원가비용 증가 등임. 주요 프로그램별 순원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4,531억원, 창업환경조성 1조 189억원, 중소기업인력지원 649억원,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451억원, 기타[253] 126억원임.

개별 프로그램에 배분되지 않는 관리운영비는 지원부서 인건비 등 485억원임. 기타 현행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의 경우, 비배분비용은 2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1%인 82억원이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은 42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53%인 7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비교환수익은 수익 처리되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621억원이 증가한 9,536억원임.

25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116억원, 벤처기업활성화지원 △17억원, 중소기업육성지원 27억원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2023년 기초순자산	20,571	27,382	2,621	50,574
1. 보고금액	20,571	27,382	2,621	50,574
Ⅱ. 재정운영결과	-	6,745	-	6,745
Ⅲ. 조정항목	-	2,923	165	3,089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195	195
2. 파생상품평가손익	-	-	△5	△5
3. 자산재평가이익	-	-	△24	△24
4. 기타순자산의증감	-	2,923	-	2,923
Ⅳ. 2023년 기말순자산(Ⅰ-Ⅱ+Ⅲ)	20,571	23,560	2,786	46,917
Ⅴ. 2022년 기초순자산	20,571	22,930	2,520	46,021
1. 보고금액	20,571	22,930	2,520	46,021
Ⅵ. 재정운영결과	-	231	-	231
Ⅶ. 조정항목	-	4,683	101	4,784
1. 투자증권평가손익	-	-	88	88
2. 파생상품평가손익	-	-	△6	△6
3. 자산재평가이익	-	-	18	18
4. 기타순자산의증감	-	4,683	-	4,683
Ⅷ. 2022년 기말순자산(Ⅴ-Ⅵ+Ⅶ)	20,571	27,382	2,621	50,574

2023회계연도 순자산변동은 기말순자산(4조 6,917억원)과 기초순자산(5조 574억원)의 차액인 3,657억원 감소이며, 이는 재정운영결과 6,745억원 손실, 출연금 자본전입 2,923억원, 순자산조정 165억원으로 구성됨.

Ⅱ. 검토의견

1.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타민간이자수입’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254]에 따른 이자 수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관련 이자 수입)을 수납하는 과목임. 2023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의 수입계획액은 당초 3,251억 2,000만원이었으나 회계연도 중 3,418억 500만원으로 증액(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되었음. 징수결정액은 4,624억 5,400만원으로, 이 중 4,169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고 378억 1,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77억 1,1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3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민간 이자수입	325,120	341,805	-	341,805	462,454	416,925	37,819	7,711	502,634

25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⑤ 기금 관리자는 제6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 검토의견

(1) 수입 과소계상 재발방지 필요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타민간이자수입’ 징수실적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당초 수입계획액 3,251억 2,000만원 및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한 수정 수입계획액 3,418억 500만원을 초과한 4,624억 5,4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실제 수납액도 당초 수입계획액과 수정 수입계획액을 초과한 4,169억 2,500만원으로 나타남.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타민간이자수입’은 정책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 수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관련 이자수입)을 수납하는 과목으로, 실제 수납액은 정책자금 융자액과 융자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즉, 초과수납액의 발생은 정책자금 융자액이나 융자금리를 실제보다 과소하게 예측함에 기인함.

이중 정책자금 융자금리와 관련하여 2023년도 당초 수입계획액 편성은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2.30%로 유지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임. 실제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023년도 1사분기와 2사분기의 경우 계획안 편성 당시 수치(2.30%)보다 0.90%p 높은 3.20%로, 3사분기와 4사분기의 경우 0.60%p 높은 2.90%로 변경되어 운용되었음. 정책자금별 융자금리는 융자유형별로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일정 금리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책정되어 운용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도 중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하여 2023년 11월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였으며, ‘기타민간이자수입’ 계획액을 당초 3,251억 2,000만원에서 3,418억 500만원으로 약 167억원 증액 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3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계획액		
	당초	제2차 변경 증감액 (11.15)	수정
융자이자수입	403,606	+74,900	478,506
- 기타민간이자수입(직접대출)	325,120	+16,685	341,805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대리대출)	78,486	+58,215	136,70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런데 이러한 수입계획액 변경에도 실제 수납액은 변경 계획액 대비 약 650억원 가량 초과함. 이는 수입계획액 변경(기금계획 자체변경)이 167억원에 그쳐 0.60%p~0.90%p 급증한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임.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효과는 당초 수입계획액 편성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2.30%이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26.1%[255]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848억 5,600만원[256] 이상 수입계획액의 증액이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으로 보임.

255) (2.90% - 2.30%) ÷ 2.30% × 100(%) = 26.1(%)

256) 325,120(백만원) × 0.261 = 84,856(백만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수입계획액을 증액 변경한 2023년 11월은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급등(2.30% → 3.20%)한 2023년 1월에서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임. 즉,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상효과를 분석하여 수입계획액 증액 변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음.

‘기타민간이자수입’의 과소계상은 기금 지출 규모를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반영하거나 일반회계 전입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하여 확보하는 수입을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반영하는 문제로 이어져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타민간이자수입’ 계획액을 편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수입 과소계상에 따른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세입·세출금(수입·지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을 수납하는 세입(수입) 과목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257]에 따른 원금회수금 및 배당금, 그리고 기금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등[258]을 수납함. 2023년도 수입계획액은 49억 2,400만원이었으나 116억 3,4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음.

2023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타재산 이자수입	4,924	4,924	-	4,924	11,634	11,634	-	-	4,986
여유자금 운용수입	1,800	1,800	-	1,800	5,301	5,301	-	-	1,800
출자·투자 수입	3,124	3,124	-	3,124	6,332	6,332	-	-	3,186

25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5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검토의견

(1) 여유자금 운용수입 추계방식 개선필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중 ‘여유자금 운용수입’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업대기성 자금 등을 운용한 수익을 수납한 수입 과목으로, 2023년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18억원이었으나 53억 1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전액 수납되었음.

다음의 표는 최근 5년(2019년도~2023년도)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입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계획액 대비 실제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입액(수납액)의 비율이 2019년도 116.0%, 2020년도 155.2%, 2021년도 132.6%, 2022년도 147.3%임. 2023년도의 경우 계획액 대비 실제 운용수입액(수납액)의 비율이 294.5%에 달함.

최근 5년간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9	1,800	2,088	2,088	116.0	100.0	-	-
2020	1,800	2,794	2,794	155.2	100.0	-	-
2021	1,800	2,386	2,386	132.6	100.0	-	-
2022	1,800	2,652	2,652	147.3	100.0	-	-
2023	1,800	5,301	5,301	294.5	100.0	-	-
2024	1,800	1,946	1,946	108.1	100.0	-	-

주: 2024년도 징수실적은 2024년 6월말 기준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런데, 이러한 초과수입 달성은 주로 수입계획액 추계방식이 부정확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다음의 표는 최근 5년(2019년도~2023년도)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입계획액 추계산식을 나타낸 것으로, 매년 여유자금 평균잔고를 880억원으로, 예치금리를 2.045%로 추정하여 18억원의 수입계획액을 편성하고 있음. 이러한 추계방식은 매년 변동되는 기금 운용규모, 여유자금 평균잔고 추이 및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입 추계산식

연도	계획액	산출방식
2019	1,800백만원	- 보유자금 평균잔고(88,000백만원) × 예치금리(2.045%)
2020	1,800백만원	- 보유자금 평균잔고(88,000백만원) × 예치금리(2.045%)
2021	1,800백만원	- 보유자금 평균잔고(88,000백만원) × 예치금리(2.045%)
2022	1,800백만원	- 보유자금 평균잔고(88,000백만원) × 예치금리(2.045%)
2023	1,800백만원	- 보유자금 평균잔고(88,000백만원) × 예치금리(2.045%)
2024	1,800백만원	- 보유자금 평균잔고(88,000백만원) × 예치금리(2.04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즉,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여유자금 평균잔고가 최근 3년간 2020년 1,567억 5,300만원, 2021년 1,131억 8,200만원, 2022년도 1,014억 5,100만원으로 매년 880억원을 100억원 이상 초과하였음에도 관례적으로 2023년도 여유자금 평균잔고를 880억원으로 추계한 것으로 보임.

또한, 2022년부터 급등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상황, 2022년도 여유자금운용 수익률이 2.6%로 당초 계획치(2.045%)를 초과

한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2023년도 여유자금운용 수익률을 전년도 계획당시와 동일하게 2.045%로 추계하였고, 그 결과 실제 수익률 5.1%와 3%p 이상 괴리가 발생하였음.

기금 여유자금 평균잔고 및 수익률

(단위: 백만원)

연도	실제 운용수입	여유자금 평균잔고		평균수익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2019	2,088	88,000	83,457	2.045%	2.502%
2020	2,794	88,000	156,753	2.045%	1.782%
2021	2,386	88,000	113,182	2.045%	2.108%
2022	2,652	88,000	101,451	2.045%	2.614%
2023	5,301	88,000	103,237	2.045%	5.135%
2024	-	88,000	-	2.04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금 수입계획액 추계의 오류는 사업성 기금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기금 수입계획액의 과소계상은 지출규모를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반영하거나 일반회계 전입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를 통하여 확보하는 수입을 실제 소요보다 과다하게 반영하는 문제로 이어져 기금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입계획액으로 편성하여 실제수납액과 과도한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운용규모 및 시장금리 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추계방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신성장기반자금(융자)(1261-301),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1261-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신성장기반자금(융자)’(1979~, 융자)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와 같은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혁신성장지원’, ‘스케일업금융’ 등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액 1조 1,931억원 대비 1,000억원이 증액(기금계획 자체변경으로 증액)된 1조 2,931억원으로, 이 중 1조 2,920억 2,800만원이 집행되고 10억 7,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한편,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2000~, 융자)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및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액 1,038억 5,500만원 대비 1,500억원이 증액(기금계획 자체변경으로 증액)된 2,538억 5,500만원으로, 이 중 2,535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8,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2023년도 신성장기반자금(융자) 및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신성장기반자금	1,193,100	1,293,100	-	1,293,100	1,292,028	-	1,072	1,478,944
혁신성장지원	649,200	749,200	-	749,200	748,716	-	484	806,050
제조현장스마트화	437,700	437,700	-	437,700	437,294	-	406	476,220
Net-Zero 유망기업	46,200	46,200	-	46,200	46,018	-	182	96,674
스케일업금융	60,000	60,000	-	60,000	60,000	-	-	10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3,855	253,855	-	253,855	253,574	-	281	200,500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100,000	100,000	-	100,000	100,000	-	-	100,000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3,855	153,855	-	153,855	153,574	-	281	100,500

□ 검토의견

(1) 이차보전[259] 집행실적 부진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중 ‘혁신성장지원’ 내역사업은 업력 7년 이상의 성장유망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 모두 이루어짐. 2023년도 계획현액은 7,492억원으로 이 중 7,487억 1,6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8,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제조현장스마트화’ 내역사업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자

259) 국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함.

동화시설 도입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 모두 이루어짐. 2023년도 계획현액은 4,377억원으로 이 중 4,372억 9,4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Net-Zero 유망기업'은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기업, 저탄소·친환경 제조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재정융자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이 모두 이루어짐. 2023년도 계획현액은 462억원으로 이 중 460억 1,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한편,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중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내역사업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 기술 수출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만 계획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재정융자(1,500억원) 방식의 지원이 추가되었음. 2023년도 계획현액은 1,538억 5,500만원으로 이 중 1,535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재정융자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23년부터 4개 내역사업에 이차보전 지원이 도입되었음. 이러한 이차보전 지원자금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4개 내역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계획현액은 119억 5,500만원으로, 이 중 106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5,3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8.7%로 나타남.

내역사업별 이차보전 지원의 집행률은 ‘혁신성장지원’ 88.5%, ‘제조현장스마트화’ 85.0%, ‘Net-Zero 유망기업’ 84.8%,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92.7%로, 3개 내역사업의 집행률이 90% 미만임. 이에 반해 동일한 내역사업의 재정융자 지원자금은 모든 내역사업에서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된 것으로 파악됨.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정융자				이차보전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신성장기반자금	1,285,000	1,285,000	100.0%	-	8,100	7,028	86.8%	1,072
-혁신성장지원	745,000	745,000	100.0%	-	4,200	3,716	88.5%	484
-제조현장스마트화	435,000	435,000	100.0%	-	2,700	2,294	85.0%	406
-Net-Zero 유망기업	45,000	45,000	100.0%	-	1,200	1,018	84.8%	182
-스케일업금융	60,000	60,000	100.0%	-	-	-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50,000	250,000	100.0%	-	3,855	3,574	92.7%	281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100,000	100,000	100.0%	-	-	-	-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150,000	150,000	100.0%	-	3,855	3,574	92.7%	281
합 계	1,535,000	1,535,000	100.0%	-	11,955	10,602	88.7%	1,3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차보전 정산시스템 구축 및 은행 협약체결 등 신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에 기간이 소요되었고,[260] 이차보전 지원 결정 후에도 은행의 여신 심사 등으로 실제 대출까지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함. 그 결과 예산 편성 시의 보전 기간(6개월)보다 실제 보전 기간(평균 161일)이 짧아 예산 불용액[261]이 발생하였다는 입장[262]임.

260) (2023.1) 이차보전 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 (2023.3) 은행 업무협약 체결(13개 시중은행) → (2023.3~12)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및 접수 → (2023.7, 10, 12) 분기별 정산

그러나, 예산 편성 시의 보전 기간보다 실제 보전 기간이 짧았다는 점은 당초 계획보다 자금지원(대출)이 지연되었고 이차보전 기간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가 적기에 달성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향후 이차보전의 신속한 공급 및 협약 은행에 대한 이차보전 집행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스케일업금융: 부실관리 철저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중 ‘스케일업금융’ 내역사업은 자체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우나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 6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스케일업금융’은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263]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264]을 발행하여 민간투자자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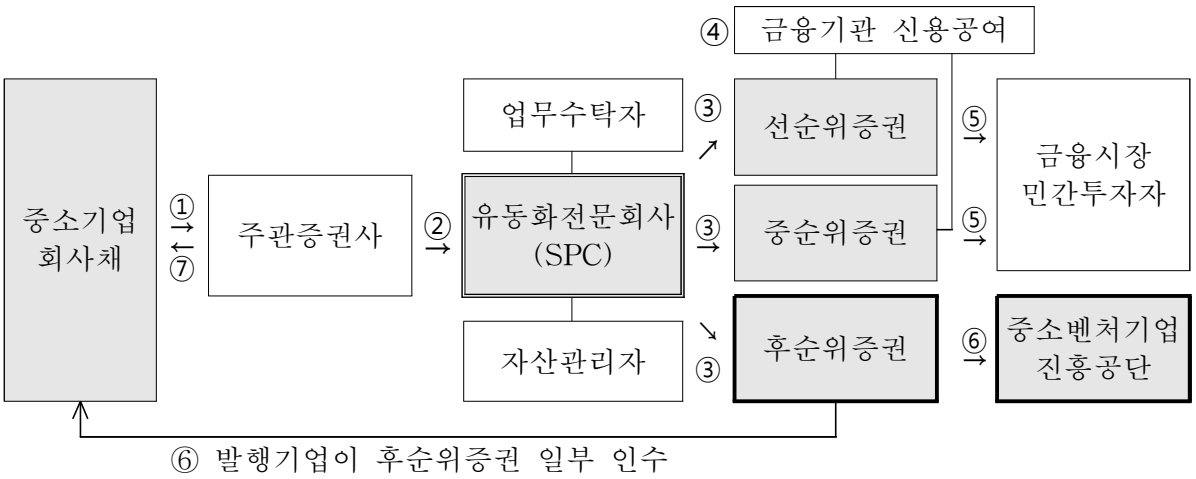
261) 예산 불용액 1,353(백만원) ≒ 11,955(백만원) x (180일-161일) / 180일

262) 다만, ’23년 이차보전 목표 공급규모 7,970억원은 공급을 완료하였다고 함.

263) 국내 공모 회사채시장은 A등급 이상의 신용도를 지닌 채권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의 보수적인 투자기준으로 인하여 그 이하 등급의 신용도를 지닌 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무보증 공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단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 이 경우 민간투자자의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인수[265]로 재정지원금액보다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임.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지원방식은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조달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증권을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당 부실을 대부분 부담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266].

---

264)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Primary CBO)라고 하고, 이미 발행된 채권을 기초로 하는 유통시장 CBO를 S-CBO(Secondary CBO)라고 함. '스케일업금융'은 이중 P-CBO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265) 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신용보강 수단으로 후순위채권 인수, 하자담보책임, 신용공여약정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증 등도 신용보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266)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도 회사채 유동화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행사업에서 민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한 후순위증권의 부실률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9년도 인수 후순위증권의 경우 24.5%, 2020년도 인수 후순위 증권의 경우 25.3%로 나타남. 이로 인한 손실액은 각각 245억원 및 246억원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케일업금융(P-CBO*) 부실현황('24.1분기 기준)

(단위: 억원)

발행연도**	발행금액 (A)	후순위 인수액(A′)	회수액 (B)	후순위 손익 (C=B-A′)	부실률 (D=C/A)	후순위 부실률 (E=C/A′)
P-CBO 1기 (2000~2010)	28,486	5,335	2,561	△2,774	9.7% (연환산)2.95%	52.0%
2019	3,536	1,000	755	△245	6.9% (연환산)2.31%	24.5%
2020	3,506	974	728	△246	7.0% (연환산)2.34%	25.3%

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케일업금융은 '22년까지 3년 만기 P-CBO 발행('23년부터 5년물)
** '21년 이후 발행된 P-CBO는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부실률 현황에서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금융'과 유사한 구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였던 동 기금의 '유동화지원'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00년~2010년간 총 2조 8,486억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하여 5,335억원의 후순위증권을 인수한 바 있으나, 이 중 2,774억원(52.0%)이 손실로 이어진 바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손실이 발생하면 후순위증권을 인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당 부실을 대부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실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성과와 우수기업 선별 역량을 축적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임.

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기관간 효율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4. 글로벌화지원플랫폼(3152-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글로벌화지원플랫폼’(1998~, 직접 및 보조)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267] 및 코리아스타트업센터[268] 운영을 지원하고, 물류거점 내에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으로,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및 ‘스마트트레이드허브’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도 계획현액 454억 5,800만원 중 45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1,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글로벌화지원플랫폼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글로벌화지원 플랫폼	45,458	45,458	-	45,458	45,146	-	312	40,261
글로벌비즈니스 센터	17,514	17,514	-	17,514	17,458	-	56	17,816
코리아스타트업 센터	14,440	14,440	-	14,440	14,396	-	44	15,440
스마트트레이드 허브	13,504	13,504	-	13,504	13,292	-	212	7,005

267)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특성화·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지원규모)12개국 20개소 260개실.

268) 세계 혁신 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현지 투자유치 지원, 창업생태계 편입 및 국가 간 창업교류 활성화 도모,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운영 국가(8개국): 미국, 싱가포르,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핀란드, 인도, 베트남.

□ 검토의견

(1) 스마트트레이드허브: 추가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스마트트레이드허브’ 내역사업은 중소기업에 안정적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업하여 인천국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에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 물류센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도 계획현액 135억 400만원 중 132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동 사업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물품 입고, 보관, 검사, 출하 등의 항공수출 물류 전반이 One Stop으로 처리되어 물류비 절감 및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동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토지와 물류센터 건물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물류설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 물류사업 운영사[269]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가 설계됨.

동 사업은 당초 2024년까지 물류센터 조성 및 물류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물류센터 조성 일정이 지연되면서 물류센터 구조에 맞게 주문제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물류설비 설계 및 구축 일정도 함께 연기되었음.

---

269) 삼성SDS컨소시엄(5): 삼성SDS, 한국도심공항, 큐익스프레스, 린코스, 삼영물류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24년 상반기까지 설비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완료하고, 그 이후 설비구축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운전·성능시험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됨.

2023년도 스마트트레이드허브 구축일정(변경)

구분	세부추진 내용	2024년												2025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진행	설비 설계 및 시뮬레이션																								
	설비구축 (승인 이후 구축)																								
	시운전, 성능시험 및 검수검사 등																								
	운영설비 인수 및 교육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사업 관리 용역 제안요청서, 2023. 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설비 설계 및 시뮬레이션, 설비구축, 기능유지, 성능시험 및 시운전 등의 사업 전반을 하나의 용역으로 통합 발주하고 민간사업자의 용역수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11월 민간사업자[270]와의 용역계약 체결 후 2024년 6월말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동 사업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물류센터 운영이 당초 2024년 하반기에서 2026년으로 1년 이상 지연되었는바,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물류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사업목적이 적기에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점

270) J&DK컨소시엄(2): 제이엔디케이, LGCNS

에서 문제점이 있음.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설비 설계, 설비구축, 시운전 및 성능시험, 설비 인수 및 교육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경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2005~, 출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함으로써 민간의 벤처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현액은 2,835억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음[271].

2023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283,500	283,500	-	283,500	283,500	-	-	450,000

271)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계획현액은 300억원이고 전액 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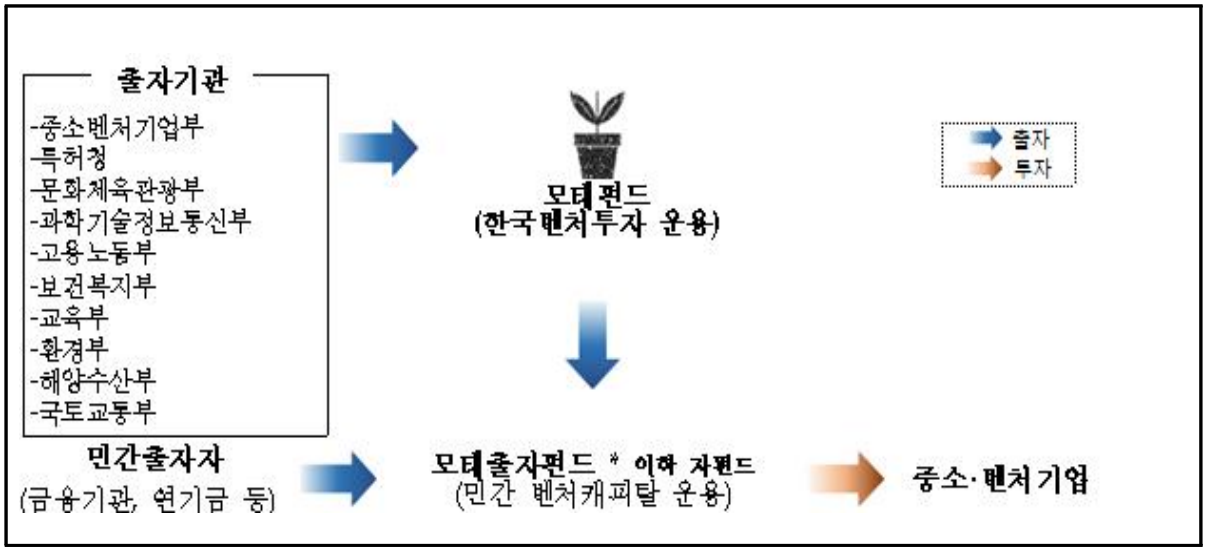
□ 검토의견

(1) 모태펀드 회수재원 재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정부가 2004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하여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조성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모태펀드 조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2005년 모태펀드 전담기관으로 한국벤처투자를 설립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 민간 벤처캐피탈이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소위 펀드의 펀드(Fund of Funds)로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가 출자하는 재원 등을 바탕으로 운용됨.

모태펀드 개념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국내 벤처투자 현황을 보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로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액이 급증하였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글로벌 긴축 및 고금리 기조 전환 등 대외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투자 실적이 통상적인 수준에 근접하였음[272].

신규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2021년 최고치인 17.9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2년부터 고금리 등 영향으로 인하여 감소세로 전환하였지만, 2023년 결성금액은 12.9조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7.9조원보다 여전히 높은 규모임.

최근 5년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78,698	99,853	178,640	176,495	128,75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총 1,216개, 40.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여 1만여개 창업·벤처기업 등에 30.6조원을 투자하였으며, 벤처펀드에 민간 자금을 유입시키는 마중물 역할과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72) 한국벤처투자, 「2024년도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 2024.2.

모태펀드는 투자기간이 종료되면 자펀드 청산 시 발생한 수익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자금을 출자한 계정에 귀속하여 재출자에 활용하는데, 출자금 회수액은 자펀드 운용실적 및 상장시장 상황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나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회수 규모 또한 상승추세에 있음.

그런데 다음연도 회수재원을 활용한 전체 재출자 계획과 계정별·분야별 출자계획은 국회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2023년도 모태펀드 출자실적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계정(중진·혁신모험·청년·엔젤·지방 및 소재부품장비) 중에서 중진 계정 등 5개 계정에 총 6,640억원을 출자하였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실적

(단위: 억원)

계 정	신규예산(A)	회수재원(B)	총 출자(A+B)
중진	1,555	2,355	3,910
혁신모험	950	950	1,900
청년	330	-	330
엔젤	-	200	200
지방	-	-	-
소재부품장비	300	-	300
합 계	3,135	3,505	6,6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 2,835억원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한 300억원을 합친 신규재원 3,135억원보다 더 큰 3,505억원이 회수재원인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중진 계정 출자액 3,910억원 중 회수재원은 60.2%인 2,355원이고, 혁신모험 계정 출자액 1,900억원의 50%인 950억원이 회수재원이었으며, 엔젤 계정의 경우에는 200억원의 출자액 전부를 회수재원으로 마련하였음.

이는 최근 5년 동안 모태펀드 출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 총 출자액 1조 456억원 중 50.3%인 5,256억원이 회수재원이고, 2019년에는 총 출자액 8,238억원의 64.8%인 5,338억원을 회수재원으로 출자하였음.

최근 5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출자재원 중 신규 vs 회수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규	회수	신규	회수	신규	회수	신규	회수	신규	회수
금 액	2,900	5,338	10,000	890	10,700	2,535	5,200	5,256	3,135	3,505
비 중	35.2	64.8	91.8	8.2	80.8	19.2	49.7	50.3	47.2	52.8
총출자액	8,238		10,890		13,235		10,456		6,6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결과적으로 보면 비대면·바이오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액이 급증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 2022년 및 2023년 모태펀드 총 출자액 2조 5,334억 중 신규재원이 1조 1,235억이었고 이보다 25.5% 많은 1조 4,099억원이 회수재원이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용회수재원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당해 실회수액과 조성 회수펀드 소요 등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예산편성 다음연도에 확정되기 때문에 회수재원 운용 계획 또한 예산편성 다음연도가 되어서야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모태펀드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연도 회수재원과 신규 출자재원을 모두 포함한 모태펀드 출자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연도 회수재원의 전망액, 회수재원을 바탕으로 한 출자계획 등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6. 전북연수원 건립(5451-309), 전남연수원 건립(5451-311)

□ 사업 및 결산 개요

‘전북연수원 건립’(2020～2026, 직접)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86억 1,700만원을 투입(변경 기준[273])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전북지역 전략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 8억 4,000만원 중 4억 7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음.

한편, ‘전남연수원 건립’(2022～2027, 직접)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94억 300만원(변경 기준[274])을 투입하여 광양만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 11억 7,500만원 중 7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3,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전북연수원 건립	840	840	-	840	407	-	433	6,795
전남연수원 건립	1,175	1,175	-	1,175	781	336	58	166

273) 당초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500만원이 계획되었으나, 사업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이 이루어짐.

274) 당초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94억 4,600만원이 계획되었으나, 부지선정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이루어짐.

□ 검토의견

(1) 사업목적 적기달성과 재정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은 총사업비 관리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임.

2023년도 ‘전북연수원 건립’의 비목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실시설계비 4억 7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감리비 4억 3,3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한편, ‘전남연수원 건립’의 비목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실시설계비 11억 7,500만원 중 선금에 해당하는 7억 8,100만원은 집행되었으나 잔금에 해당하는 3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낙찰차액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년도 전북연수원 건립 및 전남연수원 건립 비목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 전북연수원 건립	840	840	-	840	407	-	433	6,795
- 실시설계비(420-02)	407	407	-	407	407	-	-	-
- 공사비(420-03)	-	-	-	-	-	-	-	6,782
- 감리비(420-04)	433	433	-	433	-	-	433	-
- 시설부대비(420-05)	-	-	-	-	-	-	-	13
□ 전남연수원 건립	1,175	1,175	-	1,175	781	336	58	166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	-	-	-	-	-	166
- 실시설계비(420-02)	1,175	1,175	-	1,175	781	336	5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러한 집행실적 부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북연수원 건립’의 경우 부지조성 지연(배수지 이설공사 등)에 따라 건축설계가 순연되어 2023년에 감리업체 선정 등 후속 절차추진이 불가능하였고, ‘전남연수원 건립’의 경우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실시설계 순연으로 회계연도말에 이르러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추진 지연은 당초 기대한 사업효과를 적기에 달성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과 같은 재정상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실제 ‘전북연수원 건립’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45억 500만원이었으나, 3차례의 총사업비 계획변경 후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는 286억 1,700만원으로 증액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전북연수원 건립’[275] 및 ‘전남연수원 건립’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업목적을 적기에 달성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

275) ‘전북연수원 건립’의 경우 2024년 6월말 현재까지도 설계 및 감리작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사가 아직 발주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기술보증기금

Ⅰ. 기술보증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기술보증기금의 2023년 운용계획은 3조 1,743억원 규모로, 수입·지출규모의 변동없는 세부항목간 변동만 실시하여,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과 동일한 3조 1,743억원으로 운용함.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간 변경 내역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500억원 및 팩토링금융 397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의무지출사업의 추가 지출소요가 발생하여 선급법인세를 3회차에 걸쳐 총 254억원 증액하고, 기술보증대위변제를 560억원, 보증료환급을 13억원 증액하였으며, 「근로복지기금법」 및 기획재정부 심의에 의거 기술보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해 기금관리비(민간기관출연금) 116억원을 증액하고, 지출상승분을 여유자금운용 내 통화금융기관예치 및 기금관리비(무형자산)에서 감액하여 전체 지출규모에 변동이 없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였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5.17	변동없음	-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일반수용비, 일반출자금)	500	정부의「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23.4.20)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 소요 반영
			팩토링금융 (무형자산)	397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897	
10.17	변동없음	-	선급법인세 (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13	의무적 지출인 선급법인세 추가지출 소요에 따른 증액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13	
12.14	변동없음	-	기술보증대위변제 (예비비-반환금및손실금)	560	의무적 지출인 기술보증대위변제, 보증료환급 추가지출 소요에 따른 증액
			보증료환급 (예비비-반환금및손실금)	13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573	
12.20	변동없음	-	선급법인세 (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31	의무적 지출인 선급법인세 추가지출 소요에 따른 증액
			기금관리비 (무형자산)	△11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20	
12.26	변동없음	-	기금관리비 (출연금-민간기금출연금)	116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심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여유자금운용 (통화금융기관예치)	△116	
12.29	변동없음	-	선급법인세 (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210	의무적 지출인 선급법인세 추가지출 소요에 따른 증액
			기금관리비 (무형자산)	△210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은 계획현액의 116.1%인 3조 6,861억원을 실현하고 지출은 계획현액의 116.1%인 3조 6,861억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3 이월 (f)	차액 (e+f-d)
		2023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13,139	-	-	13,139	15,288	116.3	-	2,149
	▪ 금융기관출연금	5,796	-	-	5,796	6,723	116.0	-	927
	▪ 이자수입	397	-	-	397	653	164.5	-	256
	▪ 구상채권회수	1,300	-	-	1,300	1,755	135.0	-	455
	▪ 보증료 등 수입	3,322	-	-	3,322	3,361	101.2	-	39
	▪ 기타수입	2,324	-	-	2,324	2,796	120.3	-	472
	2. 정부내부수입	438	-	-	438	61	13.9	-	△377
	▪ 일반회계전입금	-	-	-	-	-	-	-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
	▪ 기금전입금	400	-	-	400	-	-	-	△40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	-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38	-	-	38	61	163.6	-	23
	3. 여유자금회수 등	18,166	-	-	18166	21,512	118.4	-	3,346
	합계	31,743	-	-	31,743	36,861	116.1	-	5,118
지출	1. 사업비	12,218	1,469	-	13,687	13,433	98.1		△254
	▪ 대위변제	10,652	560	-	11,212	11,106	99.1		△106
	▪ 중소기업투자	501	500	-	1,001	982	98.1		△19
	▪ 기타사업비	1,065	409	-	1,474	1,345	91.2		△129
	2. 기금운영비	2,114	149	-	2,263	2,222	98.2		△41
	▪ 인건비	1,539	-	-	1,539	1,521	98.8		△18
	▪ 기금관리비	559	103	-	662	639	96.6		△23
	▪ 선급법인세	16	46	-	62	62	100.0		-
	3. 정부내부지출	-	-	-	-	-	-	-	-
	▪ 공자기금예탁금	-	-	-	-	-	-	-	-
	4. 여유자금운용	17,411	△1,618	-	15,793	21,206	134.3		5,413
	합계	31,743	-	-	31,743	36,861	116.1		5,118
결산잔액(수입-지출)		-	-	-	-	-	-	-	-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3조 1,743억원이며, 실현된 수입액은 계획현액의 116.1%에 해당하는 3조 6,861억원으로, 계획 대비 5,118억원이 증가함.

2023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증감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13,139	-	-	13,139	15,288	2,149
○ 금융기관출연금	5,796	-	-	5,796	6,723	927
○ 이자수입	397	-	-	397	653	256
○ 구상채권회수	1,300	-	-	1,300	1,755	455
○ 보증료 등 수입	3,322	-	-	3,322	3,361	39
○ 기타수입	2,324	-	-	2,324	2,796	472
□ 정부내부수입	438	-	-	438	61	△377
○ 일반회계전입금	-	-	-	-	-	-
○ 특별회계전입금	-	-	-	-	-	-
○ 기금전입금	400	-	-	400	-	△400
○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 공자기금예탁이자수입	38	-	-	38	61	23
□ 여유자금회수 등	18,166	-	-	18166	21,512	3,346
합계	31,743	-	-	31,743	36,861	5,118

금융기관출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276]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277]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수입[278]으로, 2023년에는 6,723억원을 수납하였음.[279]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직원 주택대여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3년에는 653억원을 수납하였음.

구상채권회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280]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기금이 법 제37조[281]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으로 2023년에는 1,755억원을 수납하였음.

보증료 등 수입은 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기

276)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277)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은행 등을 의미함.

278)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대차대조표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등)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출연기준융자금(은행계정 대출채권 중 가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한 금액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요율(기준요율은 13.5bp이며, 직전반기 출연금액 대비 대위변제금액에 따라 최대 ±2bp 차등요율이 가감됨)을 곱하여 산출된 출연료에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감액 금액(동일 군 내 금융회사의 평가순위에 따른 가산 또는 감액) 합산한 출연금을 수납하고 있음.

279) 중소기업은행 등 은행으로부터 6,079억원을 수납함.

280) 「기술보증기금법」
제36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81)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구상권의 행사) ① 기금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술보증료와 기술평가료 등으로 2023년에는 3,361억원을 수납하였음.

기타수입은 민간출연금[282] 1,004억원, 팩토링매출채권회수 840억원, 중소기업 투자주식 매각 등에 따른 매각대 144억원 및 매각익 621억원 등으로 2023년에는 2,796억원을 수납하였음.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1억원을 수납하였음.

282) 민간출연금은 기금의 기본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 협약 특별출연금, INNO-BIZ 금융지원 협약 특별출연,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 특별출연 등으로 구성됨.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3조 1,743억원이며, 이 중 집행실적은 3조 6,861억원으로 계획 대비 5,118억원이 증가함.

사업비는 기술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에 대한 대위변제금 1조 1,106억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982억원, 구상권관리와 기술평가 등의 기타사업비 1,345억원 등 총 1조 3,433억원을 지출하였음.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1,521억원, 기금관리비 639억원 및 선급법인세 62억원 등 총 2,222억원을 지출하였음.

2023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증감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사업비	12,218	-	1,469	13,687	13,433	-	254
○ 기술보증대위변제	10,535	-	560	11,095	11,059	-	36
○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117	-	-	117	47	-	70
○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501	-	500	1,001	982	-	19
○ 구상권관리	203	-	-	203	99	-	104
○ 기술평가	69	-	-	69	62	-	7
○ 기술·경영지도	32	-	-	32	25	-	7
○ 보증료환급	262	-	13	275	265	-	10
○ 업무용부동산취득	21	-	-	21	21	-	-
○ 팩토링금융	400	-	396	796	795	-	1
○ 기보IT운영(정보화)	78	-	-	78	78	-	-
□ 기금운영비	2,114	-	149	2,263	2,222	-	41
○ 인건비	1,539	-	-	1,539	1,521	-	18
○ 기금관리비	559	-	103	662	639	-	23
○ 선급법인세	16	-	46	62	62	-	-
□ 정부내부지출	-	-	-	-	-	-	-
○ 공자기금예탁금	-	-	-	-	-	-	-
□ 여유자금운용	17,411	-	△1,618	15,793	21,206	-	△5,413
합계	31,743	-	-	31,743	36,861	-	△5,118

불용액은 295억원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70억원, 구상권관리 104억원 등임.

2023년 기금운용(지출) 불용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254	기술보증대위변제(36),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70),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19), 구상권관리(104), 기술평가(7), 기술·경영지도(7), 보증료환급(10), 팩토링금융(1),
【기금운영비】	41	인건비(18), 기타운영비(23)
합 계	**295**	

주: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 제외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3			2022		
자산						
Ⅰ.유동자산			40,245			30,102
1. 현금및현금성자산			133			222
1) 보통예금		58			29	
2) 기타현금성자산		75			193	
2. 단기금융상품			13,328			12,973
1) 정기예금		13,300			12,950	
2) 기타의단기금융상품		28			23	
3. 단기투자증권			23,589			15,950
1) 채무증권		3,020			2,573	
2) 지분증권		20,569			13,377	
4. 미수채권		755			449	
1) 미수이자수익	663			309		
2) 기타의미수금	92			140		
미수채권대손충당금		57	698		1	448
1)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57			1		
5. 단기대여금		1,954			3	
1) 정부내단기예탁금	1,950			-		
2) 단기융자금	4			3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	1,954		-	3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			-		
2) 단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			-		
6. 기타유동자산			543			507
Ⅱ.투자자산			4,447			12,600
1. 장기금융상품			790			7,760
1) 정기예금		790			7,760	
2 장기투자증권			3,616			2,845
1)채무증권		-			-	
2)지분증권		3,516			2,736	
3)기타의장기투자증권		100			108	
3. 장기대여금		34			1,989	
1) 정부내장기대여금	-			1,950		
2) 정부외장기대여금	36			39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2	34		2	1,987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			-		

	2023			2022		
2) 장기융자보조원가충당금	2			2		
4. 기타투자자산			7			8
1) 회원권		7			8	
Ⅲ.일반유형자산			1,318			1,326
1. 토지			737			727
2. 건물		549			547	
1)건물	549			547		
건물감가상각누계액		37	512		19	528
1)건물감가상각누계액	37			19		
3. 기계장치		195			206	
1)기계장치	195			206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66	29		171	35
1)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166			171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415			402	
1)집기・비품・차량운반구	415			402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75	40		366	36
1)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375			366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			-
1)건설중인건물		-			-	
Ⅳ.무형자산			44			53
1.산업재산권		-			-	
2.소프트웨어		44			53	
Ⅴ.기타비유동자산			3,387			2,927
1.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3,387			2,846	
2.장기미수채권		-			81	
자산계			49,441			47,008
부채						
Ⅰ.유동부채			2,003			1,946
1.기타유동부채		2,003			1,946	
Ⅱ.장기충당부채			12,089			10,839
1. 퇴직급여충당부채		383			389	
2. 소송충당부채		62			58	
3. 보증충당부채		11,623			10,371	
4. 기타장기충당부채		21			20	
Ⅲ.기타비유동부채			8			8
부채계			14,100			12,793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103,609			103,609
Ⅱ.적립금및잉여금			(69,243)			(69,210)
Ⅲ.순자산조정			975			(184)
순자산계			35,341			34,215
부채와순자산계			49,441			47,008

2023년말 기술보증기금의 총자산은 4조 9,441억원으로 전년대비 2,433억원 증가하였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금융기관 등 출연금(7,726억원) 및 보증수익(2,947억원) 등 발생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하였으며, 여유자금의 운용 등에 따라 유동자산이 1조 142억원 증가하고 투자자산이 8,153억원 감소하였음. 감가상각 및 자산재평가 등으로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 17억원 감소하였으며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장기구상채권 증가로 기타비유동자산이 460억원 증가함.

2023년말 총부채는 1조 4,1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307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유동부채는 직전년도 대비 보증료 관련 선수수익 55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7억원이 증가하였고, 장기충당부채는 보증잔액 및 보증사고발생 증가로 대위변제준비금이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1,25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비유동부채는 장기선수수익의 감소로 0.1억원이 감소함.

2023년도 순자산 조성 및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사업 활동에 따른 재정운영결과 33억원 손실, 투자증권 평가손익 등 조정항목 1,159억원 반영 등으로 인하여 순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

비 1,125억원이 증가한 3조 5,341억원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 프로그램순원가	12,130	(3,906)	8,224	6,785	(4,199)	2,586
1. 기술금융지원	12,130	(3,906)	8,224	6,785	(4,199)	2,586
Ⅱ. 관리운영비			672			696
1. 인건비			334			339
2. 경비			338			357
(1) 복리후생비			68			92
(2) 소모품비			5			6
(3) 인쇄비			3			3
(4) 광고선전비			11			11
(5) 지급수수료			14			12
(6) 세금과공과			19			22
(7) 수도광열비			6			6
(8) 지급보험료			-			-
(9) 교육훈련비			19			17
(10) 지급임차료			11			10
(11) 유류비			-			-
(12) 수선유지비			1			-
(13) 여비교통비			8			7
(14) 업무추진비			9			8
(15) 외주용역비			117			116
(16) 감가상각비			44			46
(17) 평가손실			2			-
(18) 기타비용			1			1
Ⅲ. 비배분비용			100			208
1. 자산처분손실			97			205
2. 기타비용			3			3
Ⅳ. 비배분수익			1,237			599
1. 이자수익			949			561
2. 자산처분이익			285			8
3. 기타수익			3			30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7,759			2,891
Ⅵ. 비교환수익등			7,726			6,760
1. 부담금수익			6,723			6,078
2.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003			682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33			(3,869)

2023년 프로그램순원가는 8,224억원으로 전년대비 5,638억원이 증가하였고, 증감요인은 다음과 같음.

프로그램순원가 구성요소인 프로그램총원가는 보증사고금액 증가 등에 따른 대손상각비 3,763억원 증가, 대위변제준비비 1,252억원 증가, 구상채권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 251억원 증가 등으로 총 5,345억원이 증가하였고, 프로그램수익은 투자주식 등 처분에 따른 자산처분이익이 418억원 증가하였으나 대위변제준비금 환입액 678억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총 293억원이 감소하였음.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2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비배분비용은 자산운용 관련 처분손실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7억원이 감소하였고,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278억원 증가 및 자산운용 관련 처분이익 388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총 638억원이 증가하였음.

비교환수익은 금융기관 법정출연금 6,723억원 및 특별협약출연금 1,003억원으로 구성되며, 전기대비 출연금수익 증가로 비교환수익이 총 966억원 증가하였음.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103,609	(74,399)	415	29,625
1. 보고금액	103,609	(74,399)	415	29,625
Ⅱ. 재정운영결과		(3,869)		(3,869)
Ⅲ. 조정항목		1,320	(599)	721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598)	(598)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손익			(1)	(1)
5. 기타순자산의증감		1,320		1,320
Ⅳ.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	103,609	(69,210)	(184)	34,215
Ⅴ. 당기 기초순자산	103,609	(69,210)	(184)	34,215
1. 보고금액	103,609	(69,210)	(184)	34,215
Ⅵ. 재정운영결과		33		33
Ⅶ. 조정항목			1,159	1,159
1. 납입자본의 증감				
2. 투자증권평가손익			1,165	1,165
3. 파생상품평가손익				
4. 자산재평가손익			(6)	(6)
5. 기타순자산의증감				
Ⅷ. 당기 기말순자산(Ⅴ-Ⅵ+Ⅶ)	103,609	(69,243)	975	35,341

기초순자산은 기본순자산 10조 3,609억원에서 결손금 누계액 6조 9,210억원 및 순자산조정 금액 △184억원을 감안한 3조 4,215억원이며, 재정운영결과 33억원 손실이 발생하였음.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이익 1,165억원 및 자산재평가손실 6억원을 반영한 1,159억원이며, 기초순자산에 재정운영결과 및 조정항목을 감안한 기말순자산은 전년대비 1,126억원이 증가한 3조 5,341억원임.

Ⅱ. 검토의견

1. 기술보증대위변제(2441-300)

□ 사업 및 결산 개요

‘기술보증대위변제’(1989~, 직접수행)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 1조 1,095억원 중 1조 1,05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기술보증대위변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기술보증대위변제	1,053,500	1,109,500	-	1,109,500	1,105,880	-	3,620	1,330,195

□ 검토의견

(1) 보증사고 이연부실과 연착륙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

동 사업은 2021·2022회계연도에 계획액의 약 절반 정도만 소진하였는데, 이는 2020년 4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기술보증대위변제 예산편성 시 추정한 사고율보다 실제 사고율이 낮았기 때문임.

그런데 2023회계연도 집행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당초 계획액인 1조 535억원에서 자체변경을 통하여 560억원을 증액시킨 계획현액 1조 1,095억원 중 1조 1,058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2,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이고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04.9%임.

최근 5년간 기술보증대위변제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구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액	1,008,300	965,318	1,017,000	822,491	1,213,000	663,512	1,291,500	662,649	1,053,500	1,105,880
집행률	95.7		80.9		54.7		51.3		104.9*	

주: 2023년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7%임.
자료: 기술보증기금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연장된 바 있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들의 채무불이행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으나,

2023년에는 이러한 조치가 2025년 9월까지로 연장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보증기업의 채무불이행과 보증해지(즉, 사고)가 당초 추정치보다 높게 발생한 것임.

최근 5년간 기술보증 잔액, 사고금액 및 사고율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보증잔액(A)		218,052	254,453	262,684	265,029	279,176
사고금액(B)		9,848	8,611	6,693	7,197	11,832
사고율(%)	계획	4.8	4.8	4.5	4.8	4.0
	사고(B/A)	4.5	3.4	2.5	2.7	4.2

자료: 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간 기술보증대위변제 사고율을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4.8%로 계획하고 실제 사고율은 4.5%였고, 2020년에는 4.8%로 계획하고 실제 사고율은 3.4%였으며, 2021년에는 4.5%를 계획하고 실제 사고율은 2.5%, 2022년에는 4.8%를 계획하고 실제 사고율은 2.7%를 기록하여 2019~2022년의 4년 동안 모두 계획 대비 낮은 사고율을 보인 반면,

2023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0.8%p 낮은 4.0%의 사고율과 이에 상응하는 계획액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사고율은 예상치보다 높은 4.2%를 보인 것임.

기술보증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및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 등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사고율이 과거 대비 1~2%p 낮아졌으나,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위기 지속과 경기침체 등에 따른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보증 사고율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함.

실제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사고율은 2.5%~3.4%였지만, 2023년 사고율은 4.2%로서 코로나19 이전 4.5% 수준에 근접하였고, 2024년에는 5월말까지의 사고율이 4.7%로 2017년 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코로나19 전·후 기술보증 사고율 비교

(단위: %)

구 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기간			코로나19 이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5월
사고율	4.4	4.5	4.5	3.4	2.5	2.7	4.2	4.7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020년부터 시작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025년 9월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그간 잠복·이연되었던 피보증기업의 부실이 동시에 현실화되어 사고율이 급증하고 이는 다시 기술보증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충분히 대비하되,

동 사업의 보증을 받은 기업 중 복합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한계에 다다른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조치 종료가 1년여 남은 현재 시점에도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283] 또한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운용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83) 실제로 2023년의 월별 사고율을 보면, 2025년 9월까지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된 2022년 10월 직후인 2023년 1월부터 이미 3.9%의 보증사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2.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441-301)

□ 사업 및 결산 개요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2014~, 직접수행)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SPC가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신용공여 약정에 대하여 기금이 보증하고,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이 기한 내 상환되지 않거나 신용공여에 대한 보증시 기한 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 117억 2,400만원 중 47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69억 9,1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유동화회사대위변제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유동화회사대위변제	11,724	11,724	-	11,724	4,733	-	6,991	3,821

□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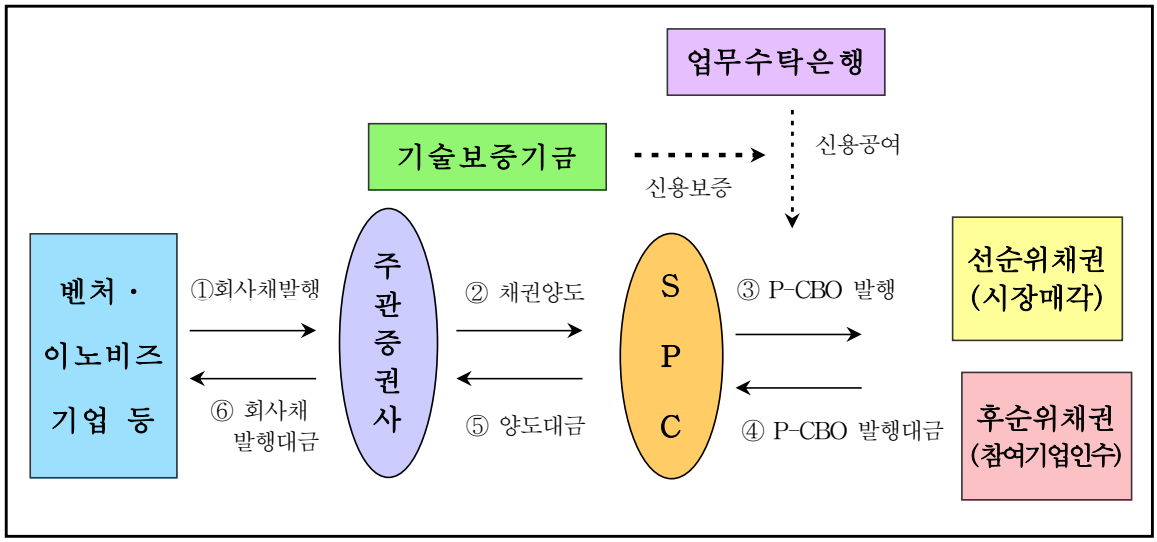
(1) 유동화증권 특수성에 기반한 사고율 예측 필요

유동화회사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직접금융 조달이 어려운 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기술창업 기업에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기업이 신규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한 자금을 개별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유동화회사보증 세부내용

○ **(편입지원가능 등급)**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회사채등급 BB- 이상
○ **(편입지원결정)**
- (중소기업) 기술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등을 평가
- (중견기업) 기술평가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채 등급 적용

<지원구조>



자료: 기술보증기금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면, 2019년 83.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19.4%, 2022년 24.0%, 2023년 40.4% 등 낮은 집행률과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19	28,800	24,070	83.6	4,730
2020	18,700	12,577	67.3	6,123
2021	16,500	3,209	19.4	13,291
2022	9,811	2,355	24.0	7,456
2023	11,724	4,733	40.4	6,991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금융당국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집행률이 낮게 기록되었다는 설명임.

실제로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의 기준이 된 사고율과 실제 발생한 사고율에는 지속적 괴리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낮은 집행실적과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짐.

최근 5년간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편성 사고율 및 실제 사고율

(단위: %)

구 분	편성 사고율	실제 사고율	괴 리(%p)
2019	7.2	7.9	0.7
2020	5.6	4.9	△0.7
2021	6.7	1.4	△5.3
2022	6.1	1.2	△4.9
2023	3.3	1.3	△2.0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런데 동 사업의 이와 같은 현상은 기술보증대위변제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되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추정 사고율보다 실제 사고율이 낮았던 것은 동일하지만,

기술보증의 경우에는 2023년의 추정 사고율이 4.0%였는데 실제로 4.2%의 사고율을 기록한 반면, 유동화회사보증의 경우에는 여전히 계획 사고율의 39.4%에 해당하는 사고만 발생하였음.

또한 5년간 사고율 괴리를 비교해 보면 기술보증 괴리율은 평균 1.2%p인데 반해 유동화회사보증 괴리율은 1.5%p 높은 2.7%p이고, 2023년의 경우만 따로 떼어 보면 기술보증 괴리율은 0.2%p, 유동화보증 괴리율은 2.0%p로서 유동화회사보증에 대한 사고율 예측의 오차가 기술보증에 대한 사고율 예측의 오차보다 1.8%p 높은 것으로 분석됨.

최근 5년간 사고율 괴리 비교

(단위: %p)

구 분	유동화회사(A)	기술보증(B)	괴리 비교(A-B)
2019	0.7	△0.3	0.4
2020	△0.7	△1.4	0.7
2021	△5.3	△2.0	3.3
2022	△4.9	△2.1	2.8
2023	△2.0	0.2	1.8
5년 괴리 평균(절대값)	**2.7**	**1.2**	**1.5**

자료: 기술보증기금 제출자료를 재정리

이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채권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로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에 이루어진 신규 발행의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유동화회사보증 공급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신 규	차 환	합 계
2019	-	1,558	1,558
2020	-	1,064	1,064
2021	-	1,182	1,182
2022	-	778	778
2023	1,991	857	2,848

자료: 기술보증기금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신규 발행에 따른 혼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과 다른 유동화회사보증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첫째, 2023년 만기도래 차환대상 유동화회사보증의 평균금리(3.94%)가 일반 보증부대출의 평균금리(5.35%)보다 낮아 금리 부담이 적었던 측면이 있고,

둘째, 유동화회사보증은 일반보증과는 달리 차환발생 시 20%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사고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해당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효과가 기술보증에 대비하여 유동화회사보증에 더욱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셋째,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일반 보증부대출과 달리 유동화회사보증은 분기별로 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일시적 자금경색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점도 낮은 사고율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경기상황 등 대외변수의 영향을 받는 보증사고율을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은 동 사업 도입 이후 10년간 축적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의 사업 메커니즘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액을 계상함으로써 기금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동화회사보증 차환발행 잠정조치’ 주요내용

구 분	기존 적용기준	잠정조치
기초자산 상환비율	20% 상환 원칙	적용 배제
후순위유동화증권 인수비율	기초자산 상환비율에 따라 1.0% ~ 1.4%이상 차등적용	연율 1.0%로 고정
원금상환비율에 따른 가산금리	기초자산 상환비율에 따라 차등적용(최대 0.4%)	적용 배제
2회 이상 차환발행에 따른 가산금리	가산금리 0.1% 적용	적용 배제
기업건전도 취약기업	30% 이상 상환시 차환발행 허용 원칙	가산금리 0.2% 적용 (단, 50% 이상 상환시 적용 배제)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가산금리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연 1.0% 가산금리 적용	적용 배제

자료: 기술보증기금

3.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2441-303)

□ 사업 및 결산 개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2005~, 직접수행)는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금은 투자수익을 통해 신규 보증여력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 1,001억 900만원 중 981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4,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50,100	100,109	-	100,109	98,161	-	1,948	75,148

□ 검토의견

(1) 민간투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는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이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투자를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284]에 규정된 고유업무임.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기금과 보증 거래 중인 기업 중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전문 기술평가 조직인 기술혁신센터의 투자전문인력이 자체 기술평가 모형을 기반으로 투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이루어 짐.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투자대상·방식·한도

구 분	주요 내용
투자대상	▪ 기술보증기금과 보증거래 중인 기업 ▪ 법인설립 후 5년 이내 기업(단,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 제외) ▪ 투자용 기술사업평가등급 “TI8등급”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투자방식	▪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투자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통합한도(보증+투자)는 200억원 이내)

자료: 기술보증기금

284)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3의2. 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동 사업 시작연도인 2005년부터 2023년까지 547개 기업에 총 5,221억원을 투자하여 1,873억원(누적수익률 35.9%)의 누적 투자수익을 거두었고 투자를 받은 기업 중 37개 기업이 IPO에 성공함.

보증연계투자 실적

(단위: 억원, 개)

구 분	2005~2020	2021	2022	2023	합 계
투자금액	3,353	394	493	981	5,221
투자기업	345	50	57	97	547

자료: 기술보증기금

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는 민간투자시장의 소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지방기업, 기계장비·소재·화학 기업(소위 굴뚝 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민간 벤처캐피탈과 분야별 투자비중을 비교해 보면,

기술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의 창업기업 투자비중은 93.6%로 민간 벤처캐피탈의 69.3%보다 24.3%p 높았고, 지방소재 기업 투자 비중 역시 61.1%로 민간 벤처캐피탈의 21.3%보다 39.8%p 높았으며, 기계장비·화학 등 전통 제조업 투자비중도 민간 벤처캐피탈의 11.2%보다 20.0%p 높은 31.2%임.

분야별 투자비중 및 투자방식 비교

(단위: %)

구 분	기술보증기금				민간 벤처캐피탈			
	창업	지방소재	기계장비·소재/화학	주식인수방식/SAFE	창업	지방소재	기계장비·소재/화학	주식인수방식/SAFE
2019	96.2	54.3	34.5	100.0	73.8	20.6	7.6	85.3
2020	100.0	60.9	16.4	100.0	70.8	21.8	10.5	85.7
2021	93.7	58.5	30.5	100.0	69.5	18.2	9.7	91.7
2022	89.7	70.4	40.4	100.0	70.0	19.4	10.3	91.0
2023	88.4	61.3	34.1	100.0	62.2	26.7	17.9	87.8
평 균	**93.6**	**61.1**	**31.2**	**100.0**	**69.3**	**21.3**	**11.2**	**88.3**

주1.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기업에 우선 자금을 공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임.
2.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현황 출처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4 KVCA YEARBOOK(2024.4)
자료: 기술보증기금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경우 민간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환사채 등 사채성 투자[285]가 아닌 주식인수방식[286] 또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100% 지분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기술보증기금의 혁신선도형 중소기업투자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창업·지방기업에 직접금융 조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선제적 투자를 함으로

285) 사채(社債)성 투자: 기업이 투자시장에서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투자자(채권자)에게 부여해 주는 것으로 투자자는 유불리를 따져 주식을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않을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 사채성 투자 유치는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주식인수 방식과 달리 재무제표상 부채에 해당함.

286) 주식인수방식: 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는 것으로, 투자자는 투자주식의 매각,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투자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자본에 해당함.

써 민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는 신호 효과(Signaling Effect)[287]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은 축적된 기술평가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위험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보증연계투자를 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정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87)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보증연계 누적 투자금액인 5,221억원의 4.8배인 2조 5,055억원의 후속투자가 발생하였음.

4. 구상권관리(2441-304)

□ 사업 및 결산 개요

‘구상권관리’(1989~, 직접수행)는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및 상각채권[288]을 관리하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소송 및 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 확보·유지 및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임[289].

2023년도 계획현액 203억 700만원 중 98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04억 2,2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구상권관리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구상권관리	20,307	20,307	-	20,307	9,885	-	10,422	16,688

288) 상각채권: 구상실익이 강제집행 비용에 미달하거나, 채무자의 생계수단·소득수준 등을 감안시 구상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더 이상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채권을 회계상 손실, 즉 비용으로 처리한 채권

289)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구상권 행사

□ 검토의견

(1)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한 구상권관리 계획 수립 필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주채무자)이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기업체의 부실채무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갚아주어야 하며, 그 기업체와 보증인 등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이 회수해야 하는 구상채권이 발생하게 됨.

구상권관리는 이와 같이 발생한 구상채권과 상각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관리하기 위하여, 소송 및 가처분·가압류, 경매 등의 법적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 81.5%에서 2020년 48.6%, 2021년 37.9%, 2022년 35.9%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3년에 48.7%로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매년 100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집행률이 50%를 밑도는 낮은 집행실적을 보임.

최근 5년간 구상권관리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19	23,054	18,790	81.5	4,264
2020	24,008	11,699	48.6	12,339
2021	27,030	10,247	37.9	16,783
2022	23,230	8,349	35.9	14,881
2023	20,307	9,885	48.7	10,422

자료: 기술보증기금

이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관리는 보증사고 이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후속 업무로서 여러 대외변수의 영향으로 인해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최근 대외채무조정(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신청 등) 활성화[290] 및 새출발기금 구상채권 매각[291]으로 직접적인 구상권 관리 대상이 축소되었고, 법원의 현금공탁 명령 감소에 따른 공탁금 예산 집행 저조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공탁금 예산 계획 및 집행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불용액
2019	12,130	8,902	73.4	3,228
2020	13,089	3,330	25.4	9,759
2021	14,299	2,747	19.2	11,552
2022	10,437	1,652	15.8	8,785
2023	7,514	3,331	44.3	4,183

자료: 기술보증기금

연대보증 면제 기업의 확대로 연대보증인 수가 감소[292]한 것 역시 예상 대비 구상권 관리 대상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90) 채무조정 신청기업 수 : ('21) 767개社 → ('22) 835개社 → ('23) 1,313개社

291) 새출발기금 매각 업체수 : '22년 0개社 → '23년 623개社

292) 연대보증인 수 : ('21) 12,314명 → ('22) 10,116명 → ('23) 8,594명

그런데 구상권관리 사업으로 지원하는 가압류, 가처분, 소송 및 경매 등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한 구상채권 수입이 계상되는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권수입을 보면, 매년 계획액을 초과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어 구상권관리 사업의 저조한 집행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임.

최근 5년간 구상채권회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회수액(B)	달성률(B/A)	초과회수액(B-A)
2019	140,000	155,671	111.2	15,671
2020	130,000	153,222	117.9	23,222
2021	138,900	180,504	130.0	41,604
2022	145,000	176,959	122.0	31,959
2023	130,000	175,487	135.0	45,487

자료: 기술보증기금

최근 5년간 구상채권회수 계획 대비 회수 실적을 보면, 2019년 111.2%, 2020년 117.9%, 2021년 130.0%, 2022년 122.0%로 매년 계획액 대비 300억원에서 400억원 내외의 초과 수입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454억 8,700만원의 구상채권을 더 회수하여 5년 내 가장 많은 초과회수액과 달성률(달성률: 135.0%)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은 과거 집행 및 회수 실적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상권관리 계획 및 구상채권회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팩토링금융(2441-311)

□ 사업 및 결산 개요

‘팩토링금융’(2022~, 직접수행)은 기술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현액 796억 3,100만원 중 795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도 팩토링금융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팩토링금융	39,958	79,631	-	79,631	79,556	-	75	99,541

□ 검토의견

(1)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필요

팩토링금융은 판매기업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양도하고, 팩터는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매출채권 양도를 통한 단기금융서비스이며 2022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293].

팩토링금융 개념도



- **판매기업**
  - 기보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여 대금 조기회수
- **구매기업**
  - 기보에게 대금 상환
- **기보(팩터)**
  - 판매기업에 대금 선지급
  -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자료: 기술보증기금

동 사업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중 물품공급 등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행일로부터 결제기일이 90일 이내인 매출채권을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293)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은 매출채권 매입대금을 판매기업에 선지급하고 만기 시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며, 구매기업의 대금 미결제시에도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하지 않음.

매출채권 팩토링 지원 내용

구분	내용
판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중 물품공급 등을 통해 매출채권을 취득한 중소기업
구매기업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신기술사업자 등
매출채권	발행일부터 결제기일이 90일 이내인 매출채권 (전자세금계산서 한정)
지원한도	매출액×1회전기간 이내에서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이내
할인율	구매기업의 팩토링 평가등급별 차등 부여(3.1%~7.0%)

자료: 기술보증기금

팩토링금융 사업절차

등록 심사	팩토링 약정	거래처 연동	양도 계약	매출채권 발행	팩토링 신청	매출채권 매입
기업조사 기술평가 등록심사	약정체결 (한도승인)	진성거래 확인	양도계약 양도승낙신청 양도승낙	채권발행	매입신청	매입심사 대금지급 매입통지
기보	판매기업 구매기업	판매기업 구매기업	판매기업 구매기업	구매기업	판매기업	기보

자료: 기술보증기금

시행 첫해인 2022년 팩토링금융 사업은 400억원의 계획액을 편성하였으나 183억원을 집행하고 217억원을 불용하여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45.7%였음.

이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은 신규 팩토링 플랫폼 구축, 팩토링 평가모형 개발 및 규정 정비 등의 사업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사업시행 시기가 6월로 지연되었고, 팩토링금융 상품이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생소하고 이해도가 높지 않아 신청이 저조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한편 2023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99억 5,800만원을 당초 계획액으로 계상하였으나 동년 4월에 계획액을 모두 소진하고 396억 7,300만원을 계획변경을 통해 추가 편성한 후 7,5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이고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99.1%임.

이와 같은 전년도와 정반대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는 당초 예상보다 중소·벤처기업의 팩토링금융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채권을 조기 매입하였으며, 정부 정책[294]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추가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음.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 지속에 따른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한 팩토링금융 확대공급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술보증기금의 2023년 팩토링금융 사업은 다소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당초 기술보증기금은 만기 90일짜리 매출채권을 100억원씩 총 4회에 걸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액을 산출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에 2023년 분기별 매출채권 매입액은 100억원 내외여야 하나,

294) <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23.4.20, 관계부처 합동) >
○ (팩토링) 기술혁신기업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확대공급
- 신보: ('23 당초) 600억원 → 900억원(+300) / 기보: ('23 당초) 400억원 → 800억원(+400)

2023년도 팩토링금융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3년) 39,958 ('22년 대비 동결) ▪ 핀테크 기반 새로운 결제성 혁신금융 개발을 통한 약속어음 부작용 개선 및 안정적인 상품거래 여건 조성을 위해 전년수준으로 편성 ○ 산출근거 ▪ 매출채권 매입(39,673) * {10,000백만원(1회 매입액) × 4회전(평균 만기 90일 기준)} - {(10,000백만원 × 3.27%(연할인율)) ▪ 팩토링 전산시스템 이용수수료(285) * (기업 CB社) 기업 신용등급 등 조회 수수료 160백만원 · '21년 KCB, NICE 개인 CB등급 이용 수수료 준용 * (세무·회계 정보 관련 핀테크社) 진성 매출채권 판별정보, 구매기업 거래 위험 수준 등 조회수수료 100백만원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이용 수수료 25백만원 · 팩토링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B2B 규약 참여 및 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외담대, 구매자금대출 등 B2B상거래 조회

자료: 기술보증기금

동 사업의 월별 집행실적을 보면 1월 51억 7,700만원, 2월 109억 5,000만원, 3월 114억 6,700만원 등 연간 계획액의 69.1%에 해당하는 279억 9,400만원을 1분기에 지출하였음.

이어 4월에 111억 4,200만원을 추가 집행함으로써 연간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팩토링 매출채권 매입을 중단하였으나, 이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396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됨.

2023년 팩토링금융 월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	5,177	10,950	11,467	11,142	매입중단	5,234	13,501	6,991	10,607	2,393	2,083	10	1
누적	5,177	16,127	27,594	38,736		43,970	57,471	64,462	75,069	77,462	79,545	79,555	79,556

자료: 기술보증기금

당초 계획과 다르게 연초부터 팩토링금융을 신청한 기업의 급증으로 연간 채권매입액을 4개월만에 모두 소진하게 됨에 따라 3·4분기에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고자 했었던 기업이나 서비스 출범 2년차에 불과한 팩토링금융 서비스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

팩토링금융은 구매기업 부실에 따른 판매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매출채권 결제 기일전에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상거래 여건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2021년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고,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295]로 매출채권을 매입해 주기 때문에 향후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296]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은 연간 집행계획에 맞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95) 팩토링금융 채권매입 평균 할인율은 3.33%(2023년 기준)로 보증부대출 평균금리(5.35%)보다 낮음. 한편,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취급하는 민간 핀테크의 할인율은 8%~16%로 알려짐.

296) 팩토링금융이 시작된 '22.6월부터 '23.12월까지 매입채권 금액은 982억원이고, 부실액은 67억원임(부실률: 6.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결산 개관

1. 총 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소진기금’)의 2023년 당초 운용계획은 6조 4,225억원 규모였으나,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계획 대비 148억원(0.2%)을 증액하여 6조 4,373억원으로 운용됨.

주요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조기예수 및 공자기금 예수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이자액이 증가하여 148억원을 증액하였음.

다음으로,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 간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에서 148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규모가 148억원 증가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함.

2023년 기금운용계획 주요 변경내역

(단위: 억원)

일자	수입계획 증·감		지출계획 증·감		비고
12.4.	기타경상이전수입	148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148	공자기금 예수이자 부족분 해소를 위한 기금변경
	합계	**148**	**합계**	**148**	

또한, 계획현액 대비 수입·지출실적을 보면, 수입은 107.1%인 6조 8,949억원을 실현하고, 지출도 107.1%인 6조 8,949억원을 집행하였음. 수입 대비 지출 차액은 없음.

2023년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총괄표

(단위: 억원, %)

구분		운용계획				운용실적		2023 이월 (f)	차액 (e+f-d)
		2023 계획 (a)	계획 증액 (b)	전년 이월 (c)	계획 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률 (e/d)		
수입	1. 자체수입	28,525	148	-	28,673	33,249	116.0	-	4,576
	▪ 융자원금회수	25,593	-	-	25,593	26,742	104.5	-	1,149
	▪ 재산수입	2,649	-	-	2,649	3,054	115.3	-	405
	- 융자이자수입	2,555	-	-	2,555	2,513	98.4	-	△42
	- 기타재산이자수입	94	-	-	94	541	575.5	-	447
	- 기타잡수입	-	-	-	-	-	-	-	-
	▪ 경상이전수입	283	148	-	431	3,453	801.2	-	3,022
	- 기타경상이전수입	283	148	-	431	3,453	801.2	-	3,022
	2. 정부내부수입	35,700	-	-	35,700	35,700	100.0	-	-
	▪ 일반회계전입금	5,700	-	-	5,700	5,700	100.0	-	-
	▪ 기금예수금	30,000	-	-	30,000	30,000	100.0	-	-
	3. 여유자금회수 등	-	-	-	-	-	-	-	-
	▪ 한국은행예치금회수	-	-	-	-	-	-	-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	-	-	-	-	-	-	-
	합계	64,225	148	-	64,373	68,949	107.1	-	4,576
지출	1. 사업비	40,362	-	5	40,367	39,824	98.7	-	△543
	▪ 융자사업	30,000	-	-	30,000	29,459	98.2	-	△541
	▪ 경상사업	10,362	-	5	10,367	10,365	100.0	-	△2
	2. 기금운영비	623	-	-	623	623	100.0	-	-
	3. 정부내부지출	23,240	148	-	23,388	23,388	100.0	-	-
	▪ 공자기금예수원금	18,964	-	-	18,964	18,964	100.0	-	-
	▪ 공자기금예수이자	4,276	148	-	4,424	4,424	100.0	-	-
	4. 여유자금운용 등	-	-	-	-	5,114	-	-	5,114
	합계	64,225	148	5	64,378	68,949	107.1	-	4,571
결산잔액(수입-지출)		-	-	△5	△5	-	-	-	5

2. 기금 조달(수입) 결산

2023년도 소진기금의 수입 계획현액은 6조 4,373억원으로 당초 계획 6조 4,225억원에 경상이전수입 148억원이 증액됨. 실현된 수입액은 6조 8,949억원으로, 계획현액 대비 107.1%로 4,576억원이 초과 수입됨.

2023년 기금조달(수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동(B)		계획현액 (C=A+B)	수입액 (D)	과부족 (D-C)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자체수입	28,525	-	148	28,673	33,249	4,576
○ 융자원금회수	25,593	-	-	25,593	26,742	1,149
○ 재산수입	2,649	-	-	2,649	3,054	405
- 융자이자수입	2,555	-	-	2,555	2,513	△42
- 기타재산이자수입	94	-	-	94	541	447
- 기타잡수입	-	-	-	-	-	-
○ 경상이전수입	283	-	148	431	3,453	3,022
- 기타경상이전수입	283	-	148	431	3,453	3,022
□ 정부내부수입	35,700	-	-	35,700	35,700	-
○ 일반회계전입금	5,700	-	-	5,700	5,700	-
○ 기금예수금	30,000	-	-	30,000	30,000	-
□ 여유자금회수 등	-	-	-	-	-	-
합계	64,225	-	148	64,373	68,949	4,576

2023년 계획현액을 초과한 주요 조달(수입) 내역을 보면 융자 사업에 따른 원금회수액에서 1,149억원, 보조사업 집행정산(정산 후 반납금 등)에 따른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3,022억원, 사업대기성 자금[297] 운용으로 기타재산이자수입 항목에서 447억원을 초과 실현함. 계획현액 대비 과소 조달(수입) 내역을 보면 융자사업에 따른 융자 이자가 42억원 과소 실현됨.

3. 기금 운용(지출) 결산

2023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지출 계획현액은 당초 계획 6조 4,225억원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148억원을 합한 6조 4,378억원임. 이 중 107.1%에 해당하는 6조 8,949억원을 집행함.

증액된 153억원의 내역은 공자기금 조기예수 및 공자기금 예수금리 인상에 따라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증액한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액과 전년 이월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5억원임.

297) 재원 조달과 기금 집행 시기 차이로 인한 일시성 대기자금

2023년 기금운용(지출) 계획 대비 실적

(단위: 억원)

구분	당초계획 (A)	계획변경(B)		계획현액 (C=A+B)	지출액 (D)	차년도 이월(E)	불용 (C-D-E)
		전년 이월	전용 및 증감				
□ 융자사업	30,000	-	-	30,000	29,459	-	541
○ 소상공인지원(융자)	30,000	-	-	30,000	29,459	-	541
□ 경상지출사업	10,362	5	-	10,367	10,365	-	2
○ 지역신용보증재보증	1,409	-	-	1,409	1,409	-	-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333	-	-	333	333	-	-
○ 소상공인성장지원	1,416	-	-	1,416	1,416	-	-
○ 소공인특화지원	327	-	-	327	327	-	-
○ 소상공인재기지원	1,514	-	-	1,514	1,514	-	-
○ 시장경영혁신지원	3,595	-	-	3,595	3,595	-	-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28	-	-	228	228	-	-
○ 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	1,048	-	-	1,048	1,048	-	-
○ 소상공인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17	-	-	17	17	-	-
○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	5	-	5	3	-	2
○ 상권활성화	305	-	-	305	305	-	-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54	-	-	54	54	-	-
○ 소상공인스마트기술 육성R&D	24	-	-	24	24	-	-
○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보화)	92	-	-	92	92	-	-
<사업비 총계>	40,362	5	-	40,367	39,824	-	543
□ 기금운영비	623	-	-	623	623	-	-
□ 정부내부지출	23,240	-	148	23,388	23,388	-	-
○ 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18,964	-	-	18,964	18,964	-	-
○ 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4,276	-	148	4,424	4,424	-	-
□ 여유자금운용	-	-	-	-	5,114	-	△5,114
합계	64,225	5	148	64,378	68,949	-	△4,571

불용액은 543억원으로 소상공인 융자 사업에서 541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화 사업에서 집행잔액 2억원,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에서 2,300만원 불용이 발생함.

2023년 기금운용(지출) 불용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불용액	세 부 내 역
【사업비】	543	
융자사업	541	- 융자사업 신청 저조
경상사업	2	- 손실보상제도화 이월 예산
【정부내부지출】	0.2	- 공자기금 예수이자상환액 잔액 발생(2,300만원)
합 계	**543.2**	

4.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억원)

	2023			2022		
자산						
Ⅰ.유동자산			49,185			34,155
1. 현금및현금성자산			631			12,309
1) 국고금		631			12,309	
2. 단기금융상품			19,734			82,844
1) 정기예금		-			200	
2) 기타의단기금융상품		19,734			2,644	
3. 미수채권		552			298	
1) 미수이자수익	209			141		
2) 기타의미수금	343			157		
미수채권대손충당금		48	504		77	220
1) 기타의미수금대손충당금	48			77		
4. 단기대여금		28,691			18,888	
1) 단기융자금	28,691			18,888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375	28,316		107	18,781
1) 단기융자금대손충당금	375			107		
5. 기타유동자산						
1) 구상채권	124			28		
구상채권대손충당금	124			28		
Ⅱ.투자자산			106,500			106,500
1. 장기금융상품			1,103			1,600
1) 정기예금		1,103			1,600	
2. 장기투자증권			11			12
1) 기타장기투자증권		11			12	
3. 장기대여금		104,901			115,396	
1) 장기융자금	104,901			115,39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11,300	93,601		10,508	104,888
1) 장기융자금대손충당금	11,300			10,508		
Ⅲ.일반유형자산			3,134			3,178
1. 토지			521			520

(단위: 억원)

	2023		2022	
2. 건물	721		706	
건물감가상각누계액	48	673	31	675
3. 구축물	58		58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27	31	21	37
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1		1	
1) 사무용집기	1		1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		1	
1) 사무용집기감가상각누계액	1		1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908		1,946
1) 건설중인토지	1,908		1,946	
Ⅳ.사회기반시설				
Ⅴ.무형자산				
Ⅵ.기타비유동자산				
자산계		147,033		143,832
부채				
Ⅰ.유동부채		19,605		19,689
1. 유동성장기차입부채		18,738		18,964
1) 유동성정부내장기차입금	18,738		18,964	
2. 기타유동부채		866		725
1) 선수금	1		1	
2) 미지급비용	865		724	
Ⅱ.장기차입부채		187,442		176,181
1. 장기차입금		187,442		176,181
1) 정부내장기차입금	187,442		176,181	
Ⅲ.장기충당부채		9		9
1. 기타장기충당부채		9		9
1) 보증충당부채	9		9	
Ⅳ.기타비유동부채				
부채계		207,056		195,878
순자산				
Ⅰ.기본순자산				
Ⅱ.적립금 및 잉여금		△60,023		△52,046
Ⅲ.순자산조정				
순자산계		△60,023		△52,046
부채와순자산계		147,033		143,832

2023회계연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자산은 14조 7,033억원으로 전년대비 3,201억원 증가(2.2% 증가)하였고, 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요 계정과목별로 살펴보면, 장·단기대여금은 13조 3,592억원(장기대여금 10조 4,901억원, 단기대여금 2조 8,691억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692억원이 증가함. 장·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은 6,296억원(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6,116억원,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179억원)으로, 직접대출로 인한 대손추계액 증가 및 저금리 대출 확대에 따른 융자 보조원가 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5,379억원이 증가함.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장·단기 대여금 잔액은 12조 1,917억원으로 전년대비 1,752억원이 감소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631억원으로, 2023년 여유자금에 대한 계정재분류에 따라 1조 1,678억원이 감소함.

미수채권은 552억원으로, 융자 규모 및 사업비 정산반납액의 증가로 전년 대비 254억원이 감소함.

장기투자증권은 11억원으로, 사고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이 전년대비 1억원이 감소함.

일반유형자산은 3,134억원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토지·건물과 감가상각액 증가로 44억원이 감소함.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부채는 20조 7,056억원으로 전년대비 24.1%인 1조 1,178억원이 증가함.

장기차입금은 18조 7,442억원으로, 공자기금 예수에 따라 전년대비 1조 1,261억원이 증가함.

기타유동부채 미지급비용은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미지급금으로 전년대비 141억원이 증가한 866억원임.

전환대출 보증을 위한 충당부채는 대환대출 신설로 인해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가함.

종합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것으로 총 △6조 23억원이며 전년대비 7,97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3년 재정운영결과를 반영한 금액임.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2023			2022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	15,149	(5,702)	9,447	438,146	(3,018)	435,127
1.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409	-	1,409	7,348	(2)	7,346
2.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13,740	(5,702)	8,038	430,798	(3,017)	427,781
Ⅱ.관리운영비			187			216
1.인건비			147			158
2.경비			40			58
(1)복리후생비			2			2
(2)소모품비			4			7
(3)인쇄비			0			0
(4)광고선전비			0			0
(5)지급수수료			1			1
(6)세금과공과			5			2
(7)지급임차료			12			18
(8)유류비			0			0
(9)수선유지비			1			0
(10)여비교통비			1			1
(11)업무추진비			12			12
(12)외주용 용역비			1			5
(13)감가상각비			0			0
(14)연구개발비			1			9
Ⅲ.비배분비용			4,565			3,864
1.이자비용			4,565			3,864
Ⅳ.비배분수익			522			290
1.이자수익			522			290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3,677			438,918
Ⅵ.비교환수익 등			5,700			411,597
1.기타재원조달및이전			5,700			411,597
Ⅶ.재정운영결과(Ⅴ-Ⅵ)			7,977			27,321

2023회계연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비용인 프로그램 순원가는 총 9,447억원으로 전년대비 42조 5,680억원이 감소함.

프로그램 순원가가 감소한 사유는 코로나19 사태 종료로 인해 전년대비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및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총원가의 감소에 기인함.

주요 프로그램별 순원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1,409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8,038억원임.

개별 프로그램에 배분되지 않는 관리운영비는 지원부서 인건비 및 경비로 187억원임.

기타 현행 재정사업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의 경우, 비배분비용은 4,565억원으로 전년대비 701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추가 공자기금예수금 발생에 따른 이자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며, 비배분수익은 전년대비 232억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여유자금 평잔 규모 확대 및 전반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에서 기인함.

비교환수익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전년대비 40조 5,897억원이 감소한 5,700억원임.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단위: 억원)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Ⅰ. 전기 기초순자산	-	(24,725)	-	(24,725)
1. 보고금액	-	(24,725)	-	(24,725)
Ⅱ. 재정운영결과		27,321		27,321
Ⅲ. 조정항목	-	-	-	-
Ⅳ. 전기 기말순자산(Ⅰ-Ⅱ+Ⅲ)	-	(52,046)	-	(52,046)
Ⅴ. 당기 기초순자산	-	(52,046)	-	(52,046)
1. 보고금액	-	(52,046)	-	(52,046)
Ⅵ. 재정운영결과		7,977		7,977
Ⅶ. 조정항목	-	-	-	-
Ⅷ. 당기 기말순자산(Ⅴ-Ⅵ+Ⅶ)	-	(60,023)	-	(60,023)

기초순자산은 2022회계연도 기말순자산 △5조 2,046억원과 동일하며, 2023회계연도 기말 순자산은 당년 재정운영결과 7,977억원이 반영된 △6조 23억원임.

Ⅱ. 검토의견

1. 소상공인창업지원(4131-316)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창업지원’(2017~, 보조)은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국내·외 창업교육, 신사업 아이템 제공, 상권정보 제공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은 332억 8,6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296억 5,100만원임.

2023년도 소상공인창업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창업지원	33,286	33,286	-	33,286	33,286 [29,651]	-	-	52,403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974	19,974	-	19,974	19,974 [16,778]	-	-	19,641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312	312	-	312	312 [301]	-	-	-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13,000	13,000	-	13,000	13,000 [12,572]	-	-	23,986
로컬크리에이터육성	-	-	-	-	-	-	-	6,848
로컬브랜드창출	-	-	-	-	-	-	-	1,928

□ 검토의견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집행관리 부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내역사업은 예비 소상공인의 안정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체험점포를 구축하고, 창의적인 신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선별하여 교육, 사업화 지원 등 창업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계획액은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창업·경영체험 교육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320-01목)와 체험점포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실집행현황(2023년 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9,974	19,974	16,778	3,196	-
- 민간경상보조(320-01)	17,724	17,724	16,778	946	-
· 온·오프라인 점포실습	12,750	12,750	12,482	268	-
·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	2,250	2,250	1,800	450	-
· 체험점포 운영	2,724	2,724	2,497	227	
- 민간자본보조(320-07)	2,250	2,250	-	2,250	-
· 체험점포 신규 구축	2,250	2,250	-	2,25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자본보조 22억 5,000만원은 신규 체험점포 구축을 위해 지역의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직(職)·주(住)·락(樂)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액 미집행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소상공인 혁신허브 3개소(1곳당 7억 5,000만원) 신규 구축을 목표로 하여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부산과 대전 2개 지역을 선정[298]하였는데,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확보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과정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관련 보조금 전액을 미집행 이월[299]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지역 모집공고가 2023년 3월에 이루어져 최종 선정이 4월에야 완료된 점, 부산점 및 대전점 구축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이 최초 6개월 연장되었다가 회계연도 종료 후 추가로 4개월 연장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298) 2023년 4월 선정

299) 이월 보조금은 2024년 5월 기준 약 5억 3,200만원만 실집행된 것으로 파악됨(실집행률 23.6%).

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 변경 현황

변경일자	변경 주요내용
2023.11.17.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전점·부산점에 대한 구축 공사를 위해 **사업기간 6개월 연장('23.12. → '24.6.)** *구축공사(~`24.5월), 준공 및 마무리(~`24.6월)
2023.12.26.	○ 소상공인 혁신허브(대전점·부산점) 신규 구축 유형자산(집기와 비품) 예산 일부를 공사비로 변경 *공사 및 장비, 집기류 등 `24.6월까지 마무리
2024.3.19.	○ 라이콘 타운(부산점·대전점) **구축기간 연장('24.6. → '24.10.)** *(부산점) 구축공사(`24.5~9월) → 준공 및 마무리(`24.10월) (대전점) 구축공사(`24.3~5월) → 준공 및 마무리(`24.6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한편, 동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 교부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보조사업비(민간자본보조) 교부 현황

구분	교부일자	교부액	교부내역	교부대상
1차	2023.3.8.	9억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차	2023.3.31.	9억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3차	2023.9.7.	4억 5,000만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00]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먼저 교부된 보조

30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또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등을 최소화해야 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고, 보조금의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3월 8일 동 내역사업의 보조금 9억원을 교부한 후 3월 31일에 9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였고, 최종적으로 9월 7일에 잔여 보조금 4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음. 그러나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미집행되어 이월되었음.

이는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확인하여 집행이 가능한 보조금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 설치 지역 선정이 2023년 4월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편성된 보조금의 80%에 해당하는 18억원을 사업 대상이 확정되기도 전인 3월에 교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사업은 2022년에도 편성된

보조사업비(민간자본보조 30억원) 중 대부분을 미집행 이월하였는데, 동일한 문제점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2022년 체험점포 2곳(아산점, 세종점) 신규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회계연도 종료 후에도 사업기간이 추가로 연장되어 2023년 12월에야 사업이 완료된 결과, 실제 사업기간이 2년에 달하고 있음. 동 내역사업은 이처럼 연례적으로 사업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단년도 사업 추진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계획 변경 현황

변경일자	변경 주요내용
2022.9.13.	○ 아산점, 세종점 체험점포(2곳)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매칭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여 **구축기간 연장** 필요 ***구축기간 연장: 아산점(~`22.12월말 → ~`23.6월), 세종점(~`22.12월말 → ~`23.6월)**
2023.6.22.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에 필요한 사업기간 연장(6개월) - 지자체 추경 예산 심의·확정 등으로 인해 구축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23.6월 → '23.12월까지 연장** 필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구축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따른 보조사업비 이월과 사업기간 연장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성장지원’(2006~, 보조)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 및 컨설팅, 조직화·협업화,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은 1,416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361억 3,900만원임.

2023년도 소상공인성장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성장지원	141,654	141,654	-	141,654	141,654 [136,139]	-	-	294,625[301]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94,400	94,400	-	94,400	94,400 [90,572]	-	-	-[302]
소상공인 역량강화	21,042	21,042	-	21,042	21,042 [20,470]	-	-	21,542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8,558	8,558	-	8,558	8,558 [8,043]	-	-	7,416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1,140	1,140	-	1,140	1,140 [1,133]	-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12,600	12,600	-	12,600	12,600 [12,501]	-	-	11,540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2,294	2,294	-	2,294	2,294 [1,802]	-	-	427
업종별 경쟁력 강화	1,620	1,620	-	1,620	1,620 [1,618]	-	-	-

301) 2024년 신규사업인 ‘지역상권 역량강화’(17억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 포함

302) 2024년부터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4131-322)’ 세부사업으로 이관됨.

□ 검토의견

(1)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내역사업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지원대상</td><td>「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td></tr>
<tr><td>지원내용</td><td>○(공동사업)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 장비 등
○(판로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교　　육)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td></tr>
<tr><td>지원한도</td><td>○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table>
<tr><th>구분</th><th>지원한도</th><th>정부 보조비율</th></tr>
<tr><td>초기단계</td><td>1억원</td><td rowspan="3">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td></tr>
<tr><td>성장단계</td><td>2억원</td></tr>
<tr><td>도약단계</td><td>5억원</td></tr>
</table></td></tr>
<tr><td>신청요건</td><td>○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으로 성장단계별 신청
-(준비단계) 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또는 설립 6개월 미만
-(초기단계) 설립 1~3년차
-(성장단계) 설립 4~6년차이면서 조합원 10인 이상 또는 전년대비 매출·고용 5% 이상 증가
-(도약단계) 설립 7년차 이상이면서 조합원 20인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매출·고용 10% 이상 증가</td></tr>
<tr><td>주관기관</td><td>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td></tr>
</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동 내역사업의 지원내용은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동장비 분야와 공동일반 분야로 구분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동장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공동일반	개발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전사적자원관리)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마케팅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판매플랫폼 진출 등
	규모화 사업	조합원 수 및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 조합원 대상 교육사업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 개선을 위한 개발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계획액은 민간경상보조(320-01목) 96억원과 민간자본보조(320-07목) 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12,600	12,600	12,501	85	14
- 민간경상보조(320-01)	9,600	9,600	9,513	85	2
· 공동사업(공동일반)	2,962	2,962	2,960	-	2
· 판로지원	3,118	3,118	3,118	-	-
· 교육	3,520	3,520	3,435	85	-
- 민간자본보조(320-07)	3,000	3,000	2,988	-	12
· 공동사업(공동장비)	3,000	3,000	2,988	-	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민간자본보조(320-07목)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303]으로서, 동 내역사업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생산·검사·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구입을 위하여 총 67개 협동조합에 29억 8,800만원이 지원되었음.

2023년 공동사업 분야별 지원실적

구분	공동장비	공동일반				계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대상	67건	5건	15건	41건	7건	135건
지원금액	29.9억원	1.3억원	2억원	10.7억원	3.9억원	47.8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보조금통합포털'[304]에 등록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요재산 공시 목록(2023년)'에는 동 내역사업에서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05]에 따르면, '중요재산'이란 보조사

303)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04)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https://bojo.go.kr)

30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

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등을 말함.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취득 후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306].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어떠한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요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307], 그 결과 동 내역사업에서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장비[308]에 대한 관리·감독이

물을 말한다) 및 부선거(浮船渠: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거나 선박에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한 부양식 설비를 말한다)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3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307)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별 세부사업별 사업지침에 중요재산 관리·감독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308) 동 내역사업에서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장비는 품목당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비소모성 기계, 설비, 등임.

면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동 내역사업은 2022년에 민간자본보조 30억원 중 29억 800만원을 실집행하여 총 83개 협동조합에 공동장비 구입을 지원하였는데, 단 7건의 장비(총 취득가액 5,803만 5,000원)[309]에 대해서만 중요재산 공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중요재산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는 행위 등이 금지[310]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제한 조치가 원활히

---

309) 공동장비 구입을 지원받은 83개 협동조합 중 2개 협동조합의 중요재산만 공시되었음.

연번	유형	중요재산명	보조사업자명	취득가액(원)	취득일자
1	기계 설비	감광건조기	공주향협동조합	7,535,000	2022.07.15.
2		니혼오바(EX-5214)	광진패션협동조합	5,100,000	2022.06.22.
3		쌍침(KM-797)	광진패션협동조합	5,000,000	2022.06.22.
4		전자 나나인찌(LBH-1790S)	광진패션협동조합	7,700,000	2022.06.22.
5		삼봉(VC-2700)	광진패션협동조합	6,700,000	2022.06.22.
6		전자 고인찌(LK-1900S)	광진패션협동조합	6,800,000	2022.06.22.
7		전자 큐큐(MEB-3200S)	광진패션협동조합	19,200,000	2022.06.22.
계				58,035,000	

자료: e-나라도움·보탬e 보조금통합포털(https://bojo.go.kr)

3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가 면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별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립하고,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2)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보조사업비로 공공기관 임원 인건비 집행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내역사업은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피보조기관(사업시행주체)은 중소기업유통센터[311]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2023년에는 민간경상보조(320-01목) 944억원 중 830억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에, 114억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부되었음. 보조사업자별 지원내용 및 보조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311)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23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구분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액
중소기업유통센터	역량강화	상품 개선 컨설팅	-상품성 전문가 진단, 소비자 선호도조사, 디자인 개선 등 상품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7,500
		우수제품 홍보·광고지원	-소상공인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해 광고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 추진	1,950
		전담 셀러	-유통전문가를 소상공인과 1:1로 매칭하여, 온라인 판매전략 기획, 상품등록 및 관리, 홍보·판매 등 일괄 지원	6,300
	채널진출	인터넷몰 입점 지원	-온라인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민간몰에 소상공인 기획전 개설 및 판촉 프로모션 등 판매지원	18,000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교육, 콘텐츠 제작 포함)	-소상공인 제품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 지원 -미디어를 활용한 상품 홍보·판매를 원하는 소상공인 교육 및 이들을 도와줄 인플루언서 육성 -소상공인 제품 홍보를 위해, PPL 영상 등 콘텐츠 제작 지원	17,250
		TV홈쇼핑·T-커머스	-홈쇼핑 진출을 위한 멘토링 및 방송판매 등 지원	4,800
		V-커머스	-V커머스 영상제작 및 제휴 쇼핑몰 내 기획전 마련 등	6,000
		해외쇼핑몰	-해외쇼핑몰 진출 교육 및 입점, 마케팅 등 지원	1,800
		구독경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수입 창출과 정기적 판로 구축 등을 위해 소상공인 제품의 정기배송 지원	5,000
		O2O 융합 판매·기획전	-내수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상품의 온·오프라인 연계 판매를 위한 판촉행사	3,200
	기반구축	가치삽시다 플랫폼	-소상공인 상품 판매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운영	2,000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실습 등에 필요한 촬영 스튜디오 및 교육장 등 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장비 등 대여	5,600
		스마트플래그십 스토어	-스마트기술 기반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판매를 결합한 '소상공인 전용 O2O 연계 매장' 구축·운영	3,600
	소계			83,0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량강화	온라인 시장 진출 교육	-전자상거래, 쇼핑몰 입점 등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내용 교육 및 입점 절차 등 상담 지원	4,200
	채널진출	모바일	-민간 O2O 플랫폼 활용 시 주문·배송·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7,200
	소계			11,400
합계				94,4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사업비 830억원은 직접사업비 727억 5,000만원과 간접사업비 102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보조금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불용액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중소기업유통센터)	83,000	83,000	82,919	81
직접사업비(온라인 역량강화, 채널진출, 기반구축)	72,750	73,002	72,937	65
간접사업비(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0,250	9,998	9,982	1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중소기업유통센터의 보조금 실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간접사업비 중 '사업 운영 인건비' 명목으로 반영되어 집행된 인건비 90억 2,830만원 중 약 3억 4,610만원은 동 내역사업의 운영에 직접 참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의 인건비 소요(급여, 성과연봉,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등)로 집행되었음.

「국가재정법」[312]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 또는 기금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3]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

31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는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인건비 집행 방식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 소요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로 집행되고 있고, 인건비 소요의 나머지 40%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고유사업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는 다른 보조사업[314]에서는 해당 임원들의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 기여도를 감안[315]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당 임원 인건비 소요의 60%를 동 내역사업 보조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임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보조사업비를 정산할 때 사업 기여도에 따른 인건비 집행 기준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4) 2023년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830억원) 외에도 '마케팅지원사업'(261억 900만원), '공공구매제도운영'(73억 1,800만원), '브랜드K 육성관리'(26억원), 'MRO 납품 중소기업 지원'(5억원) 등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였음.

315)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대표이사 등 해당 임원들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외 다른 정부 보조사업에는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옳을 것이나, 이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또한, 보조사업자인 공공기관의 기본적 운영과 관련된 소요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예산을 편성[316]함으로써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성 보조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유통센터 조직 현황



자료: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

3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우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를 반영한 '소진기금 인건비', '소진기금 기본경비',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편성되어 있음.

3. 소공인특화지원(4131-318)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공인특화지원’(2015~, 보조)은 소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유도하여 소공인 집적지를 활성화하고 집적지 내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및 개별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은 326억 7,0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293억 1,000만원임.

2023년도 소공인특화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공인특화지원	32,670	32,670	-	32,670	32,670 [29,310]	-	-	31,670
판로개척지원	7,650	7,650	-	7,650	7,650 [7,571]	-	-	7,650
클린제조환경조성	8,400	8,400	-	8,400	8,400 [8,230]	-	-	8,400
특화지원센터 설치	13,300	13,300	-	13,300	13,300 [13,189]	-	-	13,300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3,320	3,320	-	3,320	3,320 [320]	-	-	2,320

□ 검토의견

(1)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연례적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집행 관리 미흡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내역사업은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 스마트 제조장비,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마케팅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 집적지구 내 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유통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소공인 협업클러스터 및 혁신기반 조성
지원규모	○ 집적지 2곳 선정, 30억원(1곳당 국비 25억원×60%) *신청 사업비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내에서 추가 선정 가능 **연차별 사업비 분할 교부(1차년도 60%, 2차년도 40%)
사업기간	○ 공간 조성 기간으로 2차연도 내 구축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구축비 중 국비 50% 이하, 지방비 50% 이상)
지원내용	○ 공동장비, 스마트장비, 전시·판매장, 체험공간 등 구축비용 지원 *구축비용: 1곳당 국비 25억원(1차연도 15억원 이내, 2차연도 10억원 이내)
운영절차	신청·접수 (지자체→소진공 (~’23.3)) ▶ 선정평가 (평가·심의위원회 (4월 중)) ▶ 지정 및 고시 (중기부 (5월초)) ▶ 협약체결 (중기부↔지자체 (협약일부터~)) ▶ 사업비 교부(1차) (중기부→지자체 (’23.5)) ▶ 사업 추진 (지차체 (~구축시까지)) ▶ 사업비 교부(2차) (중기부→지자체 (’24.3)) ▶ 구축 완료 (지자체 (~’24.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계획액은 기존 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320-01목) 3억 2,000만원과 복합지원센터 신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3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실집행현황(2023년 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3,320	3,320	320	2,978	22
- 민간경상보조(320-01)	320	320	298	-	22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3,000	3,000	22	2,978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치단체자본보조 3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자산 등 공간을 확보하여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건축공사 및 공간 리모델링, 스마트 장비 도입 등을 국비로 매칭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나, 2,200만원만 실집행(실집행률 0.7%)되고 대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 복합지원센터 신규 구축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3곳으로 지역별 국비-지방비 매칭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신규 구축대상 지역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국비			지방비			합계 (총사업비)
	2023년	2024년	소계	2023년	2024년	소계	
서울 종로구	426	284	710	-	750	750	1,460
전북 부안군	1,146	764	1,910	229	1,681	1,910	3,820
강원 원주시	1,428	952	2,380	-	2,380	2,380	4,760
합계	3,000	2,000	5,000	229	4,811	5,040	10,04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이 ‘부지확보→설계용역→건축공사’ 순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동 내역사업을 연차사업(2개년)으로 개편하였으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함.

2023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신규 구축사업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지역	2023년 계획액	2023년 실집행액	구축일정	비고
서울 종로구	426	7	-공고: 2023. 5. -선정: 2023. 7. -설계: 2023. 12.~2024. 6. -공사: 2024. 7.~9. -개소: 2024. 10.	2차연도 내에 사업완료 예정
전북 부안군	1,146	10	-공고: 2023. 5. -선정: 2023. 7. -설계: 2023. 12.(기계설비) 2024. 3.(기본·실시설계) -공사: 2024. 9.~ -개소: 2024. 12.	2차연도 내에 사업완료 예정
강원 원주시	1,428	5	-공고: 2023. 5. -선정: 2023. 7. -설계: 2024. 4.~2024. 9. -공사: 2024. 10.~2025. 5. -개소: 2025. 6.	공공건축사업 절차에 건축기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축기간 연장
계	3,000	2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모집 공고가 5월에 실시되고, 사업 대상지역 선정이 7월에 완료되는 등 사업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측면이 있음. 사업 대상지역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복합지원센터 구축 세부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역시 차례로 밀린 결과, 당초 편성되었던 국비 대부분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 내역사업을 2개년도 사업으로 개편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조금 실집행률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차별 사업비 분할 방식(1차연도 60%, 2차연도 40%)의 세부적인 내용과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내역사업은 보조금 교부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됨.

2023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보조금(330-03) 교부 현황

구분	교부일자	교부액	교부내역
1차	2023.9.27.	21억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신규 구축 (서울 종로구 3억원, 전북 부안군 8억원, 강원 원주시 10억원)
2차	2023.12.27.	9억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신규 구축 (서울 종로구 1.26억원, 전북 부안군 3.46억원, 강원 원주시 4.28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17]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되, 먼저 교부된 보조

31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또한,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이월 등을 최소화해야 함.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차에 걸쳐 보조사업비 30억원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2023년 말 기준 실집행률은 0.7%에 그쳤는데, 이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관련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시 자금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기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여야 하나[318], 동 내역사업은 사업 대상지역 선정 등 사전절차가 지연된 탓에 연말이 되어서야 보조금 교부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 내역사업은 2022년에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보조금 전액을 일괄 교부하였는데,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319].

318)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8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대상 모집 등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보조금을 적시에 교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교부된 보조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19)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22년 신규 구축 보조사업비 75억원 중 44억 1,100만원을 3개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나 전액 미집행되어 2023년으로 이월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말에야 복합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사업기간 연장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주의가 필요해 보임.

4. 소상공인지원인프라(4131-321)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상공인지원인프라’(2006~, 보조)는 소상공인 지원정보 제공, 현안 조사연구,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전진단 및 사후관리,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 등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은 228억 2,7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178억 1,500만원임.

2023년도 소상공인지원인프라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2,827	22,827	-	22,827	22,827 [17,815]	-	-	14,448
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1,940	1,940	-	1,940	1,940 [1,884]	-	-	-
소상공인 주간활성화	1,033	1,033	-	1,033	1,033 [1,032]	-	-	723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2,871	2,871	-	2,871	2,871 [2,670]	-	-	4,711
소상공인연합회지원	2,360	2,360	-	2,360	2,360 [2,347]	-	-	2,660
정책자금운영지원	8,823	8,823	-	8,823	8,823 [7,781]	-	-	6,354
소상공인전용결제 시스템	5,800	5,800	-	5,800	5,800 [2,101]	-	-	-

□ 검토의견

(1)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민간위탁으로 사업추진방식 및 비목 변경 필요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내역사업은 실태조사, 현안이슈 등을 시의적절하게 조사·연구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사업으로, ‘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전담연구센터 운영’ 및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등 3개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내내역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내내역사업 현황(2023년)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2023년도 계획액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식
정책조사연구	1,710	·소상공인실태조사(2.9억원)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BSI)(3.6억원)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5억원) ·소상공인폐업동향분석(2.14억원) ·정책조사연구(3.46억원)	민간보조
소상공인 전담연구센터 운영	599	·인건비, 연구비, 운영비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562	·상담센터 운영, 피해구제 지원, 실태 및 성과분석	
합계	2,8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동 내역사업 계획액 28억 7,100만원은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액 교부받아 2023년 말 기준 26억 7,000만원을 실집행하고 1억 5,300만원을 이월,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소상공인정책조사연구 실집행현황(2023년 말)

(단위: 백만원)

구분	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사업시행주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집행내역					
	당초	수정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소상공인 정책조사연구	2,871	2,871	2,871	2,871	-	2,871	2,670	153	48
정책조사연구	1,710	1,710	1,710	1,710	-	1,710	1,697	-	13
소상공인 전담 연구센터 운영	599	599	599	599	-	599	536	28	35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	562	562	562	562	-	562	437	12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소상공인기본법」[320]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321]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

320)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사나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의 작성·관리 및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은 그 수행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소상공인실태조사',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는 모두 「통계법」[322]에 따라 지정된 '국가승인통계'[323]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24]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

---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22)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323)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제142004호), 상가건물임대차실태조사(제142006호), 소상공인실태조사(제142021호)

3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을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정책상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지침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사업성격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기관 등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경우 민간보조 →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전환하여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325].

따라서 당초 민간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대하여 민간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민간의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위탁사업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한편, 정부가 2022년 실시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326]에서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정책조사연구, 소상공인전담연구센터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소상공인기본법」[327]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328]에 따라 소상공

325)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02

326) 기획재정부 보조사업평가단, 「202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2022.9.

327)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들의 수행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보조금을 감축하도록 평가한 바 있음.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나 통계의 작성·관리 및 불공정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 국가사무로 명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보조 방식이 아닌,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사업추진방식 및 비목을 변경해야 할 것임.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3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5의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의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의4.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운영

(2) 공통(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정책자금운영지원): 주요사업비로 기금운영비성 지출 주의 필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내역사업은 소상공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소상공인 경영서비스 개선 및 관련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보화사업임.

‘정책자금운영지원’ 내역사업은 정책자금 직접·대리대출 운영 및 채권 보전조치, 금융역량 강화,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효과를 향상하는 사업임.

두 내역사업의 피보조기관(사업시행주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내역사업별 2023년도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3년도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정책자금운영지원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1,940	1,940	1,883	51	5
정책자금운영지원	8,823	8,823	7,782	970	7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런데 두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 실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세부사업[329]과 혼용하여 집행된 사례가 발견되었음. 참고로,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세부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

329) 사업코드: 7277-201

리·운영 수탁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정보인프라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분류상 기금운영비성 사업[330]임.

주요사업비와 기금운영비를 혼용한 집행 사례

(단위: 원)

내내역사업명	지출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세부사업·내역사업	비고
IDC 및 전용회선 운영[331]	임차료 (210-07목)	IDC 비용 지급(1월)	51,195,100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기금 운영비
		IDC 비용 지급(2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3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4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5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6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7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8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10월)	42,390,200		
		IDC 비용 지급(11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12월)	51,195,100		
		IDC 비용 지급(9월)	51,195,100	정책자금 운영지원	주요 사업비
		IDC 비용 지급(10월)	8,804,900		
소계			614,341,200		
2023년 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관리용역비 (210-15목)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대금 지급(1~9월, 11~12월)	1,065,938,986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기금 운영비
		인프라 통합유지관리 대금 지급(10월)	97,972,330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주요 사업비
소계			1,163,911,31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33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는 '소진기금 인건비(7277-100)', '소진기금 기본경비(7277-200)', '소진기금 정보화경비(7277-201)' 등 총 3개의 기금운영비성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

331)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 본부, 대외기관(은행, 신용평가사, 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통신회선 및 장비 임차 운영(공단 정보시스템은 둔산동 및 선화동 소재 SK Broadband IDC 임차 중)

우선, ‘IDC 전용회선 운영’ 사업에서는 전용회선 및 IDC(Internet Data Center) 상면공간 임차 등을 위하여 2023년에 총 6억 1,434만 1,200원의 임차료(210-07목)가 집행되었는데, 9월분 임차료와 10월분 임차료 중 일부는 주요사업비인 ‘정책자금운영지원’ 내역사업에서 지출되고, 나머지는 기금운영비인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세부사업에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2023년 공단 정보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사업에서는 2023년에 총 11억 6,391만 1,316원의 관리용역비(210-15목)가 집행되었는데, 10월분 대금은 주요사업비인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내역사업에서 지출되고, 나머지는 기금운영비인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세부사업에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러한 보조사업비 집행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국가재정법」[332]에서는 ‘예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3]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332)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3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데이터센터 및 전용회선 임차나 정보인프라 유지관리 등은 기금관리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본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기금운영비성 지출이므로 주요사업비인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내역사업 등에서 지출한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

또한, 「국가재정법」[334]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지출금액을 증액변경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주요사업비를 지출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둘째, 「국고금 관리법」[335]에서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진기금 정보화경비’ 세부사업에 배정된 기금운용계획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

---

334)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335)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행위(임대차계약 또는 유지관리계약)를 한 후 부족한 금액을 주요사업비에서 지출하였는바, 이러한 집행방식은 '지출원인행위의 준칙'을 규정한 「국고금 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사업추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운영비성 지출을 주요사업비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3)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과도한 사업기간 연장 지양 필요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내역사업은 신용카드 중심의 고비용 국내 결제시장에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확산시켜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336]하려는 사업으로, 지원내용과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336) 소상공인 가맹점 0~0.5%, 일반 가맹점 1.2% 적용

구분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 가맹점
연 매출액	8억원 이하	8~12억원	12억원 초과	
수수료율	0%	0.3%	0.5%	1.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카드 우대수수료율(연 매출액 기준)
- 신용카드: (3억원 이하) 0.5%, (3~5억원) 1.1%, (5~10억원) 1.25%, (10~30억원) 1.5%
- 체크카드: (3억원 이하) 0.25%, (3~5억원) 0.85%, (5~10억원) 1.0%, (10~30억원) 1.25%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지원내용

구분	내용
제로페이 인프라 구축	○QR키트·QR리더기, 전통시장 무선단말기 보급 등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전용결제 인프라 조성
홍보 마케팅	○페이백 이벤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제로페이 결제 고객 확보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추진체계

구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제도개선, 예산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피보조기관)	○보조금 세부계획 수립, 사업 진행·관리·감독 - 위탁사업자 선정 및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등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기관)	○QR키트 데이터 생성 및 결제 검증 - 가맹점 계약 등
위탁사업자	○위탁사업 수행 - QR키트 및 리더기 제작·보급 - 간편결제 홍보·마케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2023년도 보조사업비는 총 58억원으로, 민간경상보조(320-01목) 51억원은 QR키트 및 QR리더기[337] 제작·보급 등 인프라 구축과 결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7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페이백·경품 이벤트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2023년 말 기준 보조사업비 실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337) 제로페이 결제방식은 2가지로, 판매자 제시방식(MPM)과 소비자 제시방식(CPM)이 있음.
-MPM(Merchant Presented Method): 가맹점 비치형 QR키트를 소비자가 스캔하여 결제
-CPM(Customer Presented Method): 소비자 스마트폰에 QR 또는 바코드를 생성하면 가맹점 리더기로 스캔하여 결제

2023년도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실집행현황(2023년 말)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민간경상보조(320-01)	직접사업비	4,938	4,938	1,519	3,419	-
	시스템 운영 및 CPM·MPM 보급	3,513	3,513	508	3,005	-
	홍보·마케팅	1,230	1,230	966	264	-
	조사연구	195	195	45	150	-
	간접사업비	162	162	44	118	-
	소계	5,100	5,100	1,563	3,537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700	700	538	-	162
합계		5,800	5,800	2,101	3,537	16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의 보조사업비 실집행률은 2023년 말 기준 36.2%에 불과한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 운영 관련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23년 사업 착수가 지연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국회는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 운영기관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상품권 등 판매 수익 특정 출연업체에 과다 배분 의혹 등'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운영 등 정부 위탁사무 수행과 정부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처분[338]을 요구한 바 있음.

338)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중소벤처기업부훈령)
제32조(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① 장관 또는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행위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처분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체감사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연번	건명	관계기관	처분요구
1	모바일상품권 판매 사업 운영 부적정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통보 주의
2	금융결제원 시스템 이용료 납부 부적정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경고
3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자 계약절차 부적정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개선요구
4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기관 선정 절차 부적정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선요구 통보
5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활용 실적 저조	디지털소상공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통보
6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보급사업 집행 부적정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시정요구 경고
7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맹점 정보 검증 절차 미흡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통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사무 및 제로페이 운영 실태 점검」, 2023.3.

또한, 감사원은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관련 특정사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정책 상품권 발행·판매권 등을 민간 재단법인(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재위탁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

---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처분
2. 징계 및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를, 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법령 또는 소속된 기관에서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하면 문책을 처분
3. 시정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의 방법으로 교정하거나 원상태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4. 주의요구 :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에 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처분하는 것으로 주의처분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주의 : 위법·부당한 사항으로서 징계 또는 경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는 경우
   나. 경고 : 위법·부당한 사항으로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비위나 잘못이 있는 경우
   다.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고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이나, 그 책임이 기관 전체에 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5. 개선요구 : 회계 또는 행정사무의 결함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의무위반행위가 법령상·제도상·행정상의 결함에 그 원인이 있거나, 해당업무와 관련한 개선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결함·모순 등의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분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
7. 통보 : 징계·문책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등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

실태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였음.

감사원 특정사안감사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구분	내용
감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법령상 근거 없이 법률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업무를 민간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재단법인 설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에 출연한 업체만 모바일 정책 상품권(온누리·지역사랑) 판매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계약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 없이 위 재단법인이 요구한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승인하였음.
조치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앞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재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상품권 판매 권한을 특정 업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거나 계약관계법령에 따른 검토 없이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제로페이를 통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법인과 판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자료: 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II」, 2023.12.

이에,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라는 시정요구사항[339]을 의결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적법한 지원대상이 아닌 위탁사업자에게 오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국고반납[340] 처리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339)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명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지적사항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제로페이)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상품권 등 판매 수익이 특정 출연업체에 과다 배분되는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중인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대형유통업체(편의점) 직영점에 시스템 보급을 지원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음
시정요구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시정요구유형	제도개선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3.12.

동 내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보조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최초로 승인(2023년 5월)한 후 2차에 걸쳐 사업계획을 변경[341] 하였음. 그 결과, 보조사업의 사업기간이 다음연도인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는데, 이는 관련 법률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2023년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분	주요 변경내용
1차 변경 (2023.12.)	○2023년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제로페이 가맹점 200만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 6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내역 변경 - **(사업기간 연장)** '23년 12월 31일까지 → **'24년 6월 30일까지** - (예산내역 변경) ①MPM 확대 보급, 방한 관광객 해외결제 홍보 등 증액(+5억 6,290만원) ·MPM 6만개 추가 보급(22→28만개, +2억 4,700만원)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제휴 해외결제사 홍보비 증액(+9,600만원) ·제로페이 사업 활성화 전략 연구(+1억 5,000만원) ·기타 운영비 부족분 증액(+6,990만원) ②CPM 단가 조정 등 감액(△5억 6,290만원) ·CPM 단가 조정(28→20천원, △4억 8,000만원) ·소상공인전용결제시스템 홍보 용역 낙찰차액 활용(△1,700만원) ·자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변경(△1,000만원) ·계약직 인건비 등 감액(△5,590만원)
2차 변경 (2024.6.)	○제로페이 가맹점 200만개 목표 달성, 해외결제 활성화 등을 위해 2024년 12월까지 사업기간 연장 및 예산내역 변경 - **(사업기간 연장)** '24년 6월 30일까지 → **'24년 12월 31일까지** - (예산내역 변경) ①해외결제(직불) 활성화 홍보비 증액 등(+3억 6,800만원) ②일반용역비 낙찰차액 활용(△1억 3,000만원), 자회사 설립 연구용역비 잔액 활용(△1억 2,800만원), CPM 지원수량 조정(△1억원), 국외여비 감액(△1,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340) 2024년 5월 14일자

34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재정법」[342]에서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정부가 회계연도마다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국가회계법」[343]에 따라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데, 보조사업비의 이월 또는 사업기간 연장은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 간 회계연도의 불일치를 유발함으로써 국가회계 결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국회법」[344]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내역사업의 사업기간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국회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는 중에

---

342) 「국가재정법」
제56조(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43) 「국가회계법」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국가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국가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344)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도 이월된 보조사업비의 집행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결과적으로 국회의 내실있는 결산 심사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아울러, 사업계획의 반복적인 변경 및 사업기간의 관성적인 연장은 최초로 수립되었던 사업계획 또는 한 차례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이 보조금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여타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기간을 관성적으로 과도하게 연장함으로써 국가회계 및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임.

5. 시장경영혁신지원(4154-304)

□ 사업 및 결산 개요

‘시장경영혁신지원’(2002~, 보조·민간위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마케팅 지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시장 및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은 3,594억 9,8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2,592억 5,200만원임.

2023년도 시장경영혁신지원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시장경영혁신지원	359,498	359,498	-	359,498	359,498 [259,252]	-	-	420,619
시장경영패키지	16,142	16,142	-	16,142	16,142 [14,880]	-	-	16,142
전통시장 홍보	3,146	3,146	-	3,146	3,146 [3,086]	-	-	2,906
온누리상품권 발행	289,787	289,787	-	289,787	289,787 [195,633]	-	-	351,348
특성화시장 육성	29,750	29,750	-	29,750	29,750 [28,620]	-	-	30,100
복합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5,620	5,620	-	5,620	5,620 [5,260]	-	-	5,620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3,853	13,853	-	13,853	13,853 [10,754]	-	-	13,853
조사 및 평가	700	700	-	700	700 [697]	-	-	700
산학연계 경영혁신	500	500	-	500	500 [322]	-	-	-

□ 검토의견

(1) 산학연계 경영혁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및 사업성과 후속연계 미흡

‘산학연계 경영혁신’ 내역사업은 대학의 아이디어를 민간 전문기관이 전통시장과 함께 실행하여 신규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 등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액 5억원 전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음.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신규사업임.

동 내역사업의 지원내용은 민간 전문기관이 IT 기업의 지원 하에 대학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전통시장·상점가와 협력하여 지역축제·행사를 개발·운영하거나 특화상품을 발굴·판매하는 것임.

산학연계 경영혁신 지원내용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지역축제·행사 개발·운영	○(지역축제 개발) 시장스토리, 지역역사,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컨셉을 개발하고 전통시장·로컬상권 축제·야시장 등 진행 ○(행사·축제 운영) 개발한 지역축제·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실무지원 ○(디지털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을 위한 실무교육과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운영지원, 상인 디지털 교육	중복지원 가능 (시장당 25백만원 한도)
특화상품 발굴·판매	○(특화상품 발굴) 숨겨진 지역상품 또는 시장 대표상품을 MD 등 전문가를 통해 평가·발굴, 상품 유통 ○(홍보마케팅) 온라인 홍보를 위한 실무교육과 카카오 채널 등 온라인 홍보 운영지원, 홍보물품 제작 지원 ○(온라인 판매지원) 온라인 전용 특화상품 및 로고·패키징 개발, 디지털 진출을 위한 교육·상세페이지 제작, 라이브커머스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내역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정된 민간 전문기관이 대학과 연계 가능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산학연계 경영혁신 사업추진체계

구분	역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기획, 예산관리, 사업홍보 - 전문기관 선정 및 관리 - 지역 협의체 관리운영
전문기관 (MK유니버스)	- 전통시장·상점가 교육지원 - 대학의 아이디어 발굴 및 대학생과 함께 실행 -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정산
대학	- 사업 참가 대학생(동아리) 모집 홍보 및 추천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 전통시장·상점가 디지털 진출 교육 참여
전통시장·상점가	- 지원과제 선정 및 지원사업 참여 - 지자체와 함께 사업성과 유지·관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추진 결과, 전국에서 총 16개 팀이 선정되었으며 팀별로 전통시장·상점가와 협업하여 시장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 운영, 대표 특화상품 발굴 및 온라인 홍보 등 과제를 수행하였음.

산학연계 경영혁신 사업추진 결과

(단위: 백만원)

연번	지역	대학	전통시장·상점가	지원분야	사업 수행내용	지원액
1	경기	가천대학교	성남남한산성시장	지역축제	남한산성을 활용한 활성화 축제	18
2			모란종합시장	지역축제	기름 골목 모란시장 축제	8
3	경기	가톨릭대학교	역곡상상시장	특화상품	당신의 하루를 도시락에 담다 - 네컷만찬	16
4	대전	대전대학교	대전역지하상가	지역축제	뉴트로를 결합한 고객 참여형 패션쇼 개최	13
5	서울	경희대학교	정릉시장	지역축제	정릉 어울림 축제	18
6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도화상점가	특화상품	복사꽃 마을 레트로 데이트	19
7			가리봉시장	지역축제·특화상품	리부트: 가리봉을 위한 상품개발 및 축제 개최	8
8	서울	중앙대학교	상도전통시장	지역축제	상도전통시장의 마스코트를 활용한 참여형 축제 기획	18
9	서울	광운대학교	상계중앙시장	특화상품	상계중앙시장 PB상품 동동주 제작	20
10	서울	경기대학교	영천시장	특화상품	2030세대를 위한 영천시장 특화상품 개발	7
11	서울	서울대학교	관악신사시장	지역축제	캐릭터 '신사장'을 활용한 축제로 관악신사시장 알리기	18
12			청량리종합시장	지역축제·특화상품	청량리 역사를 기반으로 '보부상' 컨셉의 엽전 등을 활용한 축제 개최	17
13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용문시장	지역축제	용문시장 마스코트 '용용이'를 활용한 축제 개최	20
14	충남	공주대학교	공주산성시장	특화상품	'공주 산성시장' 팝업 홍보관 설치	19
15	충남	호서대학교	온양온천시장	지역축제	온양 지역 바탕의 사건을 소재로 축제를 기획 및 운영	18
16	충북	한국교통대학교	무학시장	지역축제	무학시장 전통주 축제	17
지원액 합계						25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계 경영혁신' 내역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첫째, 동 내역사업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신규 반영되었던 취지와 달리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다른 내역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음.

동 내역사업과 같은 세부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내역사업[345]은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이며,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음.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규모	○ 총 40곳 내외(신규)
지원조건	○ 시장당 최대 10억원(2년간) ○ 국비 50%, 지방비 50%(단, 기초지자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국비 최대 ±10% 차등지원)
지원내용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를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 유지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45) 2023년도 계획액: 197억 5,000만원

그런데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산학연계 경영혁신’ 내역사업과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내용 또한 유사한 것으로 보임.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지원내역(2023년)

지역	시장	지원내용	지원액
서울	관악신사시장	-문화이벤트, 제로웨이스트 시장 사업 -특화상품 개발 및 판매부스 운영 -강한상인 육성, 안전마켓 운영 -시장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	4.2억원
서울	영천시장	-지역축제(서대문 독립축제)와 연계 -지역축제(서대문 문화재 야행)과 연계한 야간 버스킹 운영 -관광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서대문 나이트 피크닉, 서대문 나이트 투어, 영천시장 미식투어, 야시장 페어링 파티)	4.5억원
경기	역곡상상시장	-특화구역(만화 시계탑) 조성 -지역축제(부천국제만화축제) 연계 -상상야행포차 운영	5억원
충남	온양온천시장	-특화요소 발굴사업(특화축제, 특화관광 환경개선 사업) -상인역량 강화사업(미스터리 쇼퍼 및 우수점포 발굴) -온양온천시장 홍보채널 구축	4.4억원

주: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지원내역 중 지원대상 시장이 ‘산학연계 경영혁신’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만 발췌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산학연계 경영혁신’ 내역사업은 “대기업, 대학과 전통시장 간 상생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346]을 위하여 신규 반영되었는데,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반자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되었음.

34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p.53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기업의 역할은 홍보·마케팅 교육 제공 등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며[347], 민간 전문기관(MK유니버스)이 대학(생)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전통시장에서 활용하는 일회적 이벤트성 사업에 그친 것으로 보임. 그 결과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여 기금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동 내역사업의 사업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별 지역축제 및 특화상품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혹은 다른 전통시장·상점가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기존 '특성화시장 육성' 내역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된 활용이 부족하여 정부지원 종료 후 사업성과 및 인프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산학연계 경영혁신' 내역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후속연계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기금재정 투입의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국회의 심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기존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함으로써 기금재정 투입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

347) 동 내역사업에는 카카오의 사회공헌재단인 '카카오임팩트'가 참여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카카오임팩트'는 전통시장에 카카오톡 전통시장 채널('우리동네 단골시장') 가입 및 홍보·마케팅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대학에는 상품 홍보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내역사업은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화재예방-초기진화-피해보상’의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정비’ 및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등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 실집행현황(2023년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13,853	13,853	10,754	-	3,099
-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민간위탁)	3,243	3,243	2,874	-	369
· 직접사업비(한국화재보험협회)	2,703	2,703	2,703	-	-
· 간접사업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40	540	171	-	369
- 화재알림시설 설치(민간보조)	3,920	3,110	1,852	-	1,258
- 노후전선정비(민간보조)	5,700	5,700	4,425	-	1,275
-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민간보조)	990	1,800	1,603	-	19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내내역사업은 2022년까지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편성되었다가 2023년에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비목이 변경되었는데, 실질적인 사업수행방식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348]에 따라 정부는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349]에 따라 화재안전 점검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위탁사업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화재예방 및 안전 점검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 다

34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49)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점검"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전기·가스분야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재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3. "점검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점검 업무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을 말한다.
제4조(점검기관 협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약된 점검기관과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화재안전점검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협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므로 화재안전 점검 업무 위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 간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위탁사업비 전액(32억 4,300만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부하여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협약을 체결(협약금액: 27억 300만원)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수행방식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안전 점검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아닌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면밀히 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전통시장 홍보: ‘시장종합정보지’ 제작 내실화 필요

‘전통시장 홍보’ 내역사업은 온·오프라인, 언론·방송, 박람회·전시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전통시장·상점가의 매출 및 고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계획액 31억 4,600만원 전액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보조금으로 교부되었음.

동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별 개요는 다음과 같음.

전통시장 홍보 내내역사업별 개요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2023년도 계획액	주요내용
전국우수시장박람회	600	- 제19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 - 상품 전시·판매, 유공포상 시상, 전통시장 컨퍼런스 등 오프라인 행사를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상품전시회	400	- 지역 내 전통시장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6시 내고향	1,000	- KBS '6시 내고향'에 전통시장 관련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각종 전통시장 지원제도 및 전통시장 관련 이슈, 이벤트 등 소개
지역민방	400	- 각 지역 민영 방송사를 통해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
전통시장 홍보모델	200	- 세대별 전통시장 홍보모델을 공개모집, 선발 및 활용
시장하시죠	546	- 전통시장 홍보 콘텐츠 제작 전담팀 운영 및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 - 전통시장 소식을 전달하는 종합정보지 제작 및 전광판을 활용한 매체 협업홍보 추진
계	3,14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 중 '시장하시죠' 내내역사업은 홍보 대상별 콘텐츠를 발굴하여 최적의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정책대상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언론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종합정보지' 제작 사업을 전국상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시장종합정보지’ 제작 위탁사업비는 2020년을 기점으로 대폭 축소된 후 발간 빈도 및 부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3년에는 연말인 12월에 총 2만여 부를 한 차례 발간하였고, 발간 및 배포비용은 4,000만원이 소요되었음.

시장종합정보지 발간 현황(2017～2023년)

연도	발간내역	발간부수	발간·배포비용	배포내역
2017	제156호～제166호 (11권)	40,000부	2억 7,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38,403부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 1,597부
2018	제167호～제176호 (10권)	40,000부	2억 8,2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38,403부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 1,597부
2019	제177호～제180호 (4권)	20,000부	1억 9,5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19,150부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 850부
2020	제181호 (1권)	20,000부	3,8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19,150부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 850부
2021	제182호 (1권)	20,000부	3,8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19,465부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 535부
2022	제183호 (1권)	20,000부	3,8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19,495부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 505부
2023	제184호 (1권)	20,025부	4,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19,710부 -관공서 및 유관기관 등: 315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종합정보지’ 제작 사업은 기금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발간 및 배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시장종합정보지’는 2017～2018년의 경우 특별호(추석·박람회·김장 특집)를 포함하여 연간 10권 이상을 발간하였으나, 2019년에는 4권(특별호 1권 포함)을 발간하는 데 그쳤고, 2020년 이후부터는 연말

인 12월에 1권만 발간하고 있음. 또한, 주요 내용도 해당연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및 지역상품전시회 개최 소식이나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동향 안내에 국한되어 있음.

이러한 발간방식은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보의 적시 제공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는바, 분기별 또는 월별 발간을 통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책을 소개하는 등 제공하는 정보의 내실화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됨.

둘째, '시장종합정보지'는 지류(紙類)로 제작하여 택배로 발송되고 있는데, 정보 유통·소비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모바일판(版)[350]을 제작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카카오톡 채널('시장정보통')이나 SNS 같은 모바일 기반 매체 배포를 병행하는 등 접근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아울러, 배포대상도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정보에 대한 수요 및 홍보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선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관련 맞춤형 홍보 및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종합정보지'의 발간·배포방식을 개선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350) 현재 전국상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시장종합정보지'를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위주의 정보 유통·소비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6. 상권활성화(4154-305)

□ 사업 및 결산 개요

‘상권활성화’(2018~, 보조)는 민간주도 상권 개발을 위해 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설계·운영, 특화상품 개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권 개선 아이디어 도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은 303억 6,1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278억 7,500만원임. 동 사업은 ‘상권지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역상권실태조사’ 등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2023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추진되었으나, 2024년부터 ‘상권지원’ 내역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으며, ‘동네상권발전소’와 ‘지역상권실태조사’ 내역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다른 세부사업(‘소상공인성장지원’)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음.

2023년도 상권활성화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상권활성화	30,361	30,361	-	30,361	30,361 [27,875]	-	-	-
상권지원	28,661	28,661	-	28,661	28,661 [26,175]	-	-	-
동네상권발전소	1,000	1,000	-	1,000	1,000 [1,000]	-	-	-
지역상권실태조사	700	700	-	700	700 [700]	-	-	-

□ 검토의견

(1) 동네상권발전소: 상권전략 수립과 상권활성화 사업연계 미흡

‘동네상권발전소’ 내역사업은 민간차원의 지역상권 문제해결 및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음.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사업목적</td><td>상인·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 비즈니스 전략 연구·기획 추진</td></tr>
<tr><td>사업내용</td><td>○(지원대상) 골목형상점가 등 점포 수 30개 이상 예비자율상권의 지자체 및 로컬크리에이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동네상권발전 컨소시엄: 로컬크리에이터(대학, 비영리법인 등)-지자체-상인·주민 협의체 등
○(지원규모) 10개소
○(지원조건) 최대 2억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
○(지원유형) 일반상권형 및 로컬브랜드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table>
<tr><th>구분</th><th>일반상권형</th><th>로컬브랜드 연계형</th></tr>
<tr><td>지원대상</td><td>동네상권 컨소시엄
(주관기관, 지자체,
상인·주민협의체 등)</td><td>로컬브랜드 창출팀
(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등 3개사 이상)</td></tr>
<tr><td>지원예산</td><td>최대 2억원
(국비 50%, 지방비 50%)</td><td>최대 5.5억원
(동네상권발전소 1억원, 동네상권컨설팅 2억원, 로컬브랜드화 2.5억원)</td></tr>
<tr><td>지원규모</td><td>6개소</td><td>4개소</td></tr>
</table>
○(지원내용)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권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지원과제: 필수(거버넌스 구축, 아카이빙, 상권전략 수립), 선택(리빙랩 등)

①(거버넌스 구축) 주관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의 상권개발 협업체계 구축
②(로컬 아카이빙) 지역 역사·문화·생활자료와 연계한 정체성 확립 및 매력도 제고
③(동네상권 전략)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동네상권 경험강화 및 추진전략 수립
④(리빙랩) 상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상권 문제점 도출 및 해결을 위해 연구·실행과정 지원</td></tr>
<tr><td>전문기관</td><td>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td></tr>
</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및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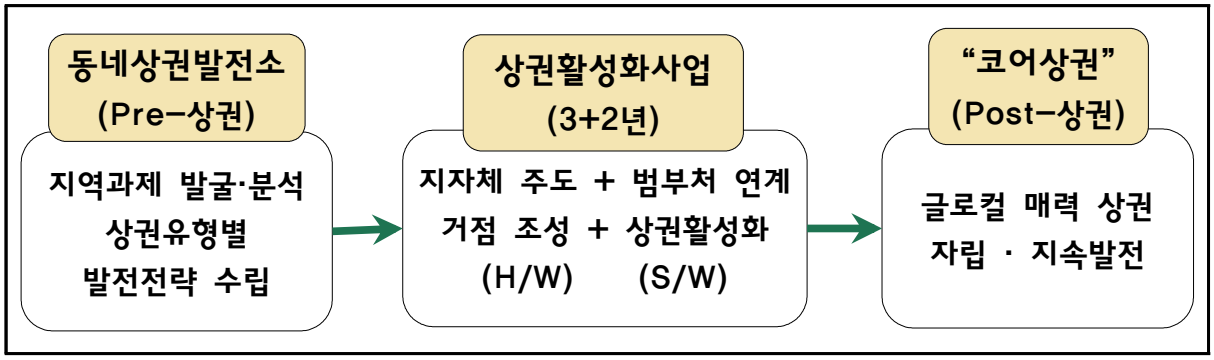
연번	지역	유형	지원대상 (주관기관/지자체/상인·주민협의체)	지원 규모	지원내용
1	강원 강릉시	일반	어번데일벤처스㈜/ 강원 강릉시/ 명주동 로컬상권조합 준비위원회	1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
2	강원 속초시	일반	㈜칠성조선소/ 강원 속초시/ 설악로데오거리 상권활성화 준비협의체	1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3	경남 거제시	일반	거제섬도/ 경남 거제시/ 거제고현시장상점가	1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4	광주 서구	일반	㈜더드림메이커스/ 광주 서구/ 금호1동 상가번영회	1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5	제주 제주시	일반	주식회사 일로와/ 제주 제주시/ 제주시원도심 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	1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리빙랩
6	충북 청주시	일반	구루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충북 청주시/ 구루물 상생 협의체	1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로컬 아카이빙 ·동네상권 전략 수립 ·리빙랩
7	서울 용산구	로컬 브랜드 연계	-대표: ㈜어반플레이 -팀원: 시티백, 컨퀘스트코퍼레이션	5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동네상권 컨설팅 ·로컬브랜드 창출
8	인천 중구	로컬 브랜드 연계	-대표: ㈜개항마을 -팀원: ㈜칼리가리브루잉, 개항백화	55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동네상권 컨설팅 ·로컬브랜드 창출
9	충남 공주시	로컬 브랜드 연계	-대표: 주식회사 퍼즐랩 -팀원: 고마다락(유), ㈜어콜렉티브	5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동네상권 컨설팅 ·로컬브랜드 창출
10	전북 군산시	로컬 브랜드 연계	-대표: 주식회사 지방 -팀원: 언더독스 주식회사, 야묾씨네	500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동네상권 컨설팅 ·로컬브랜드 창출
계				2,650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상권활성화(4154-305)' 사업에서 10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4131-305)' 사업에서 8.5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 사업에서 8억원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12월 수립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년)'[351]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주도의 상권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상권 조성을 목표로, 상권전략을 기획·수립하여 예비지역상권을 발굴·육성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을 지원한다고 적시하고 있음[352].

단계별 코어(Core)상권 조성 추진체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 2023.12.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하고 있는 '단계별 코어(Core)상권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에 따르면, '동네상권발전소'에서 상인·주민 등 지역상권 주체의 주도로 상권 발전과제를 발굴·분석하여 상권유형별 발전전략을

35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52) 구체적으로, 2027년까지 지역특화 코어(Core)상권 50곳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네상권발전소 100곳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수립하면, 상권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협업활성화(자율상권조합 대상 교육, 공동사업 등), BM(Business Model) 고도화 및 사업화자금 지원 등으로 상권의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동네상권발전소'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상권 발전전략 수립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후속 단계인 상권활성화사업과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353]. 예를 들어, 올해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발전전략을 수립한 상권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겠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대상 상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조성지역(10곳) 중 2024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5곳)으로 선정된 상권이 없어, 사업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353) 중소벤처기업부도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지원 모집공고에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과 상권활성화사업을 연계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지원연계) 동네상권발전소 수행성과를 평가하여 상권활성화사업 선정에 연계*하여 반영하고, 사전의 필수 절차(예비사업)으로 운영 예정 * 상권활성화사업 연계 선정: '24년 50% → '25년 100%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34호, 「2023년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지원」 모집공고, 2023.2.

상권활성화사업 대상 상권 현황(2023년 말 기준)

연번	시·도	시·군·구	대상 시장·상점가	사업기간	선정연도	비고
1	경기	구리	구리전통시장 1곳	2019.7~2024.6	2019	
2		양평	양평물맑은시장 1곳	2020.12~2025.11	2020	
3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 등 3곳	2020.4~2025.3	2019	
4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등 2곳	2020.12~2025.11	2020	
5	인천	중구	신포국제시장 등 4곳	2022.1~2026.12	2021	
6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 등 6곳	2022.1~2026.12	2021	
7	강원	정선	정선 아리랑시장 등 1곳	2020.4~2025.3	2019	
8		춘천	춘천중앙시장 등 6곳	2020.12~2025.11	2020	
9	충남	천안	천안역전시장 등 3곳	2019.7~2024.6	2019	
10		공주	공주산성시장 등 2곳	2020.4~2025.3	2019	
11	충북	제천	제천중앙시장 등 3곳	2020.12~2025.11	2020	
12		충주	충주자유시장 등 5곳	2023.1~2027.12	2022	
13		보은	보은전통시장 등 2곳	2023.1~2027.12	2022	
14	세종	세종	세종전통시장 등 1곳	2024.1~2028.12	2023	
15	전남	진도	진도군 상설시장 등 2곳	2020.12~2025.11	2020	
16		해남	해남매일시장 등 2곳	2024.1~2028.12	2023	
17		순천	중앙시장 등 2곳	2024.1~2028.12	2023	
18	광주	서구	양동건어물시장 등 7곳	2019.7~2024.6	2019	
19		동구	충장로 상점가 등 4곳	2022.1~2026.12	2021	
20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1곳	2022.1~2026.12	2021	
21	전북	군산	공설시장 등 2곳	2020.4~2025.3	2019	
22		부안	상설시장 1곳	2020.12~2025.11	2020	
23		익산	백제상점가 1곳	2022.1~2026.12	2021	
24		정읍	샘고을시장 등 4곳	2023.1~2027.12	2022	
25		무주	무주 반딧불시장 1곳	2024.1~2028.12	2023	
26	부산	연제구	연일시장 등 2곳	2020.4~2025.3	2019	
27		사하구	괴정골목시장 등 2곳(디지털)	2022.1~2024.12	2022	
28	대구	달서구	신내당시장 등 4곳	2023.1~2027.12	2022	
29		중구	동성로상점가 1곳	2024.1~2028.12	2023	
30	경북	문경	문경중앙시장 등 3곳	2020.12~2025.11	2020	
31		경주	경주중심상가시장 1곳	2022.1~2026.12	2021	
32		안동	중앙신시장 등 4곳	2022.1~2026.12	2021	
33	경남	진주	진주중앙시장 등 5곳	2019.7~2024.6	2019	
34		창원	진해중앙시장 1곳	2020.12~2025.11	2020	
35		밀양	밀양아리랑시장 1곳	2022.1~2026.12	2021	
36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1곳	2023.1~2027.12	2022	

주: 음영표시는 2024년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임.(2023년 선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활성화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사업 지원대상의 선정 및 관리 주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동네상권발전소’ 조성과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간 연계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음[354].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동네상권발전소’ 조성 및 지역상권 발전전략 수립과 상권활성화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3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 편성절차’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2023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보다 앞서 2024년 상권활성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함. 반면,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 지역은 2023년 4월 28일에 선정이 완료되었음.

7. 소진기금 기본경비(7277-200)

□ 사업 및 결산 개요

‘소진기금 기본경비’(2015~, 보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지역센터의 기본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 계획액은 75억 5,400만원으로 전액 집행(교부)되었으며, 2023년 말 기준 실집행액은 75억 700만원임.

2023년도 소진기금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진기금 기본경비	7,554	7,554	-	7,554	7,554 [7,507]	-	-	9,184

□ 검토의견

(1) 소진기금 기본경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역대가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에서 보조비목 중 일반연구비(260-01목)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

도 조사’ 용역[355]을 추진하였음.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용역 개요

구 분	내 용
용 역 명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발 주 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계약상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계약금액	35,460,000원(선금: 30,000,000원)
계약기간	2023. 12. 14. ~ 2024. 4. 1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런데 동 용역계약의 대가 중 선금 3,000만원은 2023년도 보조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잔금 546만원은 2024년도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용역대가 지급내역

(단위: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2023.12.27.	2023년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일반연구비 선금 지급	30,000,000	2023년도 보조금 예산
2024.04.25.	2023년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일반연구비 잔금 지급	5,460,000	2024년도 보조금 예산
합계		35,46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5)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조사이며, 국민인식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부합, 법·윤리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일반국민·지역주민의 인식 수준에 대한 조사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국민 서비스 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함.

「국가재정법」[356]에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국가의 회계연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용역대가의 일부는 2023년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2024년도 보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357]에서는 세출예산의 이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58]에서도 보조사업비의 이월에 대하여 동일한 취

---

356)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357)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58)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도 내에 지출되지 못한 용역대가 잔금은 2023년도 보조금을 이월하여 지급함이 적절했을 것임.

참고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에도 용역 추진과정에서 동일한 집행방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이러한 보조금 집행이 반복하여 이루어졌음.

'202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용역대가 지급내역

(단위: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비고
2022.12.21.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용역[359] 선금 지급	28,228,000	2022년도 보조금 예산
2023.05.02.	202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및 국민인식도 조사 용역 잔금 지급	3,092,000	2023년도 보조금 예산
2023.05.10.	2022년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용역비 잔금 추가 지출	810,000	
합계		32,130,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따라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향후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세출예산 이월에 관한 규정 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산

---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59) 계약기간: 2022.12.13.~2023.4.14., 계약액: 32,130,000원

하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아울러, 고객만족도 및 국민인식도 조사 용역을 연말에 실시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보조금의 이월 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 용역을 다음연도 연초에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회계연도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자료

1. 주요국가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 중소기업 규모기준(국제비교)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한국</th><th>일본</th><th>미국</th><th>EU(권고안)</th></tr>
<tr><td rowspan="6">중소기업</td><td>제조업</td><td>매출액
1,500억원~
800억원 이하</td><td rowspan="3">300명 또는
자본금 3억엔
(약 30억원)</td><td>종업원 500명~
1,500명 미만</td><td rowspan="6">250명 미만&매출액
5천만 유로(약 747억원)
미만 또는 총자산
43백만 유로(약 642억원)
미만</td></tr>
<tr><td>광업</td><td rowspan="3">매출액 1,000억원
이하</td><td>5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6백만불</td></tr>
<tr><td>건설업</td><td>업종별 매출액
6~28.5백만불
미만</td></tr>
<tr><td>도매업</td><td rowspan="3">매출액 1,000억원
이하</td><td>100명 또는
자본금 1억엔
(약 10억원)</td><td>종업원 100명
미만</td></tr>
<tr><td>소매업</td><td>50명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약 5억원)</td><td>업종별 매출액
6~23.5백만불
미만</td></tr>
<tr><td>서비스업</td><td>매출액 800억원~
400억원 이하</td><td>100명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약 5억원)</td><td>업종별 매출액
4~30백만불
미만</td></tr>
<tr><td colspan="2">소기업</td><td>제조업
120억~80억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억 이하,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30억
이하, 이외 업종
10억 이하</td><td>소규모기업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20명
미만, 도소매업,
서비스업은 5명
미만</td><td></td><td>Small 기업 : 50명 미만
& 매출 또는 총자산
1천만 유로(약 150억원)
미만
Micro 기업 : 10명 미만
& 매출 또는 총자산
2백만 유로(약 30억원)
미만</td></tr>
</tabl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3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국제기구의 중소기업 정의

국제기구	종업원 수	매출액	자산
World Bank	300명	15백만불	15백만불
MIF-IADB(미주개발은행)	100명	3백만불	-
African Development Bank	50명	-	-
Asian Development Bank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없음		
UNDP(유엔개발계획)	200명	-	-

2.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table>
<tr><th>구 분</th><th>지 원 내 용</th></tr>
<tr><td>□ 창업·벤처</td><td>○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내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등
-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100% 감면
-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4년간(청년창업·청년창업벤처는 5년간) 취득세 75% 감면
- 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벤처중소기업 5년간 재산세 50～100%(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벤투사 등이 창업자, 벤처기업,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개인이 벤투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 취득가액의 5% 법인세 공제</td></tr>
<tr><td>□ 경영안정</td><td>○ 지역·업종·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감면(1억원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table><tr><th>소기업</th><th>중기업</th></tr><tr><td>• 도매업·소매업·의료업(도매업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등 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30%</td><td>• 수도권밖 도매업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등 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산업 : 10%</td></tr></table>※ 장수성실기업은 10% 추가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 일부(200～500만원) 공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td></tr>
<tr><td>□ 연구·인력개발</td><td>○ 연구·인력개발비의 25～50% 법인세(소득세) 공제
- 일반 25%,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30～40%,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40～50%, 그 밖의 경우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산식에 따름
○ 특허권 등 기술 취득금액의 10% 및 대여금액의 25%, 기술이전소득의 50%를 법인세(소득세) 공제
○ 연구개발 출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추후 익금 산입)
○ 연구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는 3년간 법인세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60%, 재산세 50% 감면</td></tr>
</table>

구 분	지 원 내 용
□ 투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업용 유형자산, 지식재산 등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기본공제, 신성장사업화시설은 12%) + 투자증가분 3% 세액공제(추가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의 15% 세액공제 ○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 폐쇄 후 국내 복귀 시 6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법인세(소득세) 감면 - 해외진출 중소기업 국내복귀로 인한 자본재 수입 시 관세 100%(50%) 감면
□ 고용	○ 상시근로자 등 고용증대 시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수도권 내 1,1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1,300만원) 공제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법인세(소득세) 공제 ○ 청년(15~34세),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 70%(청년 5년간 90%) 감면(200만원 한도) ○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 10%)를 법인세(소득세)공제
□ 상생협력	○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의 0.5%, 16~60일 이내인 금액의 0.3%, 31~60일 이내인 금액의 0.15%를 세액공제
□ 가업승계	○ 10년 이상 영위기업의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가액 상당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10년 이상 영위 : 300억원, 20년 이상 : 400억원, 30년 이상 : 600억원 각 한도)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600억원 한도) 시 10억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10%(120억원 초과시 20%) 저율과세
□ 구조조정 및 지방이전	○ 중소기업간 합병 또는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취득세 7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할 경우 7년간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이후 3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3. 중소기업 현황

□ 연도별 중소기업현황

○ 기업 수 (2016~2021년)

(단위: 개,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 감 ('20~'21)
전체 기업	6,085,434	6,301,013	6,643,756	6,893,706	7,295,451	7,723,867	428,416 (5.9)
- 중소기업	6,080,914	6,296,210	6,638,694	6,888,435	7,286,082	7,713,895	427,813
(비중)	(99.9)	(99.9)	(99.9)	(99.9)	(99.9)	(99.9)	(5.9)
· 소상공인	5,670,104	5,875,091	6,199,980	6,441,928	6,924,292	7,335,397	411,105
(비중)	(93.2)	(93.2)	(93.3)	(93.4)	(94.9)	(95.0)	(5.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종사자 수 (2016~2021년)

(단위: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증 감 ('20~'21)
전체 기업	19,635,071	20,094,913	20,591,641	21,543,534	21,935,003	22,865,491	930,488 (4.2)
- 중소기업	16,361,595	16,689,525	17,103,938	17,460,668	17,791,969	18,492,614	700,645
(비중)	(83.3)	(83.1)	(83.1)	(81.0)	(81.1)	(80.9)	(3.9)
· 소상공인	8,245,781	8,535,841	8,969,291	9,763,052	10,018,424	10,461,890	443,466
(비중)	(42.0)	(42.5)	(43.6)	(55.9)	(56.3)	(56.6)	(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주요업종의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전 체 (A+B+C)	중소기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기업 수	7,723,867	7,335,397	7,602,157	111,738	7,713,895	9,972
	(100.0)	(95.0)	(98.4)	(1.4)	(99.9)	(0.1)
제조업	620,252	551,049	604,198	13,319	617,517	2,735
(8.0)*	(100.0)	(88.8)	(97.4)	(2.1)	(99.6)	(0.4)
건설업	550,499	520,239	543,828	6,085	549,913	586
(7.1)*	(100.0)	(94.5)	(98.8)	(1.1)	(99.9)	(0.1)
서비스업	6,309,380	6,029,354	6,212,832	90,268	6,303,100	6,280
(81.7)*	(100.0)	(95.6)	(98.5)	(1.4)	(99.9)	(0.1)
기타	243,736	234,755	241,299	2066	243,365	371
(3.2)*	(100.0)	(96.3)	(99.0)	(0.8)	(99.8)	(0.2)
종사자 수	22,865,491	10,461,890	14,445,841	4,046,773	18,492,614	4,372,877
	(100.0)	(45.8)	(63.2)	(17.7)	(80.9)	(19.1)
제조업	4,904,948	1,283,380	2,488,754	893,008	3,381,762	1,523,186
(21.5)*	(100.0)	(26.2)	(50.7)	(18.2)	(68.9)	(31.1)
건설업	2,176,216	920,623	1,421,618	462,204	1,883,822	292,394
(9.5)*	(100.0)	(42.3)	(65.3)	(21.2)	(86.6)	(13.4)
서비스업	15,327,093	7,998,698	10,195,405	2,629,582	12,824,987	2,502,106
(67.0)*	(100.0)	(52.2)	(66.5)	(17.2)	(83.7)	(16.3)
기타	457,234	259,189	340,064	61,979	402,043	55,191
(2.0)*	(100.0)	(56.7)	(74.4)	(13.6)	(87.9)	(12.1)

주: 각 업종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종사자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 주요국별 중소제조업 현황

(단위: 개, 천명)

구 분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비고
한국(Korea)	제조업 전체	620,252	4,905	2,287,969	Establishment
(2021년)	중소기업	617,517	3,382	764,400	10억원
	%	(99.6)	(68.9)	(33.4)	
일본(Japan)	제조업 전체	176,858	7,466	302,003	Establishment
(2020년)	중소기업	173,428	4,970	146,749	10억엔(億円)
	%	(98.1)	(66.6)	(48.6)	
대만(Taiwan)	제조업 전체	150,607	3,012	20,100,861	Enterprise
(2022년)	중소기업	145,133	2,067	5,572,416	백만원(百萬元)
	%	(96.4)	(68.6)	(27.7)	
미국(U.S.)	제조업 전체	239,607	12,000	-	Firm
(2020년)	중소기업	235,583	4,993	-	
	%	(98.3)	(41.6)	-	

주: 1. 한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1인이상 기업체 대상이며,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상이함.
2. 일본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4~299인 사업체 대상이며, 매출액은 출하액 기준임.
3. 대만의 중소기업은 납입자본금 1억 NT$ 미만 기업체 대상임.
4. 미국의 중소기업은 종사자수 500인 미만 기업체 대상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23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 경영지표분석(제조업)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자기자본비율	제조업	51.83	52.84	53.97	55.49	56.50	57.62	57.64	56.73	56.01	56.51
	중소기업	41.38	38.69	39.67	41.55	42.07	42.27	41.46	43.46	43.50	44.40
	대 기 업	56.68	58.44	58.92	60.89	61.92	63.01	63.17	61.91	60.54	60.81
부채비율	제 조 업	92.93	89.24	85.28	80.20	76.99	73.55	73.49	76.27	78.55	76.95
	중소기업	141.66	158.46	152.09	140.65	137.72	136.60	141.17	130.10	129.87	125.21
	대 기 업	76.43	71.12	69.72	64.24	61.51	58.69	58.29	61.53	65.19	64.44
차입금의존도	제 조 업	24.45	25.30	24.92	23.69	22.68	22.28	22.78	23.43	22.61	22.13
	중소기업	36.84	40.62	41.00	38.78	38.60	39.06	39.92	38.48	38.11	37.55
	대 기 업	20.08	19.99	19.84	18.41	17.19	16.71	17.25	17.84	17.13	16.78
부가가치율	제 조 업	21.28	21.12	24.00	25.61	26.53	26.16	24.28	25.58	25.89	23.60
	중소기업	24.02	25.23	26.43	27.24	26.64	27.33	27.05	27.56	26.99	26.55
	대 기 업	19.32	18.73	22.24	24.37	26.11	25.64	22.31	23.87	25.39	22.37
총자산증가율	제 조 업	5.55	3.97	4.04	5.07	6.49	5.13	3.27	5.91	10.38	7.54
	중소기업	4.89	7.82	7.85	7.92	6.49	6.00	6.82	7.43	9.84	7.39
	대 기 업	4.47	2.53	2.63	3.82	6.34	4.71	2.09	4.98	9.55	7.18
자기자본증가율	제 조 업	9.05	6.24	5.94	7.49	8.92	7.38	3.12	5.02	9.03	8.24
	중소기업	14.04	9.54	11.11	10.72	9.20	8.93	8.07	8.84	11.21	8.53
	대 기 업	7.26	4.55	4.33	6.71	8.73	6.61	1.85	3.71	7.95	7.44
매출액증가율	제 조 업	0.53	-1.58	-2.82	-0.55	9.01	4.00	-1.72	-2.34	18.10	14.63
	중소기업	4.93	7.72	3.83	3.01	5.89	2.92	2.89	1.83	13.58	10.82
	대 기 업	-1.61	-3.98	-5.60	-2.54	9.65	4.57	-3.29	-4.21	19.67	15.76

주: 1. 2015~16년 전체 및 대기업 자료는 갱신되어 이전 발표수치와 다름.
2. 2016년부터 중소기업은 모집단 기준변경으로 인해 이전수치와 비교할 수 없음.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영지표」

4. 창업기업 현황

□ 신규 창업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1,285,259	1,484,667	1,417,973	1,317,479	1,238,617
형태	개인	1,175,739	1,361,362	1,291,068	1,203,590	1,140,323
	법인	109,520	123,305	126,905	113,889	98,294
성별	남성	689,001	790,241	756,441	711,637	673,891
	여성	595,484	693,927	660,616	604,425	562,750
	확인불가	774	499	916	1,417	1,9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동향」

□ 전체 창업기업 현황

○ **(기업 수)** '21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업력 7년 미만)는 4,549,158개

○ **(매출)** '21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매출은 1,108.8조원

○ **(종사자 수)** '21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종사자는 7,321,542명

* 창업기업 실태조사는 조사방식 변경(행정자료&조사확인 자료 → 행정자료, '23.12)에 따라 2021년 이전의 통계와 시계열 분석이 불가

5. 벤처기업 현황

□ 벤처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증가			감소				증감	연말 (월말)
	신규	재확인	소계	기간 만료	휴폐업	기타 (취소 등)	소계		
1998년	2,049	-	2,049	-	3	4	7	2,042	2,042
1999년	3,676	33	3,709	729	63	25	817	2,892	4,934
2000년	5,532	1,055	6,587	2,601	62	60	2,723	3,864	8,798
2001년	3,914	2,479	6,393	3,489	221	89	3,799	2,594	11,392
2002년	1,672	4,781	6,453	8,419	261	387	9,067	-2,614	8,778
2003년	1,272	2,945	4,217	5,113	145	35	5,293	-1,076	7,702
2004년	1,886	2,718	4,604	4,221	100	18	4,339	265	7,967
2005년	2,823	2,957	5,780	3,935	62	18	4,015	1,765	9,732
2006년	4,127	2,955	7,082	4,467	59	70	4,596	2,486	12,218
2007년	5,286	3,952	9,238	7,274	163	4	7,441	1,797	14,015
2008년	6,276	8,243	14,519	13,123	2	8	13,133	1,386	15,401
2009년	7,762	10,184	17,946	14,351	-	103	14,454	3,492	18,893
2010년	6,899	6,647	13,546	7,776	-	18	7,794	5,752	24,645
2011년	6,369	7,436	13,805	12,238	-	64	12,302	1,503	26,148
2012년	6,574	7,847	14,421	12,340	-	36	12,376	2,045	28,193
2013년	6,326	8,830	15,156	14,097	45	72	14,214	942	29,135
2014년	5,500	9,524	15,024	14,007	1	241	14,249	775	29,910
2015년	6,681	10,096	16,777	15,220	-	207	15,427	1,350	31,260
2016년	6,837	10,084	16,921	14,606	182	33	14,821	2,100	33,360
2017년	7,419	11,298	18,717	16,434	175	186	16,795	1,922	35,282
2018년	6,827	11,587	18,414	16,742	121	13	16,876	1,538	36,820
2019년	6,194	12,870	19,064	18,821	45	10	18,876	188	37,008
2020년	6,992	13,902	20,894	18,310	67	14	18,391	2,503	39,511
2021년	5,910	12,042	17,952	19,127	1	16	19,144	-1,192	38,319
2022년	5,308	12,200	17,508	20,603	48	53	20,704	-3,196	35,123
2023년	5,176	3,540	8,716	3,180	242	336	3,758	4,958	40,08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벤처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벤처	합계
업체수	6,930	6,931	25,953	267	40,081
비율(%)	17.3	17.3	64.8	0.7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세종	계
업체수	11,675	1,814	473	1,337	1,426	717	748	1,576	1,320	12,571	1,861	701	1,002	903	1,465	279	213	40,081
비율(%)	29.1	4.5	1.2	3.3	3.6	1.8	1.9	3.9	3.3	31.4	4.6	1.7	2.5	2.3	3.7	0.7	0.5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현황

(단위: 개, %)

연도별	현황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벤처	15,401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5,282	36,820	37,008	39,511	38,319	35,123	40,081
Inno-biz	14,626	15,940	16,243	16,944	17,298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18,093	18,345	18,920	20,205	21,392	22,383
Main-biz	11,324	13,988	16,642	17,558	14,867	12,606	12,001	13,898	14,841	15,230	16,733	18,017	19,078	20,313	21,659	22,892
계	**41,351**	**48,821**	**57,530**	**60,650**	**60,358**	**58,821**	**58,789**	**62,630**	**65,909**	**68,603**	**71,646**	**73,370**	**77,509**	**78,837**	**78,174**	**85,356**
중복업체 (중복률)	11,091 (26.8)	12,207 (25.0)	14,393 (25.0)	14,348 (23.7)	13,216 (21.9)	11,485 (19.5)	11,841 (20.1)	11,897 (19.0)	12,195 (18.5)	12,042 (17.6)	12,448 (17.4)	12,786 (17.4)	14,156 (18.2)	15,403 (19.5)	16,294 (20.8)	18,245 (21.4)
합계 (중복제외)	**30,260**	**36,614**	**43,137**	**46,302**	**47,142**	**47,336**	**46,948**	**50,733**	**53,714**	**56,561**	**59,198**	**60,584**	**63,353**	**63,434**	**61,880**	**67,111**

주: 1. 중복현황은 벤처+이노(10,529), 벤처+경영(4,786), 이노+경영(5,382), 이노+벤처+경영(3,188)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정은 '06.7월부터 시행
3. '11년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통계는 휴폐업기업 등을 일부 미반영

□ 업종별 현황

○ 총 괄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49,679	11,245	1,820	4,418	7,942	222	10,030	85,356
비율	58.2	13.2	2.1	5.2	9.3	0.3	11.7	100

주: 기타(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인증 유형별

<벤처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23,264	8,676	1,508	876	1,559	179	4,019	40,081
비율	58.0	21.6	3.8	2.2	3.9	0.4	10.1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수	15,003	2,569	-	644	1,472	43	2,652	22,383
비율	67.0	11.5	-	2.9	6.6	0.2	11.8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메인비즈기업>

(단위: 개, %)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업	농·어·임 광업	기타	계
업체수	11,412	-	312	2,898	4,911	-	3,359	22,892
비율	49.9	-	1.4	12.7	21.5	-	14.5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 소상공인 현황

□ 소상공인 수

○ 전 기업 수의 95.0%(734만개), 종사자 수의 45.8%(1,406만명)

(단위: 개, 명, %)

구분	전체	소상공인	비중	소기업	비중	중기업	비중	중소기업	비중
기업체	7,723,867	7,335,397	95.0	7,602,157	98.4	111,738	1.4	7,713,895	99.9
종사자	22,865,491	10,461,890	45.8	14,445,841	63.2	4,046,773	17.7	18,492,614	80.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업종별 분포

○ 도·소매업(25.2%)과 음식·숙박업(11.3%)이 약 36.5% 차지

(단위: 개, 명, %)

구분	기업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전(全) 산업	7,335,397	100.0	10,461,890	100.0
도·소매업	1,845,255	25.2	2,236,212	21.4
부동산업	1,258,699	17.2	1,361,526	13.0
음식·숙박업	829,603	11.3	1,349,532	12.9
운수·창고업	635,262	8.7	723,736	6.9
제조업	551,049	7.5	1,283,380	12.3
건설업	520,239	7.1	920,623	8.8
기타	1,695,290	23.1	2,586,881	24.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업종별 기업규모 현황

(단위: 개, %)

산업분류		전체 (A+B+C)	중 소 기 업				대기업 (C)
			소기업(A)		중기업 (B)	소계 (A+B)	
			소상공인				
전산업		7,723,867 (100.0)	7,335,397 (95.0)	266,760 (3.5)	111,738 (1.4)	7,713,895 (99.9)	9,972 (0.1)
A	농업,임업 및 어업	102,625 (100.0)	98,374 (95.9)	3,905 (3.8)	274 (0.3)	102,553 (99.9)	72 (0.1)
B	광업	2,540 (100.0)	2,259 (88.9)	178 (7.0)	90 (3.5)	2,527 (99.5)	13 (0.5)
C	제조업	620,252 (100.0)	551,049 (88.8)	53,149 (8.6)	13,319 (2.1)	617,517 (99.6)	2,735 (0.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5,805 (100.0)	125,386 (99.7)	185 (0.1)	47 (0.0)	125,618 (99.9)	187 (0.1)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2,766 (100.0)	8,736 (68.4)	2,276 (17.8)	1,655 (13.0)	12,667 (99.2)	99 (0.8)
F	건설업	550,499 (100.0)	520,239 (94.5)	23,589 (4.3)	6,085 (1.1)	549,913 (99.9)	586 (0.1)
G	도매 및 소매업	1,936,683 (100.0)	1,845,255 (95.3)	55,808 (2.9)	34,090 (1.8)	1,935,153 (99.9)	1,530 (0.1)
H	운수 및 창고업	645,701 (100.0)	635,262 (98.4)	7,960 (1.2)	2,050 (0.3)	645,272 (99.9)	429 (0.1)
I	숙박 및 음식점업	869,724 (100.0)	829,603 (95.4)	29,142 (3.4)	10,813 (1.2)	869,558 (100.0)	166 (0.0)
J	정보통신업	170,303 (100.0)	151,100 (88.7)	15,655 (9.2)	2,742 (1.6)	169,497 (99.5)	806 (0.5)
K	금융 및 보험업	60,732 (100.0)	56,845 (93.6)	2,273 (3.7)	673 (1.1)	59,791 (98.5)	941 (1.5)
L	부동산업	1,272,816 (100.0)	1,258,699 (98.9)	6,678 (0.5)	6,277 (0.5)	1,271,654 (99.9)	1,162 (0.1)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3,751 (100.0)	251,912 (88.8)	25,995 (9.2)	5,354 (1.9)	283,261 (99.8)	490 (0.2)
N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6,471 (100.0)	158,172 (89.6)	13,692 (7.8)	4,132 (2.3)	175,996 (99.7)	475 (0.3)
P	교육서비스	254,316 (100.0)	247,134 (97.2)	4,589 (1.8)	2,531 (1.0)	254,254 (100.0)	62 (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756 (100.0)	52,482 (64.2)	12,915 (15.8)	16,336 (20.0)	81,733 (100.0)	23 (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5,203 (100.0)	151,531 (97.6)	2,943 (1.9)	584 (0.4)	155,058 (99.9)	145 (0.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1,924 (100.0)	391,359 (97.4)	5,828 (1.5)	4,686 (1.2)	401,873 (100.0)	51 (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8. 전통시장 현황

□ 전국 1,388개 시장, 23.2만개 점포, 상인 31.6만명

*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상점가 실태조사 자료('22)

○ 연도별 현황 : ('17) 1,450개→('18) 1,437개→('19) 1,413개→
('20) 1,401개→('21) 1,408개→('22) 1,388개

○ 점포 수

(단위: 개, %)

구분	전체	영업점포	비영업점포		노점
			빈점포	기타 점포 (창고, 사무실 등)	
점포 수	232,206 (100.0)	174,854 (75.3)	22,681 (9.8)	4,504 (1.9)	30,167 (13.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상인 수

(단위: 명, %)

구분	전체	종사자		노점상인
		점포상인	종업원	
상인 수	316,315 (100.0)	174,854 (55.3)	111,148 (35.1)	30,313 (9.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연도별 매출액

(단위: 조원)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매출액	20.1	19.9	20.1	21.1	21.8	22.6	23.9	25.8	25.1	25.3	2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9.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2023년 12월 기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예산	예산비중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330,000	51.2	2,330,000	11,308	206
신성장기반자금	1,285,000	28.3	1,285,000	2,364	544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50,000	5.5	250,000	1,357	184
긴급경영안정자금	258,900	5.7	258,900	1,505	172
재도약지원자금	423,000	9.3	423,000	1,424	297
합계	4,546,900	100.0	4,546,900	17,958	25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직대/대리, 신용/담보, 시설/운전 지원액(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직대	대리	신용	담보	시설	운전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802,144	527,856	1,493,765	836,235	878,455	1,451,545	2,330,000
신성장기반자금	714,810	570,190	550,797	734,203	868,965	416,035	1,285,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50,000	-	250,000	-	2,089	247,911	2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	258,900	-	258,900	-	-	258,900	258,900
재도약지원자금	326,802	96,198	300,169	122,831	149,013	273,987	423,000
합계	3,352,656	1,194,244	2,853,631	1,693,269	1,898,522	2,648,378	4,546,9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지원 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330,623	603,904	580,655	542,874	78,466	62,505	54,314	76,660	2,330,000
신성장기반자금	38,176	24,345	19,594	35,121	224,127	349,000	187,052	407,586	1,285,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391	14,680	19,730	16,050	35,260	52,740	39,309	69,840	2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	300	5,867	12,190	15,860	43,941	57,838	43,472	79,432	258,900
재도약지원자금	8,400	22,667	43,103	37,715	63,188	97,655	59,770	90,502	423,000
합계	379,890	671,463	675,272	647,619	444,982	619,738	383,916	724,020	4,546,9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지원 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94,913	142,106	108,377	117,578	78,070	55,568	68,692	543,708	64,590
신성장기반자금	149,122	78,256	62,739	48,126	38,928	33,481	39,326	318,400	37,08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1,980	14,500	13,000	9,700	7,900	5,600	5,850	59,770	7,500
긴급경영안정자금	28,375	12,900	11,662	10,370	10,660	4,958	5,775	49,200	7,520
재도약지원자금	48,700	27,250	18,250	14,860	14,650	10,848	12,690	100,350	11,250
합계	553,090	275,012	214,028	200,634	150,208	110,455	132,334	1,071,428	127,939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14,538	107,684	97,142	88,240	196,784	219,701	20,235	12,075	2,330,000
신성장기반자금	55,676	62,511	48,320	50,059	117,121	129,751	9,873	6,230	1,285,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2,050	12,150	10,000	10,300	19,070	26,480	2,200	1,950	2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	16,894	12,730	16,605	8,571	34,600	24,690	1,800	1,590	258,900
재도약지원자금	23,800	21,660	19,500	15,132	28,955	48,405	3,400	3,300	423,000
합계	222,958	216,735	191,567	172,302	396,530	449,027	37,508	25,145	4,546,9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지원실적(직접융자)

(단위: 백만원)

구분	5인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합계
혁신창업사업화자금	794,521	543,933	532,729	341,146	85,370	31,270	1,030	2,330,000
신성장기반자금	143,537	159,394	251,750	400,503	191,809	127,357	10,651	1,285,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9,371	44,390	57,940	68,430	27,819	10,750	1,300	250,000
긴급경영안정자금	43,571	58,028	65,790	60,181	21,585	8,395	1,350	258,900
재도약지원자금	46,982	67,611	109,000	148,551	32,968	17,888	-	423,000
합계	1,067,982	873,357	1,017,209	1,018,811	359,551	195,660	14,331	4,546,9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공급액(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공급 목표	공급 비중	공급액	건수	건별 평균 공급액	이차보전 예산	집행 예산
신성장기반자금	540,000	67.8	540,000	1,485	364	8,100	7,029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57,000	32.2	257,000	679	378	3,855	3,574
합계	797,000	100.0	797,000	2,164	368	11,955	10,60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신성장기반자금	600	1,800	7,994	14,830	66,624	128,376	106,060	213,716	54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700	5,330	6,300	13,345	27,440	47,365	47,472	109,048	257,000
합계	1,300	7,130	14,294	28,175	94,064	175,741	153,532	322,764	797,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신성장기반자금	63,220	33,580	26,540	26,140	17,200	14,100	16,160	123,030	18,15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30,500	15,300	12,600	13,900	10,800	6,700	7,350	57,700	8,400
합계	93,720	48,880	39,140	40,040	28,000	20,800	23,510	180,730	26,550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신성장기반자금	26,900	24,300	22,430	20,600	46,130	54,020	3,800	3,700	54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2,400	11,900	10,700	7,600	20,800	26,650	2,000	1,700	257,000
합계	39,300	36,200	33,130	28,200	66,930	80,670	5,800	5,400	797,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공급실적(이차보전)

(단위: 백만원)

구분	5인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합계
신성장기반자금	27,384	64,820	140,349	202,916	72,161	29,570	2,800	540,0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	23,490	33,712	46,905	91,443	44,950	16,000	500	257,000
합계	50,874	98,532	187,254	294,359	117,111	45,570	3,300	797,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단위: 억원)

변경 시기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사유
		변경전	증감	변경후	
'23.7.21.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	19,300	1,000	20,300	창업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및 자금 신청률 증가에 따른 증액
	신성장기반자금(융자) (혁신성장지원)	6,492	1,000	7,492	중소기업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시설투자 지원 확대
	재도약지원자금(융자) (구조개선전용)	780	200	980	3高 복합위기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	375	300	675	금융권 위험관리 강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단기유동성 애로 해소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수출기업글로벌화)	39	1,500	1,539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한 수출기업 활력 제고
'23.11.15.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이자상환)	4,915	749	5,664	중진채 조달금리 증가와 연중 융자증액에 따른 채권 이자지출 증액
	중진기금기본경비 (중진기금기본경비)	279	4	283	제1·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채권 발행 수수료 증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0.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사업별 통계(2023년 12월 기준)

□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단위: 백만원, %, 건)

구분	예산	예산비중	집행액	건수	건별 평균 대출액
성장기반자금	1,200,000	40.0	1,183,528	24,257	49
일반경영안정자금	500,000	16.7	517,877	16,930	31
특별경영안정자금	1,300,000	43.3	1,244,471	39,764	31
합계	3,000,000	100	2,945,876	80,951	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직대/대리, 신용/담보, 시설/운전 지원액

(단위: 백만원)

구분	직대	대리	직대		대리		합계
			시설	운전	보증서	신용/담보	
성장기반자금	706,291	477,237	11,343	694,948	299,051	178,186	1,183,528
일반경영안정자금	2,826	515,051	-	2,826	428,932	86,119	517,877
특별경영안정자금	868,670	375,801	-	868,670	276,580	99,221	1,244,471
합계	1,577,787	1,368,089	11,343	1,566,444	1,004,563	363,526	2,945,8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업력 기준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1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5년미만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성장기반자금	37,247	165,312	246,619	205,294	186,013	163,993	84,491	94,560	1,183,528
일반경영안정자금	82,072	361,668	71,961	458	580	450	308	380	517,877
특별경영안정자금	164,969	449,786	258,942	159,342	82,177	65,582	31,986	31,686	1,244,471
합계	284,288	976,766	577,522	365,094	268,769	230,025	116,786	126,625	2,945,8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지역 기준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성장기반자금	134,707	69,195	83,803	41,548	41,368	25,403	12,722	260,244	70,708
일반경영안정자금	16,680	23,031	37,815	17,193	15,530	15,915	5,300	173,861	21,053
특별경영안정자금	179,010	84,615	61,405	56,406	36,174	33,067	26,690	297,359	66,707
합계	330,397	176,841	183,023	115,147	93,072	74,385	44,712	731,464	158,468
구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합계
성장기반자금	44,661	53,378	45,993	44,007	108,555	85,415	41,734	20,087	1,183,528
일반경영안정자금	19,189	25,928	24,818	16,701	34,077	41,181	15,172	14,433	517,877
특별경영안정자금	39,322	49,249	50,044	49,627	64,608	116,151	23,299	10,738	1,244,471
합계	103,172	128,555	120,855	110,335	207,240	242,747	80,205	45,258	2,945,8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세부사업별 기업규모 기준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5인 미만	10인미만	20인미만	50인미만	100인미만	300인미만	300인이상	합계
성장기반자금	1,042,496	140,183	849	-	-	-	-	1,183,528
일반경영안정자금	516,532	1,345	-	-	-	-	-	517,877
특별경영안정자금	1,234,927	9,294	250	-	-	-	-	1,244,471
합계	2,793,955	150,822	1,099	-	-	-	-	2,945,87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자금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해당없음

11. 신보, 기보, 지신보의 보증대상 및 한도, 총 보증금액 비교

(2023.12월말 기준)

구분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설립시기		'96.3～'21.11	'76.6	'89.4
보증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수출 중소기업 등	혁신형기업
보증한도		8억원	30억원	30억원
건별 보증금액		0.21억원	1.94억원	2.02억원
점유율	금액	33.1%(44.3조원)	46.1%(61.8조원)	20.8%(27.9조원)
	건수	82.4%(213.7만건)	12.3%(31.8만건)	5.3%(13.8만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